

발간등록번호
11-1250000-000127-01

21

독일통일 총서

문화 분야

관련 정책문서



통일부



21 독일통일 총서
문화 분야
관련 정책문서



통일부

본 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통일부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21

독일통일 총서

문화 분야

관련 정책문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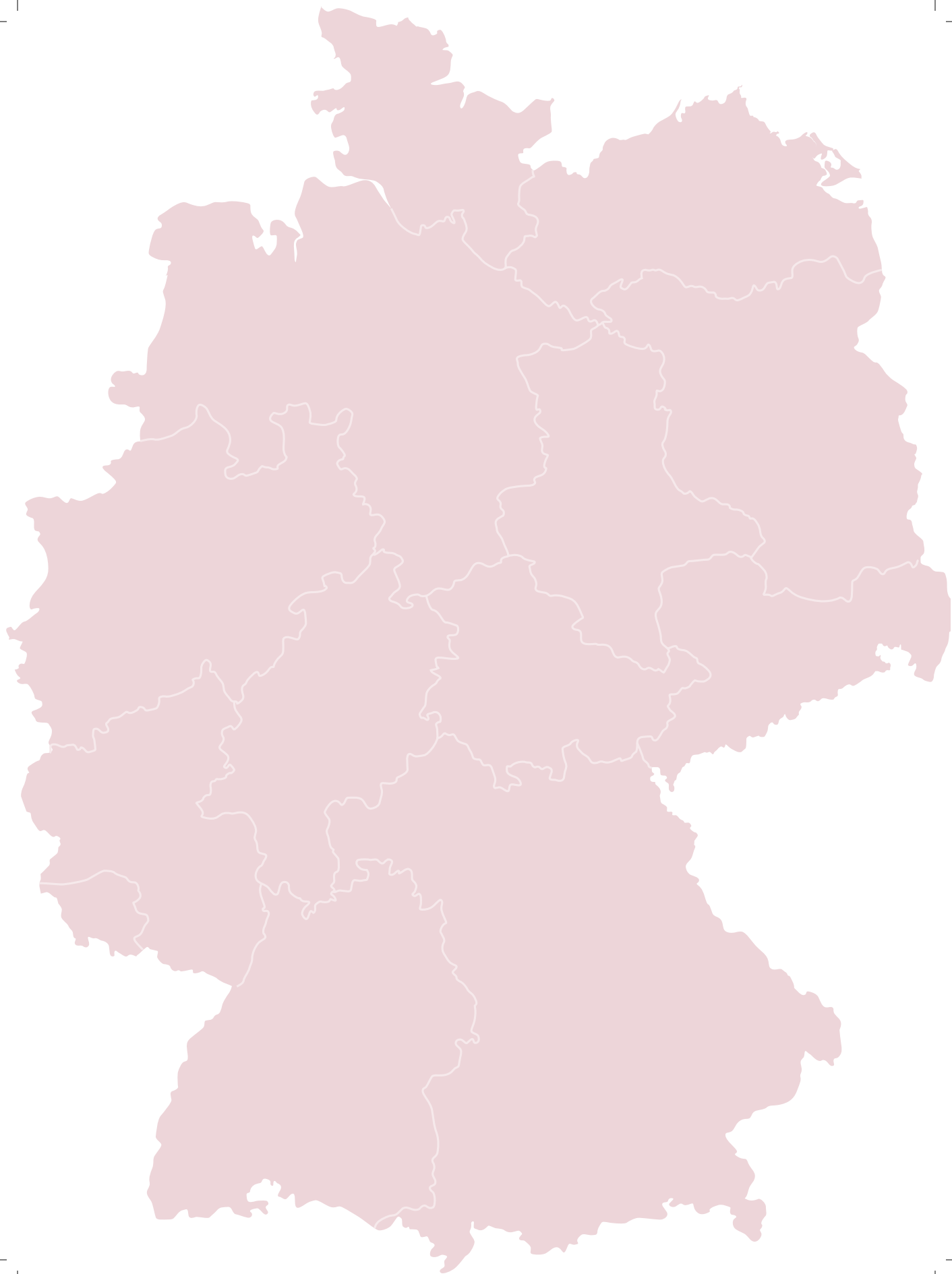
독일통일 총서 21

문화 분야 관련 정책문서

발행일 2017년 12월

발행처 통일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전화 02)2100-5757

디자인·제작 (사)한국장애인이워크협회 일자리사업장
전화 02)2272-0307



CONTENTS



동서독의 문화통합과 한반도에의 시사점

| | |
|-----------------------------|-----------|
| 제1장 동서독 문화통합의 성격과 특징 | 10 |
| 제1절 분단국 문화통합의 과제 | 10 |
| 제2절 독일의 분단 및 통일과정의 특성 | 11 |
| 제3절 동서독 문화통합의 특징 | 12 |
| 제2장 분단시기 동서독 문화교류 | 15 |
| 제1절 동독의 민족관과 문화정책 | 15 |
| 1. 민족에 대한 다른 입장 | 15 |
| 2. 동독의 문화정책 | 16 |
| 제2절 분단 시기 동서독 문화교류 | 20 |
| 1. 동서독 문화교류에서의 쟁점 | 20 |
| 2. 동서독 문화협정의 체결 | 22 |
| 3. 동서독 간 문화 교류 사례 | 27 |

| | |
|---------------------------------|-----------|
| 제3장 통일독일 문화통합의 과정과 내용 | 44 |
| 제1절 개요 | 44 |
| 제2절 문화통합에 대한 통일조약과 관련 조치 | 45 |
| 1. 독일 통일조약 제35조 | 45 |
| 2. 통일조약에 따른 초기 문화통합 조치 | 47 |
| 3. 분야별 문화통합 사업 | 50 |
| 제4장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 59 |
| 제1절 남북 문화교류협력 추진 현황 | 59 |
| 1. 남북교류협력 정책의 정립 | 59 |
| 2. 문화 분야 남북교류협력 추진 현황 | 65 |
| 제2절 독일의 문화통합 사례의 한반도 문화통합에의 시사점 | 68 |



정책문서를 통해 본 독일통일과 문화

| | |
|---------------------------|-----------|
| 들어가며 | 72 |
| 제1장 동독의 문화와 검열 | 74 |
| 제2장 동독과 서독 간의 문화교류 | 82 |
| 제3장 개혁기 동독의 문화정책 | 87 |
| 제1절 폐허화되는 구도심문제 | 88 |
| 제2절 다양한 문화시민단체의 창립 | 90 |
| 제3절 개혁과 일상업무의 공존 | 91 |
| 제4절 동서독 공동문화위원회 | 92 |

CONTENTS

| | |
|-----------------------------------|-----|
| 제4장 통일 이후의 문화정책-연방정부와 신연방주 정부의 역할 | 95 |
| 제1절 통일조약과 문화 | 96 |
| 제2절 신연방주 문화정책을 위한 연방정부의 지원 | 97 |
| 제3절 소유권문제 | 102 |
| 제5장 문화외교 | 10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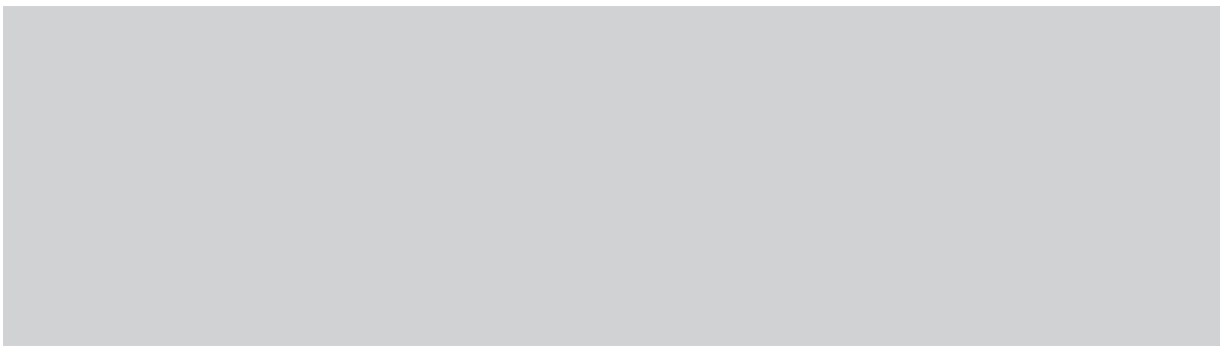
문화 분야 관련 정책문서

| | |
|-------------------|-----|
| 문서 목록 | 108 |
| 문서 요약 | 124 |
| 문서 요약(문서번호 1~131) | 124 |
| 독일어 원문 자료(CD 수록) | |



| | |
|----------------------------------|----|
| 표 1-1) 문화등대사업에 해당하는 동독지역 문화유산 목록 | 52 |
| 표 1-2) 문화 분야 남북교류협력 사업 | 66 |
| 표 2-1) 교향악단 보급률 비교 | 75 |

문화 분야
관련 정책문서



동서독의 문화통합과 한반도에의 시사점

이찬호

(법무법인 태평양 외국변호사)



동서독 문화통합의 성격과 특징

제1절 분단국 문화통합의 과제

체제 또는 지역 간의 문화통합은 매우 다의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 이를 분명하게 기술하기도 어렵다. 왜냐하면, 정치적·제도적 통합과는 달리 문화통합은 문화라는 제도화·규범화되지 않는 가치관을 포함하는 생활양식을 통합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일의적으로 규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문화통합은 정치·제도통합과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르다.

첫째, 정치·제도통합은 외적 통합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문화통합은 심리적 통합 등 내적 통합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문화통합의 정도 등을 측정하는 것은 정치·제도통합의 정도를 측정하는 것보다 어렵다.

둘째, 문화통합은 단일성과 획일성을 목표로 하는 정치·제도통합과는 달리 문화적 다양성을 추구하는 가운데 문화공동체로서 통일국가가 갖게 되는 문화적·심리적 공통분모를 형성하고자 한다.

셋째, 문화통합은 국민의 의식, 가치관, 심리, 공동체 의식 등과 같은 비제도적 요소의 통합을 지향하며,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전제로 하는 것이니 만큼 통일국가에 있어서의 주요 과제인 국민통합의 달성과 매우 긴밀한

상관관계를 갖는다.

따라서, 분단국이 정치적·제도적 통일을 이루게 되면 각 분야별 통합작업이 이루어지게 되지만, 문화 분야의 통합작업은 서서히 그리고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게 된다.

통일독일의 문화통합 작업은 분단에 따른 동서독 간의 문화적 이질화 현상을 되돌리는 작업임과 동시에 통일국가로서의 새로운 문화공동체적 기반을 조성하는 작업이었던 바, 독일의 제도적 통합은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1년 안에 이루어졌지만, 문화적, 심리적 통일에는 훨씬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제2절 독일의 분단 및 통일과정의 특성

독일통일 과정과 이후의 분야별 통합과정은 한반도에 많은 점을 시사해 주고 있으며, 일종의 모델로서 기능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독일과 한반도의 상황은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르기 때문에,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이를 그대로 답습할 수는 없다고 하겠다. 한반도의 상황과 다른 독일의 분단 및 통일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독일의 분단은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전범국가인 독일에 대한 단죄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일제에 의한 국권과 영토의 침탈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분단된 한반도 상황과는 구분된다.

독일통일이 서독에 의해 주도되었지만,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에 의해 서독 또한 통일될 때까지 대외적인 주권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독일통일에 대한 최종적인 확인은 전승 4대국들에 의해 이루어지게 되었다(2+4회담).

둘째, 동서독 정부가 취한 통일정책 또한 남북한 상황과 상이한 바, 서독 정부는 친서방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면서 동독과의 통일보다는 관계 정상화 등 선린우호 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대외정책의 기본으로 삼았다.

동독은 서독과의 관계를 외국과의 관계로 인식하는 한편, 독일 민족을



동독의 ‘독일 사회주의 민족’과 서독의 ‘독일 자본주의 민족’으로 구분하여 독일 민족의 단일성을 부인하는 정책을 취하였다.

셋째, 동서독은 분단 이전에 독일제국과 바이마르공화국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고 있었다. 특히 바이마르공화국의 역사와 문화를 공유함으로써, 근대적인 국가 체제를 경험함으로써 분단 이전에 정당과 같은 정치 체제, 헌법과 민형사법과 같은 법률 체제, 근대적 문화적 유산 등을 공유하였다.

분단 이후에도 동독은 이러한 근대적 체제를 일정기간 동안 상당부분 유지하였고, 이는 통일 후 체제를 통합하는 작업에 도움이 되었다.

제3절 동서독 문화통합의 특징

독일의 통일은 분단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결실이며, 특히 서독 정부의 동방정책 이후 약 20여 년간의 통일노력의 결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문화 분야에서의 동서독 통합 또한 문화적 단절의 극복이자 원래 하나였던 것을 다시 하나로 하는 ‘재통합(Wiedervereinigung)’으로서, 통합의 힘과 분단의 힘 사이에서의 변증법적 역사발전 과정의 하나로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통일 이후 이루어진 통일독일의 문화통합 노력은 분단 시기 이루어졌던 동서독 간 문화교류의 연장선상에서 존재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며, 이러한 점은 다른 분야에서의 동서독 통합문제와 크게 다르지 않다.

동서독 문화통합의 특성은 앞서 살펴본 독일의 분단 및 통일과정의 특성 과도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하겠다.

첫째, 분단 시기 문화 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은 여타 정치경제적 교류협력에 비해 매우 더디게 진행되었으며, 이는 통일 후 제도적 통합 이후에 심리적 후유증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었다는 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동독은 서독과의 정치적 분리뿐만 아니라 민족적 분리를 시도하여 자신

들을 독일 사회주의 민족으로 간주하는 입장을 취함으로써 공통의 민족의식에 기인한 문화교류협력을 추진하고자 하는 서독의 노력을 차단하였다. 이러한 동독의 입장으로 인해 동서독 간의 문화협력은 이념적인 성격을 띠게 되었으며, 문화교류협력도 다른 분야에 비해 소극적으로 진행되어 문화협정이 1972년 기본조약 체결 후 14년이 경과한 1986년에 이르러서야 체결되었다. 동서독 간의 사례는 문화 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이 정치경제 등 다른 분야의 교류협력에 비해 매우 어려운 사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둘째, 통일 이후 구동독지역에서의 문화통합 작업을 각 주가 주도하였고, 연방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했다는 사실이다.

통일 이후 구동독지역에는 5개의 신연방주가 설치되었는 바, 독일 기본법상의 관할권 배분 원칙에 따라 각 주가 문화통합 문제를 관할하게 되었다. 따라서, 구동독지역에서 행해지는 문화통합 작업에 대해서 구동독의 시민들이 주체가 될 수 있었으며, 자율적인 문화통합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할 것이다.

셋째, 구동독지역에 대한 문화통합과 문화행정 체제의 재편은 대규모의 문화 분야 구조조정을 야기하였다는 점이다.

문화행정 체제가 지방자치가 주도하는 분권적 사무로 전환됨에 따라 동독시절에 중앙집권식으로 행해지던 동독 정부와 공산당에서 운영해 온 문화 시설들이 폐쇄되었으며, 문화 단체와 기관들 또한 구조 조정의 대상이 되었다. 구동독지역에서 일하던 많은 문화계 종사자들이 일자리를 잃는 상황이 발생하여, 문화통합에 있어서의 갈등요소로 작용하였다.

넷째, 문화통합에 있어 연방정부의 역할 또한 중요하였다고 할 수 있다.

연방정부는 새롭게 설치된 신연방주 정부의 재정 및 업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994년 말까지 동독 정부가 운영하던 문화예술지원기금을 함께 관리하고 지원하면서 문화행정 체제의 정비 및 문화통합 사업의 추진을 지원하였다.



그 결과 베를린의 국립도서관과 박물관들에 있던 소장품의 재배치와 통합을 비롯해 많은 구동독의 문화기관들이 효율적으로 재편되었으며, 소위 '등대사업'을 연방 차원에서 추진함으로써 구동독지역에 소재하는 주요 문화시설의 보존과 복원 등에 대해 주정부와 협업을 진행하였다.

제2장

분단시기 동서독 문화교류

제1절 동독의 민족관과 문화정책

1. 민족에 대한 다른 입장

독일에 있어 민족과 민족 국가의 형성은 독특한 전개과정을 갖고 있으며, 이는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대두되었다. 신성로마제국으로서의 독일민족, 비스마르크 독일제국으로서의 독일민족, 나치독일으로서의 독일민족, 동독과 서독으로서의 독일민족, 통일독일으로서의 독일민족 등의 형태가 그것이다.

분단 이후 서독은 기본법 전문을 통해 전독일 국민에게 독일의 통일과 자유를 자유로운 민족자결에 의해 완성할 것을 요청하는 등 동독과 서독의 국민이 같은 민족임을 천명하였다. 다만, 동서독 간 기본조약 전문에서¹ 민족 문제에 대하여 동독과 이견이 있음을 인정하고 서로 다른 입장에 대한 절충

¹ 조약 체결 쌍방은, 평화 유지에 대한 각자의 책임을 의식하며, 유럽의 데탕트와 안보에 기여하기를 바라며, 현재 국경선을 기준으로 하는 모든 유럽 국가들의 국경의 불가침성과 그 영토 및 주권을 존중함이 평화의 기본적인 전제 조건임을 확신하면서, 두 독일 국가 사이에 무력 위협이나 무력 사용이 없어야 함을 인식하며, 역사적으로 형성된 현실에 따르고, 민족문제를 비롯한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의 여러 다른 견해 중 한쪽을 중시하지 않는 한,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의 협력이 두 국가의 주민들의 복지를 증진하리라는 바람에서, 그에 필요한 조건을 마련하고자,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적 합의를 도출하고자 노력하였다.

동독은 당초 전체 독일에서 통일적이고 사회주의적인 독일민족의 발전을 목표로 하였던 바, 동독이 주장하는 독일민족의 개념은 계급, 계급투쟁, 사회주의 등의 개념과 불가분의 관계를 갖는 가치구속적이고 가치에 연관한 민족개념이었다.

동독은 건국 이후 사회주의적 민족 개념에 입각한 민족문화를 서독지역에까지 확산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서독의 문화적 역량을 압도하기에는 역부족이었으며, 이러한 정책적 목표의 달성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다. 오히려, 동독은 서독으로부터의 문화적 영향력을 차단하고 서독의 문화로부터 동독의 문화를 분리하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고, 장벽 설치를 통해 서독과의 물리적 단절을 시도한 이후 동독에서의 사회주의 독일민족의 발전으로 문화정책의 목표를 수정하였다.

동독의 문화정책을 보면 적극적인 개입의 단계와 상대적인 자제의 단계가 교차했음을 알 수 있다. 구동독 공산당은 모든 문화활동을 정치적으로 규제하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규제는 극단적인 경우 문화활동의 금지, 해외 이주, 도피 내지는 구금과 같은 침해한 갈등을 야기하였다. 이는 동독 민족을 서독 민족과는 다른 민족으로 간주하고, 따라서 동독에 새로운 민족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이었다.²

2. 동독의 문화정책

1) 개요

동독의 문화정책은 독일 역사의 정통 후계자임을 주장하고 사회주의적 민족문화를 창출하기 위한 정책이었다. 동독은 이를 관철하기 위하여 각 분

² 통일부, 독일통일 6년, 동독재건 6년, pp.593-594, 1996.

야에 걸쳐 사회주의적 민족주의의 정당성을 증명하는 수단으로써 문화정책을 시행하였다.

모든 노동현장과 학습현장에 걸쳐 사회주의적 노동문화를 조직적으로 강화하였으며, 도시, 마을, 휴양지에 사회주의적 문화공동생활의 형태를 개발하여 여흥, 무도, 체육경연과 같은 문화적 공동체험 기반을 조성하였다.

1976년에 개최된 제9차 동독 공산당(SED) 전당대회에서는 동독 문화정책의 전략적 목표를 문화정책의 객관적 원칙인 정치, 경제, 문화의 단일한 사고방식 형성, 문화정책을 통해 동독이라는 발전된 사회주의 국가의 형성, 공산주의에로의 점진적 이행을 위한 원칙적인 전제조건의 조성, 소련과 기타 사회주의 국가와 친선·협력의 계속적 강화, 사회주의와 제국주의 간의 격렬한 계급투쟁의 필요성 강화로 결정하였다.

동독은 동서독 문화는 전혀 공통성이 없으며, 독일 전통 문화 유산 중 동독 측에 의해 승계할 가치가 있는 ‘진정한 문화적·인간적인 독일 전통’만이 동독의 문화라고 주장하였다. 1978년 동독 정부는 나치시대 박해를 받았던 조각가이자 작가인 Ernst Barlach 기념관을 건설하면서 파시즘을 옹호하고, 반공주의와 군비경쟁을 부추기는 국가정책을 찬양하는 것은 Barlach의 유산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즉, 동독은 서독의 문화를 제국주의적 문화로 규정하고, 장벽이 설치된 1961년 이래 ‘독일문화의 통일’이라는 기치하에 동독의 문화를 서독의 소위 제국주의적 문화와 구별하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하였다. 동독은 동독의 예술은 평화, 긴장완화, 사회보장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는 반면, 서독의 예술은 제국주의에 직접 기여하는 자본주의적 문화창조물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다.

동독은 또한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문화관계를 공고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소련과의 정부 및 관련 단체 간 접촉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정부 및 단체 간에 문화 분야에서의 각종 협정이 체결되었다. 1980년대 초부터는 호



네커의 오스트리아, 일본, 멕시코 방문 등 대서방 교류를 계기로 초청연주회 교환이 추진되는 등 동독이 독일문화의 정통 후계자임을 과시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다.

2) 서독과의 문화교류에 대한 입장

독일 전 지역에 사회주의적 민족문화를 구축하고자 했던 동독의 목표는 실현될 수 없는 것이었다. 동독은 이러한 점을 간파하고 1950년대부터 대서독 문화교류 제한정책을 취하였다. 동서독 주민들은 분단 이전에 공통의 문화와 문화 의식을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서독과의 문화교류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이 있었는데, 동독 정부는 서독과의 문화교류가 동독사회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였다.

동독 정부는 주로 문화인들의 입국 허가과 출국 허가 제도를 통해 서독과의 문화교류를 제한하였다. 1961년 동독 정부의 장벽 설치로 인해 동서독 간의 문화교류는 거의 단절되었으며, 1970년대 이후에는 서독 문화와의 차별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대서독 문화교류 제한정책이 유지되었다.

서독 정부도 냉전 상황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문화가 동독으로부터 유입되는 것을 경계하였지만, 대동독 문화교류를 제한하지는 않았다. 동독 작가의 작품을 서독 출판사가 출판하는 것에 대하여 사회적인 논란이 있었지만, 서독 정부가 이를 금지하지는 아니하였다.

3) 동독 내 문화인들의 반발과 동독의 대응

1950년대 말 소련과 동유럽에서의 탈스탈린화 분위기 속에서 동독의 작가, 지식인, 언론인들로부터 민주화 요구의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동독 정부와 문화계와의 갈등이 발생하였다. 장벽 구축으로 동독의 내정은 안정된 반면, 예술가와 공식 문화정책 간에는 견해차가 두드러졌고, 그 결과로 유명 작가에 대한 출판금지 조치가 단행되었다.

1970년대에 들어서도 통제된 문화정책에 대한 동독 내 문화인들의 비판 움직임이 있었는 바, 작가와 예술가들은 사회주의 현실의 장점보다는 단점에 대해서 언급하기 시작하였다.

서독 함부르크 출신으로 고등학교 졸업 후인 1953년에 동독으로 이주한 Wolf Biermann은 동독의 대표적인 민중적 체제저항 문화인으로서 동독 체제에 대한 지속적인 비판으로 인해 동독 당국에 의해 박해를 받은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는 1964년과 1965년 서독지역 방문 공연 내용과 체제 비판적인 시집의 발간 등으로 인해 1965년 12월 동독 공산당 중앙위원회로부터 ‘계급의 배신자’로 비판 받고 블랙리스트에 등재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체제 비판은 계속되었으며, 동독 공산당 정치국은 1976년 서독 공연 여행 중인 그에 대하여 국적 박탈조치를 취하였다. 국적 박탈 조치에 대하여 각 분야에 걸친 작가와 예술가 100여 명이 연대 행동에 돌입, 서독 언론을 통해 항의하였는데 동독 내에서는 Biermann 동정파와 당 정책 추종파 간의 괴리가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공식적인 문화정책을 표방하는 그룹과 자유를 추구하는 문화인들 간의 이와 같은 갈등의 와중에서 동독문화계의 Biermann 동조자들은 체포되거나 체포 후 수개월 후에는 서독으로 추방되었으며, 일부 작가와 배우들은 서독으로 합법적으로 이주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대다수의 Biermann 동조자들은 동독에 계속 머물면서 체제 비판을 계속했으며 당 지도층과 문화협회와 토론을 전개하기도 하였는데, 이에 동독 공산당은 미술 분야에서만 최소한의 비판을 허용하기도 하였다. 문화계 인사들의 반체제 움직임에 대하여 동독 정부는 강은 양면으로 대응하였다.

동독 정부는 서독 언론기관의 언론인이 동독을 방문하여 동독 문화인들에 대한 인터뷰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도록 하였다. 당 기관지 등을 통해 반체제 작가들을 비난하기도 하고 동독 문인협회에서 제명하



도록 하기도 하였다. 또한 1979년 8월 1일 형법 개정을 통하여 ‘동독을 모독할 수 있는 뉴스, 원고, 기타 자료의 전달’을 반국가행위로 규정하여, 이들의 대서독 접촉을 차단하고자 하였다.

다른 한편, 동독 당 지도층은 다소 온건한 반체제 작가 등에 대한 장기간 서독 체류 허가과 동독 작가 작품의 서독에서의 출판에 대한 묵인 등 윤희적인 정책도 취하였다.

동독은 1981년 12월 ‘베를린 평화 촉진 대회’ 등의 행사를 개최하여 동독 문화를 대외에 선전하는 노력도 전개하였다.

1983년 핵미사일의 유럽 배치로 인한 호네커의 평화정책은 문화정책에도 영향을 미쳤으며, 1984년 이후 여행 자유화 및 서독이주에 대한 동독 문화계 인사들의 열망이 커졌다.

제2절 분단 시기 동서독 문화교류

1. 동서독 문화교류에서의 쟁점

동독의 울브리히트 서기장은 1963년 서독에 대하여 전독문화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주장했으며, 1964년에는 동독 문화성 장관이 서독의 각 주 문화성 장관들에게 문화협상을 제안하였다. 동독 정부는 문화교류로서 연극과 오케스트라 상호 방문 연주를 정기화하자고 제안하였으며, 서독도 이를 환영하였다.

그러나, 협상은 성사되지 못하였는 바, 이는 동독은 동독과 서독이 별개의 국가라는 입장에서 협상을 진행하고자 한 반면, 서독은 동독의 실제 인정을 전제로 하는 어떠한 협상이나 협정 체결도 있을 수 없다는 기본 입장을 취하였기 때문이다. 즉, 동독은 동독의 국가성을 인정받기 위한 도구로서 문화교류 협상을 제안하였으며, 서독은 문화와 학술 분야의 교류를 정치화하려는 동독의 자세에 대해 비판하면서 단일 민족으로서의 동질성 회복을

위한 무조건적인 문화교류를 주장하였다. 동독은 서독의 협상 거부에 대하여 방문 연주나 연극 공연 등을 위한 문화예술인들의 입·출국을 제한하는 등 난관을 조성하기도 하였다.

1972년 동서독이 ‘기본조약(Grundvertrag)’을 체결하여 쌍방이 별개의 정치적 실체로서 평화적으로 공존하면서 정상적인 우호관계를 증진하기로 합의하였는 바, 동 조약에서는 문화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협력 추진을 위한 후속 협정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즉, 동 조약 제7조는 “양국은 이 조약의 원칙에 입각하여 상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제, 학술, 기술, 무역, 사법, 우편, 전화, 보건, 문화, 스포츠, 환경보호 등의 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을 촉진, 발전시키는 협정을 체결하기로 한다. 이에 대한 세부 사항은 추가 의정서에서 정한다”고 규정하였다.

동서독 기본조약 제7조에 따른 문화 분야 협력관계 증진을 위한 동서독 간의 협상이 진행되었으나, 경제 분야에서의 협상과는 달리 문화 분야 협상은 지지부진하였다. 협상 초기 쟁점이 되었던 사안은 소위 ‘프로이센 문화재’ 반환을 둘러싼 입장 차이였는 바, 프로이센 문화재는 1947년 소멸된 프리시아의 문화재로서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주로 베를린에 소재하였던 문화유산들을 말한다.

전쟁 기간 동안 공습으로부터의 피해를 막기 위해 많은 문화재가 상대적으로 안전한 사원이나 성, 폐광 등으로 옮겨졌으며, 전쟁 후 연합국 측은 전쟁기간 중에 압류한 프로이센 문화재를 서독 측에 반환했고, 서독 측은 프로이센 문화재단(Stiftung Preußischer Kulturbesitz)을 설립하여 이 문화재들을 관리하도록 하였다.

동독은 동독의 영토에 속하는 지역으로부터 연합국이 반출해간 이 문화재들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며, 이러한 요구에 대하여 서독은 법률적으로 문화재 반환문제는 연합국 측의 관할 사항으로서, 동·서독 간의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2. 동서독 문화협정의 체결

1) 개요

동서독 간 기본조약의 후속 협상으로서 문화협정 체결에 대한 협상이 1973년 11월 27일 개시되었는데, 전술한 입장 차로 인하여 협상은 진전되지 못하고 중단되었다.

1982년 동베를린에서 개최되었던 서독의 도시환경 정화에 관한 전시회에 참석한 호네커 서기장은 서독 수상실 장관 한스-유르겐 비스네브스키에게 문화협상을 재개하자고 제의하는 한편, 프로이센 문화재 반환에 관한 문제는 협상에서 제외할 것을 제의하였다. 이는 1981년 호네커-슈미트 정상회담 이후 동·서독 간의 우호적인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새로이 출범한 서독의 콜(Kohl) 정부는 이러한 동독 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1983년 9월 문화협상을 재개하였다.

문화 분야는 서독 기본법상 연방정부 소관이 아니고 주정부 소관이기 때문에 서독에서는 대동독 문화협정 협상에 연방정부 대표 이외에 주의 대표가 참여하였다.

문화협정 체결을 위한 동서독 간의 협상은 다른 분야에서의 교류협력에 관한 협상과는 달리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었는 바, 이는 전술한 바와 같은 문화협력에 대한 동서독 간의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견해 차이에 기인하였다. 동독은 서독을 외국으로 간주하는 정책에 입각하여 문화협정 문제를 다루고자 하였으나, 서독 측은 동·서독은 하나의 문화 민족이라는 개념에 입각하여 협상을 진행하고자 하였다.

서독의 이러한 기조는 집권당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일관되게 유지되었는데, 사민당(SPD) 집권 시 브란트 수상은 1973년 1월 18일 정부성명에서 “분단에도 불구하고 언어, 예술, 문화, 일상생활과 정신문화유산의 공통성에 기초한 민족은 영원하다”라고 언급하였으며, 기민당(CDU)이 집권한 이후에

1982년 10월 13일 콜 수상은 정부성명에서 “독일인의 민족국가는 분열되었지만, 독일민족은 계속 유지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존속될 것이다”라고 언급하여 이러한 기초를 재확인하였다.

유럽안보협력회의(CSCE) 헬싱키 최종의정서에는 서명국들 간에 문화교류를 이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서독과의 문화교류에 소극적이었던 동독은 동 규정의 불이행으로 인해 비난을 받게 되자 서독과 문화협정이 체결되지 않아 서독과의 문화교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강변하기도 하였다.

동서독 간의 문화협정 협상에는 3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1986년 5월 6일 문화협정이 체결되었다. 이는 체제 유지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대신 경제적인 이득을 가져올 수 있는 경제교류, 우편교류, 통행, 스포츠·보건 분야 교류에 대해서는 적극적이었던 동독의 태도와 대비되는 것이다.

2) 문화협정 체결 협상에 있어서의 동서독의 입장

서독 측은 문화협정을 독일정책 추진의 주요한 수단으로 보았으며, 문화협정이 양독 주민들 간의 문화의 공통성을 유지·보존시키고, 문화적인 측면에서 주민들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특히, 문화협정을 통한 문화 분야 공동협력을 계기로 상대편 체제의 사회 문화생활에 대한 상호이해를 증진시켜, 서로 다른 군사동맹체에 소속되어 있고, 상이한 정치·경제적인 구조하에서 살고 있는 동서독 주민들 간의 평화적인 관계를 유지시키는 데 기여해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취하였다.

동독 측은 서독 측이 주장하는 단일 민족성과 단일 문화성을 부인하며, 사회주의 문화의 독창성을 주장하였다. 동독 측이 문화협정을 체결했던 주요 동기는 세계적 문화수준을 가진 서독과의 협정체결을 통해 국제적으로 동독의 문화수준을 대외적으로 과시하고, 문화 수준 면에서 동독이 서독과 대등한 수준임을 알리는 데 있었다.

또한, 반체제 문화인들에 대한 유화적인 조치의 하나로 서독 등 외부세



계와의 접촉점을 마련해 줌으로써 이들의 고립감과 소외감을 완화시키고 이들의 불만이 체제유지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하는 효과도 내심 기대하였다. 중앙집권적인 통제사회하의 동독 문화 수준과 자유 민주주의 체제하의 서독 문화 수준은 격차가 더 벌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동독 정부는 이에 따른 동독 문화인들의 불만을 서독인들과의 제한적인 접촉허용으로 해소하고자 하였다.

한편, 동독은 서독과의 문화협정 체결을 통해 자유주의적 서독문화가 동독에 유입되어 사회주의 체제를 약화시키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협상에 임하였다.

동독 측은 문화행사의 개최 대상을 국가가 주관하는 공식적인 행사에 한정하려 했던 반면, 서독 측은 문화활동의 주체는 국가와 개인 모두가 될 수 있으므로 누구나 행사 개최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자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문화행사 개최 횟수도 서독 측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입장이었으나, 동독 측은 일정한 횟수로 제한하고자 하였다. 동독 측은 문화행사의 무제한적 개최는 체제 유지에 부담이 된다는 측면과 함께 문화행사 개최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도 함께 고려하였던 것이다.

3) 동서독 문화협정

(1) 동서독 문화협정의 주요 내용

동서독 문화협정은 문화협정, 공동의정각서, 공동의정서 선언 등 3가지 문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화협정은 전문 및 15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화협정은 1972년 기본조약에 기반하여 동서독의 문화적·공동사회적 삶의 상호인식을 심화하고 상호 이해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서, 평화 확보와 긴장완화에 기여하기 위한 유럽안보협력회의(CSCE) 협정을 이행하기 위한 의지와 동서독 간의 문화 분야에서의 협력을 개선·발전시키기 위

하여 체결되었다(전문).

협력의 대상은 문화·예술·교육·학문 및 유관 분야이며, 협력의 주체는 정부기관과 각종 기구 및 단체, 문화계 인사로 하며, 동서독 정부는 협정의 이행을 보장하도록 하였다(제1조).

협력의 내용으로는 상호경험의 교환, 학술정보 교환 및 학술회의 참가를 위한 대표단·학자·전문가 파견, 학자들의 강의·연구와 발표내용의 교환, 학생 및 소장학자들의 교류, 교육방법 및 수단에 관한 전문서적, 교재 및 실습 재료 교환 등이다(제2조).

예술·영화·음악·문학·어학실습·박물관 소장품과 기념물 보호 분야 및 관련 분야에서의 협력의 확대를 위해 각종 문화예술 대표단, 예술가 및 문화사업단의 교류, 문화·예술 분야에 있어서 중요한 쌍무적·다무적 행사 시 전문 분야 인사의 참여, 문화·예술협회 간 출판물·정보자료의 교환 등을 실시하기로 하였다(제3조).

문화예술 분야의 가능한 범위에서 상업적 공연·전시 등에 관하여 협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4조), 출판 분야의 협력을 위해 서적의 상업적 교환, 정보 및 학술 가치가 있는 간행물의 출판 장려, 출판권의 상호위임 확대를 규정하였다(제5조).

도서관 협력을 위해 국제적 자료교환 확대, 독일어권 지역에 대한 목록의 공동작성, 대금거래의 확대, 문헌정보학 영역의 교환, 비상업적 도서관 출판자료의 교환, 정보교환 및 주요 국제회의의 참가 등을 규정하였다(제6조).

문화 분야 문서의 협력으로 국내 법규에 근거한 공개 문서자료의 인출, 문서보관당국에 의한 문서복사물의 교환에 대해 규정하는 한편(제7조), 주요회의, 협의, 축제, 문화기념행사, 학술회의 등에 관한 정보교환 및 문화단체, 학자, 전문가의 참여를 장려하였다(제8조).

라디오·텔레비전 분야의 협력, 해당기관의 협정 체결 문제를 규정하고(제9조), 스포츠 분야에 대한 협력의 촉진(제10조), 청소년·학생교류의 확대를 규



정하였다(제11조).

이와 함께, 협정이행을 위한 재정계획 및 2년 간의 계획에 대한 합의를 규정하였는 바, 동서독은 각 50개씩 100개의 문화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2년 동안 추진하며, 서독은 교류사업의 선정 시에 동독의 재정부담, 동독 주민의 문화적 관심을 우선 고려하는 한편, 서독은 사업경비를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각각 50%씩 부담하는 것으로 하였다(제12조).

(2) 문화협정에 대한 평가

문화협정은 양국 문화관계의 기본 틀을 정하는 협정이었지만, 협력 분야들이 매우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정부기관, 국영기관, 조직, 협회 등의 공공기관과 함께 문화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교류에 참여해야 한다는 점이 명문화되었다.

2년 간 유효한 ‘국가적인 실무계획’과 함께 양측은 특히 음악과 출판 분야에서의 상업적인 문화교류도 촉진하도록 했는데, 이러한 상업적인 교류는 냉전 시대에 있어서는 전혀 고려의 대상이 되지 못했던 것들이었다. 문화협정의 체결로 양독 간의 협력관계가 개선되고 발전되었으며, 그 영향은 학술 및 교육 교류로 이어지게 되었다.

서베를린지역도 4대국 협정에 따라 문화협정의 적용을 받았으며, 문화협정 당사자들이 전쟁으로 인해 잘못 배치된 문화재를 가능한 한 제 위치로 이관시킬 준비가 되어 있음에 합의함에 따라 과거 프로이센 문화재에 포함되지 않은 문화재, 즉 국가나 교회 소유의 자료나 공공 및 개인 소유의 수집품이나 개별 미술작품 등의 반환 및 이전에 대한 협상이 개시될 수 있었다. 문화협정이 발효된 이후 상당량의 문화재와 문화자료들이 동서독 간에 반환되었다.

서독 측은 동독과의 문화협정이 체결되더라도 동독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예술가와 작가들만의 교류를 허용할 것이라는 우려를 갖고 있었다. 문

화협정 체결 이후 이러한 서독 측의 우려대로 동독에서는 국가에 의하여 독점적으로 문화교류가 결정되기는 하였으나, 문화교류 참가 범위는 당초 우려했던 것보다는 훨씬 넓게 인정되었다.

문화협정 체결 전보다 훨씬 많은 예술가와 작가들이 일시에 서독을 방문하였으며, 일부는 서독에서 작품활동을 하기도 하였다. 아울러 동독은 점차 서독의 문화기관에 대하여 개방조치를 취하였는데 서독의 여러 극단의 공연과 서독 서적의 전시회가 동독지역에서 개최되는 것을 허용하기도 하였다. 이 같은 현상은 동독의 정치·문화정책 기조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으며, 1989년 동독의 민주화 운동과 통일과정에서의 독일민족의 동질성 회복 달성에 기여하였다.

3. 동서독 간 문화 교류 사례

1) 동서독 기본조약 체결 이후 문화협정 체결 시까지

(1) 방문 공연과 전시

1961년 8월 13일 베를린 장벽의 설치 등 긴장 관계 고조로 인해 중단되었던 동서독 간의 문화교류는 1972년 동서독 기본조약의 체결 이후에 사안별로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문화협정 체결 등 동서독 당국 간 교류협력의 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교류협력이었기 때문에, 문화교류는 제한적인 범위 안에서 사안별 당사자 간 접촉을 통해 이루어졌다. 주로 동독의 문화예술인들이 서독에서 연주회나 전시회를 개최하는 방식의 교류가 이루어졌다.

1975년에는 처음으로 동독 조형미술협회 회장이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를 담은 그림과 판화 120점을 함부르크에서 전시하였으며, 1977년에는 처음으로 동·서독 출판사 간의 협력사업이 이루어져 독일예술 및 문화예술 유적 안내에 관한 책자가 동독에서 저술·인쇄·판매되고 서독에서는 동시에 출판사



를 통해 판매되었다.

1977년에 처음으로 7명의 동독 미술가가 서독을 방문하였으며, 동베를린에서 서독 측의 공식적인 전시회가 처음으로 개최되었다. 이 ‘과학과 기술에 관한 사진전’에는 약 15만 명의 동독 주민이 몰렸으며, 동독 측은 1979년 9월 서독 쾰른에서 이에 대한 답방 형식으로 ‘동독 사진전’을 개최하였다.

1978년 6월 베를린 필하모니의 동독지역 연주여행이 실현되었으며, 1980년 10월 동서독 간에 ‘영화주간’ 행사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행사는 양측 3개 도시에서 7편의 영화를 상영하기로 한 행사로, 동독 측이 서독영화 중 귄터 그라스 원작의 ‘양철북’에 대하여 상영할 수 없다고 결정하여 난관을 조성하였으나, 서독 측이 이를 수용하여 행사가 개최될 수 있었다.

동독은 1980년 9월 동독 여행자에 대한 최소의무환전액(Mindesten Zwangsaustausch)³을 인상하는 조치를 취하였는데 서독은 이에 대한 항의로 ‘영화주간’ 행사에 정부 대표를 참여시키지 않았다.

동서독 간의 문화교류 사업 중에서 가장 활발했던 분야는 연극과 오페스트라 방문 공연 분야였다. 과거 독일의 연극과 음악은 세계적인 수준이었으며, 독일 주민들의 수준 또한 매우 높았는데 분단에도 불구하고 동독과 서독에는 국제적으로 유명한 악단과 극단이 각각 존속하고 있어, 이들의 상호방문 공연은 상대편 지역 주민들에게 호응이 컸다.

베를린 장벽의 설치와 함께 줄어들기 시작한 상호방문 공연은 기본조약이 체결된 이후 점차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하였는데, 동독 측이 주관하는 공연은 국제적이면서도, 정치적인 성격을 갖는 공연이 대부분이었다. 동독은 서독과의 문화행사 개최를 정치적인 선전도구로 이용하려고 하였으며, 동독의 유명한 예술가들이 서독 공산당(DKP)이나 그 외곽단체들이 주관하는 행사에 대거 참여하였다.

³ 동독을 여행하는 서독 주민에게 동독 정부가 의무적으로 일정 금액 이상을 동독 마르크로 환전하도록 한 금액을 말한다.

동서독 간의 연극 및 오케스트라 공연은 주로 동독 측으로부터의 방문 공연이 많았는데 이는 동독 측이 공연을 서독 주민에 대한 선전선동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했던 동독 당국의 의도와 무관하지 않다. 즉, 동독은 상호주의 원칙을 무시하고 서독 측 예술인의 동독 입국은 제한적으로 허용했던 반면, 동독 예술가의 서독으로의 출국은 상대적으로 많이 허용하였다. 특히 서독의 유명한 극단, 오케스트라, 발레단의 공연은 매우 제한을 당했는데, 국제적인 행사의 일환으로서만 허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베를린 필하모니는 불과 두 차례에 걸쳐서만 동독을 방문할 수 있었다.

일부 대중가요 연주공연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연극, 오페라, 음악공연은 국가의 재정적 지원 없이 추진되기 어려웠으므로 서독 정부는 동독방문 공연에 대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대부분의 상호방문 공연은 상업적인 문화공연 중개인을 통해 이루어졌는데 서독 측은 문화단체, 기관 간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상호방문 연주나 공연이 추진되기를 희망하였으나, 동독 측은 국가가 독점권을 갖고 있는 문화·예술 중개인을 내세워 공연진행과 비용문제를 처리하였다.

(2) 문학과 서적의 교류

동독은 종전의 독일문학과 구분되는 독특한 사회주의 문학을 표방하였으며, 1973년 11월 작가들의 모임인 ‘독일작가동맹’을 ‘동독작가동맹’으로 개칭하였다. 동서독 문인 단체들 간의 공식적인 교류관계는 없었으며, 국제행사 차원에서 PEN 클럽과 국가별 작가협회들 간의 접촉이 있었을 뿐이었다.

동독은 서독 등 서구 문학작품의 반입을 통제하였는데 1963년 7월 4일자 동독 문화성 규정에 따라 동독의 개인이나 각 기관은 문화성의 특별 허가 없이 서구의 문학작품을 반입할 수 없었다. 허가받지 않은 서독 서적들을 동독의 서점에서 구입할 수도 없었다.

이에 반해, 서독에서는 동독의 서적들을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었다. 동



독 현존 작가의 작품들이 서독 내에서 판권허가를 통해 널리 출판되었는데, 일부 작가의 작품은 동독에서 출판되지 않고, 서독에서만 출판되는 경우도 있었다. 서독에서는 동독 내의 반체제 작가로서 동독작가동맹에서 축출되거나 서방으로 이주한 작가들의 작품이 많이 읽혀졌다.

동독은 작가들의 저작권 관리 업무를 정부에서 관장하였는데, 특히 동독 이외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동독 작가 작품에 대한 판권계약은 동독 저작권관리청의 허가를 받게 하였다. 또한 동 관리청은 저작료 등 판권계약에 따른 모든 문제를 처리토록 했는데, 일부 동독의 유명한 작가는 동독 당국의 허가 없이 서독에서 출간했다가 벌금을 부과받은 사례도 발생하였다.

전통적으로 세계적 수준의 서적 출판 규모를 갖고 있는 독일은 분단에도 불구하고 내독무역의 일환으로 동서독 간에 출판물 거래를 행하였다. 서독 지역에서는 1980년대 매년 평균 60,000권의 신간서적이, 동독에서는 6,000권의 신간서적이 발간되었으며, 매년 100권 정도는 상호 판권제공을 통해 양독 간에 교환되었다.

분단 이전에 존재하였던 출판사가 분단에 따라 동서독지역으로 분리 소재하면서 출판사들 사이에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였는데, 분단 이전 출판도시였던 Leipzig에 집중되어 있던 출판사들이 전후 또는 동독의 국유화 조치 이후 서독으로 건너와 새로이 같은 상호로 또는 비슷한 상호로 출판사를 개설함에 따라 이들 간에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서독지역에서 개최되는 Frankfurt 도서박람회에 서독의 출판사와 동일한 상호의 동독 출판사의 참여를 배제한 경우도 있었으나, 동서독 간의 서적교류가 증가함에 따라 서로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해결되었다. 독어사전 편찬연구소 및 출판사였던 Duden은 Leipzig와 Mannheim에 각각 연구소 및 출판사를 두고 있었는데, 상호 기관의 존재를 인정하였다.

출판물 교역은 내독교역의 일환으로 계속 유지되어 왔는데, 1980년대 연평균 교역량은 1,800만 VE(전체 내독교역량의 0.1%)이었다. 서독에서 소포로

선물을 발송할 때 문학서적이거나 기타 인쇄물은 다른 선물과 함께 송부할 수 없고, 반드시 따로 보내야 하며, 또한 그 내용이 '평화지향적이 아니고, 군국 주의적인 보복심리에 가득차 있고, 파시즘적이고 또는 선정적이고, 동독과 동독 주민의 이익에 반할 경우'는 발송이 금지되었다.

(3) 신문과 정기간행물의 교류

분단 이후 동·서독 간의 신문과 정기간행물 상호구독은 제한적으로 국가기관, 언론사, 정당에게만 허용되었다. 동독은 모든 언론사에 대한 국유화 조치를 단행하여 언론을 장악하였으며, 서독 신문의 유통을 통제하였는데, 서독의 신문과 정기간행물의 자유로운 가두판매와 개인적인 구독을 허용하지 않았고, 상점에서는 단지 서독 공산당의 기관지만이 판매되었다. 다만, 동독 내 외국인 전용 호텔에서의 서독 신문 유통을 허용하였는데, 서독의 상대적으로 좌파 성향의 전국지인 'Sueddeutsche Zeitung'과 'Frankfurter Rundschau' 등이 서독에서보다 약 두 배 비싼 가격에 판매되었다.

서독 또한 동독으로부터의 신문, 정기간행물 유입을 통제하였는데, 헌법 수호 차원에서 국가보안법을 통해 동독으로부터 신문, 정기간행물 유입에 대해 사전허가를 의무화하였다.

1964년 동독의 Ulbricht 서기장이 동서독 간 국가 차원에서의 협상을 통해 상호 신문교류 문제를 협의하자고 제의하고, 자신들의 교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하여 서독의 'Die Zeit'지와 'Sueddeutsche Zeitung'지 기사를 당 기관지에 게재했으나, 서독 측은 동독을 대등한 국가로서의 협상 상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원칙에 따라 회담 제의를 거부하였다.

동독 신문과 정기간행물 반입에 대한 서독 정부의 입장은 분단 초기에는 강경하였으나,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점차 완화되었다. 즉, 서독은 1964년의 회에서 동독 공산당 기관지의 자유로운 반입 판매에 관한 법률적 검토를 진행하였으나, 국가의 헌법질서 수호와 동독 공산당으로부터의 선전공세 차단



을 위해 허용하지 않았으며, 법률로 이의 반입과 판매를 제한하였다.

서독은 1968년 6월 25일 제8차 형법 개정을 통해 일정 기간 동안 동독의 신문과 정기간행물의 반입과 판매 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면제하였으며, 1971년에는 이러한 기간에 따른 조건을 없애고 무제한으로 동독의 신문과 정기간행물의 반입과 판매를 허용하였다. 서독은 이러한 법적인 허용조치를 통해 동독으로부터도 상응한 허용조치를 기대했으나, 동독 측은 자신들의 신문과 정기간행물을 더 많이 서독에 반출하는 문제나 서독으로부터 서독 신문과 정기간행물을 반입하는 문제에 대해 그리 특별한 관심을 갖지 않았다.

서독에 반입된 동독의 신문과 정기간행물은 가두판매가 가능하지 않고, 단지 전문서적상을 통한 판매만이 가능했는데, 이는 동독 신문이나 정기간행물 구독에 대한 서독 측의 수요가 동독이 제공하는 물량을 초과하였기 때문이었다.

동독 측은 서독 측의 초과 수요에도 불구하고 반출량을 증가시키지 않았으며, 동독 체신청은 1971년 7월 그동안 허용되던 우편을 통한 정기간행물 배달제도를 폐지하여 우편을 통한 동독 신문과 정기간행물의 서독 구독은 중단되었다.

(4) 역사적인 기록문서, 도서관, 박물관 분야

동독 측은 1960년대 중반부터 중세 한자도시에 대한 역사기록 등 동독지역 내에 존재하는 역사적인 기록문서를 국가가 관리하면서, 그 원소유주들의 접근을 차단하는 한편, 이러한 역사적인 문서의 교환이나, 국제적으로 관례화 되어 있던 문서의 대여 등에 대한 서독 측의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다.

동서독 간의 역사적 기록문서에 대한 접근권은 비대칭적이었는데, 동독 학자들은 서독의 역사기록 문서들을 서독인과 동등한 자격으로 열람할 수 있었던 반면, 서독의 학자들은 동독의 문서를 열람하고자 할 경우 특별한

이용허가를 동독 정부로부터 받아야 했다. 동독 정부는 역사기록 문서 교환과 열람 신청에 대한 허가 기준을 명확하게 마련하지 않고 매우 자의적으로 허가 여부를 결정하였다. 동독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비대칭적인 구조로 인해 손해 볼 것이 없었기 때문에 역사기록 문서 교환과 열람 문제에 대한 서독과의 협상 필요성을 갖고 있지 않았으며, 이러한 상황은 문화협정 체결 시까지 계속되었다.

도서관 분야에서의 교류는 주로 소장 책자에 대한 상호 대여 분야에 있어서 교류가 이루어졌는데, 기본조약 체결 이후 이 분야에의 교류는 별문제 없이 진행되었다. 동독 측이 서독 측으로부터 대출을 희망한 도서는 자연과학과 기술 분야에서의 최신판 서독 서적 및 외국 서적이 주종을 이루었으며, 서독 측은 동독으로부터 주로 동독지역에 관한 역사와 지리에 대한 도서 대여를 요청하였다.

양측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도서목록은 동독은 Leipzig에 소재한 Deutsche Buecherei에서, 서독 측은 Frankfurt에 소재한 Deutsche Bibliothek에서 각각 작성하여 교환되었는데, 서독 정부는 서독 측 출판사들이 그들의 신간서적 목록을 동독의 Leipzig에 송부하는 것을 장려하였으며, 서독 출판사들은 자발적으로 목록을 송부하기도 하였다.

박물관 분야에 있어서는 기본조약 체결 이후 문화재 상호 대여 전시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5) 문화·예술단체의 교류

베를린 장벽이 설치되자 동서독 단일문화 개념에서 추진되었던 문화계의 동서독 공동 참여 형태의 단체와 협회의 구성과 운영이 어려워졌으며, 동독과 서독에는 각자 독자적인 단체들이 생겨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괴테협회(Goethe-Gesellschaft, 구동독 Weimar 소재)’는 전독일 협회의 형태를 잃지 않고 통일 시까지 존속하였는데, 동 협회



는 2년마다 한 번씩 Weimar에서 동서독은 물론 세계 각국의 괴테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동독 정부도 ‘괴테협회’ 활동의 국제화에 협조하였다.

‘바흐협회’는 동독의 Leipzig와 서독의 Kassel에 별개로 존재하였지만, 국제적인 협회로서의 성격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동서독 간에 공동협력을 전개하였다.

2) 문화협정 체결 시부터 통일 시까지의 교류

(1) 개요

동서독은 1986년 5월 6일 문화협정 체결 시 ‘문화’의 개념을 좁게 해석하지 않고, 연극·문화·음악·미술 분야를 포함한 교육, 학문, 출판, 도서관, 역사적인 문서, 대중 매체, 스포츠, 청소년 분야까지 확대하여 교류·협력의 대상으로 취급하였다. 따라서 협정에 따른 양독 간 구체적인 사업계획서의 작성 시, 교류·협력 내용 확정에 있어서도 예술, 학술, 교육 분야의 비율을 각각 2:2:1로 하였다.

문화협정 제2조에 따르면 양측은 학술대회나 심포지엄 참석을 통한 전문가들의 경험교환, 연구 및 학문 목적의 체류, 학생교류, 전문서적 및 학술정보자료 교류 분야에서의 학술교류를 추진키로 합의한 바 있다.

1987년 동·서독은 과학·기술 협력 협정을 체결한 바 있는데, 그 협정에 따른 교류협력 내용은 문화협정에 따른 학술 분야 교류협력 내용과 일부 중복이 되면서도 그 협력 분야는 달랐다. 과학·기술 협력 협정에 따른 학술교류는 자연과학 및 기술 분야에 중점을 두었고, 문화협정은 인문·사회과학에 중점을 두었다.

과학·기술 협력 협정의 협력 대상 기관은 대형 연구기관이나 문화협정에 의한 기관은 대학교가 중심이 되었는데, 문화협정의 교류·협력사업은 학술적인 성과보다는 동·서독 주민들 간의 접촉을 증대시킬 수 있느냐에 중점이 두

어졌는데, 과학·기술 협력 협정에 의한 교류·협력 사업은 연구기술성(BMFT)이, 문화협정에 의한 교류·협력 사업은 내독관계성(BMB)이 각각 주관하였다.

(2) 문화협정에 따른 분야별 교류협력의 추진

문화협정 제12조에 따라 1986-1987년도 22개의 학술 분야 프로젝트가 합의되었는데, 상호 부담이 적은 전시회 및 방문 공연 등에 중점이 두어졌다. 1988-1989년도 두 번째 사업계획에서는 동·서독 양측이 학자와 학술 당국의 지대한 관심에 힘입어 광범위하게 학술 분야 교류 프로그램이 포함되게 되었다.

역사학 연구는 독일 중세사에서부터 현대사까지 연구, 평화문제 연구, 사회·경제사 연구, 문화·학술사 연구가 포함되었으며, 어문학 연구는 19세기 독일어 연구로부터 사전 편찬, 외국인을 위한 독일어 연구 등이 이루어졌다.

동독 측의 요구로 문화협정 사업계획서에도 자연과학 분야의 연구협력 사업이 포함되게 되어 고체역학 분야에서의 연구협력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문화협정을 통해 가장 획기적인 진전을 이루었던 분야는 동·서독 대학 간의 자매결연 사업이었는데, 1986-1987년도 첫 사업계획서에 자아르브뤼켄 대학과 라이프치히 소재 칼-막스대학 간에 첫 자매결연이 이루어지고, 강의 및 의학, 의학기술, 화학, 물리학, 문헌학 분야에서의 연구협력이 이루어졌다.

동독은 대학 간 자매결연을 통해 자연과학 분야에서의 선진 학문과 첨단 과학기술을 흡수하기를 희망했기 때문에 이 분야의 협력사업이 많이 이루어졌다.

1988년 4월에는 뮌헨대학과 칼-막스대학 간의 자매결연이 성사되어, 물리학, 화학, 수의학, 의학, 심리학, 생화학, 어문학, 독문학, 역사학, 신학 분야에서의 연구협력이 이루어졌다.

Achen공대와 Dresden공대 간에 자매결연이 맺어져 물리학, 화학, 교통공학, 수리공학, 전자공학 분야에서 협력이 이루어졌으며, Stuttgart대학과 칼-



막스대학 공대 간에도 자매결연이 맺어져 기계공학, 금속공학, 수학, 물리학, 전자공학 분야에서 협력이 이루어졌다.

학술 분야 교류 초기에 국제적인 학술교류에 익숙해져 있던 서독 학자들은 동독의 수준을 낮게 평가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문화협정에 의한 교류를 통해 서독에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분야 중에서 동독에서 연구되고 있는 영역을 발견하게 되었다. 특히 서독 측 학자들은 동독 측이 연구한 독문학과 역사학 분야에서의 성과물에 큰 관심을 가졌으며, 동독 학자들과의 직접적인 의견교환을 통해 상호 새로운 연구 성과를 발견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자연과학 분야 교류와 관련해서는 전략 기술 이전과 관련되지 않는 한 동독과의 교류는 서독 정부의 독일정책 추진의 테두리 내에서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갔다.

서독 학자들은 양독 정부의 사업계획서에 의한 교류·협력 사업이 재정보조라는 장점은 있으나 그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개별연구자 간의 직접 접촉에는 경제적인 비용이 발생하고 동독 정부도 이를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별 연구자 간의 교류는 거의 없었다.

사업계획에 따른 행사 개최 시 각 지역에서 발생한 비용은 해당 지역에서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는데, 예를 들어 동독 무용단이 서독에서 공연을 하는 경우, 서독지역에서 호텔체재비, 일비, 식비, 사례비 등을 지불하였으며, 도착지까지 항공료 등 교통비는 동독 측이 부담하였다.

방문 공연 시 발생하는 공연 수입은 서독에서 개최하였을 때는 서독 측이, 동독에서 개최하였을 때는 동독 측이 각각 취득하였으며, 동독 예술인들이 서독을 방문했을 때 받는 일비는 서독 방문에의 큰 유인으로 작용하였다.

(3) 문화협정에 따른 동·서독 간 1990-1991년도 공동 협력 사업계획서

동서독 통일 시에 유효하였던 문화협정에 따른 제3차 공동 협력 사업계획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 1 조

문화 및 예술

(1) 양측은 매년 자료수집 및 연구체류와 초빙과정 및 경험교환을 포함한 예술 및 학술행사 참석을 위해 장기 1,200일, 단기 360일 간의 체류기간으로 소장 신진학자와 대학생을 포함한 문화 및 예술 분야 종사자를 교환한다.

(2) 대표적인 전시회의 교환과 관련하여 전문가를 전시회 부대행사(심포지엄, 세미나, 강연회 등)에 10일 간 교환할 수 있다. 이와 무관하게 대표적인 전시회와 중요 문화계획의 개막식에는 공식사절 4명을 교환할 수 있다.

(3) 양측은 동독 국립영화보관소와 서독 연방문서보관소/영화보관소 간의 영화복원 및 재생의 협력을 지원하며 영화주간 행사의 가능성을 검토한다. 양측은 동독 국립영화보관소와 서독 연방문서보관소/영화보관소 간의 약정체결의 가능성을 검토한다.

(4) 양측은 유적 보전 분야의 협력을 위한 약정체결의 가능성을 검토한다.

(5) 양측은 1990년도와 1991년도 쉘레스비히 홀슈타인 축제에 참여하는 동독의 상업적 연주단을 지원한다. 양측은 동독 출신 예술가의 축제 오케스트라 협연을 지원하며 그 관할 범위 내에서 이 오케스트라의 동독 내 등단 가능성을 검토한다.

(6) 양측은 베를린 음악대학과 쾰른 음악대학 간의 협력을 지원한다.

(7) 양측은 드레스덴 미술대학과 뒤셀도르프 복원본부 간의 사업계획에 포함된 예술품 복원문제에 관한 협력을 지원한다.



(8) 양측은 바이마르 소재 국립 독일고전문학연구소와 그 기념관 측과 쉴러박물관, 마아박 소재 독일문학서고, 볼펜뷔텔 소재 헤어츨 아우구스트 도서관, 프랑크푸르트 암마인과 뒤셀도르프 소재 괴테박물관 측의 사업계획에 포함된 연구와 협력을 지원한다. 이와 관련하여 양측은 특히 문헌학, 독일고전 작가문헌학, 문서보관 자료의 정리, 하리그랍 케슬러 연구, 인셀 문서보관소, 괴테에게 쓰여진 서한문 일체의 연대별 출간의 정리, 헤어더 서한문, 괴테의 일기문과 서한문 연구를 지원한다.

(9) 양측은 이력 및 문헌학 대백과사전 ‘독일문학’의 정리를 지원한다.

- 그라픽전(베를린)
- 발틱히 비엔날레(로스토크)
- 유럽음악제(90, 라스타트, 91, 북헨)
- 국제민속음악제(비트부억)

제 2 조

학술 및 연구

(1) 양측은 매년 신진 소장학자와 대학생을 포함한 학술 및 연구 분야 종사자를 장기연수는 총 2,200일 간, 단기연수는 총 1,300일 간의 체류기간 동안 교환한다.

(2) 양측은 다음 대학 간의 자매결연 가능성을 검토한다.

- 괴팅겐대학과 예나대학
- 칼스루에공대와 라이프치히공대

제 3 조

교육

(1) 양측은 매년 1986년 5월 6일에 체결된 동서독 문화협정 제2조와 제11조에 근거하여 가능성의 범위 내에서 장기연수는 290일, 단기연수는 70일 간

신진 소장학자와 대학생을 포함한 교육 분야 종사자를 교환한다.

(2) 양측은 동독 교육학아카데미와 독일 국제교육학연구소 간의 사업계획에 포함된 영재교육 개발 및 일반교육에 관한 문제에 대해 협력한다.

(3) 양측은 선정된 초중고교 간의 자매결연 가능성을 검토한다.

(4) 양측은 청소년연구 분야의 협력 가능성을 검토한다.

(5) 양측은 제11조의 범위 내에서 실습생 교환의 가능성을 검토한다.

(6) 제3조 (2)와 제3조 (5)에 열거된 사업의 실현은 제3조 (1)과 제4조 (4)의 할당 범위 내에서 수행된다.

제 4 조

기타 분야의 협력

(1) 양측은 문서보관 분야의 협력을 지원하며 매년 단기 30일, 장기 300일 간 체류의 범위 내에서 분할하여 인원을 교환한다.

(2) 양측은 그 가능성에 부응하여 학자와 전문가의 국제전문회의, 세미나와 학술, 연구, 교육, 문서보관 분야의 전문박람회 참석을 지원한다. 그 실현은 각각 제1조 (1), 제2조 (1), 제4조 (4)의 할당 범위 내에서 수행된다.

(3) 양측은 전문서적 교환을 지원한다. 그 방법은 별도로 합의한다.

(4) 서독 측은 동독 측에게 제1조 (1), 제2조 (2), 제3조 (1), 제4조 (1)에 합의된 교환할당에 추가하여 연간 200회의 단기체류(각각 30일까지)와 100회의 장기체류(각각 180일까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 5 조

개별사업계획

1990-1991년도 개별사업계획의 실현은 사업계획 목록에 따라 각각 지명된 상담 대상자를 통해 수행된다.

제 6 조

일반적 기본조건

(1) 공식사절단 교환에 있어서 일정계획안은 상주대표부를 통해 파견국 해당기구 내지 해당기관에게 전달된다.

(2) 자유할당 범위 내 연구체류에 관한 신청서의 상호전달은 동독 외무부와 서독 상주대표부를 통해 수행된다. 인원선발은 파견자 측이 결정한다. 학자, 전문가, 대학생 교환의 업무협조는 서독 측에서는 본 소재 독일 학술 교류재단이 맡는다.

(3) 사업계획 수행에 요구되는 정보는 적시에 전달되거나 교환되어야 하며 제6조 (2)에 따른 신청서는 다음 분기를 위해 체류 분기의 제1주 첫날까지 제출해야 한다(최소기간).

(4) 제6조 (2)에 따른 신청서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주거지)
- 직장, 직위
- 학술전공 분야
- 방문계획 및 업무계획 건의서
- 예정체류 또는 예비체류의 시점과 기간

(5) 전시회의 파견 및 초청의 근거는 해당 대역대상자 간에 체결될 대역계약이다.

제 7 조

재정적 기본조건

(1) 인원 교환 시 재정적 책임은 다음과 같다.

가) 파견자 측

- 초청국 내 최초 및 최종 체류지까지의 교통비

나) 초청자 측

- 체류계획에 계획되어 있는 여행비
- 1개월 미만 체류 시 적절한 숙소비 및 일일비용 보장
 동독 내 일일비용은 40 동독 마르크, 서독 내 일일비용은 60 마르크
- 1개월 이상 체류 시 월간 지원비용

| 동독 내 | |
|-------------|-----------------|
| 구분 | 금액 |
| 교수 | 최고 1,200 동독 마르크 |
| 강사 | 최고 1,050 동독 마르크 |
| 박사 학위 소지 학자 | 최고 950 동독 마르크 |
| 박사과정생 | 최고 850 동독 마르크 |
| 박사가 아닌 신진학자 | 최고 600 동독 마르크 |
| 대학생 | 최고 480 동독 마르크 |

* 적절한 무료 숙소가 준비되어 있음

| 서독 내 | |
|---------------------------|--------------|
| 구분 | 금액 |
| 정교수 | 최고 3,500 마르크 |
| 대학강사 | 최고 3,000 마르크 |
| 박사 학위 소지 학자, 조교, 의사시보, 기타 | 최고 2,700 마르크 |
| 박사과정생 | 최고 2,000 마르크 |
| 대학생 | 최고 1,500 마르크 |

- 합의된 방문계획의 수행상 필요한 경우 수고비 지불
 (예 : 초청과정, 초빙강연)
- 약정된 범위 내에서 학술기관 및 기구의 사용 비용



- (2) 장학생 교환 시 초청자 측은 규정에 관계없이 학비 면제
- (3) 전시회와 그에 준한 행사 수행 시 재정적 책임은 다음과 같다.

가) 파견자 측

- 최초 체류지까지의 운송비
- 전시회 계획, 준비, 설치에 필요한 비용(및 지역 내 경찰보호 비용)

나) 초청자 측

- 전시회가 개최되는 국가 내에서의 운송비 및 행선지까지의 발송비 (제3국으로 계속 운송 시 행선지까지의 발송비용만 포함)
- 전시회에 필요한 장소비, 전시회와 관련된 기술적, 조직적 비용, 홍보비, 약정된 전시회 수행원의 체류 비용

- 전시회 목록 비용 및 그 인쇄 비용(단 다른 약정이 없는 한)

파견자 측은 초청자 측에게 목록자료(문장, 사진 등)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 전시회 목록의 발행부수, 분량, 장점 및 그 발행일은 사업계획 당사자 간의 별도 의견합의를 필요로 한다.

동독 측이 전시회 목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면 초청자 측은 이를 구입할 수 있다. 서독 측이 전시회 목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면 그 판매이익을 서독의 외국인 외환계좌 B에 대변기입할 수 있다.

- 대여 품목에 대한 그 상설전시장으로부터 대여 국가 내에서의 거치기간 및 대여 품목의 상설전시장까지의 반송 기간 중의 전적인 책임을 진다. 피대여자는 대여 품목에 대한 상기한 책임감에 근거하여 보증하거나 파손 시 손해배상 지불의 용의선언과 함께 안전과 보험이 내포되어 있는 국가적 보증선언으로 책임질 수 있도록 조치한다.

- (4) 행사와 관련된 모든 수입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초청자 측에 둔다.

1989년 12월 19일 드레스덴에서 독일어로 원본 2부 작성

서독 정부를 대신하여
프란츠 베퍼텔레

동독 정부를 대신하여
쿠르트 니어

통일독일 문화통합의 과정과 내용

제1절 개요

독일통일에 있어 문화통합의 문제는 내적 통일, 심리적 통일의 문제와 깊은 관련성이 있으며, 이런 면에서 사회통합과 함께 논의되기도 한다.

통일 초기 동독지역 주민들이 갖고 있던 2등 국민의식과 열등주의, 패배주의, 상대적 박탈감과 함께 서독 주민들이 갖고 있던 통일비용 부담에 따른 불만, 동독 출신자에 대한 차별의식 등의 심리적 갈등이 통일 후 통합의 커다란 장애물이 되기도 하였으며, 이러한 내적 갈등 속에서 동독지역에 공산당의 후신 정당인 민사당(PDS)이 출현하여 동독지역에서 높은 지지를 받기도 하였다.

독일통일 과정에서 문화는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였는데, 통일의 당위성과 필연성을 제공하는 동인(動因)이었으며, 통일을 촉진하는 촉매제로서도 기능을 하였다. 통일 이후에는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 심리적 통일을 강화하는 주요한 기회이자 수단으로서도 문화통합이 기능을 하였다.

동서독은 분단 기간 동안 인적, 물적 교류를 지속하였으며, 문화 분야에서 서로 다양한 형태의 상호작용이 있어왔음은 이미 전술하였다. 통일과정에서 이루어진 동서독 간의 문화통합의 내용은 다른 분야의 통합과 마찬가지로

갑자기 이루어진 통일과 통합의 과제를 동서독이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잘 보여 주고 있다.

독일에 있어 문화정책은 기본법에 따라 주정부의 소관으로 정해져 있으며, 연방정부는 예외적으로 간여한다. 동서독 통일조약은 이러한 기본법의 관할 배분에 따라 문화통합 작업을 추진할 것을 규정하였지만, 사안의 긴급성과 동독지역에 새로 생겨난 주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취약성을 감안하여 연방정부가 적극적으로 통합작업에 개입하였다.

제2절 문화통합에 대한 통일조약과 관련 조치

1. 독일 통일조약 제35조

동서독 통일조약 제35조는 문화통합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35조 제1항은 “분단되었던 시절 동서독은 비록 상이한 문화적인 발전을 해왔으나 예술과 문화는 독일민족의 일체감을 지속시키는 기반이었다. 예술과 문화는 독일통일 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독특한 기여를 하였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항은 “구동독지역의 문화적인 실체는 그 어떤 손해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항은 “문화적 임무수행과 자금조달 문제는 보장되어야 하며, 기본법상의 관할권 배분에 따라 새로운 주들과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의 보호와 진흥의 의무와 더불어 재원조달을 포함하여 문화사업의 수행을 위한 조치를 강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4항은 “지금까지 중앙집권적으로 운영되었던 문화기관들은 그 관할권이 주정부의 지방자치단체로 넘겨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5항은 “전후 사건들로 인하여 국립박물관, 국립도서관, 국립기밀문서고, Ibero-Amerika 연구소, 국립음악연구소 등에 분산 소장되어 있는 구프



로이센 정부의 문화재들은 베를린으로 다시 집중 소장된다. 프로이센 문화 재단이 잠정적으로 이를 관리한다. 구프러시아 정부의 소장품을 원형대로 보관할 책임을 지는 총체적인 담당기관을 베를린에 설치하도록 장래에 관리규정을 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6항은 “문화기금은 문화, 예술 그리고 예술인 장려를 위해 과도기적으로 1994년 12월 31일까지 조약 제3조에 열거된 지역(구동독지역)에 계속 적용된다. 연방정부를 통한 부분적 자금조달은 기본법에 의한 관할권 배분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후속 기관에 대해서는 조약 제1조 제1항에 열거된 주(구동독에 설치되는 주)의 주연합 문화재단에 가입하는 것에 관한 협상과정에서 별도 협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7항은 “분단의 결과로 발생한 동서독 간의 이질성을 줄이기 위해서 연방은 과도적으로 조약 제3조에 열거한 지역 내에서의 문화적 사회시설 진흥을 위한 개별적 문화진흥계획과 문화단체의 재정을 부분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화통합에 대한 통일조약상의 규정으로 인해, 구동독의 문화활동과 시설 등에 대한 엄청난 정신적·물질적 변화가 발생하였는데, 주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문화통합과 관련하여 문화시설의 보호와 문화의 창달, 문화에 대한 재정지원을 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되었으며, 연방정부는 베를린주에 대한 재정 지원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재정을 부담하게 되었다.

통일조약에 의해 문화기금이 1994년 말까지 존속되게 됨으로써 문화적인 충격은 적어도 일시적으로나마 줄어들게 되었지만, 예술협회들이 해체되고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국가보조금이 없어지게 됨으로써 극장, 오케스트라, 문화의 집 등 국가기관들뿐만 아니라 개인 예술가들도 지금까지 누려왔던 세계적인 명성을 잃게 되고 생존의 위협에 직면하게 되었다.⁴

.....
⁴ 독일통일소사전, pp.253-254. 주독대사관, 1992.

2. 통일조약에 따른 초기 문화통합 조치

통일과정에서 파악된 동독의 문화 분야 실태는 매우 열악하였는데, 중앙 집권적 문화행정과 통제와 지시에 의존하는 문화적 기반에 따라 문화예술 분야의 창의성은 억압되고 역사적인 문화재 보호와 보수작업도 거의 이루어 지지 않았다. 새로운 문화시설에 대한 건립도 전무하여 동독 정권 40년 동안 단지 1개의 미술박물관과 1개의 콘서트홀이 건축되었을 뿐이었다.

1) 통일조약에 따른 초기 조치

통일조약 제35조는 문화적 실체가 훼손되어서는 아니 되며, 이에 대한 재정 지원을 보장하고, 문화시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 조약은 기본법의 관할권 배분원칙을 고수하면서도, 동시에 과도기간 동안 연방정부의 공동재정조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거하여 연방정부는 1990년 11월 14일과 1991년 2월 26일 구동독 및 동베를린지역의 문화 부문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한시적인 조치로 원형보존 프로그램, 문화기반시설 구축, 기념물보호 특별 프로그램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연방정부는 구동독지역 문화보존 사업을 위해 1991년 약 13억 마르크를 지출하였다. 여기에는 문화적응을 위한 특별지원 방안 자금 약 9억 5천만 마르크가 포함되어 있다.

이 외에도 연방정부는 구동독지역의 특정 문화기구들을 육성하였는데, 프로이센 문화재단에 귀속된 과거 베를린 국립박물관, 바이마르 민족연구기념관, Buchenwald 유대인수용소기념관, Dessau 건축관, Sorben 민족문화시설, 포츠담성 및 정원, 라이프치히 독일서점, 포츠담시 중앙자료보관소 등이 그것이다.

연방정부는 1992년에는 약 12억 마르크를 지원하였는데, 이 중 약 8억 3



천만 마르크는 문화정책상의 과도재정(Kulturelle Uebergangsfinanzierung) 명목으로 투입되었다. 1993년에는 과도재정 명목으로 6억 5천만 마르크가 투입되었다.⁵

서독의 재정 및 인력지원으로 동독지역의 문화재들이 보존되었고 문화 부문의 구조조정을 위한 기본 여건들이 마련되었다.

통일조약의 규정에 따라 문화 관련 기관은 대부분 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로 넘어갔는데, 구동독의 도(Bezirk)나 문화부가 직접 관장하던 기관들은 우선 주정부 관할로 속하게 되었다.

2) 원형보존 프로그램/문화시설 구축 계획/기념물보호 특별 프로그램

원형보존 프로그램의 재원은 특히 국가적인 의의를 지닌 문화시설물 및 문화행사의 지원에 사용되었다. 재원의 분배는 주정부들의 제안에 따라 이루어졌다.

원형보존 프로그램하에서 유럽적인 또는 민족적인 중요성을 지닌 시설물 또는 문화행사, 해당지역에 큰 의미가 있는 극장, 박물관, 오케스트라, 도서관, 문화적인 영화 지원, 기념물 보존 사업 등이 진행되었다.

문화시설 구축 계획은 지방자치단체, 시, 군의 문화시설물 및 문화행사들을 원형대로 보존하고, 그 구조를 현대화시키며 나아가 지역적인 불균형을 조정하는 데 기여하였다.

동 계획하에서 미술, 음악, 문학, 영화 및 매체, 도서관, 박물관, 수집관, 기념물 관리, 청소년 및 성인대상 문화교육, 민속학 및 지방학 등이 중점 지원되었으며, 이 중에서도 특히 청소년 문화교육 및 음악학교 확충을 포함한 청소년 문화사업이 중요시되었다. 동 프로그램의 재원은 주정부와 협의를 통해 분배되고 있었는데, 각 주별 인구 및 면적을 기초로 결정한 분배방식에 따랐다.

⁵ 통일부, 독일통일 1000일 보고서, pp.56-57, 1993.6.

기념물보호 특별 프로그램은 이동 불가능한 문화적 기념물이나 가치가 있는 역사적인 건축물(개별 건축물)의 안전, 보존, 복구를 위해 도입된 프로그램으로서, 기후로 인한 손상으로부터 보존,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건축물의 침입과 절도행위로부터 안정성 확보, 이미 기념물로 보호되고 있거나 앞으로 보호해야 할 문화재의 파악 및 실태조사, 기념물 관리를 위한 심화교육 지원, 이동 불가능한 문화재의 복구 작업을 포함한다.

이 프로그램은 주정부와 협의하에 시행된다.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은 소요 경비의 49%까지로서, 이 특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1991년부터 1993년까지 총 1억 8,900만 마르크가 투입되었다. 독일 기념물보호재단은 구동독지역을 위한 초기 재원을 지원받았는데, 그 규모는 1991년에 1,000만 마르크, 1992년에 2,300만 마르크, 1993년에 550만 마르크였다.

3) 기타 문화지원

통일조약에서 규정한 문화기금을 운용·관리하기 위한 문화기금재단이 1990년 9월 공공재단으로 설립되었으며, 기금은 통일조약에 명기된 기간인 1994년 12월 31일이 지나서도 계속 운용되었다.

통일조약을 통해 문화기금에 대한 공동출자가 과도기 동안 가능할 수 있었는데, 연방정부는 1991-1994년 과도기 동안 2,100만 마르크를 투입하여 신연방주의 미술과 미술가들을 지원하였다.

내독관계성의 해체로 문화통합 업무를 수행하게 된 연방내무성은 2,500만 마르크(1991-1993년)를 제공하여 동서독지역 간의 문화적인 접촉 및 결속을 강화하고, 구동독지역에 있어 전시부문, 초청행사 그리고 축제부문의 새로운 활동들을 장려하며 나아가 국제 간 문화교류의 취약점들을 보완하였다.

전체적으로 구동독지역에 대한 연방정부 차원의 문화지원금은 1991-1993년 기간 중 총 32억 마르크에 이르렀다.

1994년에도 문화 부문의 과도기 지원은 구동독 정당재산 및 대중조직재



산에 의한 재원을 통해 계속되었다. 신연방주는 이를 위해 2억 5,000만 마르크를 받았다.

3. 분야별 문화통합 사업

1) 베를린 문화통합 지원

연방정부는 통일 이전부터 '동독지역의 섬'이라는 특수한 지위를 갖고 있는 베를린에 대하여 문화적 지원 조치를 취하였다. 1990년까지 연방내무성에 배당된 문화 부문 예산의 약 40%가 베를린에 지원되었다. 베를린지역 중에서도 프로이센 문화재단과 베를린 축제회사가 가장 많은 지원을 받았다.

통일로 인해 문화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동베를린지역에 대한 연방정부의 책임이 늘어남에 따라 연방정부는 과도기 재원조달의 일환으로 동베를린지역에 있는 문화시설의 원형을 보존하고 기반시설을 개선하도록 1991년부터 1993년까지 총 5억 1,200만 마르크를 투입하였다.

연방정부의 이 같은 지원을 통해 베를린 주정부는 연방정부와 함께 동베를린지역에 있는 각종 문화시설을 잘 유지하면서 심각한 손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였다.

또한, 베를린을 통일독일의 수도라고 규정한 통일조약, 그리고 의회의 소재지와 연방정부의 일부를 베를린으로 이전한다는 1991년 6월 20일자 연방의회 결정에 근거하여, 연방정부는 수도 베를린의 문화적 존재와 가치를 높여나가는 책임을 공동으로 부담한다.

연방정부와 베를린 주정부가 1994년 6월 30일 체결한 '수도협약'은 베를린이 수도로서의 위상에 걸맞는 문화기반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1996년부터 1999년까지 베를린의 수도역할과 관련된 문화시설 구축 및 문화행사를 위해 연방정부가 매년 6,000만 마르크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수도협약’상 1995년도에는 연방정부가 문화와 관련하여 추가로 지원할 의무는 없었지만, 연방의회 예산분과위원회는 1995년 베를린의 문화시설 및 문화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3,000만 마르크를 추가로 책정하였다.

베를린지역의 가장 중요한 문화기관은 프로이센 문화재단이다. 이 재단은 연방정부와 주정부들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재정을 담당한다. 이 재단은 통일 이후 동독지역 소재 프로이센 문화재단도 잠정적으로 관리하며, 베를린지역 국립박물관들을 프로이센 문화재단 산하에 통합하는 작업을 완결하였으며, 국립도서관들도 동 재단에 소속되었다.

대규모의 문서보관소들, 수집기관들, 도서관들 그리고 몇몇 기념사적지들을 관장했던 동독 예술아카데미의 업무를 수행할 기관으로서 예술아카데미 기록문서재단이 설립되었다.

2) ‘등대계획(Leuchtturm-Programm)’⁶

연방정부는 통일 직후 경제재건과 구조조정의 과업에 직면하고 있는 신연방주들이 문화 분야에 대한 재정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신연방주 소재 문화사업에 대하여 지원하였다.

1995년부터 연방정부는 신연방주의 주요 문화시설들을 ‘등대계획(Leuchtturm-Programm)’에 포함시켰는데, ‘등대계획’은 신연방주 주정부의 건의를 통해 이 지역에 소재하는 일련의 문화시설물을 연방정부의 장기 지원 대상으로 설정,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등대사업은 국가적 차원에서 의미가 있는 문화재, 문화재단, 건축물들을 길을 밝히는 ‘등대’로 설정하고 복원, 유지하는 사업으로서, 연방정부는 기본법을 넘어서지 않는 한도에서 최대한 사업에 참여해서, 주정부들과 함께 중

⁶ 이우영 등, 남북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사회통합 해외사례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용역 결과보고서, pp.133-135.



요도에 따른 우선순위를 매기고 체계적으로 선택하는 프로세스를 함께 했다. 등대사업의 1순위는 베를린과 그 주변의 문화재의 복원, 복구, 보존, 수리였다. 동독시절에 정치적, 경제적 이유로 보수되지 않은 많은 곳들이 등대사업의 일환으로 수리되고 재건되었다.

동 프로그램에 따라 사업초기에 루터 공회당과 생가, 프랑켄재단, 뤼어스트 뤼클러 파크재단, 독일해양·수산업 박물관, 예술아카데미 기록보존재단, Wartburg 재단, Dessau-Worlitz 문화재단, 뤼어스트 뤼클러 박물관재단과 브라니츠 궁, Lessing 박물관, Kleist 기념연구소, 중부독일 바로크음악 연구 공동체 등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졌다.

‘등대계획’은 연방정부가 수행하는 문화지원에 신연방주가 참여토록 함으로써 독일의 내적통합을 이룩하려는 연방정부의 강력한 의지의 표출로 평가 받고 있다.

문화등대사업의 대상이 되는 동독지역 문화유산들은 다음과 같다(2006년 기준).

표 1-1) 문화등대사업에 해당하는 동독지역 문화유산 목록

| 부문 | 사업대상 | 비고 |
|-----|---|-----------------|
| 박물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taatliche Kunstsammlungen Dresden - Deutsches Meeresmuseum in Stralsund * - Deutsches Hygiene-Museum in Dresden - Museum für Angewandte Kunst in Leipzig - Museum für Völkerkunde zu Leipzig - Staatliche Naturhistorische Sammlungen Dresden - Museum der bildenden Künste in Leipzig - Kunstsammlungen Chemnitz - Lindenau-Museum in Altenburg | * =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
| 재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lassik Stiftung Weimar * - Franckesche Stiftungen in Halle | |
| 기념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uthergedenkstätten in Sachsen-Anhalt mit Luthers Geburts- und Sterbehau in Eisleben und dem Luther- und Melanchthonhaus in Wittenberg * - Bach-Archiv in Leipzig - Händel-Haus in Halle | |

| | | |
|------------|---|--------------------|
| 건축물/ 정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tiftung Preußische Schlösser und Gärten Berlin-Brandenburg * - Staatliches Museum Schwerin mit dem Schweriner Schloss, dem Schloss Güstrow und dem Schloss Ludwigslust - Bauhaus Dessau * - Dessau-Wörlitzer Gartenreich - Fürst-Pückler-Park Bad Muskau - Branitzer Park - Wartburg bei Eisenach * - Moritzburg in Halle | * =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
|------------|---|--------------------|

3) 영화 분야에 대한 지원

동독 영화 부문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통일과 동시에 동독의 영화제작업자와 제작업체 및 영화관에 대해서도 연방정부의 지원이 있었다.

그동안 일반적인 영화 지원 및 과도기 재정 지원의 일환으로 동독지역에 9,000만 마르크 이상의 지원금이 흘러들어 갔으며, 베를린-브란덴부르크 영화협회가 설립되면서 베를린주와 브란덴부르크주는 서독의 미디어 집약지역인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바이에른주, 함부르크주와 경쟁할 수 있게 되었다.

구동독지역의 가장 중요한 영화생산지로 유명한 포츠담-바벨스베르크 스튜디오들의 경우, 신탁청이 바벨스베르크 회사와 그 부동산을 매각할 때 고액의 투자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이 지역이 계속 영화 생산지로 보존될 수 있도록 하였다.

독일통일 직후 영화계는 소규모의 채산성이 없는 영화관들이 속속 문을 닫아 버리는 바람에 크게 쇠퇴하였으나, 연방정부의 막대한 재정 지원을 통해 다수의 영화관이 현대화되고 새로 건설된 결과 관람객 수가 크게 증가하였다(1992년: 1,200만 명, 1994년: 2,000만 명).

연방정부는 민족적인 문화유산의 하나로 677개의 극영화, 2,238개의 기록 영화 그리고 752개의 애니메이션 영화 자산이 해체되는 것을 막고 활용 가능한 것으로 보존하기 위해 베를린주, 브란덴부르크주, 작센주와 공동으



로 영화관리 및 활용을 위한 공익재단 설립을 추진하였다.

통일조약은 남부 독일의 소수민족인 소르벤인의 특수한 지위를 감안하여, 소르벤인들의 문화를 보존·발전시키기 위한 국가의 책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작센주가 1991년 브란덴부르크주 및 연방정부 간의 협이에 의해 설립된 ‘소르벤 민족을 위한 재단’은 소르벤인들의 참여하에 국가 차원의 재원을 투입하기 위한 공동기구로서 연방정부, 작센주 그리고 브란덴부르크주가 이 재단을 통해 마련한 재원은 소르벤어와 소르벤인들의 문화를 보존하는 데 기여했다.

4) 도서관 시스템의 통합

통일과 더불어 도서관 및 문서보관소의 영역에도 새로운 조치가 필요했고 이 같은 조치들이 시행되었다.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 시스템을 설치하고 도서관을 확충하는 작업이 진행되었는데, 효율적인 도서관 시스템 설치를 통해 각 개별 도서관들을 상호 연결함으로써 도서관 간의 상호협력과 이용자 편익을 제고하였다.

프랑크푸르트 소재 ‘독일도서관(Deutsch Bibliothek)’과 라이프치히 소재 ‘독일도서관(Deutsche Bücherei)’은 소재지는 각각 그대로 두고 ‘독일도서관(Deutsche Bibliothek)’이라는 명칭의 연방기관으로 합병되었다.

동 합병은 지역 간 통합의 성공적 모델의 하나로 평가되고 있는데, 이를 통해 각 소재지에는 효율적인 도서관 및 전문 인력이 유지되고, 각 소재지에서 중점 분야는 분리시키거나 이전되지 않았으며, 도서 확충 시 이중작업을 피하고 라이프치히와 프랑크푸르트에 동일한 관리 수준이 유지되도록 하였다.

‘독일도서관’은 1913년 이래 독일에서 출간된 인쇄물 및 제작된 음반들, 1913년 이후 외국에서 간행된 독일어 출판물, 다른 언어로 번역된 독일 작품들, 다른 언어로 쓰여진 독일에 관한 인쇄물들을 수집하고 목록을 작성하며

분류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독일도서관’은 독일민족의 장서목록을 다양하게 분류하고 집적하여 인쇄물 또는 마이크로 필름 형태로 발간하고 있으며, 나아가 독일도서관은 도서관, 서점, 문헌적인 기록을 지닌 학술기관들을 위해 카드목록, 자기테이프, 디스켓, 온라인 서비스 등을 통해 중요한 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다.

5) 문서보관소 통합/문화재 반환

동독시절 문서보관소들은 중앙집중화의 경향이 심했다. 따라서 독일 기본법 정신에 따라 각 주와 광역단체들은 가능한 한 중앙집권적 체제를 독자적인 관할 체제로 전환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했다.

통일조약에 의해 연방문서관리법은 동독지역에도 확대·적용되었는데, 동독의 다양한 국가기관에 소속되어 있던 문서보관소들이 통일조약 제13조에 따라 연방문서관리법으로 규율되었다. 이로써 국가기관에서 생산한 문서자료들을 안전하게 보존할 수 있는 법적, 조직적인 기초가 마련되었다.

정당 및 대중조직들 산하의 문서보관소들 중 국가안전부(SED)의 문서보관소가 있는데, 동 문서보관소에 보관된 문서의 처리 문제에 대하여 독일의회는 집중적인 논의를 벌였으며, 1992년 3월 13일 연방문서관리법의 개정에 관한 법률과 1992년 4월 6일 연방내무성 명령을 통해 동독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 이 자료가 앞으로도 계속 보존될 수 있도록 하였다.

연방문서관리청에 설치된 ‘동독 정당 및 대중조직 문서관리재단’은 1993년 초부터 활동을 시작했으며, 문서보관소 문서에 대한 사항들이 처리되었다. 동 재단의 엄청난 양의 동독정당 및 대중조직 문서자료들에 대한 일반 대중의 접근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연방문서관리법에 따라 문서관리청 자료이용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30년 간의 자료 비공개 규정은 이 재단의 자료에는 적용되지 않도록 하였다. 따라서, 이 재단의 문서자료들은 시대사 연구 등 학문적 목적을 위해 활용될 수 있게 되었다.



분단 시절 유실되었거나 불법적으로 외국으로 이전된 문화재를 반환받기 위한 노력이 통일 이후에 이루어졌다. 1990년 11월 체결된 독-소 조약에서 유실 또는 불법적으로 옮겨진 문화재의 반환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반환을 위한 협상이 사안별로 진행되었다.

또한, 폴란드와 조약을 통해 문화재 및 문서자료에 관한 협약이 체결되었으며, 행방불명되었거나 불법적으로 옮겨진 문화재들을 파악하기 위해 베를린의 문서보관소를 통해 연방정부와 주정부 차원에서 광범위한 조사작업이 실시되었다.

6) 동독지역 교회를 위한 연방정부의 특별지원

통일 전 동독지역 교회들의 대부분은 자력으로 교회건물, 목사관 및 기타 시설들을 유지해 나갈 능력이 없었고, 구동독 정부로부터 필요한 건축허가나 인력 및 재정지원을 거절당하는 상황에 처해 있었던바, 서독의 연방내 독관계성에서 이들을 지원하였다. 통일 후 연방내무성은 동독교회에 대한 통일 전 지원의 연장선상에서 1991년 및 1992년 동독지역 교회건축 지원을 위해 매년 8,000만 마르크를 지원했다. 금액의 대부분은 신교교회들과 구교교회들에 제공되었으며, 여러 유대교회들과 몇몇 소규모 지역교회들도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았다. 이후 신연방주는 자체적으로 동 지원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연방 차원에서의 지원은 종결되었다.

7) 동부 및 동남부 유럽 소재 독일문화유산의 보존

연방정부와 각 주정부들은 동부 유럽 및 동남부 유럽의 추방지역 및 이주지역에 산재해 있는 독일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이를 독일민족과 외국인의 의식 속에 존재하도록 하는 의무를 갖고 있다.

통일 전 이러한 의무는 서독 정부에 의해서만 이행되었는데, 통일과 더불어 연방정부는 이러한 문화사업을 동독지역에도 확대·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1991년부터 라이프치히 대학의 ‘중동부 유럽에서의 독일문학과 독일어’라는 강좌가 지원되었으며, 1994년 Greifswald 대학에 ‘포메른의 역사와 문화’라는 강좌가 개설되었다.

역사적으로 독일에 속했던 동부지역과 독일인들의 이주지역을 문화적, 역사적으로 전시해 줄 주박물관의 확충 및 신축작업은 문화유산의 보존이라는 법적인 임무수행의 중요한 측면이었다.

이를 위해 작센주와 괴어리츠(Görlitz)시 및 쉘레지엔향우회와 공동으로 괴어리츠 소재 르네상스 건축물인 쇤호프(Schönhof)에 쉘레지엔 주박물관 설립 사업이 진행되었으며, Greifswald시, 맥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 연방정부, Greifswald 대학과 Kiel 소재 폼메른향우회 및 폼메른재단이 공동으로 Greifswald시 중심부에 있는 역사적인 Guardian-Haus 건물들 주변에 폼메른 주박물관을 설립하였다.

8) 드레스덴의 프라우엔 교회와 신시장 지역 복원⁷

1800년을 전후해서 드레스덴의 신시장은 당시로서는 유럽 최고 수준의 시민사회 도시로 완성되어 그 모습이 전쟁 전까지 유지되다가 1945년 2월 13일과 14일 밤 사이 연합군의 폭격으로 완전히 파괴되었다. 도시의 파괴와 함께 드레스덴의 대표적인 상징물이었던 프라우엔 교회도 계단 탑과 성가대석 일부만 남기고 파괴되었다. 동독시절 몇몇 유물들은 보수가 이루어졌지만 신시장은 계속 방치되었고, 1980년대 중반 한때 복원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실현되지는 못했다.

독일통일 과정에서 한 시민단체가 프라우엔 교회 복원을 위한 모금활동에 들어가면서 신시장지역의 변화가 시작되었는데, 미국을 중심으로 1억 8천

⁷ 안두순, 독일의 문화유산 보호정책과 통일 후 복원사업, FES Information Series 2016-02,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2016.



만 유로에 달하는 총 복원 비용의 3분의 2가 모금되고 나머지는 드레스덴 시, 주정부 및 연방정부가 각각 부담하기로 하여 복원 공사가 1994년 착공 되었으며 2005년 10월에 완공되었다.

프라우엔 교회의 복원을 시발점으로 드레스덴의 중심인 신시장지역을 재 개발하는 사업에 대한 2002년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의 합의에 따라 향후 15년 동안 ‘도시건축 재개발’ 사업 추진비로 4,230만 유로를 드레스덴시, 주 정부 및 연방정부가 각각 3분의 1씩 부담하기로 합의했다.

제4장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제1절 남북 문화교류협력 추진 현황

1. 남북교류협력 정책의 정립

1) 개요

남북관계 역사는 ‘대화 없는 대결시대’로부터 출발하여 ‘대화 있는 대결시대’를 거쳐 1980년대 말부터 1988년 ‘7.7 특별선언’, 1989년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1990년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이하 ‘남북교류협력법’)의 제정, 1991년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이하 ‘남북기본합의서’) 체결 등 일련의 조치를 통해 ‘남북교류협력의 시대’로 발전되어 왔다.

(1) 7.7 특별선언과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발표

‘7.7 특별선언’⁸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과의 관계를 적대적 관계에서 우호적인 관계로 전환할 것이라는 의지를 천명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는 ‘7.7 특별선언’을 통해 △남북 상호교류와 자유왕래, △이산가족의 서신왕래와 상호방문, △남북교역 및 문화개방, △남북민족경제

⁸ 정식명칭은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이다.



의 균형발전 및 우방국의 대북한 교류 불반대, △국제사회에서의 남북한 협조, △북방외교 추진 및 우방과의 관계개선 협조 등의 의지를 천명하였다.

이에 대한 후속 및 실천적 조치로서 △대북비난방송 중지(1988.7.9), △공산권 자료개방(1988.9.3), △남북한 물자 및 경제인 교류 등 대북경제개방 조치(1988.10.7), △남북경제인 상호 방문 및 접촉 절차 발표(1988.12.15), △남북물자교역 지침 제정(1988.10.18),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기본 지침 제정(1989.6.12) 등이 취해졌다.⁹

대한민국 정부는 1989년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통해 남북교류협력 단계와 남북연합 단계를 거쳐 통일을 이루는 점진적이고, 단계적이며, 평화적인 방법에 의해 한반도통일을 달성하는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하나의 민족공동체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점진적·단계적으로 통일을 이루어 나간다”는 기조에 입각하고 있으며, 통일과정을 「화해협력», 「남북연합», 「통일국가 완성」의 3단계로 설정하고 있다.¹⁰

우선, 「화해협력」단계는 남북이 서로 체제를 인정·존중하고 분단 상태를 평화적으로 관리하면서 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의 교류협력을 통해 상호적대감과 불신을 해소하는 단계이며, 「남북연합」의 단계는 화해협력 단계에서 구축된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평화를 제도화하고 민족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는 과도기 단계로서, 각기 대외적으로 주권을 유지하되 남북정상회의, 남북평의회, 남북각료회담, 남북공동사무처와 같은 상설 공동기구를 운영한다.

「통일국가 완성」단계에서는 남북한 의회 대표들에 의해 마련된 통일헌법에 따라 민주적인 선거를 통해 통일 정부와 통일 국회를 구성하고 두 체제의 기구와 제도를 통합함으로써 완전한 통일을 이루게 되며, 민족 구성원 모두

⁹ 통일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해설집, p.4, 2009.

¹⁰ 통일교육원, 통일문제이해 pp.73-76, 2010.

에게 자유·복지·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되는 자유 민주주의 국가가 수립된다.

남북교류협력 추진의 관점에서 볼 때,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남북교류협력정책을 정부 통일정책의 구성요소로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2) 남북교류협력법의 제정

남북교류협력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기구로서 1989년 3월 30일 통일원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14개 부처 차관을 위원으로 하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가 구성되었으며, 1990년 ‘남북교류협력법’의 제정으로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구축되었으며, 남북교류협력의 물적 기반을 조성하고 남북교류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남북협력기금이 설치되었다.

남북교류협력법의 제정은 그동안 남북관계를 규율해왔던 법률로서 국가보안법이 유일한 상황에서 남북교류협력을 헌정 사상 처음으로 법적으로 보장함으로써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확대 발전시킨다는 의의를 갖고 있다고 한다.

또한 그동안 국가보안법 체계에 의하여 일체의 남북 간 교류협력이 반국가행위로 규정되어 금지되어 왔는데, 남북교류협력법이 제정됨으로써 남북 간 교류협력 행위 중에서 국가안보를 해치지 않는 행위와 국가안보를 해치는 행위로 구분하게 되었고, 남북교류협력법은 국가안보를 해치지 아니하는 교류협력의 시행에 관한 절차를 정하고 있다.¹¹

남북교류협력법은 북한 주민 접촉, 북한방문, 남한방문, 남북교역, 남북협력사업, 남북 간 수송장비 운행, 통신 역무 제공 등으로 남북교류협력을 유형화하고 있으며, 각 유형별 남북교류협력 추진 절차를 정하고 있다.

¹¹ 통일백서 1990, pp.183-187, 통일원.

(3) 남북기본합의서의 채택

남북기본합의서는 남북한의 총리를 수석대표로 한 1991년 12월 31일의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체결되었다.

남북기본합의서는 서문과 함께 남북화해(제1장), 남북불가침(제2장), 남북 교류협력(제3장), 수정 및 발효(제4장) 등 4장 25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문에서는 남북한이 평화통일을 성취하기 위해 공동 노력할 것과 남북관계가 통일지향의 잠정적 특수관계라는 점을 규정하고 있다.

제1장에서는 ‘남북화해’에 관한 실천과제(제1-6조)를 제시, 남북 상호 간에 화해와 신뢰를 쌓아 나갈 것을 규정하고 있는 바, 상대방 체제의 인정·존중, 내부문제 불간섭, 비방·증상 중지, 파괴·전복행위 금지, 정전상태를 평화상태로 전환, 국제무대에서의 대결·경쟁 중지 등이 주요 내용이다.

제2장에서는 ‘불가침’에 대한 쌍방의 확고한 약속을 내외에 선언하면서 그 이행을 보장해 나갈 구체적인 실천조치로서 불가침 경계선 명시, 군사공동위 구성·운영, 군사직통전화 설치, 무력 불사용과 무력침략 포기, 분쟁의 평화적 해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남북 쌍방 간의 교류와 협력의 목적이 ‘민족경제의 통일적이며 균형적인 발전과 민족전체의 복리향상을 도모’하는 데 있음을 밝히고, 비경제 분야까지 다각적인 교류협력을 천명하고 있으며, 자원공동개발, 물자교류 등 다양한 교류협력의 추진과 자유왕래 및 접촉, 이산가족 서신거래·상봉·재결합, 철도·도로 연결 및 해로·항로 개설, 우편·전기·통신교류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동 합의서 제16조는 “남과 북은 과학·기술, 교육, 문화·예술, 보건, 체육, 환경과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및 출판물을 비롯한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고 규정하여 남북 문화교류에 대하여 합의하고 있다.

2) 남북교류협력의 의의

남북교류협력은 한반도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좀 더 많은 접촉을 통해 분단에 따른 남북한 간의 정치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는 한편, 장기간의 분단에 따라 이질화된 남북한 주민의 삶과 의식을 점진적으로 동질화해 나간다는 기능주의적인 접근에 의해 시작되었다.

또한 남북교류협력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 상정하고 있는 화해협력단계에서 추진되는 정책방안으로서의 성격도 아울러 갖고 있는 바, 남북교류협력을 통해 남북한 간에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를 정착하고 다음 단계인 남북연합 단계로의 이행을 견인하는 주요한 수단으로서도 기능한다.

대한민국 정부가 이러한 남북교류협력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게 된 것은 대북 정책에 있어서 하나의 커다란 정책적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 이는 1980년대 말과 1990년 초에 이루어진 국제적인 탈냉전과 탈이념이라는 새로운 시대적 질서의 변화와 함께 동구권의 자유화 움직임과 독일통일의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 당시의 대결적인 남북관계 상황 등을 감안해 볼 때, 남북교류협력의 공식화는 매우 전향적인 대북정책의 변화를 의미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적인 흐름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남북관계에 있어 남북교류협력은 다음과 같은 의의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첫째, 남북관계에 있어서 민간의 참여를 공식화하였다는 점이다. 당시의 남북관계는 체제 경쟁 구도하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남북관계는 주로 당국에 의해 관리되고, 유지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남북한 당국은 자기체제의 우월성을 홍보하고 상대방을 비판하는 등 체제 경쟁을 수행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에는 남북한 당국 간의 회담을 개최하는 방식으로 남북관계를 관리하였다. 따라서, 민간이 참여하는 남북교류협력의 영역은 존재하지 않았거나, 일회적인 이벤트적 사안으로만 존재하였다.

남북교류협력의 시작은 이러한 구도의 전환을 야기하였는데, 일정한 절



차에 따라 민간이 남북교류협력의 주체로서 기능할 수 있게 되었다. 즉, 종래 당국에 의해 독점되었던 남북관계가 일정 부분 민간에 개방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겠다.

둘째, 남북교류협력의 시작으로 인해 정치적 영역에 머물러 있던 남북관계가 법률의 영역으로 구체화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남북관계는 고도의 정치행위와 통치행위가 지배하는 영역임에는 틀림이 없으며, 남북한 간 대결 및 체제 경쟁의 구도하에서는 이러한 특성이 계속 유지되었다. 그러나, 남북교류협력의 시작으로 인해 남북교류협력에 참여하는 국민들에 대한 권리의무 관계의 정립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법률의 마련 등 남북교류협력 정책도 법치주의의 통제를 받게 되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남북교류협력법의 제정은 남북관계를 일정한 규범에 의해 규율되는 영역으로 포섭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셋째, 대한민국이 남북교류협력 추진의사를 먼저 표명하고 이를 실천함에 따라 북한의 상응하는 조치를 유도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남북교류협력이 추진되어 감에 따라 북한도 남한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정책과 법제도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북남경제협력법 등 대남교류를 규율하는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등의 모습을 보여 주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남북교류협력이라는 영역이 남북관계에서 하나의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하게 됨으로써 당국 위주, 회담 중심의 남북관계가 다변화되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결론적으로 남북교류협력 정책의 채택은 당시의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는 가운데 남북관계를 화해와 협력의 방향으로 전환시키는 데 많은 기여가 되었으며, 규범에 의한 남북관계 관리의 계기를 마련하는 한편 다양하고 발전적인 남북관계 형성을 위한 정책적 패러다임을 제공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2. 문화 분야 남북교류협력 추진 현황

1) 개요

1990년 남북교류협력법 제정 이후 2017년 7월까지 사회문화 분야에서 추진된 남북협력 사업은 총 159건이며¹², 이 중 대부분은 문화재 분야 교류, 공연 교류, 체육 교류, 국어사전 공동편찬 등이 차지하고 있다.

문화 분야의 협력사업은 이념과는 무관한 분야에 대한 교류협력으로서 남북한 쌍방에게 정치적 부담이 적고, 남북한이 공동으로 향유했던 문화적 기반에 근거하여 추진되기 때문에 사업 추진이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용이한 측면이 있다.

또한 민족의 동질성을 확인하고 민족공동체 의식을 제고함으로써 남북한 문화공동체를 구축함으로써 남북한 주민 간의 심리적 통합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2) 문화 분야 주요 남북교류협력 추진 사업

문화 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은 체육 분야에서의 남북교류협력부터 실현되었는데, 1991년에 제41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와 제6회 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에 남북한이 단일팀을 구성하여 참가하였다.

이후 1990년대 후반에 남북한 사진 작품전 개최, 민족통일음악회 상호 방문 공연, 북한의 역사 유물에 대한 영상물 공동제작 등의 사업이 시작되었고, 2000년대 초에는 남북정상회담의 성사 등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라 다큐멘터리의 공동제작, 애니메이션 공동제작, 고구려문화전 개최, 방송물 공동제작, 북한 조선향토백과 편찬, 북한지역 사찰 복원 사업, 남북한 저작권 교류, 민족작가대회 개최 등 문화교류사업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¹² 통일부 홈페이지 '월간남북교류협력 동향'.



그러나, 2008년 이후 남북관계가 경색됨에 따라 다른 교류협력 분야와 마찬가지로 문화 분야 교류협력의 동력이 약화되었으며, 이후 급속하게 위축되었다. 2008년 이후 이루어졌던 문화 분야 남북교류협력 사업으로는 개성 만월대지구 남북공동발굴조사 사업 정도를 들 수 있다.

그동안 남북 간에 이루어졌던 문화 분야 남북교류협력 사업 중 주요한 사업은 다음과 같다.

표 1-2) 문화 분야 남북교류협력 사업

| 남한 | 북한 | 사업 내용(지역) | 사업승인일 |
|--------------------|------------------------|---|-----------|
| 대한탁구협회 | 북한탁구협회 | 제41회 세계선수권대회('91.4.24~5.6) 남북단일팀 구성·참가(일본) | '91.3.21 |
| 대한올림픽위원회 | 북한올림픽위원회 | 제6회 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 ('91.5.27~6.4)남북단일팀 구성·참가 (포르투갈) | '91.5.1 |
| SN21 엔터프라이즈 | 조선아시아태평양 평화위원회 | 민족통일음악회 방북공연 | '99.8.5 |
| NS21 | 조선아시아태평양 평화위원회 | 평양교예단 서울공연 | '00.5.23 |
| KBS(한국방송공사) | 민족화해협의회 | 남북교향악단 연주회 | '02.9.13 |
| 대한불교 천태종 | 개성영통사복원위원회 | 개성 영통사 복원사업 | '03.11.4 |
| 민족문학작가회의 | 조선작가동맹 | 민족작가대회개최 | '04.8.11 |
| 남북역사학자협의회 남측협의회 | 북측역사학자협의회 | 고구려고분군 세계문화유산등재기념 남북공동전시회 | '04.9.3 |
| 조계종 | 조선불교도연맹 | 금강산 신계사 복원사업 | '04.9.15 |
| 거례말큰사전남북 공동편찬사업회 | 민족화해협의회 | 거례말 큰사전 공동편찬 | '04.10.25 |
| KBS(한국방송공사) | 민족화해협의회 (조선중앙방송위원회) | 드라마 <사육신> 주문제작 | '05.3.2 |
| 문화재청 | 문화보존지도국 | 북관 대첩비 반환 사업 | '05.7.8 |
| 광복회 | 북측 당국 | 안중근 의사 유해공동발굴 및 봉환 | '06.5.16 |
| 남북강원도 협력협회 | 민족화해협의회 | 2014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남북협력사업 | '07.1.15 |
| 남북역사학자 협의회 | 민족화해협의회 | 2010년 개성 만월대지구 남북공동발굴조사 | '10.3.19 |
| 남북역사학자 협의회 | 민족화해협의회 | 2015년 개성 만월대 발굴조사 관련 남북공동 출토유물전시회 및 학술회의 | '15.9.9 |

3) 평가

남북 간 문화교류협력은 한반도에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교류협력 과정에서 서로의 상이한 가치관과 생활양식 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는 기능을 한다. 뿐만 아니라 남북 상호 간에 신뢰를 높여 주고, 나아가 통일 후 예상되는 남북 간 문화·심리적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역할도 한다.

1990년대 남북교류협력 정책의 시작과 함께 문화 분야의 교류협력도 시작되었으나, 남북관계의 구조적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의 문화교류는 본격화될 수 없었고, 일회적·행사성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2000년대 들어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본격화된 문화교류는 2008년 남북관계가 경색될 때까지 그 분야가 다양해지고 내용도 심화되었다. 문화 분야에서의 남북한 간의 인적왕래가 크게 늘어난 가운데 중장기 협력사업들이 시도되었다.

2007 남북정상회담과 제1차 남북총리회담에서 문화교류 발전에 대한 포괄적인 합의를 이룸으로써 그간 민간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던 문화교류가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특히 총리회담에서는 ‘남북사회문화협력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합의함으로써 문화 분야 교류협력을 제도화하는 데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나, 이후 남북관계 경색으로 인해 실현되지 못하였다.

남북 간의 문화교류는 이념과는 커다란 관련성이 없는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그 추진 과정에서 큰 틀에서의 남북관계 상황과 무관하게 추진될 수 없는 한계가 노정되었다. 이는 남북한 당국이 문화교류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의 구축에 힘쓰기보다는 남북관계 상황에 따라 남북 문화교류를 행사 위주 내지 일회성 사업으로 추진하였다는 점에 기인한다고 하겠다.



제2절 독일의 문화통합 사례의 한반도 문화통합에의 시사점

독일은 분단 시기 동안 끊임없이 동서독 간 교류협력을 추진하였으며, 이러한 교류협력을 통한 통일에 따른 동서독 간의 문화적 충격과 이질감을 완화할 수 있었다.

한반도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통일이 당장 달성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남북 간에 문화 분야에서의 접촉과 왕래 및 협력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통해 민족공동체 의식을 고양하여 남북한 문화공동체를 형성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는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함은 물론 향후 다가올 통일에 대한 준비로서의 의미도 갖고 있다고 하겠다.

독일의 문화통합 사례가 한반도 문화통합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교류협력 본래의 특성인 비정치적, 비이념적 성격을 유지하는 가운데 남북관계 상황에 좌우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정책적 관점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점은 문화교류협력 사업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다른 분야보다도 더 장기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에 그러하다. 남북문화교류협력이 남북관계 상황과는 무관하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남북한 당국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둘째, 남북문화교류의 제도화를 강화하여야 한다. 지금까지의 일회성, 행사성 위주의 문화교류만으로는 남북문화교류의 제도화를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보다 심화된 형태의 협력을 추진하여 남북문화교류에 대한 제도화가 함께 달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남북 간 저작물이나 방송물의 공동제작, 사진 편찬 사업, 남북한 저작권 분야 협력 등의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셋째, 남북한 당국 간의 장기적인 문화교류협력 사업의 공동 추진이 필요하다. 동서독이 문화협정에 기반하여 통일 전에 세 차례에 걸쳐 추진했던 공동사업의 경우와 같이, 남북한 당국도 최소한 3년 단위의 공동문화사업 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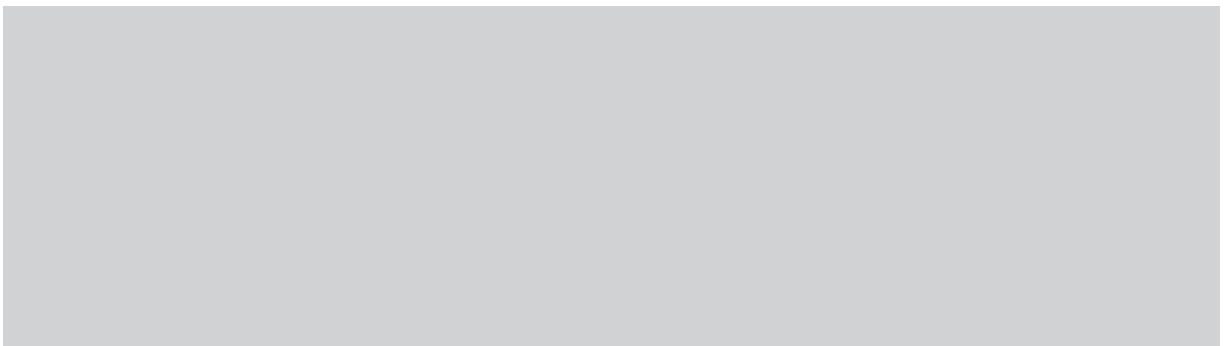
드맵을 함께 구축하여 이에 대한 사업의 추진과 사업 관리 등을 공동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남북한 총리회담에서 합의한 바 있는 ‘남북사회문화협력추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 및 운영하여 이러한 문제들을 다루도록 할 필요가 있다.

넷째, 남북문화교류협력의 추진을 위한 국내 거버넌스의 구축이 필요한 바, 문화교류에 있어서의 주도적인 주체는 민간임을 인식함과 함께 이들의 남북문화교류 추진에 대한 정부의 효율적인 지원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정부에서는 통일부, 문화부 등 관계부서가 협업 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남북문화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과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지원 체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민간과의 효율적인 협업 체제 구축을 위한 민-관 공동협의체의 구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민간에서도 남북문화교류의 세부 분야별 자율적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문화교류협력에 있어서의 과당경쟁을 방지하고 효과적으로 문화교류협력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문화 분야
관련 정책문서



정책문서를 통해 본 독일통일과 문화

이은정 / 알렉산더 페니히
(독일 베를린 자유대)



들어가며

독일통일과 문화에 관해 논할 때 항상 언급되는 것은 독일인들이 스스로 문화민족이라고 인식해 역사적 전통과 공동의 문화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이 분단된 40년 동안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공동의 문화적 유산에 대한 인식은 동서 간의 대립이 고조되던 시기에도 독일인들의 사회적 의식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준거틀로 작용하였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공동의 문화의식이 결과적으로는 독일통일의 사회적, 문화적 기반을 마련해 주었다는 것에 대해서도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문화정책은 가시적으로 그 성과가 드러나지 않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독일의 경우 통일을 위한 기초를 닦는 중요한 작업이었던 것이다.

동독 사회주의통일당 지배 체제하에서 반체제 운동을 주도하였던 시민세력 중에는 문화예술에 종사하던 사람들이 다른 직업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다. 1970년대에 서독으로 추방되었던 저항 가수 볼프 비어만은 그런 저항세력의 상징적인 인물이었다.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저항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만큼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의 붕괴 이후 시작된 동독의 개혁에 대한 그들의 기대도 아주 높았다. 기대가 높았던 만큼 실망도 클 수 있다. 독일통일을 통해 동독 문화예술인들이 꿈꾸던 이상사회가 구현되지는 않았다. 오히려 통일과 함께 현실정치적 파워게임이 시작되면서 동독의 시민운동을 주도하던 문화예술인들이 정치무대에서 사라졌다. 통일독일의 두 번째 연방의회 선거에서도 여전히 정치적 목소리를 내는 문화예술인 출신 국회의원 한 명도 없었다. 자본주의화된 통일독일의 문화예술 발전에 대해서도 실망한 그들은 통일된 독일에서도 여전히 비판적인 시민세력으로 남아 있다.

정책문서를 통해서도 문화예술인들의 저항운동과 통일 이후 그들의 사회활동을 구체적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독일통일과 문화를 논하면서 동독에서 오랜 시간 지속적으로 저항운동에 참여했던 문화예술인들의 역할을 간과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먼저 언급한 것이다.

통일된 독일연방공화국의 체제하에서 문화는 연방정부가 아니라 연방주가 주관하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와 관련된 연방정부의 역할은 지극히 제한적이다. 구체적인 문화정책을 보기 위해서는 신연방주의 사례를 찾아 보아야만 한다. 아래에서는 브란덴부르크주의 사례를 중심으로 작센, 작센안할트, 튀링겐 등 다른 신연방주의 사례도 첨부하는 방식으로 통일 이후 문화정책을 고찰해 볼 것이다. 그에 앞서 동독 체제하에서 문화의 역할에 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동독의 문화와 검열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종결된 후 독일의 동부지역을 점령한 소련군과 이 지역에 건국된 동독(공식명칭 : 독일인민민주주의공화국)은 주민들에게 ‘풍부하고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저렴하게 제공했다. 그 이유는 독일 노동운동의 역사적 경험에서 찾아야 한다. 19세기 중반 이후 독일 노동운동의 중요한 한 축은 노동자들이 시민들과 동일한 문화를 향유할 기회와 권리를 보장받는 것이었다. 그것은 노동운동이 공산당과 사회민주당으로 분리되기 이전부터 추구해 온 것이었다. 1차 세계대전의 패전으로 독일에서 왕정이 종결되고 민주주의 체제의 바이마르공화국이 등장했을 때, 노동자들이 시민들과 같은 교육을 받고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민대학운동이 활성화되었던 것도 바로 이런 노동운동의 전통이 있었기 때문이다. 1945년 동독지역을 점령한 소련군과 동독 공산당 지도부가 전쟁의 상흔이 채 가시지도 않은 이 지역에 주민들에게 문화생활을 제공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시민들이 연극을 보고, 음악회에 갈 수 있게 만들었던 것 또한 이와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

소련 점령군은 나치가 폐망한 직후인 1945년 5월 12일에 이미 점령지역의 기초단체에서 예술극장과 영화관을 다시 운영할 것을 결정했다. 동독의 청소

년을 위해 많은 청소년클럽이 세워졌다.¹ 동독 정부는 나아가 많은 미술가들에게 새로운 전망을 제시했다. 사업장과 공공단체, 관청에 걸기 위한 작품에 대한 제작의뢰가 많았기 때문에 적지 않은 미술인들이 생활할 수 있었다. 음악 분야의 경우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던 1989년까지도 동독의 상황은 아주 좋은 편이었다. 인구 천명당 교향악단 보급률로 비교하면 서독도 동독만큼 많지 않았다.²

표 2-1) 교향악단 보급률 비교

| | 교향악단 총 수 | 교향악단 대비 면적(km ²) | 1개 교향악단 대비 인구수 |
|----|----------|------------------------------|----------------|
| 미국 | 133 | 70,399 | 1,624,045 |
| 영국 | 9 | 27,114 | 6,122,222 |
| 서독 | 89 | 2,792 | 691,011 |
| 동독 | 76 | 1,435 | 218,945 |

문화와 예술은 2차 세계대전이 종료된 후 소련군이 점령한 동독지역에서 왕정과 나치의 과거를 청산하고 사회주의적 사회를 건설, 정착하는 과정에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사회주의적인 새로운 인간’을 창조하고 하나의 ‘총체적 예술품으로서의 동독’을 만드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다.³

¹ 동독의 문화 현황-중앙원탁회의의 14차 회의 결과(문서번호 26), 작센안할트 주의회의의 질의 : 사회 문화센터/예술가의 지원(문서번호 80), ‘하르츠지역’을 설립하기로 한 주의회의 결정 실행에 관한 주정부의 보고(문서번호 89),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 문화기반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문서번호 97), 작센안할트주 아동 청소년을 위한 여가 및 문화 프로그램에 관한 질의에 대한 주정부의 답변(문서번호 100),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의 문화기반 유지를 위한 제안에 대한 주의회의 심의(문서번호 101), 작센안할트주 아동 청소년을 위한 여가 및 문화 프로그램에 관한 질의에 대한 주의회의에서의 토론(문서번호 103), 작센안할트 청소년클럽에 관한 질의에 대한 주정부의 답변(문서번호 105), 신연방주의 문화 현황에 관한 질의에 대한 연방정부의 답변(문서번호 106), 통일 독일의 문화예술에 관한 질의에 대한 연방정부의 답변(문서번호 110), 튜링겐 문화의 발전에 관한 질의에 대한 주정부 문화장관의 답변(문서번호 115).

² Stiftung Mitteldeutscher Kulturrat(1993). *Kultur und Kulturträger in der DDR: Analysen*. Berlin: Akademie Verlag. p.230 이하 참조.

³ Barck, Simone / Langermann, Martina / Lokatis, Siegfried. 1998. „Jedes Buch ein Abenteuer“. *Zensur-System und literarische Öffentlichkeiten in der DDR bis Ende der sechziger Jahre*. Berlin: Akademie Verlag. Zeithistorische Studien, Band 9, herausgegeben



이를 위해서는 도시의 외관도 새롭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그 결과 동독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다시 복구될 수 있었던 많은 역사적인 건물들이 철거되거나 폭파되었다. 1950년 베를린궁,⁴ 1959년 포츠담궁,⁵ 그 외에 60개의 교회가 철거되었다. 그중 17개가 동베를린에 있던 교회였다. 경우에 따라서는 전후 다시 복원되었던 교회도 있다. 동독 정부의 철거정책에 저항하는 시민들은 당연히 체포되었다.⁶ 동독에서는 노동운동과 관련되지 않은 모든 역사적 전통은 민족주의적 또는 부르주아적인 것으로 간주되고, 거부되었다. 새로운 전통이 만들어져야만 했다. 그것은 동구권 내부의 결속을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동독은 독일 국가로서 사회주의 동구권에서 동맹국으로서의 신뢰를 얻어야만 했다. 그렇기 때문에 동독에서는 문화적으로 반파쇼 반군국주의적인 주제에 더욱 가치를 부여하였다.⁷

사회주의 문화예술의 구현을 위한 원칙은 동독이 건국되기 훨씬 전에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에서 이미 결정되었다. 1928년에 소련 공산당은 사회주의적 인간형과 사회주의적 현실주의를 문학, 미술, 음악의 기본지침으로 채택했다. 사회주의적 현실주의의 특성은 추상화, 미화하지 않으면서 현실에 근접하는 것을 이상으로 삼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현실주의 개념은 19세기 말 유행한 자연주의와 유사한 것으로 이해된다. 예술가가 당연히 사회주의적이

.....

vom Zentrum für Zeithistorische Forschung Potsdam e.V. p.12 참조. Groys, Boris(1988). Gesamtwerk Stalin. Die gespaltene Kultur in der Sowjetunion. München: Carl Hanser Verlag.

⁴ 베를린궁은 2013년부터 복원작업이 시작되어서 2019년에 완성될 예정이다.

⁵ 포츠담궁은 2010년에 다시 복원되어서 2014년부터 브란덴부르크 주의회 건물로 사용되고 있다.

⁶ <http://www.spiegel.de/einestages/protest-in-der-ddr-a-949618.html> 참조.

⁷ Belting, Hans. 1992. *Die Deutschen und ihre Kunst. Ein schwieriges Erbe*. München: Verlag C.H. Beck. p.9. Saehrendt, Christian. 2009. *Kunst als Botschafter einer künstlichen Nation. Studien zur Rolle der bildenden Kunst in der Auswärtigen Kulturpolitik der DDR*. Pallas Athene. Beiträge zur Universitäts- und Wissenschaftsgeschichte. Band 27. Stuttgart: Franz Steiner Verlag. 9, p.70 참조.

어야만 한다고 본다. 사회주의적 문화는 아주 포괄적인 개념으로 교육, 보건, 도시계획, 주택보급까지도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문화는 사회주의에서만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⁸

1930년대에 소련으로 망명한 독일 공산주의자들은 이미 소련을 통해서 동구권으로 확산되던 사회주의적 현실주의에 익숙해졌다. 그들은 2차 세계 대전이 아직 진행 중이던 1944년 9월 25일에 모스크바의 룩스호텔에서 ‘새로운 독일에서의 문화문제’에 관한 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에서 후일 동독의 문화장관이 된 요하네스 베허는 ‘우리의 문화적 과제에 관한 제언’이라는 발표를 통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우리의 과제에 관해 설명하자면 ‘평화는 다른 수단, 특히 이데올로기적 도구를 동원해서 반파시즘 전쟁을 이어가는 것이다.’ 이런 원칙을 통해 베허는 독일 국민을 재교육하고자 했다. 그것이 이념적, 도덕적 영역에서 거대한 해방과 건설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⁹

서독에서와는 달리 동독에서는 문화를 규정하기 위한 공식적인 기준이 존재했다.¹⁰ 동독 최초의 헌법에는 예술가들이 자기 능력과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보장해 주어야만 한다고 쓰여 있다. 1949년 동독 헌법의 34조에는 “예술, 학문과 그를 위한 교육은 자유로와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것은 서독의 기본법 5조 3항에 “예술, 학문, 연구, 교육을 위한 자유를 보장한다”고 쓰인 조항과 유사하다. 그러나 1949년에서 1961년 사이에 동독 총리였던 오토 그로테볼은 1951년의 사회주의통일당 중앙위원회 5차 회의에서 “예술적 아이디어는 정치적 투쟁의 진행노선을 따라야만 한다”고 못박았다.¹¹

⁸ 위의 책 p.59.

⁹ 요하네스 로버트 베허(1891-1958)는 동독 초대 문화장관이고, 동독 문화연맹 의장으로 동독 국가의 작사자이기도 하다.

¹⁰ Sommer, Frank, *Eliten- versus Massenkultur*. In Glaab, Manuela / Weidenfeld, Werner / Weigl, Michael. Hrsg. 2010. *Deutsche Kontraste 1990-2010. Politik - Wirtschaft - Gesellschaft - Kultur*. Frankfurt am Main: Campus Verlag, pp.552-555 참조.

¹¹ Grotewohl, Otto. *Die Kunst im Kampf um Deutschlands Zukunft*. Rede zur Berufung der Staatlichen Kommission für Kulturangelegenheiten am 31. August 1951. In: Schubbe,



1953년 3월 5일 스탈린이 사망하고 1953년 9월 7일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 제비서로 흐루시초프가 후계자로 선출된 후 소련을 비롯한 동구권에 서는 소위 말하는 흐루시초프에 의한 해빙기가 시작되었다. 그와 함께 문화 영역에서도 제약이 조금 완화되기 시작했다. 이런 해빙기는 1964년 10월 14일 흐루시초프가 실각하고 그의 후계자로 레오니트 브레즈네프가 임명되면서 종료되었다.

해빙기라고 하던 1956년 가을, 헝가리의 민중봉기에 직면한 동구권 국가들은 통제를 강화했다.¹² 동독의 지도부는 그나마 1961년 8월 13일 베를린 장벽의 건설 이후 일상생활과 문화예술에서 좀 더 자유를 허용하는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1960년 중반 이후에는 다시 통제와 검열이 강화되었다: 예술이 정치와 체제를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다. 1965년 12월에 열린 독일 사회주의통일당 중앙위원회 제11차 회의에서 수많은 책, 영화, 음악그룹, 연극이 금지되었다.

당시 사통당 중앙위원회 안보비서였던 에리히 호네커는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

“동독은 깨끗한 국가이다. 동독에는 윤리와 도덕, 관습과 풍습에 확고한 기준이 있다. 우리당은 제국주의자들이 사회주의에 해를 끼치기 위해 선전하는 부도덕한 것들에 대해 단호히 대처할 것이다. ... 우리는 이런 부도덕과 사회주의적 삶의 방식에 부합하지 않는 요소들을 몇몇 영화, 텔레비전 방송, 연극, 문학작품, 잡지에서 볼 수 있다고 지적하는 소리에 동의한다. ... 이런 작품들은 모순을 절대화하고, 발전의 변증법을 간과하며, 인위적인 틀에서 억지로 갈등을 조장하는 경향이 있다. 사회발전의 진실을 제대로 보

.....
Elimar, Hrsg. 1972. *Dokumente zur Kunst-, Literatur- und Kulturpolitik der SED*. Stuttgart: Seewald. p.208.

¹² Barck, Simone / Langermann, Martina / Lokatis, Siegfried. 위의 책 p.43.

지 않는다. 인간 노동의 창조적 힘이 부정된다. 개인에게 집단, 당 지도부, 국가가 마치 차갑고 낯설은 권력인 것처럼 묘사된다.”¹³

호네커의 이런 발언이 있고 난 후 3년 만에 동독이 새로 도입한 헌법에서 1949년의 헌법에 보장되었던 예술의 자유를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았다. 새로 도입된 헌법의 18조 1항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사회주의적 국가 문화는 사회주의 사회의 기반에 속한다. 독일민주공화국은 평화와 휴머니즘, 사회주의적 인류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주의 문화를 진흥하고 지지한다. 동독은 심리적 전쟁과 인간을 멸시하는 데 도움이 되는 타락한 제국주의적 문화를 퇴치할 것이다.”

이 기본원칙이 동독에서 폐지된 것은 1990년 6월 17일, 불과 통일되기 몇 달 전의 일이다.

동독 국가보위부의 사전에는 ‘문화와 예술, 오용’이라는 항목에 다음과 같은 설명이 있다:

“정치적 지하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사회주의 사회의 예술과 문화 영역에서 반사회주의적 사고, 이론, 개념 등을 퍼트리는 등 다양한 형식의 적대행위를 악용하려는 내부와 외부의 적들은 미술가, 예술가, 언론인들 간에 이념적 거치대의 구축과 헌법에 위배되는 결사체의 구성을 통해 사회주의적 의식형성을 이상한 목적으로 악용하거나 오용하기 위해 영향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¹⁴

.....

¹³ Kaiser, Paul. 2016. *Boheme in der DDR. Kunst und Gegenkultur im Staatssozialismus*. Dresden: DIK Verlag UG. p.85 참조.

¹⁴ Bundesbeauftragter für die Unterlagen des Staatssicherheitsdienstes der ehemaligen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Abteilung Bildung und Forschung. Hrsg. 1994. *Das Wörterbuch der Staatssicherheit. Definitionen des MfS zur „politisch-operativen Arbeit“*. Berlin. p.233.



이런 틀에서 동독의 비밀경찰은 예를 들어 예술대학의 학생선발 결정과 정에도 개입했다.¹⁵

동독 지도부에게 이적행위는 모든 예술영역에서 퇴치되어야만 하는 것이었다. 연극은 ‘새로운 국가와 시민의 정체성 형성에 긍정적인 역할’을 담당할 의무가 있었다.¹⁶ 그렇기 때문에 동독 문화부는 동독의 모든 예술극장의 프로그램을 심사했다. 동독에서 처음 공연되는 모든 작품은 문화부를 통해 허가를 받아야만 했다. 연극 연습은 감시되었고 관객의 반응은 분석되었다. 1950년대 말 해빙기에 제작된 많은 영화들이 동독 국가영화 아카이브에 보관되어 있다. 그 영화들은 관객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영화학자들이 학문적 연구의 목적을 위해 접근할 수도 없었다. 이런 영화들은 지하실 영화 또는 서가의 영화라고 불렸다. 어떤 사람은 이런 영화들이 1965년 12월 사통당 중앙위원회 11차 회의 이후 금지된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회의영화’라고 부르기도 했다.

동독의 문학은 1963년 이후 문화부 내 출판 및 서적유통관리부를 통해 감시되었다. 1951년에서 1956년 사이에는 출판 및 문학청이 이 업무를 담당했다. 그 후 몇 차례 변화를 거쳐 1963년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출판 및 서적유통관리부가 담당했다.¹⁷ 출판된 원고는 모두 중앙행정국에 제출되어야만 했다. 그곳에서 원고의 정치적 메시지를 검토했다. 검토대상은 예를 들어 동독, 동구권 또는 사회주의에 관한 내용이었다. 많은 원고들은 출판을 위한 검열에 제출되지도 않은 채 저자가 자기검열을 통해 스스로 포기하거나 출판사의 사전검열을 통해 걸러진다. 이런 경우 개별 출판사가 중앙행정국을 핑계

¹⁵ Offner, Hannelore und Schroeder, Klaus. Hrsg. 2000. *Eingegrenzt - Ausgegrenzt. Bildende Kunst und Parteiherrschaft in der DDR 1961-1989*. Studien des Forschungsverbundes SED-Staat an der Freien Universität Berlin. Berlin: Akademie Verlag. p.239.

¹⁶ Bradley, Laura. *Cooperation and Conflict. GDR Theatre Censorship, 1961-1989*.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p.2.

¹⁷ Barck, Simone / Langermann, Martina / Lokatis, Siegfried. 위의 책 p.61 참조.

로 내세울 수도 있다. 원고를 거절하는 이유로 중앙행정국이 거부했다고 할 수도 있다.¹⁸ 중앙행정국은 나아가 ‘허가된 출판계획에 따라’ 어느 출판사에 얼마만큼의 종이를 배급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결정한다.¹⁹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로 임명된 이후 소련에서 온건적 개혁정책을 취하는 것에 대해 동독 지도부는 비판적이었다. 동독 지도부는 심지어 소련의 잡지를 검열하기도 했다. 소련에서 1987년에 처음 상영된 ‘후회(모나니바)’라는 영화가 스탈린주의를 아주 부정적으로 묘사한다는 이유로 동독과 다른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에서는 금지되었다. 그러나 이 영화는 소련에서 가장 중요한 영화제에서 수상하였다. 동독 지도부는 1988년 11월 18일에 스푸트니키라는 소련의 잡지를 수입·배포 금지했다. 이 잡지에 2차 세계대전 중인 1939년 8월 24일에 독일과 소련이 불가침협정을 체결했다는 것이 언급되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동독의 사통당이 그때까지 부정해 왔던 사실이었다. 나아가 이 잡지는 1920년대 독일 공산당이 스탈린의 노선을 추종한 것을 비판했다.²⁰

에리히 호네커는 1988년에 ‘동독식 사회주의’라는 말을 만들어 냈다. 그것은 물론 소련에 대한 동독의 자립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다. 동독 지도부는 문화예술에 대한 강한 검열을 지속하는 한편 1970년대 이후 동독의 예술을 비사회주의 국가에 수출하는 것에도 관심을 보였다. 1977년에 동독은 동구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유일하게 북부 독일의 도시 카셀에서 열리는 현대미술 비엔날레인 ‘도큐멘타6’에 참가했다.²¹

¹⁸ Barck, Simone / Langermann, Martina / Lokatis, Siegfried. 위의 책 p.49 참조.

¹⁹ § 2 e) der Verordnung über die Entwicklung fortschrittlicher Literatur. 위의 책 p.783 참조.

²⁰ <http://www.jugendopposition.de/index.php?id=195> (2016년 12월 8일 읽음) 참조.

²¹ Saehrendt, Christian. 위의 책 p.10, p.107 참고. 도큐멘타는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현대미술전이다. 5년마다 개최되며 1955년에 시작되었다. 1972년에도 동독의 예술가들이 참여할 계획이었으나 동독 당국이 동독만 사회주의권에서 유일하게 참가하도록 하라고 고집하는 바람에 성사되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서 서독의 유명한 화가 요르크 임멘도르프는 “동독의 미술작품이 정말 예술품

동독과 서독 간의 문화교류

동독과 서독은 1972년 12월 21일에 조인한 기본협정서에서 이미 문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한다고 합의하였다. 그러나 기본조약 체결 이후 5차례 열린 회의는 아무런 성과를 얻지 못하였고, 문화협정과 관련된 논의는 일단 중단되었다. 협상과정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던 핵심적인 문제는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서독지역으로 옮겨졌던 동독의 문화재를 원위치, 즉 동독지역으로 다시 돌려주는 것이었다. 문화협정을 위한 협상은 1983년에 다시 재개될 수 있었다. 12차례 회의가 열리는 동안 협정의 원칙, 개념 및 언어규정이 논의되었다. 그러나 문화재 환수와 관련된 문제는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문화협정을 통해 연간 업무계획이 작성되었고 2년 동안 문화의 다양한 영역에서 약 100개의 프로젝트를 실행하기로 합의했다. 그것은 미술, 문학, 음악, 영화, 학술, 교육, 문화재 관리, 박물관, 도서관, 문서고, 청소년, 체육 등 문화와 관련된 거의 모든 부분을 포함했다.

동독이 1983년에 서독과 문화협정에 대한 협상을 시작한 것은 독일의 역

이라고 나는 믿지 않는다. 범죄적인 체제의 장식물을 만들어 주기 위해 물감을 동원한 것일 뿐이다. 나는 악한 사람이 아주 좋은 그림을 그리거나 윤리적 기반 없는 예술이 가능하다고 보지 않는다.” Dittmar, Peter. Hrsg. 1997. *Künstler beschimpfen Künstler*. Leipzig: Reclam Verlag. p.43 인용.

사와 문화에 대한 동독 내의 입장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 1980년대 들어 동독 지도부는 소련과 거리를 두기 위해 노력한 반면에, 독일 역사와 문화에 대해 보여 온 거부감을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그 결과 1983년 마틴 루터 탄생 500주년 기념행사에 교회와 국가의 대표들이 함께 참석하기도 했다.²² 나아가 프리드리히 대제, 오토 폰 비스마르크 등과 같이 역사적으로 중요한 인물에 대해서도 과거에 비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시작했다. 서독에서 만들어진 작품이 동독에서 주목을 받기도 했다. 1980년 말에는 드레스덴, 오더강의 프랑크푸르트, 포츠담에서 서독의 영화와 단편영화가 상영되었다.²³ 한편 서독의 헬무트 슈미트 수상이 1985년에 자신의 공식적인 초상화로 동독의 화가 베른하르트 하이지히가 그린 작품을 선택하기도 했다.

이러한 변화가 1986년 동서독 간의 문화협정 체결을 가능하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동서독 간의 문화협정 체결 직전인 1986년 3월 14일에 헬무트 콜 수상은 ‘분단된 독일의 현황에 대한 연방정부의 보고’라는 제목의 연설에서 동서독 간의 문화 관계의 긍정적인 발전에 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역사와 문화, 정체성 추구, 국가조직은 독일 민족의 의식 속에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일 문화는 모든 독일인들이 하나라는 공동의 감정을 갖게 해 주는 본질적인 것입니다. 신사 숙녀 여러분, 지난 몇 년 동안 중요한 기념일들과 행사들이 우리로 하여금 이런 감정을 다시금 상기하게 만들었습니다.

1983년에 우리 독일인들은 루터의 해를 맞았습니다. 이 종교개혁가의 업적은 우리 민족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틴 루터에 대한 기억은 우리 독일인이 공동의 정신적 뿌리를 갖

²² Le Gloannec, Anne-Marie. 1991. *Die deutsch-deutsche Nation. Anmerkungen zu einer revolutionären Entwicklung*. München: printul Verlagsgesellschaft mbH, p.51.

²³ Bundesministerium für innerdeutsche Beziehungen. 1986. *Innerdeutsche Beziehungen. Die Entwicklung der Beziehung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1980-1986. Eine Dokumentation*, Bonn: Bundesdruckerei, p.12.



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의식하도록 해 주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으로 드레스덴의 젤퍼 오페라하우스가 파괴된 지 40년 만에 다시 개관했습니다. ... 동독이 파괴와 황폐화 정책을 접고 역사적 문화재를 보수하기 시작한 것은 우리의 공동 문화적 유산을 위한 일입니다. 이 자리에서 로스토크의 700년 된 ‘쭌하일 리겐 크로이쯔’ 수도원의 보수공사와 베를린의 ‘독일예술극장’의 재개관, 이 두 가지 사례만 들겠습니다.

동독과 서독의 독일인들은 공동의 문화를 의식하고 그것을 함께 관리할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의식을 갖고 있다는 사실은 하인리히 슈츠, 요아힘 세바스티안 바흐, 게오르그 프리드리히 헨델과 같은 독일과 유럽의 작곡가를 기념하는 행사들을 통해 증명되었습니다.

괴테협회 100주년 기념행사 또한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과 그 속에 있는 공동체를 위한 기회를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동서독 간의 교량역할을 하고 있는 괴테협회는 대문호 괴테의 이름 때문에 만 그 가치를 갖는 것이 아닙니다. ... 우리는 이 협회를 통해 오래된 과거의 흔적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국경을 넘어 더 많은 문화적 공통성을 키우기 위한 모델로 이해해야만 합니다.

현재 동독과 서독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양국 간의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도 그런 기회를 개선하는 데 일조할 것입니다. 연방정부는 이 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을 환영합니다. 그것을 달성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동독의 주민들과 다양한 문화적 교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원했던 모든 조항들이 실현된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협정은 더 많은 공통점을 인지하기 위한 중요한 기회입니다. 이 협정을 통해 많은 영역에서 이

미 존재하는 문제적 교류가 진흥되고 협력의 확대가 원활해질 것입니다.

미술에서 문학, 음악, 교육, 학술, 문화재 관리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연방정부는 이 협정을 종착점이 아니라 시작으로 보고 있습니다. ... 제가 특히 강조해야 할 것은 이 협정을 위한 협상과정에서 연방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했다는 사실입니다. ...

신사 숙녀 여러분, 우리는 공동의 문화 유산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이것 또한 적극적인 독일 정책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동독 지도부가 얼마 전부터 이전과 비교할 때 더욱 강하게 독일 역사를 인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노력이 동독의 사회주의 국가가 자신의 방식으로 역사적 근거를 찾기 위한 작업의 일환이라는 것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역사에 대한 서술과 해석에서 그것을 인지할 수 있을 때에만 역사는 공동체의식과 정체성을 만들어 줍니다. 언어, 문화, 법, 종교, 가치, 전통 등은 한 민족의 기억을 위한 변형될 수 없는 분명한 증인입니다.”²⁴

콜 수상이 이 보고연설을 하고 2주일이 지난 1986년 4월 3일에 동독과 서독은 문화교류협정을 체결했다. 서베를린으로 옮겨졌던 쉴러의 동상이 원래 있었던 동베를린 예술극장 앞 아카데미 광장으로 옮겨졌다. 서베를린은 그 대신에 한 개의 동상과 29개의 부조 그림을 돌려 받았다. 동서베를린 간의 문화재교환은 1981년 4월에 시작되었다. 그때 동베를린은 미테지역에 있는 마르크스-엥겔스다리의 장식을 위한 조각상 그룹을 돌려받았다. 서베를린은

²⁴ Bundesministerium für innerdeutsche Beziehungen, 위의 책 문서번호 124, p.238 이하.



프러시아 왕립 도자기공장의 아카이브문서를 받았다.²⁵

1986년 5월 6일에 동서독 간의 문화협정이 발효되었다.²⁶ 동독은 이미 1950년에 불가리아, 루마니아, 헝가리와 문화협정을 체결했다. 그리고 1952년에서 1955년 사이에는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소련과 문화협정을 체결했다.²⁷ 동독과 서독 간의 문화협정은 1973년부터, 다시 말해 13년 동안 준비된 것이었다. 이 기간 동안에 서독에서는 빌리 브란트, 헬무트 슈미트, 헬무트 콜 등 세 명의 수상이 정권을 잡았다. 동일한 기간 동안 동독에서는 발터 울브리히트에서 에리히 호네커로 지도부가 교체되었다. 1987년 11월에는 문화협정을 근거로 동서독 간에 100개의 협력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이 틀에서 미술, 문화, 대학, 직업교육, 학교, 출판, 도서관, 문서고 등의 영역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고, 서독의 도서전시회를 동독지역에서 개최하는 것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협력도 시도되었다.²⁸

동독 지도부에게는 서독과의 문화교류를 통해 네트워크가 지속적으로 강화되면 동독 사회에 서독이 더 강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큰 문제였다. 그렇기 때문에 1980년대 동독의 문화교류정책은 분명한 전략이 없이 변덕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었다.²⁹

.....
²⁵ 원래 장다멘마르크트로 불리던 이 광장은 1946년에 아카데미광장으로 개칭되었다. 이 광장이 프러시아 왕립 아카데미에 인접해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1991년에 이 광장은 다시 장다멘마르크트로 개칭되었다. 베를린의 솔로스다리는 1951년에서 1991년 사이에 마르크스-엔겔스다리로 불렸다. Bundesministerium für innerdeutsche Beziehungen. 위의 책 문서 번호 126, p.245.

²⁶ 동서독 문화협정(문서번호 2).

²⁷ Saehrendt, Christian. 위의 책 p.70.

²⁸ 동서독 간의 문화교류 합의에 관한 내독성의 설명(문서번호 4).

²⁹ Saehrendt, Christian. 위의 책 p.68 이하 참조.

개혁기 동독의 문화정책

1989년 가을 동독의 개혁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문화예술인들은 개혁 정부의 문화정책에 대해 많은 요구를 제시했다. 특히 동독 개혁기 초반에 정치적,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원탁회의를 통해 이들의 요구가 전달되었다. 동독의 문화정책을 점검한 중앙원탁회의의 14차 회의에서 정부가 헌법에 동독이 문화국가라고 명기할 것을 요구하고, 시장경제적 기준이 문화영역에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못박으면서, 문화국가 구축을 위해 시민참여권을 확대해서 문화의무법을 제정하라고 요구한 것은 개혁기 동독의 문화예술인들이 어떤 이상적인 사회를 꿈꾸었는지 잘 보여준다.³⁰ 그들은 모든 사람이 자유로운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물질적 조건을 보장해 주는 그런 사회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1990년 3월 18일 동독 최초의 자유 총선거 후 로타 드 메지에르 수상이 이끄는 정부가 구성되고 조속한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작업이 시작된 이후 동독 사회의 개혁은 이상적인 사회를 실현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었다. 서독의 사회적 시장경제 체제를 동독에 신속하게 접목시켜서 통일을 위한 조건을 만드는 것이었다. 그 결과 변화된 새로운 사회를 꿈꾸던 문화예술인들의 실망도 클 수밖에 없었다.

³⁰ 동독의 문화 현황-중앙원탁회의의 14차 회의 결과(문서번호 26).



1989년 11월부터 1990년 10월 2일 사이에 동독의 문화정책과 관련된 중요한 주제는 물론 동서독 문화공동위원회였다. 그 외에 구도심의 폐허화문제가 개혁 초기에 중요한 사안이었다. 이 시기에 동독에서는 문화예술과 관련된 다양한 시민단체가 창립되기도 했다.

제1절 폐허화되는 구도심문제

1989년 동독에서 평화로운 시민혁명이 시작되었을 때 동독 도시의 구도심지 폐허화가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였다.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기 직전인 1989년 11월 6일에는 동독의 문화재관리청과 문화재보호국 책임자들이 최고인민회의 문화상임위원회 위원장과 정부에 공개서한을 보내서 이 문제에 대한 조속한 해결책을 마련하기를 요구하기도 하였다.³¹ 이 문서에서 우리는 1989년 가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전에 이미 동독 내부에서 변화의 필요성을 인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잘 볼 수 있다.

역사적으로 중요한 도시의 구도심을 살리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만 한다는 입장은 동독의 건축정책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비판하는 것이었고, 그것은 당연히 지배 체제에 대한 비판이었다.³²

동독 도시 구도심의 폐허화로 인한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구체적인 지적은 문화연맹 문화재관리부장의 분석을 통해서 잘 볼 수 있다.³³ 그에 따르면 1989년 당시 동독 도시의 구도심은 사회적인 불안정을 야기할 정도로 최악의 상태에 처해 있었다. 지역의 문화재, 특히 고건축물들은 사람들이 고향에 대한 귀속감을 갖게 해 주지만, 동독에서는 그런 고건축물들이 수십 년간

.....
³¹ 문화재 관리 전문가들이 동독 최고인민회의 문화상임위원회 위원장과 문화부장관 및 내각위원회 의장에게 보낸 공개서한(문서번호 5).
³² 1989년 11월 3-4일에 열린 문화재보호협회 중앙위원회 심의 요약(문서번호 6).
³³ 우리 도시들을 구할 수 있을까?-동독 문화연맹 문화재관리부 부장의 글(문서번호 8).

방치된 결과 주민들이 고향에 대한 귀속감을 갖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는 문화재 관리는 사치가 아니며, 오히려 역사적인 근원을 지키게 해 주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동독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원인은 무엇보다 잘못된 건축정책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역사적인 건물들을 대거 철거했기 때문에 동독 도시들이 대부분 자신의 얼굴을 상실하였다는 것이다. 몇몇 도시에서는 이미 문화재급 고건축물의 삼분의 일 이상이 폐허가 되었고, 그것이 수많은 동독 주민들이 고향을 떠나게 만든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았다. 동일한 시기에 동독의 문화재보호관들은 독일이 중부 유럽의 문화국가라는 자부심을 계속 갖기를 원한다면 이제 그런 폐허화와 철거는 중단되어야만 한다고 정부와 시민사회에 호소했다.³⁴

이런 호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동베를린 중심가인 미테지역의 건물을 계속 철거하자 ‘테힐레스그룹’이라 불리는 예술가들이 동베를린시 오라니엔부르크가 54번지의 건물을 점령하기도 했다. 이 건물의 부분적인 철거는 이미 1980년에 시작되었다. 동베를린 미테 구청은 1990년 4월 10일에 이 건물을 폭파할 예정이었다. 이 건물을 점령한 ‘테힐레스그룹’은 1990년 3월 7일에 동독의 켈러 문화장관을 만나서 이 건물의 철거작업을 중지해 주기를 요청했다.³⁵ 테힐레스그룹은 그들이 점령한 건물을 창작실로 지속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물의 점령을 합법화해 주기를 요구하였다. 그 후 이 건물은 임시로 문화재로 지정되었다가 1992년 문화재로 확정되었고, 통일 이후 젊은 예술인들이 모이는 상징적인 공간이 되었다.³⁶

³⁴ 동독 시민에 고향 “우리의 구도시를 폐허화로부터 구하고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면서 도시와 공동체의 미래를 만들어 갑시다.”(문서번호 10).

³⁵ 미술관의 장래-테힐레스그룹이 문화장관 켈러와 베를린 미테 구청장에게 보낸 문서(문서번호 27).

³⁶ 다양한 그래피티가 그려져 있는 이 건물은 창작과 문화활동을 위한 센터이며, 현대미술 판매실, 창작실, 전시실, 극장, 주점, 연극무대가 있다. 2008년 12월 31일까지 상징적 월세로 1스퀘어미터당 1마르크를 내기로 합의하였다. 그 후에 건물의 사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합의도 이루지 못했다. 2012년 9월 4일에 이 건물에 있던 모든 미술 창작 시설은 철거되었고, 그 후 건물은 아무도 사용하지 않은 채 비어 있다.



제2절 다양한 문화시민단체의 창립

동독의 많은 예술가들이 1980년대에 동독 체제의 민주적 변혁을 위해 적극적으로 저항운동에 참여했다. 문화예술이 국가로부터 자유롭고 탈중앙집권화되어야만 한다는 것이 그들의 기본적인 입장이었다. 그러나 베를린 장벽이 붕괴된 이후 예술인들은 오히려 동독 문화의 장래에 대해 우려를 표하기 시작했다.³⁷ 그들은 이미 가시화되기 시작한 문화의 상품화에 대해서도 아주 비판적이었다. 그런 비판적인 예술가들이 1989년 12월에 동독 예술가의 이름으로 하나의 협회를 창립할 것이라고 한스 모드로우 수상에게 통보했다.³⁸

동독의 개혁기에는 ‘동독 예술가협회’와 같은 비교적 큰 규모의 단체 외에도 지역 단위의 소규모 그룹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다. 그중에는 1989년 12월 11일에 동베를린의 음악인 4명이 창립한 프렌츨라우어베르크 자율행동과 같이 동독의 문화적 자율성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것도 있다.³⁹ 이 단체의 경우 동독의 매각에 반대하고 이 지역에 신나치가 극성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토론회와 극우파에 반대하는 음악회를 개최하며 동독에서 현재 자발적으로 설립되고 있는 모든 그룹들 간의 교류네트워크를 구축하려고 노력했다. 동시에 그들은 서독인들이 동독을 방문할 때 동독 화폐를 교환하는 의무를 폐지하고 비자의무를 도입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렇지 않을 경우 서독에서 사회보조금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물가가 훨씬 싼 동독에 와서 살려고 할 것이라는 근거없는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⁴⁰

예술가들의 단체 외에도 향토동호회와 같은 시민단체도 설립되었다. 적지

37 문화장관 켈러가 모드로우 수상에게 제출한 1989년 12월 20일자 예술가협회 선언문에 대한 입장(문서번호 18).

38 동독 예술가협회 공동 선언(문서번호 13).

39 ‘프렌츨라우어베르크 자율행동’에 관한 자료 및 문화부 지침(문서번호 15).

40 동서독 간의 협정을 통해 1964년 이후 동독을 방문하는 서독 주민은 일정한 금액의 동독 마르크를 지정환율에 따라 교환해야만 했다. 지정환율은 물론 시장환율에 비해 훨씬 불리하였다. 이 제도는 1989년 12월 24일에 폐지되었다. 이와 유사한 제도는 대부분의 사회주의 국가에 있었다.

않은 경우 서독에 이미 존재하는 시민단체나 동호회를 모방해서 조직되었거나 서독의 단체들이 직접 나서서 동독에 지부를 설립한 것이었다.⁴¹

제3절 개혁과 일상업무의 공존

개혁이 시작되어도 일상적인 삶이 지속된 것처럼 문화 관련 일상적인 업무도 진행되어야만 했다. 정부의 문화예산을 정하는 것도 그런 일상적인 업무에 포함되었다. 1990년 3월 18일의 자유총선거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통일을 실현할 것이라는 결정이 내려졌지만 구체적인 일정이 완전히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동독 과도정부는 1991년도 예산안을 작성했다. 1990년 6월에 문화부 예산재정 담당 국장이 문화예산안 심의를 위해 장관에게 제출한 자료에는 베를린의 국립박물관 건축과 독일동의 수리작업, 슈트랄준트, 크베들린부르크, 슈베린, 에어푸르트의 구도심 재건, 예술대학 운영비 등이 언급되었다.⁴² 이 사례는 베를린 장벽 붕괴 이전에 시작된 사업이라도 완성되지 않은 채로 중단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개혁정부의 업무가 더 쉽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개혁기 동독 정부의 문화부는 국립영화사,⁴³ 박물관,⁴⁴ 아카이브⁴⁵ 등 모든 문화시설과 조직의 구조전환 업무를 주관해야만 했다. 구조전환 방식은 민영화를 비롯해 새로운 재단의 설립 또는 감독기관의 변경 등 다양했다.

⁴¹ 독일 자연 및 향토동호회의 창립발의 및 지원(문서번호 21), 서독의 향토협회와 동독의 자연 및 향토동호회 간의 협력에 관한 보도자료(문서번호 23), 향토문화사협회의 창립선언문(문서번호 25), 문화협회의 정관(문서번호 43).

⁴² 동독 문화부 예산안 심의-문화장관에게 제출한 자료(문서번호 36).

⁴³ 영화도시로서의 베를린-전문가 회의 보고서(문서번호 34), DEFA-재단의 설립에 관한 결의(문서번호 53), 영화진흥 프로그램을 위한 기본방침 결정(문서번호 54).

⁴⁴ 독일역사박물관 향후 발전에 관한 결정(문서번호 50).

⁴⁵ 국립아카이브와 관련된 조치-동독 내각위원회 결정(문서번호 30), 동독 문화유산보호법 시행령-문화유산보호법(문서번호 49).



이 시기에는 수많은 서독의 조직과 단체, 기업이 동독에 진출해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했다. 그들이 항상 동독의 변혁을 위해서 건설적으로 활동한 것은 아니다. 특히 민간기업은 주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다. 그들에게 동독은 개척대상이자 기회와 땅, 일종의 ‘동쪽의 황야’였던 것이다. 문화예술 분야도 예외가 아니었다.

그중 하나의 사례가 서독의 산업디자인 회사가 한스 모드로우 정부의 문화부장관에게 베를린 장벽의 상품화를 제안한 것이다. 이 회사는 시대의 상징인 베를린 장벽을 역사의 경지로 남기고 관광상품으로 활용할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싶다고 장관 면담을 요청했다. 그들은 이미 베를린 예술가협회에서 동베를린 쪽의 장벽에 그림을 그리기 위한 국제적인 공모를 진행중이라는 사실도 인지하지 못했다.⁴⁶

제4절 동서독 공동문화위원회

동독과 서독 정부는 1989년 12월 19일 헬무트 콜 수상이 동독의 드레스덴시를 방문했을 때 발표한 최종성명서에서 동서독 공동문화위원회를 설치한다고 발표했다. 그 이유는 동독과 서독이 체결한 기존의 문화협정이 제대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동독의 입장에서 볼 때 유럽통합 과정의 틀에서 문화협력이 있어야 하며, 양국이 문화재 관리, 공동문화유산의 보존, 젊은 문화예술인 지원, 문화행사 등 다양한 문화영역에서 협력을 위한 양국 간의 규정을 준비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 위원회의 설치에 동의해야 한다고 켈러 문화부장관이 한스 모드로우 수상에게 1989년 12월 12일에 보고했다.⁴⁷ 공동문화위원회는 양측 문화부장관과 전문가들로 구성되었다.

.....

⁴⁶ 베를린 장벽을 관광상품으로 만드는 방안-동독 문화부장관과 산업디자인회사 A.+B. Ecke 간의 서신 교환(문서번호 12).

⁴⁷ 동독과 서독 간의 공동문화위원회의 업무와 목적에 대한 제안(문서번호 11), 동독과 서독 간의 공동문화위원회 설립에 관한 결정(문서번호 29).

1990년 3월에 비교적 신속하게 공동문화위원회가 설치되었다. 그러나 1990년 3월 18일 자유총선거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통일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내세운 로타 드 메지에르가 수상으로 선출된 동독과 서독 정부는 구체적인 통일준비 작업에 돌입했다. 그런 상황에서 공동문화위원회는 주로 통일과정에서 문화영역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였다. 문화도 통일조약의 협상 대상에 포함시켜야만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⁴⁸ 실제 통일 조약의 8장은 문화에 관련된 것이다.

양측 대표들은 문화통합에 관해 논의하면서 특히 시장경제 체제로 전환 되는 과도기에 동독지역 예술가들의 생계를 보장할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과 동독지역에 별도의 문화재단을 구축하는 것보다는 서독에 있는 기존의 문화재단들이 활동영역을 동독지역까지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합의했다.⁴⁹

공동문화위원회의 전문위원회는 동독의 문화예술 현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 동독 정부가 예술교육과 문화 인프라 구조 확대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오히려 장벽 붕괴 이후 동독의 문화 인프라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해체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런 추세를 막아야만 동독에서 문화생활이 새로운 자극제를 얻게 되고 동독의 예술가들을 동독에 머물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⁵⁰

이러한 우려는 화폐통합이 시행되기 3일 전, 1990년 6월 28일에 서독의 수도 본에서 열린 동서독 공동문화위원회 2차 회의에서도 논의되었다. 동독의 쉬르머 문화부장관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동독의 문화기반 구조가 붕괴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으며, 동독의 예술인들 사이에서 동요의 조짐이

⁴⁸ 동서독 문화위원회 2차 회의 결과보고서(문서번호 42).

⁴⁹ 동서독 문화통합의 구체화-동독 문화부장관 쉬르머와 서독 내독성 장관 도로테 빌름스 간의 회담에 관한 메모(문서번호 35).

⁵⁰ 동서독 문화위원회 제 III 전문위원회 제안 및 동서독 문화위원회 2차 회의 보고(문서번호38).



보인다고 발언했다.⁵¹ 이를 위한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더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 회의에서 쉬르머 장관은 문화 정책과 관련해 13개 조항을 제안했다:

1. 문화, 예술이 통일과정의 중요한 한 축이어야만 한다.
2. 동독이 문화부를 청 단위의 중앙관청으로 존속시켜야만 한다.
3. 과도기 연방과 주정부의 재정 프로그램을 도입하도록 한다.
4. 동독지역에서도 서독의 예술가 사회보험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5. 소르벤 소수민족의 보호정책은 지속되어야 한다.
6. 기존의 접경지역 지원 프로그램을 국경지역으로 확대 적용한다.
7. 전후 분산된 프러시아 문화재를 베를린으로 통합한다.
8. 역사적으로 중요한 고건물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9. 동독 영화스튜디오를 확장한다.
10. 동독 문화예술 교육기관은 존속·발전되어야 한다.
11. 동독 예술가의 활동 지원 프로그램이 도입되어야 한다.
12. 동독 아카이브는 보존되어야 한다.
13. 문화위원회와 예술가, 미디어 간의 합의가 필요하다.

쉬르머 장관의 제안 중에서 동독지역이 독일연방공화국에 가입한 후에, 다시 말해 동서독이 통일된 후에 독일 전역을 아우르는 문화정책을 관장할 수 있는 청 단위의 중앙정부기구를 설치하자는 제안은 서독 측에 의해 거부되었다.

⁵¹ 동서독 문화위원회 2차 회의 중 동독 문화부장관의 발언(문서번호 41).

통일 이후의 문화정책-연방정부와 신연방주 정부의 역할

독일의 연방제 체제하에서 문화정책은 연방주와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영역이다. 연방정부 차원에서 문화를 담당하는 부처나 청 단위의 기구가 존재하지 않는다. 수상실에 차관급의 문화담당관이 있을 뿐이다. 1980년대 서독에서 문화와 관련된 공적 지출 중에서 연방정부가 지출한 것은 약 3%밖에 되지 않는다. 외국과의 문화정책만 연방정부가 담당하는 영역이다.⁵² 물론 독일 민족 전체에게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면 연방정부도 문화영역에 기여할 수도 있다. 통일 이후 신연방주 문화예술 영역에서 구조를 전환하고 새롭게 구축하는 것도 그런 과제로 간주될 수 있었다. 연방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문화를 전담하는 부처가 신설되지는 않았지만 연방정부는 통일 이후 신연방지역의 문화예술 지원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구동독지역에 새롭게 구축된 신연방주들이 지역 문화예술의 구조전환과 구축 업무를 담당할 역량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었다.⁵³ 연방정부는 통일조약을 근거로 구동독지역의 문화정책에 개입할 수 있었다.

⁵² ‘변동하는 세계 속에서 문화민족으로 통일된 독일의 이미지’-연방의회 질의에 대한 연방정부의 답변(발췌)(문서번호 108).

⁵³ 신연방주에서의 문화진흥에 관한 질의에 대한 답변(문서번호 102), 신연방주의 문화 현황에 관한 질의-연방의회 심의(문서번호 107), 문화 분야를 위한 과도기재원-연방주별 지원금액 현황 1991-1993(문서번호 117), 신연방주의 문화 현황에 관한 질의에 대한 연방정부의 답변(문서번호 106).



제1절 통일조약과 문화

1990년 8월 29일에 동독과 서독이 체결한 통일조약 8장에는 문화, 교육, 학문, 스포츠에 관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두 개의 독일이 서로 상이한 발전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분단시기 동안 문화예술은 독일 민족의 통일성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해 준 기반이었다. 문화와 예술은 유럽연합으로 가는 길에서 이루어진 동서독의 국가적 통일과정에 독자적이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기여를 했다. 세계 무대에서 통일된 독일의 위상은 정치적 비중과 경제적 성과 외에도 문화국가로서의 역할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게 된다.”

통일조약의 8장 35조에는 구동독지역의 문화 제반시설을 비롯한 문화영역이 통일로 인해 그 어떤 해를 입어서도 안 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그것은 통일조약 협상과정에서 동독 측 협상대표들이, 특히 동독의 문화유산 중에 보존되어야 할 가치가 있는 것들이 손상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강하게 주장하면서 관철시킨 것이었다. 실제로 통일조약 8장 35조의 내용은 동독 문화부가 통일조약 협상을 앞두고 동독의 입장을 정리한 문서와 크게 다르지 않다.⁵⁴

통일조약 8장 35조에는 동독에서 이루어졌던 모든 문화활동이 동일한 형태로 지속될 수는 없겠지만, 신연방지역에서 문화활동의 토대는 유지·보존되어야만 한다고 분명히 밝혔다. 동독의 법 체계에 따라 중앙정부가 관리해 오던 문화시설은 새로이 구축될 주정부와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며, 연방정부는 신연방지역의 문화정책을 위한 재정에 일정한 기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문화정책의 최종적인 결정권과 책임은 연방주와 기초지

⁵⁴ 통일조약을 위한 임시 협상주제 목록 중 문화영역에 대해 합의된 입장(문서번호 16), 통일조약 해설-Ⅷ장 35조-문화(문서번호 51), 통일조약 Ⅷ장 35조-문화(문서번호 52).

방자치단체가 갖고, 연방정부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공동으로 재정을 부담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신연방지역에 문화적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연방정부가 분단시기 서독에서 시행되었던 접경지역 지원 프로그램과 같이 제한된 기간 동안에 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합의했다.⁵⁵

제2절 신연방주 문화정책을 위한 연방정부의 지원

연방정부는 1991-1993년 사이에 문화영역의 과도기 재정지원의 틀에서 신연방주와 기초단체의 문화시설 유지를 위해 33억 마르크를 제공하였다. 1993년 연방의회는 토론에서 연방정부는 신연방지역 문화시설의 기본적인 조건은 이미 서독지역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고 보고했다.⁵⁶ 신연방주를 위한 과도기 재정지원의 틀에서 시행된 문화 인프라 프로그램은 특히 사회문화적으로 중요한 시설과 청소년 지원을 위해 중요한 문화시설을 유지하는데 기여하였다고 자체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기본적인 문화틀을 유지하기 위한 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대부분의 재원이 전통적인 문화시설을 위해 쓰여졌다고 하였다. 1994년에도 신연방주와 기초단체에 소속된 문화시설을 위해 2억 5,000만 마르크가 동독 정당 및 대중조직의 재산을 바탕으로 형성된 기금을 통해 지원되었다. 1995년 1월 1일 이후에는 연방주 간의 균형재정법 규정을 통한 지원만 제공하며, 연방정부에 의한 추가 지원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방정부는 나아가 신연방주와 기초단체들이 구조조정을 통해 예술극장과 오케스트라를 위해 지출하는 비용을 절감해야만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실제로 연방정부는 1994년까지 과도기 동안 신연방주의 문화정책에 제공

⁵⁵ 통일조약 해설-VIII장 35조-문화(문서번호 51).

⁵⁶ 신연방주의 문화 현황에 관한 질의에 대한 연방정부의 답변(문서번호 106).



하던 재정지원을 점차 축소하다가 1995년에는 완전히 중단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신연방주 정부와 지방의 기초자치단체들이 1995년 이후에도 여전히 자체적으로 문화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재정능력을 보유하지 못한 상태였다.⁵⁷ 연방주의 원칙에 따르면 기초자치단체들이 문화예산의 65%를 자체부담해야만 하지만 신연방주의 기초자치단체들의 재정능력은 1995년이 되어야 비로소 서독지역 기초자치단체들의 재정능력의 30% 정도에 도달했다. 그런 상황에서 문화예산의 65%를 자체부담하는 것은 불가능했다.⁵⁸

신연방주들은 통일 이전에 서독보다도 높았던 인구 비례 오케스트라, 예술극장 등과 같은 문화시설 보급률을 통일 이후에는 그대로 유지할 수 없었다. 여기에 소속된 인원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 또한 불가능했다. 그러나 열악한 재정상황에도 불구하고 신연방주 정부들이 이런 문제를 단순히 오케스트라를 해체하고 예술극장을 폐관하는 방식으로 해결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신연방지역 주정부와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은 소도시의 시립예술극장과 오케스트라를 주 단위의 오케스트라로 통합하거나 몇 개의 도시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기관으로 조정하는 방식을 선호했다.

신연방주들은 나아가 연방정부가 지원한 재정보조금을 통해 자체적인 문화정책을 실행했다. 작센안할트 정부가 도입한 ‘도시 건축유적 문화보호 및 역사적 구도심의 보존과 유지’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도 그런 사례이다. 작센안할트주 21개 도시가 지원 프로그램의 수혜도시로 선정되었다.

역사적으로 중요한 전통문화를 보존하기 위한 사업의 경우 연방정부를 통해 별도의 지원을 받을 수도 있었다. 연방도시계획건축부가 작센안할트주

⁵⁷ ‘1992년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 문화예술센터 재정 및 직원 업무에 관한 연방회의 발의’에 관한 심의(문서번호 75), 튜링겐 주의회가 ‘튜링겐주 문화기금재단의 설립 및 구동독지역 문화정책을 위한 1993년도 이후의 연방정부 지원을 1991년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을 제안하기로 의결하기 위한 토론(문서번호 93), 튜링겐 문화의 발전에 관한 질의에 대한 주정부 문화장관의 답변(문서번호 115).

⁵⁸ 작센안할트주 문화적 인프라 현황과 예술인에 관한 주의회의 질의에 대한 주정부의 답변(문서번호 94).

의 ‘도시 건축유적 문화보호 및 역사적 구도심의 보존과 유지’ 프로그램을 위해 1991년 5월 23일에 도시 건축유적을 보수하기 위한 전문가그룹을 구성한 것이 그런 사례에 속한다.⁵⁹

연방정부는 나아가 동독 국립박물관을 프러시아 문화재단 산하 국립박물관으로 인수했다. 동베를린의 국립중앙도서관과 서베를린에 소재한 국립중앙도서관을 하나의 기구로 통합하고 중앙문서국 또한 연방문서국으로 통합했다.⁶⁰ 데사우시에 창립된 바우하우스재단⁶¹이나 바이마르 고전재단⁶²의 설립 등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문화국가로서의 독일 전체에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사업에는 연방정부가 지속적으로 관여하기도 했다.

바이마르 고전재단의 경우 독일 문학의 최대 문호인 괴테가 살았던 바이마르에 있던 바이마르 독일고전문학 연구 및 기념관을 전환한 것이다. 이 재단의 설립과정은 독일통일 과정, 특히 1989-1992년 사이에 독일에서 진행된 문화적 기억에 관한 다양한 논란을 그대로 보여준다. 동독에서 고전문학 연구 및 기념관은 1953년 이후 중요한 문화센터로서 바이마르시에 있는 아카이브, 도서관, 박물관, 성, 공원 등 모든 문화유적을 관리하는 기구였다. 이 기구는 동독 당국이 추진한 통합적 문화정책의 좋은 성과로 긍정적으로 평

⁵⁹ 도시건축문화유적보호지원프로그램을 통한 사업에 관한 질의-작성안할트 주정부의 답변(문서번호 69).

⁶⁰ 동독 프러시아 문화재단 소속 국립박물관의 직원 인계에 관한 연방의회의 질의에 대한 연방정부의 답변(문서번호 114). 이 기관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은 1990년 10월 3일 이후 모두 새 기구로 인계되었다. 이 과정에서 동독 국립박물관 소속 697명의 직원 중 127명은 직장을 떠나야 했다. 그 중에 83명은 정년 연령이 되었고, 28명은 더 이상 담당할 업무가 없었으며, 16명은 비밀경찰과 연루되었기 때문에 해고되었다. 사통당 간부들과 위성정당 간부들은 프러시아 문화재단의 관리직으로 근무하지 못하게 되었다.

⁶¹ 데사우 바우하우스재단 설립법안에 관한 심의-작성안할트 주정부 제출 법안(문서 104). 바우하우스는 국제적으로 잘 알려진 학술예술 시설이다. 현대미술에서 미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혁신적인 작품들이 바우하우스를 통해 만들어졌고 여기에서 교육되었다. 1920년대 예술과 기술의 새로운 통합이라는 테제가 바우하우스 예술가들을 통해서 탄생하였다. 데사우시의 바우하우스는 독일 정부의 신청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되었다.

⁶² 전환에 대한 찬성과 반대-독일통일의 틀에서 ‘바이마르 국립 고전문학 연구 및 기념관’을 ‘바이마르 고전재단’으로 전환(1989-1992)(문서번호 125).



가되면서, 동시에 문화유적을 이념적으로 도구화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 결과 동독의 과도개혁기에 바이마르 고전문학 연구 및 기념관을 통일된 독일의 정체성을 심어주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 국가적, 세계문화적 차원에서 학문적, 문화적 기구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 수립되었다. 그리고 동독 문화부와 서독의 연방내무부는 바이마르 기념관 양상블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동서독 공동문화위원회는 문화유산을 다루는 전문가그룹을 통해 동독의 문화시설 문화유산에 대해 평가하면서 바이마르 고전문학 연구 및 기념관을 최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할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를 위해 연방정부와 연방주 그리고 바이마르시가 공동 주체가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보았고, 1991년 10월 14일에 바이마르 고전문학 연구 및 기념관의 후신이 라고 할 수 있는 바이마르 고전재단이 설립되었다.⁶³

통일 이후 15년이 지난 2005년에 연방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진흥정책을 위해 지출되는 총재정의 15%를 부담했다. 그중에 절반은 수도인 베를린의 문화시설을 위해 지출되었다.⁶⁴

연방정부의 지원을 통해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문화유적과 문화시설이 통일 이후에도 비교적 잘 보존·관리될 수 있었던 데에 반해 사회적으로 주민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문화시설, 특히 청소년과 아동을 위한 시설과 제도는 대부분 존속되지 못했다.

대부분의 신연방주 정부가 그런 문제 때문에 많은 비판을 받았다.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의 경우 1990년 이후 모든 문화시설의 29%, 공공도서관의 50%, 영화관의 60%, 청소년센터의 50%, 예술센터의 60%가 폐쇄되었

⁶³ 1991년 7월 1일에 기념관의 전 직원은 튜링겐 주정부와 새로운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다. 1991년 10월 15일에 369명 전원이 새로이 설립된 고전재단에 근무하게 되었다. 1992년 10월 27일에 바이마르 고전재단의 정식 창립총회가 열렸다.

⁶⁴ 베를린 장벽을 관광상품으로 만드는 방안-동독 문화부장관과 산업디자인회사 A.+B. Ecke 간의 서신 교환(문서번호 12), 영화도시로서의 베를린-전문가 회의 보고서(문서번호 34), 독일역사박물관 향후 발전에 관한 결정(문서번호 50), Sommer, Frank. A.a.O. p.573 이하 참조.

다고 보고되었다.⁶⁵ 연방의회의 사민당 소속 의원들은 1990년 이후 신연방지역의 청소년센터와 클럽은 1,766개에서 1,062개로 줄어들었고, 공공도서관은 2,397개에서 1,794개로, 극장은 424개에서 216개로 줄었다고 지적하였다.⁶⁶

통일 이전 동독에는 청소년클럽이 비교적 많았다. 특히 농촌지역에서는 청소년클럽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시설이었다. 통일 이후에 이런 시설이 대부분 폐지되었다. 통일 직후부터 많은 정치인들과 활동가들이 청소년을 위한 문화시설의 폐지가 사회적으로 가져올 악영향을 경고했다. 경제조건의 악화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청년들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그들을 위한 문화시설까지 폐지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그들이 과격화, 극단화 되는 데에 기여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이 그 이유였다. 그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지역의 문화시설과 학교가 협력해서 청소년이 건전한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 주어야만 한다고 했다.⁶⁷

통일 초기의 다양한 사회적, 문화적 문제가 해결될 전망을 보이기 시작한 1990년대 말 신연방주들의 각 지역에는 향토박물관 건립 붐이 일어났다. 1990년대 말 브란덴부르크주에만 200여 개의 새로운 박물관이 세워졌다. 향토박물관들은 대부분 동독의 일상과 문화의 전시를 통해 억압적인 체제와 살아온 일상적인 경험 간의 모순을 보여 준다. 박물관을 행정적으로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와 박물관 간의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동독의 역사에 관한 전시를 위해 필요한 자료들이 폐기되는 문제가 있다는 보고도 있다.⁶⁸

.....
⁶⁵ 메클렌부르크-포어폼머른주 문화기반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문서번호 97).

⁶⁶ 신연방주의 문화 현황에 관한 질의에 대한 연방정부의 답변(문서번호 106), 신연방주의 문화 현황에 관한 질의-연방의회 심의(문서번호 107), 작센안할트 청소년클럽에 관한 질의에 대한 주정부의 답변(문서번호 105).

⁶⁷ 작센안할트주 아동 청소년을 위한 여가 및 문화 프로그램에 관한 질의에 대한 주정부의 답변(문서번호 100), 작센안할트주 아동 청소년을 위한 여가 및 문화 프로그램에 관한 질의에 대한 주의회에서의 토론(문서번호 103), 통일독일의 문화예술에 관한 질의에 대한 연방정부의 답변(문서번호 110).

⁶⁸ 동독 역사 연구를 위한 브란덴부르크 향토박물관의 기어-브란덴부르크 주의회 앙케이트위원회에 제출된 전문가 의견 '브란덴부르크주의 사통당 독재의 결과에 대한 역사적 청산과 극복 및 민



제3절 소유권문제

독일통일 과정에서 가장 많은 문제를 야기한 것이 소유권문제였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문화영역도 이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통일조약에는 소련군 점령기에 이루어진 조치, 특히 소유권 박탈에 대한 결정은 통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유효하다고 명시되었지만, 1994년에 도입된 보상 및 대체보상법을 통해 이 규정이 조금 완화되어서 적어도 동산의 반환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예술품, 특히 귀족 제후들이 소장하였던 예술품 반환의 경우, 역사적, 법적 근거가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분단 이전 동독지역에 살던 지배세력인 귀족 제후들이 소유하였던 예술품이 분명히 국유재산으로 등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개인소유 재산으로부터 확실히 분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 이후 1994년에 도입된 보상 및 대체보상법을 근거로 귀족 제후가들과 재산권 분리계약 체결에 관해 협상이 이루어졌다. 작센-바이마르 및 아이제나흐 백작, 작센-고타 백작 그리고 베틀니어 제후 등의 집안과 진행된 협상이 그런 사례였다. 이를 통해 합의가 이루어졌고 문화예술품을 위한 재단이 설립되었다. 그러나 동독에서 1970년대와 1980년대에 국가가 조직적으로 행한 문화예술품에 대한 소유권 박탈 문제는 거의 해결되지 못했다. 동독 외무부는 알렉산더 샬크 골로코프스키가 책임자로 있던 상업협력본부(KoKo)를 통해 문화예술품, 골동품을 외국에 판매해서 외화벌이를 했다. 판매된 물건은 동독의 박물관과 개인으로부터 강탈한 것들이었다. 이러한 문화예술품의 반환은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못한 과제이며, 2015년에 설립된 독일 문화예술품상실센터를 통해 지속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⁶⁹

.....
주적 범지구가로의 이전(문서번호 129).

⁶⁹ 소련군 점령지역/동독에서 국가기관에 의해 박탈된 예술품의 반환-역사적 배경, 현황 및 문제(문서번호 131).

작센안할트주의 사례를 보면 2011년 12월 31일까지 93,389개의 문화예술
 품이 원소유자에게 반환되었다. 그중 대부분은 예술품 한 개가 아니라 성에
 있던 소장품, 영지의 아카이브 등과 같이 소장품의 전체 단위였다. 2011년까
 지 55개의 개인소장 아카이브가 원소유자에게 반환되었다. 그중 50개의 아
 카이브는 대여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주문서국의 아
 카이브를 통해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였다.⁷⁰

.....
⁷⁰ 작센안할트주 공공공간의 문화예술품에 대한 보상 및 배상법에 관한 질의에 대한 주정부의 답
 변(문서번호 128).

문화외교

독일통일 이후 독일 연방의회에서는 문화민족으로서 독일을 세계에 알리기 위한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⁷¹ 연방 외무부의 문화외교정책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외무부는 체코, 폴란드, 헝가리 등 동구 유럽의 체제 전환 국가들과 소련연방의 후속국가들은 자연스럽게 연방 외무부의 문화외교를 위한 파트너가 될 것이며, 분단으로 인해 실현될 수 없었던 것들을 점차 채워 나가는 것이 문화외교의 핵심목표라고 답했다. 신연방주 재건을 위해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문화외교의 재정은 가능한 절약할 수밖에 없지만 문화외교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통일독일의 위상과 비중을 높이고 강화한다는 최종적인 목표는 이미 확고히 세워졌다고 하였다. 그를 위해 시행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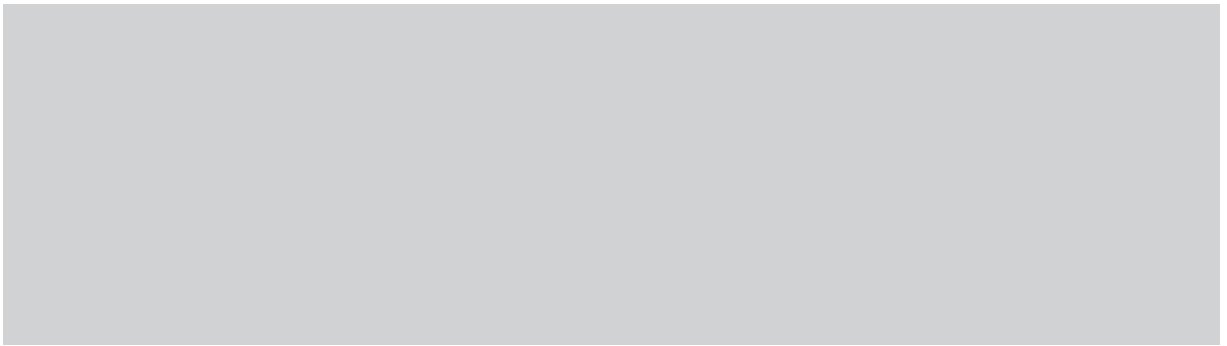
- 연방 외무부의 문화외교정책에 신연방주들의 참여
- 급격하게 증가한 독일어 교육의 수요에 대한 대처 및 동독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동유럽에 거주하는 독일 동포의 지원
- 외국에서 독일의 이미지 변화 및 그와 관련된 두려움과 염려에 대한 적절한 대응

⁷¹ '변동하는 세계 속에서 문화민족으로 통일된 독일의 이미지'-연방의회 질의에 대한 연방정부의 답변(발췌)(문서번호 108)

- 문화교류를 통해 동유럽 사회에서 진행되는 개혁과정의 지원
-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유럽통합 과정에서 문화정책적인 요소 확립

이런 문화외교의 틀에서 이루어지는 독일의 공공외교는 아주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국제사회에서 독일을 보는 시각이 두 번의 세계대전을 일으킨 위험한 국가가 아닌 안정되고 평화적인 유럽의 지도적인 국가로 변화된 것은 독일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문화외교와 무관하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독일의 문화외교정책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는 것 또한 필요할 것이다.

문화 분야
관련 정책문서



문화 분야 관련 정책문서

독일 베를린 자유대 한국학과 통일연구팀



문서 목록

| 문서 | 제목 | 날짜 | 담당자/기관 | 출처 |
|----|--|---------------|---|---|
| 1 | 1981-1983년 사이 동독의 교향악단, 공연장 및 관람객 수 | 1983년 9월 5일 | 동독 예술노동조합 | Bundesarchiv, BArch/DY 43/1152, fol. 84-86 |
| 2 | 동서독 문화협정 | 1986년 5월 6일 | 동베를린 주재 서독 상주대표 한스 오토 브로이트감 차관, 동독 외무부 쿠에르트 니어 차관 | Bundesminister für innerdeutsche Beziehungen (Hrsg.), Das Kulturabkommen, Abkommen zwischen der Regierung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Regierung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über kulturelle Zusammenarbeit, Bonn 1988 (2. Auflage), S. 5-11 |
| 3 | 동서독 간의 체육교류의 발전과 지원-연방 의회 질의에 대한 연방정부의 답변 | 1987년 10월 23일 | 연방의회 시민당, 내독성 빌름스 장관 | Parlaments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 11. Wahlperiode, Drucksache 11/1010 |
| 4 | 동서독 간의 문화교류 합의에 관한 내독성의 설명 | 1987년 11월 9일 | 연방정부 내독성 장관 빌름스 | Bundesminister [sic] für innerdeutsche Beziehungen (Hrsg.), Das Kulturabkommen, Abkommen zwischen der Regierung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Regierung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über kulturelle Zusammenarbeit, Bonn 1988 (2. Auflage), S. 25 f. |
| 5 | 문화재 관리 전문가들이 동독 최고인민회의 문화상임위원회 위원장과 문화부장관 및 내각위원회 의장에게 보낸 공개서한 | 1989년 11월 6일 | 동독 문화재보호청장, 드레스덴, 베를린, 할레, 슈베린, 에어푸르트 문화재보호국장 | Bundesarchiv, BArch/DY 27/4316, fol. 13-17 |
| 6 | 1989년 11월 3-4일에 열린 문화재보호협회 중앙위원회 심의 요약 | 1989년 11월 9일 | 동독 문화재보호협회 | Bundesarchiv, BArch/DY 27/4316, fol. 18 f. |
| 7 | 마이센시 노이에스포르름 문화실무그룹이 작성한 문제목록과 켈러 문화장관의 답변서 | 1989년 12월 1일 | 동독 최고인민회의 마그리트 페트라트 의원, 노이에스포르름 문화실무그룹, 켈러 문화장관 | Bundesarchiv, BArch/DR 1/13526 (1), fol. 176-181 |



| 문서 | 제목 | 날짜 | 담당자/기관 | 출처 |
|----|---|---------------|--|--|
| 8 | 우리 도시들을 구할 수 있을까?—동독 문화 연맹 문화재관리부 부장의 글 | 1989년 말 | 동독 문화연맹 문화재관리부 부장 겸 문화재관리협회 중앙위원회 비서 베른트 메터 | Bundesarchiv, BArch/DY 27/4316, fol. 41–50 |
| 9 | 드레스덴성과 프라우엔교회의 재건축과 재정에 관한 서신 교환 | 1989년 12월 5일 | 튀셀도르프 시청 튀디거 쾨나겔, 전 문화부장관 한스 요아힘 호프만 | Bundesarchiv, BArch/DR 1/13526 (1), fol. 219–224 |
| 10 | 동독 시민에 고함 “우리의 구도시를 폐허화로부터 구하고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면서 도시와 공동체의 미래를 만들어 갑시다.” | 1989년 12월 11일 | 드레스덴 문화재보호관, 베를린 문화재 보호관, 할레 문화재보호관, 슈베린 문화재보호관, 에어푸르트 문화재보호관 | Bundesarchiv, BArch/DY 27/4316, fol. 64 |
| 11 | 동독과 서독 간의 공동문화위원회의 업무와 목적에 대한 제안 | 1989년 12월 12일 | 동독 문화부장관 켈러 | Bundesarchiv, BArch/DR 1/13159, fol. 4–7 |
| 12 | 베를린 장벽을 관광상품으로 만드는 방안—동독 문화부장관과 신업디자인회사 A+B, Ecke 간의 서신 교환 | 1989년 12월 18일 | 신업디자인 회사 A+B, Ecke, 동독 문화부장관 켈러 | Bundesarchiv, BArch/DR 1/13525 (2), fol. 328–330 |
| 13 | 동독 예술가협회 공동 선언 | 1989년 12월 20일 | 동독 문인협회, 동독 미술가협회, 작곡가 및 음악가협회, 연극인협회, 영화방송협회, 엔터테인먼트협회, 건축설계사협회 | Bundesarchiv, BArch/DR 1/13526 (1), fol. 117–121 |
| 14 | 동독 국가에 대한 질의에 대한 문화부장관의 답변 | 1989년 12월 28일 | 기젤라 몰러, 켈러 동독 문화부장관 | Bundesarchiv, BArch/DR 1/13526 (1), fol. 92–94 |
| 15 | ‘프렌츨라우어베르크 자율행동’에 관한 자료 및 문화부 지침 | 1989년 12월 28일 | ‘프렌츨라우어베르크 자율행동’, 동독 문화부 | Bundesarchiv, BArch/DR 1/13526 (1), fol. 88–91 |
| 16 | 통일조약을 위한 임시 협상주제 목록 중 문화영역에 대해 합의된 입장 | 1990년 | 동독 문화부, 문화부차관 | Bundesarchiv, BArch/DR 1/19416 |
| 17 | 동베를린 베르톨트 브레히트 아카이브가 문화부장관 켈러에게 보낸 지원요청서 | 1990년 1월 4일 | 게어하르트 자이델, 브레히트 아카이브 | Bundesarchiv, BArch/DR 1/13526 (1), fol. 307 |
| 18 | 문화부장관 켈러가 모드로우 수상에게 제출한 1989년 12월 20일에 발표된 예술가협회의 선언문에 대한 입장 | 1990년 1월 5일 | 디트마 켈러 동독 문화부장관 | Bundesarchiv, BArch/DR 1/13526 (1), fol. 112 f. |

| 문서 | 제목 | 날짜 | 담당자/기관 | 출처 |
|----|--|--------------|---|--|
| 19 | 서독 기업연맹 문화위원회가 동독 바이마르시의 보수와 현대미술관 건축의 지원과 관련하여 동독 문화부에 제안한 방안 | 1990년 1월 29일 | 서독 기업연맹 예술위원회 미술분과 아렌트 외트커 박사, 동독 문화부 | Bundesarchiv, BArch/DR 1/13526 (1), fol. 140 f. |
| 20 | 아이제나흐시의 재건축을 위한 시민발의와 문화부장관의 반응-서신 교환 | 1990년 2월 7일 | 아이제나흐 도시 재건축을 위한 주민발의, 켈러 문화부장관, 동독 건설부장관 바움게르텔 | Bundesarchiv, BArch/DR 1/13526 (1), fol. 185-188 |
| 21 | 독일 자연 및 향토동호회의 창립발의 및 지원 | 1990년 2월 7일 | 독일 자연 및 향토동호회 | Bundesarchiv, BArch/DY 27/7110, fol. 5-9 |
| 22 | 산업디자인청의 해체와 새로운 후속기관의 설립에 대한 동독 내각위원회의 결정 | 1990년 2월 8일 | 동독 문화부장관 켈러 | Bundesarchiv, BArch/DC 20-1/3/2911 |
| 23 | 서독의 향토협회와 동독의 자연 및 향토동호회 간의 협력에 관한 보도자료 | 1990년 2월 13일 | 독일 자연 및 향토동호회(동독), 독일 향토협회(서독) | Bundesarchiv, BArch/DY 27/9023 |
| 24 | 문화예술 지원과 보호를 위한 국가의 책임에 대한 최고인민회의 결정을 위한 원탁회의 제안 | 1990년 2월 14일 | 예술가동맹, 동독 중앙원탁회의 | Robert-Havemann-Archiv Berlin (Original: Anlage 1 zur Vorlage 14/1 des Zentralen Runden Tisches) |
| 25 | 향토문화사협회의 창립 선언문 | 1990년 2월 21일 | 향토문화사협회 발기인그룹 | Bundesarchiv, BArch/DY 27/11477, fol. 88 f. |
| 26 | 동독의 문화 현황-중앙원탁회의 14차 회의 결과 | 1990년 2월 26일 | 동독 중앙원탁회의 | Bundesarchiv, BArch/DA 3/84, fol. 144-166 |
| 27 | 미술관의 장래-테힐레스그룹이 문화부장관 켈러와 베를린 미테 구청장에게 보낸 문서 | 1990년 3월 7일 | 테힐레스그룹, 켈러 문화부장관 | Bundesarchiv, BArch/DR 1/13526 (1), fol. 358 f. |
| 28 | 문화예술 지원 및 보호를 위한 국가의 의무에 관한 동독 최고인민회의 결정 | 1990년 3월 7일 | 동독 최고인민회의 | Gesetzblatt der DDR, Nr. 1990 I/16, Seite 126 |
| 29 | 동독과 서독 간의 공동문화위원회 설립에 관한 결정 | 1990년 3월 8일 | 동독 내각위원회, 문화부장관 켈러 | Bundesarchiv, BArch/DC 20-1/3/2931 |
| 30 | 국립 아카기브와 관련된 조치-동독 내각위원회 결정 | 1990년 3월 8일 | 동독 내각위원회, 내무부장관 로타 아렌트 | Bundesarchiv, BArch/DC 20-1/3/2928 |



| 문서 | 제목 | 날짜 | 담당자/기관 | 출처 |
|----|--|--------------|--------------------------------------|---|
| 31 | 동독 문화정책 연락사무소 설치에 관한 보도자료 | 1990년 3월 15일 | 독일 문화평의회 | Bundesarchiv, BArch/DY 27/11479, fol. 37 |
| 32 | 문화연맹의 1989년도 회계보고 | 1990년 3월 15일 | 동독 문화연맹 | Bundesarchiv, BArch/DY 27/11477, fol. 2-7 |
| 33 | 동독에 문화평의회를 설치하는 것에 대한 고려 | 1990년 4월 17일 | 독일 문화평의회 문화정책 연락사무소 | Bundesarchiv, BArch/DY 27/11479, fol. 38 |
| 34 | 영화 도시로서의 베를린-전문가 회의 보고서 | 1990년 4월 25일 | 기민당, DEFA 독일영화사 | Bundesarchiv, BArch/DR 1/19419 |
| 35 | 동서독 문화통합의 구체화-동독 문화부장관 슈르머와 서독 내독성 장관 도로테 빌름스 간의 회담에 관한 메모 | 1990년 5월 7일 | 동독 문화부장관 헤르버트 슈르머 | Bundesarchiv, BArch/DR 1/13525 (2), fol. 321 f. |
| 36 | 동독 문화부 예산안 심의-문화부장관에게 제출한 자료 | 1990년 6월 7일 | 동독 문화부 예산국 국장 브리기테 바이스 | Bundesarchiv, BArch/DR 1/19416 |
| 37 | 동독 문화기금을 통한 용자 제공에 관한 규정 | 1990년 6월 7일 | 동독 문화기금 이사회 | Bundesarchiv, BArch/DR 1/19417 |
| 38 | 동서독 문화위원회 제III 전문위원회 제안 및 동서독 문화위원회 2차 회의 보고 | 1990년 6월 25일 | 동서독 문화위원회 전문위원회 III, 예술 교육 및 연수 | Bundesarchiv, BArch/DR 1/13525 (1), fol. 97-104, 205 f. |
| 39 | 1990년도 하반기 문화예술 사업의 재정지원을 위해 연방주 문화재단에 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한 제안 | 1990년 6월 25일 | 동독 문화부 제II 국 예산재정 담당국 국장 브리기테 바이스 | Bundesarchiv, BArch/DR 1/13525 (2), fol. 389-393 |
| 40 | 동서독 문화위원회 제I 전문위원회 문화유산 제안 초안 | 1990년 6월 28일 | 동서독 문화위원회 제I, II 전문위원회 기본원칙, 문화유산 부문 | Bundesarchiv, BArch/DR 1/13525 (1), fol. 97-104, 205 f. |
| 41 | 동서독 문화위원회 2차 회의 중 동독 문화부장관의 발언 | 1990년 6월 28일 | 동독 문화부장관 헤르버트 슈르머 | Bundesarchiv, BArch/N 2673, Redemanuskript von Minister Herbert Schürmer für die 2. Sitzung der deutsch-deutschen Kulturkommission am 28. Juni 1990 |

| 문서 | 제목 | 날짜 | 담당자/기관 | 출처 |
|----|---|--------------|---|--|
| 42 | 동서독 문화위원회 2차 회의 결과보고서 | 1990년 7월 2일 | 동서독 문화위원회, 서독 문화부장관협의회 의장, 내독성 장관, 동독 문화부장관 | Bundesarchiv, BAArch/N 2673, Ergebnismünderschrift über die 2. Sitzung der deutsch-deutschen Kulturkommission am 28. Juni 1990 |
| 43 | 문화협회의 정관 | 1990년 7월경 | 문화협회 | Bundesarchiv, BAArch/DY 27/11477, fol. 66-70 |
| 44 | 동독 국유재산을 재단기금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한 최고인민회의의 결정-1차 심의 | 1990년 7월 13일 | 동독 최고인민회의 | Parlamentsdokumentation Volkskammer der DDR, Plenarprotokoll der 24. Tagung, 10. Wahlperiode, 13.07.1990 |
| 45 | 문화정책 현안에 대한 동베를린시 문화 담당 위원과 동독 문화부차관 간의 회의 기록 | 1990년 7월 25일 | 동베를린시 문화 담당 위원 이리나 루스타, 동독 문화부차관 우도 바취 | Bundesarchiv, BAArch/DR 1/19419 |
| 46 | 1990년 7월 14일 개최된 문화협회 위원장과 지역 사무총장들 간의 심의 결과 | 1990년 7월 26일 | 문화협회 | Bundesarchiv, BAArch/DY 27/11477, fol. 60-62 |
| 47 | 독일통일의 문화정책적 문제에 관한 문화평의회의 성명서 | 1990년 7월 26일 | 동독과 서독 문화평의회 | Bundesarchiv, BAArch/DR 1/19417 |
| 48 | 동독 정부가 문화연맹에 통일조약 협상에 참여할 것을 요구 | 1990년 7월 28일 | 동독 수상실 장관 클리우스 라이헨베르흐 | Bundesarchiv, BAArch/DY 27/11477, fol. 54 |
| 49 | 동독 문화유산보호법 시행령-문화유산보호법 | 1990년 8월 15일 | 동독 내각위원, 내무부장관 페터 미하엘 디스텔 | Bundesarchiv, BAArch/DC 20-1/3/3046 |
| 50 | 독일역사박물관 향후 발전에 관한 결정 | 1990년 8월 29일 | 동독 내각위원회, 한스 요아힘 마이어 동독 교육부장관 | Bundesarchiv, BAArch/DC 20-1/3/3053 |
| 51 | 통일조약 해설-III장 35조-문화 | 1990년 8월 31일 | 서독 연방의회 | Parlaments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 11. Wahlperiode, Drucksache 11/7760, S. 355, 372-374 |
| 52 | 통일조약 III장 35조-문화 | 1990년 8월 31일 | 독일연방공화국(서독), 독일민주주의공화국(동독) | Bundesgesetzblatt, Teil II, 1990, Nr. 35, S. 901; Ausgabetag: 28.09.1990 |
| 53 | DEFA-재단의 설립에 관한 결의 | 1990년 9월 12일 | 동독 내각위원회 | Bundesarchiv, BAArch/DC 20-1/3/3066 |



| 문서 | 제목 | 날짜 | 담당자/기관 | 출처 |
|----|---|---------------|---|--|
| 54 | 영화진흥 프로그램을 위한 기본방침 결정 | 1990년 9월 12일 | 동독 내각위원회, 헤르베르트 슈르머 문화부장관 | Bundesarchiv, BArch/DC 20-1/3/3066 |
| 55 | 독일통일 및 교육연방주의에 대한 독일 주정부 교육문화장관협의체의 성명서 | 1990년 10월 4일 | 독일 주정부 교육문화장관협의체 | Pressemitteilung der KMK vom 8. Oktober 1990, entnommen aus: Fuchs, Hans-Werner und Lutz R. Reuter. 1995. Bildungspolitik seit der Wende. Dokumente zum Umbau des ostdeutschen Bildungssystems (1989-1994). Opladen: Leske + Budrich, 261 f. |
| 56 | 연방의회에 제출된 문화정책에 관한 다양한 발의에 관한 보고와 심의 | 1990년 10월 15일 | 연방의회 내부위원회, 자민당 | Parlaments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 11. Wahlperiode, Drucksache 11/8114, S. 1-20 |
| 57 | 크베틀린부르크 대성당 보물의 반환에 관한 질의-작센안할트 주정부의 답변 | 1991년 1월 18일 | 작센안할트 주의회 카스틴 크놀레 의원 | Parlamentsarchiv des Landtages von Sachsen-Anhalt, 1. Wahlperiode, Drucksache 1/115, S. 1, 27-28 |
| 58 | 문화시설의 붕괴에 관한 질의 | 1991년 1월 18일 | 작센안할트 주의회, 주정부 | Parlamentsarchiv des Landtages von Sachsen-Anhalt, 1. Wahlperiode, Drucksache 1/115, S. 1, 7-8 |
| 59 | 작센안할트 주정부에 의한 문화사업의 지원-작센안할트 주의회 제언서 및 결의방안 | 1991년 2월 15일 | 작센안할트 주의회 문화미디어상임위원회, 내부상임위원회, 녹색당, 민시당 | Parlamentsarchiv des Landtages von Sachsen-Anhalt, 1. Wahlperiode, Drucksachen 1/190, 1/208 und 1/502 |
| 60 | 문화 프로젝트의 지원 제한에 관한 작센안할트 주의회 첫번째 심의 | 1991년 2월 21일 | 작센안할트 주의회 | Parlamentsarchiv des Landtages von Sachsen-Anhalt, 1. Wahlperiode, Plenarprotokoll 1/10, S. 484-491 |
| 61 | 노이스트레리츠 예술극장과 관련된 의회 질의에 대한 답변 | 1991년 4월 2일 | 좌파/민시당 연합, 메클레부르크 주정부 | Parlamentsarchiv des Landtags Mecklenburg-Vorpommern, 1. Wahlperiode, Drucksache 1/307 |

| 문서 | 제목 | 날짜 | 담당자/기관 | 출처 |
|----|--|--------------|---------------------------------|---|
| 62 | 작센 인형극장의 현황과 관련된 질문에 대한 작센 학술문화부의 답변 | 1991년 5월 15일 | 작센 주의회 베네딕트 딜리히 의원, 작센주 학술문화부 | Parlamentsarchiv des Sächsischen Landtags, 1. Wahlperiode, Drucksache 1/408 |
| 63 | 작센안할트 문화재보호법 초안 첫번째 심의 | 1991년 5월 23일 | 작센안할트 주의회 | Parlamentsarchiv des Landtages von Sachsen-Anhalt, 1. Wahlperiode, Plenarprotokoll 1/16, S. 943-948 |
| 64 | 1991년 5월 15-16일 문화연맹과 신탁관리청 간의 회의에 관한 메모 | 1991년 5월 30일 | 신탁관리청 특수재산부, 문화연맹 협회 사무총장 디터 쟁커 | Bundesarchiv, BAArch/DY 27/10124 |
| 65 | 튀링겐 주립 박물관 설립과 고공과 정원을 위한 주립 행정기관의 도입에 관한 질의에 대한 주정부 학술문화부장관의 답변 | 1991년 6월 6일 | 튀링겐 주의회, 주정부 | http://www.parldok.thueringen.de/ParlDok/dokument/4731/20-plenarsitzung.pdf#page=3 , abgerufen am 30.03.2016 |
| 66 | 문화 관련 프로젝트 지원에 대한 작센안할트 주의회 질의 | 1991년 6월 21일 | 작센안할트 주의회 | Parlamentsarchiv des Landtages von Sachsen-Anhalt, 1. Wahlperiode, Drucksache 1/18/502 B |
| 67 |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주 문화정책 결정에 관한 질의에 대한 답변 | 1991년 6월 26일 |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주 문화부장관, 주의회 | Parlamentsarchiv des Landtags Mecklenburg-Vorpommern, 1. Wahlperiode, Drucksache 1/604 |
| 68 | 문화연맹 사무총장의 신탁관리청 방문에 대한 보고-불명확한 재정문제에 관한 논의 | 1991년 8월 5일 | 신탁관리청 특수재산부, 문화연맹 협회 사무총장 디터 쟁커 | Bundesarchiv, BAArch/DY 27/10124 |
| 69 | 도시건축문화유적보호 지원 프로그램에 통한 사업에 관한 질의-작센안할트 주정부의 답변 | 1991년 8월 6일 | 작센안할트 주의회, 주정부 | Parlamentsarchiv des Landtages von Sachsen-Anhalt, 1. Wahlperiode, Drucksache 1/715, S. 1, 8-10 |
| 70 | 신연방지역 소재 문화센터의 활동과 1992년도 재정을 위한 연방회의의 발의-튀링겐 주의회 | 1991년 9월 12일 | 튀링겐 주의회 | http://www.parldok.thueringen.de/ParlDok/dokument/4699/28-plenarsitzung.pdf#page=1078 (Parlamentsarchiv des Thüringer Landtags, 1. Wahlperiode, Plenarprotokoll 28. Sitzung, S. 1681, 1782-1784), abgerufen am 30.03.2016 |



| 문서 | 제목 | 날짜 | 담당자/기관 | 출처 |
|----|--|---------------|---|--|
| 71 | 튀링겐주의 문화 현황에 관한 질의에 대한 주정부의 답변 | 1991년 7월 17일 | 튀링겐 주의회, 주정부 | Parlamentsarchiv des Thüringer Landtags, 1. Wahlperiode, Drucksache 1/696 |
| 72 | 작센안할트 문화재보호법 | 1991년 10월 21일 | 작센안할트 주정부 | Gesetz- und Verordnungsblatt für das Land Sachsen-Anhalt, 2. Jahrgang, Nr. 33, S. 367-374, Ausgabetag 28.10.1991 |
| 73 | 독일이마추어연구회의 지원에 관한 작센 주의회 질의에 대한 답변 | 1991년 11월 11일 | 작센 주의회 좌파/민사당 페터 포르쉬 의원, 작센주 문화예술부 | Parlamentsarchiv des Sächsischen Landtags, 1. Wahlperiode, Drucksache 1/930 |
| 74 | 독일 국가의 3절에 관한 결정과 관련한 연방수상과 연방대통령의 서한 공개 | 1991년 11월 19일 | 연방대통령 리하르트 폰 바이체커, 연방 수상 헬무트 콜 | Bundesgesetzblatt, Teil I, 1991, Nr. 63, S. 2135, Ausgabetag 29.11.1991 |
| 75 | '1992년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 문화예술센터 재정 및 직원 업무에 관한 연방회의 발의'에 관한 심의 | 1991년 11월 28일 |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주의회 좌파- 민사당 의원 하이데 말리스 라우텐슐레거 | Parlamentsarchiv des Landtags Mecklenburg-Vorpommern, 1. Wahlperiode, Plenarprotokoll 1/36, S. 1741-1743 |
| 76 |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역사기념물 및 기념관에 관한 규정 | 1991년 11월 29일 |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주정부, 주의회 | Parlamentsarchiv des Landtags Mecklenburg-Vorpommern, 1. Wahlperiode, Drucksache 1/1062 |
| 77 | 예술극장과 오케스트라 책임자의 초빙에 관한 질의-작센주 학술문화부 답변 | 1991년 12월 | 작센 주의회 달리히 의원, 학술문화부 | Parlamentsarchiv des Sächsischen Landtages, 1. Wahlperiode, Drucksache 1/978 |
| 78 | 문화시설의 지원-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주의회 문화상임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 1991년 12월 13일 |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주의회 좌파/ 민사당 | Parlamentsarchiv des Landtags Mecklenburg-Vorpommern, 1. Wahlperiode, Drucksache 1/1137 |
| 79 | 문화정책에 관한 질의에 대한 주정부의 답변 | 1991년 12월 16일 |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주의회 좌파/ 민사당, 문화상임위원회 | Parlamentsarchiv des Landtags Mecklenburg-Vorpommern, 1. Wahlperiode, Drucksache 1/1109 |

| 문서 | 제목 | 날짜 | 담당자/기관 | 출처 |
|----|---|--------------|---|--|
| 80 | 작센안할트 주의회 의 질의 : 사회문화센터/ 예술가의 지원 | 1992년 1월 16일 | 작센안할트 주의회 | Parlamentsarchiv des Landtages von Sachsen-Anhalt, 1. Wahlperiode, Plenarprotokoll 1/27, S. f., 286 f. |
| 81 | 1991, 1992년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주 문화예술 업무 재정에 관한 질의에 대한 주정부의 답변 | 1992년 1월 21일 |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 주의회 | Parlamentsarchiv des Landtags Mecklenburg-Vorpommern, 1. Wahlperiode, Drucksache 1/1110 |
| 82 | 신탁관리청이 문화연맹에 보낸 서신 : 문화 연맹 재신의 관리행정 | 1992년 3월 17일 | 신탁관리청 특수재신부, 문화연맹 협회 | Bundesarchiv, BAArch/DY 27/10124 |
| 83 | 동독 정당과 대중조직의 재산에 대한 검토를 위한 독립위원회가 문화연맹에 보낸 서신 | 1992년 5월 5일 | 문화연맹, 연방내무부 소속 동독 정당 및 대중정당의 재산 검토를 위한 독립위원회 | Bundesarchiv, BAArch/DY 27/10228 |
| 84 | 브란덴부르크 발전 프로그램-문화 | 1992년 5월 7일 | 브란덴부르크 학술연구문화부 | Brandenburgisches Landeshauptarchiv, Rep. 1100 Nr. 412-413. |
| 85 | 문화업무를 위한 연방정부 재정지원의 연장 신청에 관한 심의 | 1992년 5월 7일 |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 주의회 | Parlamentsarchiv des Landtags Mecklenburg-Vorpommern, 1. Wahlperiode, Plenarprotokoll 1/53, S. 2755-2760 |
| 86 | 토지개혁 규정을 통해 박탈된 예술품과 문화재에 관한 작센안할트 주의회 질의와 주정부의 답변 | 1992년 5월 7일 | 작센안할트 주의회, 주정부 | Parlamentsarchiv des Landtages von Sachsen-Anhalt, 1. Wahlperiode, Drucksache 1/1471, S. 1-4 |
| 87 | 바우첸의 독일 소르벤 민속극장 존속문제에 관한 주의회 의 질의에 대한 주정부의 답변 | 1992년 6월 2일 | 작센 주의회, 주정부 | Parlamentsarchiv des Sächsischen Landtags, 1. Wahlperiode, Drucksache 1/1789 |
| 88 | 문화프로젝트 지원 결정의 이행에 관한 주 정부의 보고 | 1992년 6월 18일 | 작센안할트 주의회, 주정부 | Parlamentsarchiv des Landtages von Sachsen-Anhalt, 1. Wahlperiode, Drucksache 1/1582, S. 1, 5-7 |
| 89 | '하르츠지역을 설립하기로 한 주의회 의 결 정 실행에 관한 주정부의 보고 | 1992년 6월 18일 | 작센안할트 주의회, 주정부 | Parlamentsarchiv des Landtages von Sachsen-Anhalt, 1. Wahlperiode, Drucksache 1/1582, S. 1, 10-15 |



| 문서 | 제목 | 날짜 | 담당자/기관 | 출처 |
|----|--|---------------|--|---|
| 90 | 작센안할트 정치투자금장의 현황에 대한 질의에 대한 주정부의 답변 | 1992년 8월 24일 | 작센안할트 주의회, 주정부 | Parlamentsarchiv des Landtages von Sachsen-Anhalt, 1. Wahlperiode, Drucksache 1/1757, S. 1, 23-25 |
| 91 |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 예술대학의 설립 제안에 대한 심의 | 1992년 9월 10일 |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주의회 | Parlamentsarchiv des Landtags Mecklenburg-Vorpommern, 1. Wahlperiode, Plenarprotokoll 1/60, S. 3262-3272 |
| 92 | 작센주 문화기반구조 현황 및 예술가들에 관한 질의-주정부의 답변 | 1992년 9월 17일 | 작센 주의회 시민당, 주정부 | Parlamentsarchiv des Sächsischen Landtags, 1. Wahlperiode, Drucksache 1/2123 |
| 93 | 튀링겐 주의회가 '튀링겐주 문화기금재단'의 설립 및 구동독지역 문화정책을 위한 1993년도 이후의 연방정부 지원을 1991년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을 제안하기로 의결하기 위한 토론 | 1992년 9월 18일 | 튀링겐 주의회 | http://www.parldok.thueringen.de/ParlDok/dokument/5088/60-plenarsitzung.pdf#page=15 , (abgerufen am 30.03.2016) |
| 94 | 작센안할트주 문화적 인프라 현황과 예술인에 관한 주의회 질의에 대한 주정부의 답변 | 1992년 10월 29일 | 작센안할트 주의회, 주정부 | Parlamentsarchiv des Landtages von Sachsen-Anhalt, 1. Wahlperiode, Drucksache 1/1963 |
| 95 | 브란덴부르크 발전 프로그램-스포츠 | 1992년 11월 20일 | 브란덴부르크 학술연구문화부 | Brandenburgisches Landeshauptarchiv, Rep. 1100 Nr. 412-413. |
| 96 | 문화기금재단의 지원금 이용에 대한 질의에 대한 문화부장관의 답변 | 1992년 12월 3일 | 작센안할트 주의회, 주정부 문화부장관 | Parlamentsarchiv des Landtages von Sachsen-Anhalt, 1. Wahlperiode, Plenarprotokoll 1/41, S. 4628 |
| 97 |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 문화기반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 | 1992년 12월 7일 |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주의회, 주정부 | Parlamentsarchiv des Landtags Mecklenburg-Vorpommern, 1. Wahlperiode, Drucksache 1/2628 |
| 98 | 정당과 대중조직 재산 검토를 위한 독립위원회가 시설 사용의 재승낙과 관련하여 문화연맹에 보낸 서신 | 1992년 12월 8일 | 문화연맹 회장 마리아네 필, 연방 내무부 소속 동독 정당 및 대중조직 재산 검토 위원회 | Bundesarchiv, BAArch/DY 27/10228 |

| 문서 | 제목 | 날짜 | 담당자/기관 | 출처 |
|-----|---|---------------|--------------------|---|
| 99 | 작센안할트의 고고학적 유적 보호에 관한 질의에 대한 답변 | 1992년 12월 10일 | 작센안할트 주의회, 주정부 | Parlamentsarchiv des Landtages von Sachsen-Anhalt, 1. Wahlperiode, Drucksache 1/2125, S. 1-5 |
| 100 | 작센안할트주 아동 청소년을 위한 여가 및 문화 프로그램에 관한 질의에 대한 주정부의 답변 | 1993년 1월 28일 | 작센안할트 주의회, 주정부 | Parlamentsarchiv des Landtages von Sachsen-Anhalt, 1. Wahlperiode, Drucksache 1/2262 |
| 101 |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의 문화기반 유지를 위한 제안에 대한 주의회 심의 | 1993년 2월 11일 |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 주의회 | Parlamentsarchiv des Landtages Mecklenburg-Vorpommern, 1. Wahlperiode, Plenarprotokoll 1/70, S. 3996-4001 |
| 102 | 신연방주에서의 문화진흥에 관한 질의에 대한 답변 | 1993년 2월 23일 | 연방의회, 민사당/좌파, 연방정부 | Parlaments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 12. Wahlperiode, Drucksache 12/4411 |
| 103 | 작센안할트주 아동 청소년을 위한 여가 및 문화 프로그램에 관한 질의에 대한 주의회에서의 토론 | 1993년 4월 1일 | 작센안할트 주의회 | Parlamentsarchiv des Landtages von Sachsen-Anhalt, 1. Wahlperiode, Plenarprotokoll 1/46, S. 5297-5304 |
| 104 | 데시우 바우하우스재단 설립법안에 관한 심의-작센안할트 주정부 제출 법안 | 1993년 7월 7일 | 작센안할트 주정부, 문화부장관 | Parlamentsarchiv des Landtages von Sachsen-Anhalt, 1. Wahlperiode, Plenarprotokoll 1/50, S. 5879-5881 |
| 105 | 작센안할트 청소년클럽에 관한 질의에 대한 주정부의 답변 | 1993년 8월 18일 | 작센안할트 주의회, 주정부 | Parlamentsarchiv des Landtages von Sachsen-Anhalt, 1. Wahlperiode, Drucksache 1/2929, S. 1, 17-20 |
| 106 | 신연방주의 문화 현황에 관한 질의에 대한 연방정부의 답변 | 1993년 12월 8일 | 연방정부, 연방의회, 시민당 | Parlaments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 12. Wahlperiode, Drucksache 12/6385 |
| 107 | 신연방주의 문화 현황에 관한 질의-연방의회 심의 | 1993년 12월 10일 | 연방의회 | Parlaments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 12. Wahlperiode, Plenarprotokoll 12/200, S. 17339-17364 |



| 문서 | 제목 | 일자 | 담당자/기관 | 출처 |
|-----|--|---------------|---|---|
| 108 | '변동하는 세계 속에서 문화민족으로 통일된 독일의 이미지'-연방의회 질의에 대한 연방 정부의 답변(발췌) | 1993년 12월 22일 | 연방의회, 외무부, 기민당, 자민당 | Parlaments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 12. Wahlperiode, Drucksache 12/6504 |
| 109 | 작센 문화공간법 | 1994년 1월 20일 | 작센 주지사 쿠어트 비덴코프, 작센 학술 문화부장관 한스 요아힘 마이어 | Sächsisches Gesetz- und Verordnungsblatt, 1994, Nr. 7, S. 175-177, Ausgabebetag 17.02.1994 |
| 110 | 통일독일의 문화예술에 관한 질의에 대한 연방정부의 답변 | 1994년 3월 3일 | 녹색당, 연방의회, 연방정부 | Parlaments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 12. Wahlperiode, Drucksache 12/6956 |
| 111 | 튀링겐 고궁 및 정원재단법 | 1994년 3월 10일 | 튀링겐 주정부 | Gesetz- und Verordnungsblatt für den Freistaat Thüringen, 1994, Nr. 9, S. 265, 284-287, Ausgabebetag 17.03.1994 |
| 112 | 작센주 예술극장과 오페스트라의 구조조정에 관한 질의-작센주 학술문화부장관의 답변 | 1994년 4월 8일 | 작센 주의회, 주정부 | Parlamentsarchiv des Sächsischen Landtags, 1. Wahlperiode, Drucksache 1/2930 |
| 113 |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주 문화예술 및 예술가 현황-주의회 질의에 대한 정부 답변 | 1994년 4월 12일 |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 주의회 | Parlamentsarchiv des Landtags Mecklenburg-Vorpommern, 1. Wahlperiode, Drucksache 1/4308 |
| 114 | 동독 프리시아 문화재단 소속 국립박물관의 직원 인계에 관한 연방의회의 질의에 대한 연방정부의 답변 | 1994년 6월 6일 | 녹색당, 연방의회, 연방정부 | Parlaments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 12. Wahlperiode, Drucksache 12/7791 |
| 115 | 튀링겐 문화의 발전에 관한 질의에 대한 주정부 문화부장관의 답변 | 1994년 6월 9일 | 튀링겐 주의회, 주정부 문화부 | http://www.parldok.thueringen.de/ParlDok/dokument/10765/die-entwicklung-der-kulturlandschaft-in-th%C3%BCringen.pdf , abgerufen am 30.03.2016 |
| 116 | '동서지역 스포츠의 통합'- 연방정부 8차 스포츠 보고서 발췌 | 1995년 4월 12일 | 연방정부, 연방의회 | Parlaments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 13. Wahlperiode, Drucksache 13/1114, S. 1,6-7,78 |

| 문서 | 제목 | 날짜 | 담당자/기관 | 출처 |
|-----|---|--------------|---|---|
| 117 | 문화 분야를 위한 과도기 재원-연방주별 지원금액 현황 1991-1993 | 1995년 9월 13일 | 연방정부, 연방의회 | Parlaments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 13. Wahlperiode, Drucksache 13/2280, S. 511 |
| 118 | 브린덴부르크 역사건축물 보호를 위하여 | 1997년 7월 24일 | 학술/연구/문화부 | ELWIS Parlamentsdokumentation, Landtag Brandenburg (Stand: 01.08.2017). DrS 2/4307 |
| 119 | 2001-2004 연방 수도 문화 재정 지원을 위한 조약 | 2001년 7월 7일 | 독일연방공화국/문화언론 부문 연방정부 대표(이하 연방정부), 베를린주/베를린 시장 및 베를린 내무 및 스포츠 의원 (이하 지방정부) | Drucksache des Deutschen Bundestages, 14. Wahlperiode, 14/9677, S. 5-12, 13.06.2001 |
| 120 | 2002 브린덴부르크 주정부의 문화개발 콘셉트 보고서 | 2002년 6월 18일 | 학술/연구/문화부 | ELWIS Parlamentsdokumentation, Landtag Brandenburg (Stand: 01.08.2017). DrS 3/4506 |
| 121 | 베를린과 본의 문화 지원에 관한 연방정부의 보고서 | 2002년 7월 3일 | 독일연방공화국/문화언론 부문 연방정부 대표, 연방 지역개발계획, 건설, 도시 건설부(이하 연방정부), 베를린주/베를린시 정부(이하 지방정부), 유네스코, 연방시 본 | Drucksache des Deutschen Bundestages, 14. Wahlperiode, 14/9677, S. 1-4, 03.07.2002 |
| 122 | 베를린의 수도 기능으로 파생된 문화 재정 지원에 관한 조약 | 2003년 12월 9일 | 독일연방공화국/문화언론 부문 연방정부 대표(이하 연방정부), 베를린주/베를린시 학문, 연구, 문화 행정부(이하 지방정부) | http://www.berlin.de/imperia/md/content/rbm-skzl/hauptstadtvertraege/folgevereinbarung_kulturfinanzierung031209.pdf?start&is=1102410670&file=folgevereinbarung_kulturfinanzierung031209.pdf , S.1-4, 09.12.2003 |



| 문서 | 제목 | 일자 | 담당자/기관 | 출처 |
|-----|--|---------------|---|---|
| 123 | 도시역사문화시대 보전 프로그램 | 2007년 3월 | 연방교통건설도시개발부, 도시건설 문화 재보호를 위한 소식지 | Bundesministerium für Verkehr, Bau und Stadtentwicklung: http://www.staedtebaulicher-denkmalschutz.de/service/downloads/informationsdienste/Infodienst32.pdf |
| 124 | 베를린의 수도 기능으로 파생된 문화 재정 지원과 연방 수도의 특별 부담 보상에 관한 조약 | 2007년 11월 30일 | 독일연방공화국/연방 재정부, 문화언론 부문 연방정부 대표(이하 연방정부), 베를린주/베를린 시장, 베를린 내무, 스포츠 행정부(이하 지방정부) | http://www.berlin.de/imperia/md/content/rbm-skzl/hauptstadtvertraege/hauptstadtfinanzierungsvertrag_2007.pdf?start&its=1205248784&file=hauptstadtfinanzierungsvertr_ag_2007.pdf , S.1-6, 30.11.2007 |
| 125 | 진화에 대한 찬성과 반대-독일통일의 틀에서 '바이마르 국립 고전재단 연구 및 기념관'을 '바이마르 고전재단'으로 전환(1989-1992) | 2009년 | 로타 에어리히 교수, 문학기념관 부관장, 바이마르 고전재단 현 이사장 | Weimarer Beiträge 55/4, S. 579-608 |
| 126 | 2009 브란덴부르크 주정부의 문화개발 콘셉트에 대한 보고서 | 2009년 4월 30일 | 학술/연구/문화부 | ELWIS Parlamentsdokumentation, Landtag Brandenburg (Stand: 01.08.2017). DrS 4/7524 |
| 127 | 작센주 문화재보호 20년, 1990-2010 -작센주 내무부 보고서 | 2011년 8월 15일 | 작센주 내무부 | http://www.bauen-wohnen.sachsen.de/download/Bauen_und_Wohnen/Kabinettsbericht_Text_15-8-2011%281%29.pdf ; http://www.bauen-wohnen.sachsen.de/download/Bauen_und_Wohnen/Anlagen_Kabinettsbericht_20-06-2011.pdf , abgerufen am 07.06.2016 |
| 128 | 작센안할트주 공공공간의 문화예술품에 대한 보상 및 배상법에 관한 질의에 대한 주정부의 답변 | 2012년 3월 14일 | 작센안할트 주정부, 주의회 | Parlamentsarchiv des Landtages von Sachsen-Anhalt, 6. Wahlperiode, Drucksache 6/923 |

| 문서 | 제목 | 날짜 | 담당자/기관 | 출처 |
|-----|---|--------------|--|---|
| 129 | 동독 역사 연구를 위한 브란덴부르크 향토 박물관의 기여-브란덴부르크 주의회 앙게이트위원회에 제출된 전문가 의견 '브란덴부르크 주의 사통당 독재의 결과에 대한 역사적 청산과 극복 및 민주적 범지구가로의 이전' | 2012년 5월 23일 | 슈테판 볼레, 베를린 소재 동독박물관, 브란덴부르크 주의회 앙게이트위원회 5/1 | http://www.landtag.brandenburg.de/media_fast/5701/Gutachten%20Heimatmuseen%20Dr.%20Wolle_korrigierte%20Fassung_Ausgabe%202023.pdf , abgerufen am 07.06.2016 |
| 130 | 브란덴부르크 주의회 앙게이트위원회 5/1 '브란덴부르크 주의 사통당 독재의 결과에 대한 역사적 청산과 극복 및 민주적 범지구가로의 이전' 최종보고서-문화 발체 | 2014년 | 브란덴부르크 주의회 | Schriften des Landtages Brandenburg Heft 5/2014, S. 284 f. |
| 131 | 소련군 점령지역/동독에서 국가기관에 의해 박탈된 예술품의 반환-역사적 배경, 현황 및 문제 | 2015년 2월 12일 | 연방의회 학술서비스 | Wissenschaftliche Dienste des Deutschen Bundestages – Ausarbeitung WD 10 – 3000 – 010/15 |

문서 요약

문서 요약(문서번호 1~131)

문서
번호 1

1981-1983년 사이 동독의 교향악단, 공연장 및 관람객 수
1983년 9월 5일

담당자 / 기관_ 동독 예술노동조합

내용_

이 문서는 동독의 예술노조가 작성한 통계로, 1980년대 초반 교향악단, 1967년 이후 개관
된 공연장 및 청중의 수를 연도별로 정리한 것이다.

출처_ Bundesarchiv, BArch/DY 43/1152, fol. 84-86

문서
번호 2

동서독 문화협정

1986년 5월 6일

담당자 / 기관 동베를린 주재 서독 상주대표 한스 오토 브로이트감 차관, 동독 외무부 쿠어트 니어 차관

내용

동독과 서독은 1972년 12월 21일에 조인한 기본협정서에서 이미 문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한다고 확인하였었다. 그러나 기본조약 체결 이후 5차례 열린 회의는 아무런 성과를 얻지 못하였고, 문화협정과 관련된 논의는 일단 중단되었었다. 협상과정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던 핵심적인 문제는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서독지역으로 옮겨졌던 동독의 문화재를 원위치, 즉 동독지역으로 다시 돌려주는 것이었다. 문화협정을 위한 협상은 1983년에 다시 재개될 수 있었다. 12차 회의가 열리는 동안 원칙 협상의 개념 및 언어규정에 관해 논의되었다. 문화재 환수와 관련된 문제는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문화협정을 통해 연간업무계획이 작성되었고 2년 동안 문화의 다양한 영역에서 약 100개의 프로젝트를 실행하기로 합의되었다. 그것은 미술, 문학, 음악, 영화, 학술, 교육, 문화재 관리, 박물관, 도서관, 문서고, 청소년, 체육 등 문화와 관련된 거의 모든 부문을 포함하는 것이었다.

출처 Bundesminister für innerdeutsche Beziehungen (Hrsg.). Das Kulturabkommen. Abkommen zwischen der Regierung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Regierung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über kulturelle Zusammenarbeit, Bonn 1988 (2. Auflage), S. 5-11

담당자 / 기관 연방의회 사민당, 내독성 빌름스 장관

내용

이 문서는 동서독 간의 체육교류에 대한 연방의회 사민당 소속 의원들의 질의에 연방정부를 대표하여 내독성 장관이 답변한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동서독 간의 체육교류를 위한 정치적, 법적 틀은 1972년에 체결된 기본조약을 통해 이미 마련되었다. 실질적인 교류는 동서독의 체육협회가 주관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1974년 5월 8일에 양 체육협회는 구체적인 실현방안에 대해 합의하였다.

서독 연방정부는 동서독의 체육협회의 주관하에 전문체육인들 간의 교류로 제한된 체육교류의 틀을 확대하여 일반인들의 스포츠와 여가스포츠, 접경지역 간의 주민체육, 청소년체육, 체육학과 스포츠의학 분야의 교류도 포함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이런 교류를 위해 서독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겠다고 제안했지만 동독 정부는 지금까지 그것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스포츠교류는 양국 간의 스포츠 경기 일정을 중심으로 체육 일정을 합의하는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1988년에 서독의 쾰른시와 동독의 라이프치히시에 소재한 체육대학이 교류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스포츠의학, 특히 도핑과 관련된 주제를 두고 논의하기 위한 상호방문 일정이 잡혀 있다. 나아가 청소년교류에는 스포츠교류도 포함되어 있다.

출처 Parlaments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 11. Wahlperiode, Drucksache 11/1010

문서
번호 4

동서독 간의 문화교류 합의에 관한 내독성의 설명

1987년 11월 9일

담당자 / 기관 연방정부 내독성 장관 빌름스

내용

이 문서는 동서독의 문화교류에 관한 연방정부 내독성 빌름스 장관의 설명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동독과 서독 정부는 1988년에서 1989년에 동베를린에서 약 100개의 문화협력 행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미술, 문화, 대학, 직업교육, 학교, 출판, 도서관, 문서고 등의 영역에서 전반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나아가 서독의 도서전시회를 동독지역에서 개최하는 것과 같은 새로운 협력사례도 있다.

출처 Bundesminister [sic] für innerdeutsche Beziehungen (Hrsg.). Das Kulturabkommen. Abkommen zwischen der Regierung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Regierung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über kulturelle Zusammenarbeit, Bonn 1988 (2. Auflage). S. 25 f.

문화재 관리 전문가들이 동독 최고인민회의 문화상임위원회 위원장과 문화부장관
및 내각위원회 의장에게 보낸 공개서한

1989년 11월 6일

담당자 / 기관 동독 문화재보호청장, 드레스덴, 베를린, 할레, 슈베린, 에어푸르트 문화재보
호국장

내용

이 문서는 동독의 문화재관리청과 문화재보호국 책임자들이 최고인민회의 문화상임위원
회 위원장과 정부에 보낸 공개서한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역사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동독의 도시들의 구도심이 폐허화되고 있는 현재 상황
은 아주 열악하다. 그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정체성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중요한 자
산들이 파괴되고 있다. 그것이 바로 많은 동독 주민들로 하여금 이 땅을 떠나게 만들었다
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화재보호청은 이미 1987년에 동독 도시의 구도심의 상태에 대
해 우려를 표시하였다. 우리는 지금 구도심의 오래된 건물의 보수작업이 시급하며 그를 위
해서는 주거용 아파트의 수리를 위해 책정된 비용을 투자하는 것도 고려해야만 한다고 본
다. 구도심의 건물을 수리하는 건설 근로자들의 임금이 개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건축재
료도 더 많이 공급되어야만 한다. 건물의 수리를 위해 필요한 것을 파악하여 그에 따른 지
원이 필요하다. 나아가 각 지역의 문화재보호국에게 지역의 필요에 맞추어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주어야 한다. 동독 내각위원회 의장은 정부가 구도심 보호와 관련
된 업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기를 바란다.

출처 Bundesarchiv, BArch/DY 27/4316, fol. 13-17



문서
번호 6

1989년 11월 3-4일에 열린 문화재보호협회 중앙위원회 심의 요약

1989년 11월 9일

담당자 / 기관 동독 문화재보호협회

내용

이 문서는 동독 문화재보호협회 중앙위원회의에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도시의 구도심을 살리기 위해 시급한 조치에 관해 논의한 회의의 보고서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역사적으로 중요한 도시의 구도심을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건축정책의 틀을 변경하는 것이 절실하다. 기존의 아파트 위주의 건축정책은 실패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구도심의 주거지역 전체가 폐허가 되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는 없다. 문화재보호를 위한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하는 것도 검토되어야만 한다. 문화재와 관련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 행태가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 건축정책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 문화재보호협회의 이름으로 정부기관에 필요한 조치의 목록을 제출해야 하며 정부는 그에 대해 신속히 응해야만 한다. 언론을 통해 문화재보호와 관련된 문제를 여론에 알려야만 할 것이다. 문화재보호법과 문화재관리법은 엄격히 준수되어야만 한다. 문화재관리협회 중앙위원회가 새로운 시각을 갖고 활동하기 위해 젊은 사람으로 구성원을 교체해야만 할 것이다. 나아가 문화재보호재단을 설립할 것을 제안한다.

출처 Bundesarchiv, BArch/DY 27/4316, fol. 18 f.

1989년 12월 1일

담당자 / 기관 동독 최고인민회의 마깃트 페트라트 의원, 노이에스포럼 문화실무그룹, 켈러 문화장관

내용

이 문서는 동독 최고인민회의 회의 중에 자유노조연맹 소속 의원인 마깃트 페트라트가 문화장관에게 제출한 것으로 작센지역 마이센시의 시민운동단체인 노이에스포럼의 문화실무그룹이 작성한 문제목록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동독 정부는 문화와 미술을 위해 배정된 재원을 즉시 공개해야만 한다. 체육, 특히 전문 스포츠를 위해 배정된 재원도 마찬가지로 공개해야만 한다. 우리는 전문 스포츠가 문화, 미술 및 국민체육 분야에 비해 지금까지 많은 혜택을 받아 왔다고 본다.

나아가 동독 문화제도의 권한과 업무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만 한다. 우리는 동독에 너무 많은 수의 문화제도가 존재한다고 본다. 미술가들을 규제하는 규정과 법은 공개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검열을 받지 않는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문화의 다양성과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본다.

국가가 조정하는 미술품과 골동품의 판매제도는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마이센시의 지역 박물관이 보수되어야만 한다. 이 도시의 많은 미술인들은 불충분한 작업조건, 특히 아틀리에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는 특히 미술품 생산을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한다. 마이센시에 헌책방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마이센시의 구도심은 시급하게 보수되어야만 한다.

켈러 장관은 이 문서를 통해 제시된 문제들에 대해 해당 지역의 관공서에서 조치를 취하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예술품과 골동품의 매각은 문화부가 아니라 무역부가 주관한다고 밝혔다.

출처 Bundesarchiv, BArch/DR 1/13526 (1), fol. 176-181

담당자 / 기관 동독 문화연맹 문화재관리부 부장 겸 문화재관리협회 중앙위원회 비서 베른트 메터

내용

이 문서는 동독 도시 구도심의 문제를 진단한 것으로 문화연맹의 문화재관리부 부장이 작성한 것이다. 그는 이 문서에서 동독 정부의 건축정책의 성과와 도심이 급속하게 폐허화된 것 사이의 모순을 지적하면서, 과연 동독의 도시들을 구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던진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시의 현재 상태를 점검·분석하여 해결책을 찾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동독 도시의 구도심은 대부분이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다. 그것은 사회적인 불안정을 가져오는 요인이다. 자기 지역의 문화재, 특히 고건축물은 고향에 대한 귀속감을 갖게 해 주지만, 동독에서는 그런 고건축물들이 수십 년간 방치된 결과 고향에 대한 귀속감이 사라지게 되었다. 문화재 관리는 사치가 아니다. 그것은 역사적인 근원을 지키게 해 주는 것이다. 동독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원인은 무엇보다 잘못된 건축정책 때문이다. 역사적인 건물들을 대거 철거한 결과 많은 수의 동독 도시들이 자신의 얼굴을 상실하였다. 조립 가공된 아파트들은 도시의 얼굴이 되지 못하고 귀속감을 느낄 수 있는 고향의 이미지를 제공하지도 못한다. 이렇게 잘못된 구조를 어떻게 개선하는가 하는 것이 앞으로 만들어질 정책에 대한 신뢰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몇몇 도시에서는 이미 문화재급 고건축물의 삼분의 일 이상이 폐허가 되었다. 그것이 수많은 동독 주민들이 고향을 떠나게 만든 하나의 원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독의 사회주의가 완전히 기회를 상실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은 기존의 주관주의로부터 벗어난 새로운 사회주의이다. 동독에서 문화재 보존 전문가들은 자주 조롱을 받고 적대시되었다. 그리고 문화예술의 개념은 문학과 영화 등 창작활동에만 적용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예술에 관한 광범위한 사회적 대화가 절실히 필요하다. 그리고 구도심의 오래된 건축물이 더 이상 철거되어서도 안 된다.

문화재보호법을 어긴 모든 사람은 형사처벌을 받아야만 한다. 보호받아야 할 문화재를 위한 기부금을 모금하고, 그를 위한 재단을 설립해야 할 것이다. 문화재보호 전문인력을 다른 분야에 투입하는 것도 중지되어야만 한다. 부득이 오래된 건축물을 철거해야만 하는 경우에는 건축자재를 보존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 구도심의 교통을 감소시키고 문화재 보호지역에는 아파트를 짓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문화재관리협회는 문화재 목록을 새로이 작성하는 데 참여하고자 한다.

출처 Bundesarchiv, BArch/DY 27/4316, fol. 41-50

문서
번호 9

드레스덴성과 프라우엔교회의 재건축과 재정에 관한 서신 교환

1989년 12월 5일

담당자 / 기관_ 뒤셀도르프 시청 루디거 렉나겔, 전 문화부장관 한스 요아힘 호프만

내용_

이 문서는 서독 뒤셀도르프 시청의 직원 렉나겔이 동독의 전 문화부장관이었던 한스 요아힘 호프만에게 보낸 서신이다. 이 서신에서 그는 호프만이 문화부장관으로서 1989년 10월에 뒤셀도르프를 방문했을 때 나눈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새로 동독의 문화부장관으로 취임한 디트마 켈러에게 그 내용을 전달해 주기를 요청하고 있다. 그는 여전히 드레스덴성과 프라우엔교회를 재건축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 서신에 호프만 전 장관은 렉나겔이 직접 켈러 장관에게 연락하는 것이 좋을 것 같으며, 자신은 이와 관련하여 한스 모드로우 수상과 이야기해 보겠다고 답하였다.

출처_ Bundesarchiv, BArch/DR 1/13526 (1), fol. 219-224

문서
번호 10

동독 시민에 고향 “우리의 구도시를 폐허화로부터 구하고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
면서 도시와 공동체의 미래를 만들어 갑시다.”

1989년 12월 11일

담당자 / 기관 드레스덴 문화재보호관, 베를린 문화재보호관, 할레 문화재보호관, 슈베린
문화재보호관, 에어푸르트 문화재보호관

내용

이 문서는 동독 각 지역의 문화재보호관들이 함께 작성한 것으로 시민들에게 폐허화되고
있는 구도심의 고건축물을 다시 살리기를 호소하는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가치가 있는 수많은 동독의 구도시들의 현재 상황은 아주 우려
스러운 상태이다. 오래된 소중한 역사적 건물들이 지속적으로 폐허가 되면서 주민들의 정
체성 형성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문화적 가치가 상실되었다. 우리가 중부 유럽의 문화
국가라는 자부심을 계속 갖기를 원한다면 이제 그런 폐허화와 철거는 중단되어야만 한다.
무엇보다 건축정책의 수정이 급선무이다. 그를 위해서는 지역의 주민들이 도시개발계획 수
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만 한다. 이제는 시민들이 위로부터 도움이 오는 것을 기다리지
말고 계획과정의 민주화를 달성해야만 한다. 그를 위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야만
한다. 고건축물 철거의 즉각적인 중지과 건축물의 새로운 평가를 요구해야만 한다. 고건축
물의 기초를 보전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가 마련되어야만 한다.

정부가 구도시를 살리기 위한 프로그램을 즉각 도입하기를 요구한다. 정당들도 이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힐 것을 요구한다. 역사적으로 중요한 가치가 있는 구도심에 아파트를 건
축하는 것을 즉각 중단하고 다시 검토할 것을 요구한다. 건축설계사와 시공사들은 구도
시에 아파트 건설이 아닌 다른 대안을 찾아야만 한다.

출처 Bundesarchiv, BArch/DY 27/4316, fol. 64

문서
번호 11

동독과 서독 간의 공동문화위원회의 업무와 목적에 대한 제안

1989년 12월 12일

담당자 / 기관 동독 문화부장관 켈러

내용

이 문서는 동독 1기 개혁정부의 문화부장관 켈러가 한스 모드로우 수상에게 보낸 문서로, 문화영역에서 동서독 간의 협력을 위한 기존의 구조와 장치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거나 더 이상 효력을 갖지 않는다고 설명하면서 1989년 12월 19일에 서독의 콜 수상이 동독의 드레스덴시를 방문하였을 때 공동으로 문화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이 최종성명서에 포함될 것이라고 보고하는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공동문화위원회의 과제는 양국 간의 협력의 기본원칙을 밝히고 기존의 협력을 분석하며 앞으로 발전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동독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유럽통합 과정의 틀에서 문화협력이 있어야 하며, 양국이 문화재 관리, 공동 문화유산의 보존, 젊은 문화예술인 지원, 문화행사 등 다양한 문화영역에서 협력을 위한 양국 간의 규정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 위원회의 동독쪽 대표는 문화부장관이며 다른 위원들은 문서에 기록되어 있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출처 Bundesarchiv, BArch/DR 1/13159, fol. 4-7

문서
번호 12

베를린 장벽을 관광상품으로 만드는 방안-동독 문화부장관과 산업디자인회사
A.+B. Ecke 간의 서신 교환

1989년 12월 18일

담당자 / 기관_ 산업디자인회사 A.+B. Ecke, 동독 문화부장관 켈러

내용_

이 문서는 서독의 산업디자인회사 A.+B. Ecke가 동독의 1기 개혁정부 문화부장관에게 보낸 서신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베를린 장벽은 한 시대의 상징이다. 그것은 베를린 분단의 상징이자 독일 국가 그리고 세계가 적대적인 두 개의 체제로 분단된 것의 상징이다. 이제는 그 시멘트 덩어리가 의미를 잃었지만 그것은 미래에 하나의 경고로 남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장벽의 일부는 그대로 남겨 두어서 역사적인 증거로 그리고 관광상품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분단의 상징이 만남의 장소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프로젝트가 곧 시작되어야만 할 것이다. 그를 위해 장관에게 면담을 요청한다.

이 서신에 대해 켈러 장관은 장벽의 장래에 관해 동독 내각위원회, 동베를린 시청과 서베를린의 시정부가 현재 논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베를린 예술가협회 회원들이 동베를린 쪽의 장벽에 그릴 그림을 국제적으로 공모하였으므로 그 공모에 참여할 것을 권하였다.

출처_ Bundesarchiv, BArch/DR 1/13525 (2), fol. 328-330

문서
번호 13

동독 예술가협회 공동 선언

1989년 12월 20일

담당자 / 기관 동독 문인협회, 동독 미술가협회, 작곡가 및 음악가협회, 연극인협회, 영화방송협회, 엔터테인먼트협회, 건축설계사협회

내용

이 문서는 동독 예술가협회에서 한스 모드로우 수상에게 보낸 공개서한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동독 예술가’의 이름으로 하나의 협회가 창립될 것이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동독이 문화적 독자성을 상실하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예술가협회 대표들은 모드로우 수상에게 조속한 시일 내에 면담을 요청한다. 우리는 모드로우 수상이 발표한 정부성명 중에 문화가 교육정책의 틀에서 간단히 언급된 것에 특히 주목한다. 예술가들이 동독의 정치적 변혁을 이끌어 낸 주역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예술가협회는 사회적으로 예술이 상품으로 치부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현재 동독 문화부는 문화에 대한 전체적인 책임으로부터 벗어나려고 서두르고 있다. 어떤 과도기적인 조치도 없이 지방기초단체에 문화와 예술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고 인민회의 문화상임위원회에 면담을 요청한다.

출처 Bundesarchiv, BArch/DR 1/13526 (1), fol. 117-121

문서
번호 14

동독 국가에 대한 질의에 대한 문화부장관의 답변

1989년 12월 28일

담당자 / 기관_ 기젤라 물러, 켈러 동독 문화부장관

내용_

이 문서는 작센지역에 거주하는 기젤라 물러라는 주민이 동독 개혁정부의 문화부장관 켈러에게 동독의 국가가 1970년대 이후 가사 없이 연주만 하는 것과 관련하여 던진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동독 국가의 가사를 보면 한 구절 한 구절이 모두 새롭게 이해해야 할 진리가 포함되어 있다. 동독 국가는 현재도 폐허에서 새롭게 재건되어야 하고 수많은 어머니들이 동독을 떠난 자식들 때문에 울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1989년 12월부터는 동독 국가의 가사를 다시 부르도록 허용해야만 한다. 그것 또한 개혁의 한 표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해 켈러 장관은 내각위원회에서 곧 국가문제를 논의할 것이며 최고인민회의에 해결방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물러씨의 의견이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고 답하였다.

출처_ Bundesarchiv, BArch/DR 1/13526 (1), fol. 92-94

담당자 / 기관_ ‘프렌츨라우어베르크 자율행동’, 동독 문화부

내용_

이 문서는 1989년 12월 11일에 동베를린의 음악인 4명이 창립한 프렌츨라우어베르크 자율행동에 관한 자료와 그에 대한 정부의 지침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프렌츨라우어베르크 자율행동은 동독의 문화계가 지속적이고, 자율적으로 발전하고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구성되었다. 이 단체는 록그룹, 영화인, 미술가와 반파쇼단체의 대표로 구성되어 있다. 이 단체는 동독의 매각에 반대하고 이 지역에 신나치가 극성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토론회, 극우파에 반대하는 음악회를 개최하고 동독에서 현재 자발적으로 설립되고 있는 모든 그룹들 간의 교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동독의 문화부는 이 단체를 지원한다. 이 단체가 활동하기 적절한 공간을 지원해 주고 독립적인 협회로 승인해 주며 청소년잡지를 발행하는 것을 허용해 주기를 요청하였다. 이들은 나아가 독자적인 방송을 시작하려고 한다.

이 단체는 서독인들이 동독을 방문할 때 동독 화폐를 교환하는 의무를 폐지하고 비자의무를 도입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렇지 않을 경우 서독에서 사회보조금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물가가 훨씬 싼 동독에 와서 살려고 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동서독 간의 협정을 통해 1964년 이후 동독을 방문하는 서독 주민은 일정한 금액의 동독 마르크를 지정환율에 따라 교환해야만 했다. 지정환율은 물론 시장환율에 비해 훨씬 불리하였다. 이 제도는 1989년 12월 24일에 폐지되었다. 이와 유사한 제도는 대부분의 사회주의 국가에 있었다).

출처_ Bundesarchiv, BArch/DR 1/13526 (1), fol. 88-91

문서
번호 16

통일조약을 위한 임시 협상주제 목록 중 문화영역에 대해 합의된 입장

1990년

담당자 / 기관_ 동독 문화부, 문화부차관

내용_

이 문서는 동독 문화부가 통일조약에 대한 협상을 앞두고 문화 부분에 대한 동독의 입장을 먼저 정리한 것이다. 이 문서의 내용은 통일조약 35조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문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동독의 문화유산 중에 보존되어야 할 가치가 있는 것들이 손상되어서는 안 된다. 문화예술의 지원과 보호는 새로 구성될 주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게 된다. 라이프치히의 독일도서관의 장래에 관해서는 앞으로 협상이 필요하다(라이프치히의 독일도서관과 프랑크푸르트의 독일도서관은 1990년에 독일도서관으로 통합되었고, 2006년에 독일국립도서관으로 개칭되었다). 동독의 예술가를 위한 사회보험은 2년의 유예 기간이 지난 후에 독일 연방공화국의 예술가사회보장보험에 의해 대체되게 된다. 그를 위한 조정작업은 동독과 서독의 노동부장관의 주도로 이루어진다. 새로이 구성될 주정부가 자체적인 규정을 도입할 수 있게 되기까지 이 지역에서는 동독의 문화재관리법이 지속적으로 적용된다. 동독의 문화기금은 1994년 12월 31일까지 지속되며, 그 이후에도 가능하면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한다(동독 문화기금의 후신인 신연방주의 문화기금은 2006년 3월에 해체되었다). 연방 정부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개별적인 문화정책과 동독지역의 문화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이러한 시간적 제한은 통일조약 35조 7항에 반영되지 않았다).

출처_ Bundesarchiv, BArch/DR 1/19416

문서
번호 17

동베를린 베르톨트 브레히트 아카이브가 문화부장관 켈러에게 보낸 지원요청서
1990년 1월 4일

담당자 / 기관 게어하르트 자이델, 브레히트 아카이브

내용

이 문서는 동독 베르톨트 브레히트 아카이브 관장 게어하르트 자이델 교수가 디트마 켈러 문화부장관에게 지원을 요청하는 서신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브레히트 아카이브의 업무는 전 세계적으로 높이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브레히트 아카이브는 오랫동안 위기를 겪고 있으며 이제는 공간부족, 인력부족, 기술적 시설부족으로 인한 위기가 매우 심각해졌다. 1989년에 정부가 새로운 지원을 약속했었다. 특히 아카이브를 확대하기 위해서 이웃 건물을 사용할 수 있게 배려해 주기로 했었다. 그러나 이제 동베를린시 중구청이 이 건물에 있는 주거용 공간을 새로이 임대해 주기로 결정하였다. 이 결정이 그대로 실행된다면 브레히트 아카이브는 더 이상 장래가 없고, 직원도 해고해야만 한다. 그래서 문화부 대표와 면담을 요구한다. 문제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서독의 대학이나 재단들과 협력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는다.

출처 Bundesarchiv, BArch/DR 1/13526 (1), fol. 307



문서
번호 18

문화부장관 켈러가 모드로우 수상에게 제출한 1989년 12월 20일에 발표된 예술가협회의 선언문에 대한 입장

1990년 1월 5일

담당자 / 기관_ 디트마 켈러 동독 문화부장관

내용_

이 문서는 디트마 켈러 동독 문화부장관이 모드로우 수상에게 동독의 대표적인 예술가들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가질 것을 제안하는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동독의 많은 예술가들이 체제의 민주적 변혁을 위해 직접 참여했었다. 그들은 동독 문화 예술이 국가로부터 자유롭고 탈중앙집권화되기를 요구했었다. 그러나 이제 이들 예술인들은 동독 문화의 장래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예술가들이 익명으로 협박을 받기도 한다. 그들은 불법으로 소유권을 획득하였다고 비난을 받기도 한다. 이런 비난은 중단되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예술가들이 동독을 떠날 것이다. 켈러 장관은 모드로우 수상이 예술가들과 만나는 자리에 자신도 기꺼이 동석하겠다고 제안하였다.

출처_ Bundesarchiv, BArch/DR 1/13526 (1), fol. 112 f.

문서
번호 19

서독 기업인연맹 문화위원회가 동독 바이마르시의 보수와 현대미술관 건축의
지원과 관련하여 동독 문화부에 제안한 방안

1990년 1월 29일

담당자 / 기관 서독 기업가연맹 예술위원회 미술분과 아렌트 외트커 박사, 동독 문화부

내용

이 문서는 서독 기업가연맹 예술위원회 미술분과 위원장 아렌트 외트커가 동독의 문화부 장관 디트마 켈러에게 보낸 서한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바이마르시의 보존을 위한 공사에 참여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 미술관은 바이마르가 아니라 라이프치히에 건립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 그 이유는 바이마르시에는 현대미술관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이 이미 여러 개 존재하기 때문이다. 라이프치히시에 적당한 건물이 있다면 제안해 주기를 요청한다. 이러한 프로젝트를 위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손쉽게 해결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도이치뱅크의 이사 힐마 콤포와 상의하였다. 포츠담광장에 새로 건축하게 될 건물을 위한 국제공모전에 관해서는 지속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출처 Bundesarchiv, BArch/DR 1/13526 (1), fol. 140 f.

문서
번호 20

아이제나흐시의 재건축을 위한 시민발의와 문화부장관의 반응-서신 교환
1990년 2월 7일

담당자 / 기관 아이제나흐 도시 재건축을 위한 주민발의, 켈러 문화부장관, 동독 건설부장관 바움게르텔

내용

이 문서는 동독의 개혁 초기에 구성된 아이제나흐 도시 재건축을 위한 주민발의팀이 동독 건설부장관에게 보낸 서함과 그에 대한 장관의 반응을 포함하고 있다. 주민발의팀이 제출한 서함의 내용을 먼저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아이제나흐시의 건물들의 현재 상황은 아주 심각하다. 구도심의 철거를 중단시킬 수 있었고 새로운 아파트를 도심에 건축하려는 계획도 연기시킬 수 있었다. 서독과 서베를린의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고 있으며 원탁회의에서 발언권을 얻기도 하였다. 아이제나흐 주민발의는 아이제나흐뿐만 아니라 동독의 다른 도시들의 재건축을 위한 즉각적인 프로그램을 도입할 것을 요구한다.

이에 대해 켈러 장관은 자신이 아이제나흐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동독 문화부의 문화재 관리 박물관 담당국에 아이제나흐시 문제에 대해 브리핑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그것을 토대로 다음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답하였다.

출처 Bundesarchiv, BArch/DR 1/13526 (1), fol. 185-188

담당자 / 기관 독일 자연 및 향토동호회

내용

이 문서는 동독에 독일 자연 및 향토동호회를 창립하는 것에 관련하여 협회의 성격을 설명하는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독일 자연 및 향토동호회는 개인과 단체들이 참여하는 공익 단체이다. 그 목적은 애향심을 키우고 향토를 보호·연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역의 자연, 고향, 전통보존협회 외에도 다양한 단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동호회는 하나가 된 유럽의 틀에서 동독과 서독이 동등한 파트너로 통합되어 하나의 독일이 되는 것을 찬성한다. 그것은 소수민족에게도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며 그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존중하는 것도 포함한다. 동호회는 국가에 대해 회원들의 이익을 대변하며 입법과정에 그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나아가 지역 내 국내·국제 행사를 개최하고 기관지를 발행하며 관광을 육성할 것이다. 동호회의 재정은 국가의 지원과 기부금, 회비를 통해 충당한다. 동호회는 깨끗한 자연을 지키고 역사적 도시를 살릴 것을 요구한다. 나아가 문화재 관리와 거리명의 개칭, 역사교과서의 개정, 모든 아카이브의 개방, 전통적인 명절을 휴일로 지정할 것을 요구한다.

출처 Bundesarchiv, BArch/DY 27/7110, fol. 5-9

문서
번호 22

산업디자인청의 해체와 새로운 후속기관의 설립에 대한 동독 내각위원회의 결정
1990년 2월 8일

담당자 / 기관_ 동독 문화부장관 켈러

내용_

이 문서는 동독 1기 과도정부 내각위원회가 1990년 4월 30일자로 산업디자인청을 해체하고 후속기관으로 사무국을 가진 디자인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 기관은 법인체로 설립하기로 하였다. 이 문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법인체인 이 위원회의 의장은 동독 내각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며, 위원은 동독의 경제, 학문, 예술, 문화, 교육, 상업, 건축 직업협회의 저명한 인사 중에서 정부가 선정한다. 위원회의 임무는 동독의 디자인 발전과 디자인 관련 영역에서 국제적인 협력 그리고 데사우 바우하우스의 디자인 작업에 자문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 위원회 산하에는 5개의 연구소가 있다. 산업디자인청의 해체와 함께 디자인 작업을 위해 국가가 배정한 예산은 크게 감소되었고, 인력 또한 많이 감축되어 90개의 일자리가 정리되었다. 디자인위원회 사무국은 1990년 4월 30일까지 산업디자인청장을 통해 문화부장관에게 조정된 인력계획표를 제출해야 한다. 산업디자인청의 기존 직원을 새로운 고용관계로 전환하기 위한 실무그룹이 구성될 것이다.

이 문서에는 그 외에 1970년대와 1980년대에 도입된 후 폐지되는 규정들이 열거되어 있다.

출처_ Bundesarchiv, BArch/DC 20-I/3/2911

담당자 / 기관 독일 자연 및 향토동호회(동독), 독일 향토협회(서독)

내용

이 문서는 동독의 자연 및 향토동호회와 서독의 향토협회가 서로 협력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한 보도자료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두 단체는 서독의 수도 본에서 협력에 합의하였다. 두 단체는 정기적으로 의견을 교환하고 전문가를 교류하기로 합의하였다. 동독의 독일 자연 및 향토동호회는 1990년 2월 초에 설립되었다. 중앙정부가 문화와 관련된 모든 것을 결정하던 동독의 사회구조는 연방주의적인 구조로 전환되어야만 한다. 동독의 수많은 마을과 도시 그리고 지방에 새로운 단체들이 구성되었다. 서독의 향토협회는 1990년 가을의 정기총회를 동독의 자연 및 향토동호회의 도움을 받아 브란덴부르크지역에 있는 바트자로우시에서 개최할 것이다. 연방자연보호협회는 '지금까지 훼손되지 않았던 접경지역의 자연이 대중관광으로 인해 위협받고 있는 문제'를 1990년에 다루어질 핵심주제로 정했다. 현재 서독의 향토협회가 진행하고 있는 역사적 묘지, 정원, 공원의 목록 작성작업은 동독지역으로도 확대될 것이다. 동독의 건축설계사, 건설기술자들을 위한 연수 훈련에도 도움을 주게 될 것이다.

출처 Bundesarchiv, BArch/DY 27/9023



문서
번호 24

문화예술 지원과 보호를 위한 국가의 책임에 대한 최고인민회의 결정을 위한 원탁회의 제안

1990년 2월 14일

담당자 / 기관 예술가동맹, 동독 중앙원탁회의

내용

이 문서는 동독 중앙원탁회의가 최고인민회의에 제출한 문화예술 지원과 보호에 관한 결의안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동독 정부로 하여금 국가가 문화예술을 보호·지원한다는 조항을 헌법에 규정하도록 한다. 그런 규정이 도입될 때까지는 이 결의가 입법적, 행정적 구속력을 갖는다. 국제적인 문화 교류는 국가가 지원한다. 문화예술의 향유는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에 포함시켜야 한다. 문화와 예술을 위해 지출되는 국가예산은 지난 10년 간의 평균 금액을 넘어서지 않도록 한다. 세금 혜택이나 다른 형식의 혜택을 통해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을 장려한다. 특정한 문화 예술품에 대해서는 상속세와 재산세를 면제해 준다. 문화협회는 공익단체로 인정하고 국가예산을 통해 지원되던 기존의 재정지원을 보장한다. 아동, 청소년, 장애인들이 문화예술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조치를 취한다.

출처 Robert-Havemann-Archiv Berlin (Original: Anlage 1 zur Vorlage 14/1 des Zentralen Runden Tisches)

문서
번호 25

향토문화사협회의 창립 선언문

1990년 2월 21일

담당자 / 기관_ 향토문화사협회 발기인그룹

내용_

이 문서는 동독 과도기에 기존의 단체들이 민주적 이익단체로 전환된 수많은 사례 중의 하나인 향토문화사협회의 창립 선언문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990년 1월 20일에 에어푸르트시에서 동독 문화연맹의 향토사협회 중앙위원회가 향토문화사협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협회는 기존의 향토사협회의 후속기관이며 민주적으로 조직된 이익단체이다. 이 협회는 향토사와 관련된 모든 문제를 다루게 된다. 향토사의 입장은 전문위원회를 통해 대변된다. 협회는 법적, 조직적으로 독립적이다. 정치적, 종교적으로 중립을 취하며 학술연구의 자유를 보장하고 이념적, 이론적, 방법론적 다원성을 보장한다. 협회는 동독과 서독의 통합을 위해 노력한다. 협회의 목표는 개인의 자기실현과 진정한 애향심 및 민주적 참여를 지원하는 것이다. 협회는 '향토사지'를 발행하며 정기적으로 총회를 개최한다.

출처_ Bundesarchiv, BArch/DY 27/11477, fol. 88 f.

문서
번호 26

동독의 문화 현황-중앙원탁회의 14차 회의 결과

1990년 2월 26일

담당자 / 기관_ 동독 중앙원탁회의

내용_

이 문서는 동독 변혁기 초반에 정치적,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중앙원탁회의의 14차 회의의 결과로 동독 문화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여기에는 문화와 관련하여 앞으로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조치와 원탁회의에 참여한 다양한 단체들의 입장표명, 제안서, 신청서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것들은 대부분 문화시설과 예술인의 생활보조를 위한 재원 등에 관한 것이다. 이 문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민주적 선거를 앞두고 있는 동독의 정당들은 지금까지도 문화예술을 위한 어떠한 정책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중요한 것은 오케스트라나 문화예술회관, 극장, 도서관 그리고 청소년 클럽, 디스코텍, 일반 주민의 삶을 윤택하게 해 주는 모든 문화시설이 정치적 변화에 의해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도입해야만 한다.

- 자유로운 문화예술 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물질적 조건의 보장
- 모든 국민이 문화 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
- 지방관청이 문화와 관련하여 배정된 예산을 임의로 다른 부분에 사용해서는 안 되며 문화와 관련된 다른 지출이 감소되어서는 안 된다. 그를 위해서는 먼저 공개토론을 거친 후에 새로 결정되어야 한다.
- 동서독 간의 환경협력의 틀에서 역사적 구도심을 보존하는 프로그램을 준비
- 소수민족인 소르벤의 문화보존을 위한 지원
- 1990년도 문화예산 공개, 전문위원회를 통한 문화장관 자문 및 감시

원탁회의는 나아가 동독 헌법에 동독이 문화국가라고 명기할 것을 요구하였다. 시장경제적 기준들이 문화영역에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기본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기존의 문화재정법과 주민 문화국가의 구축을 위한 행정규정 및 시민참여권을 확대하여 문화의무법을 제정해야만 한다고 하였다.

출처_ Bundesarchiv, BArch/DA 3/84, fol. 144-166

1990년 3월 7일

담당자 / 기관_ 테힐레스그룹, 켈러 문화부장관

내용_

이 문서는 동독 문화부장관 켈러가 동베를린 미테 구청장에게 동베를린시 오라니엔부르크가 54번지의 건물을 점령한 예술가 그룹 '테힐레스'가 켈러 문화부장관을 만나서 이 건물의 철거작업을 중지해 주기를 요청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테힐레스그룹은 그들이 점령한 건물을 창작실로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를 요구하였다. 건물의 점령도 합법화해 주기를 요구하였다. 구청장이 직접 이들 예술가들을 만나서 해결책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 건물의 부분적인 철거는 이미 1980년에 시작되었다. 동베를린 미테 구청은 1990년 4월 10일에 이 건물을 폭파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 건물은 임시로 문화재로 지정되었다가 1992년 문화재로 확정되었다. 이 건물은 다양한 그래피티가 그려져 있으며 그 후 창작과 문화활동을 위한 센터이며, 현대미술 판매실, 창작실, 전시실, 극장, 주점, 연극무대가 있다. 2008년 12월 31일까지 상징적 월세로 1 스퀘어미터당 1마르크를 내기로 합의하였다. 그 후에 건물의 사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합의도 이루지 못했다. 2012년 9월 4일에 이 건물에 있던 모든 미술창작 시설은 철거되었고 그 후 건물은 아무도 사용하지 않은 채 비어 있다.

출처_ Bundesarchiv, BArch/DR 1/13526 (1), fol. 358 f.

문서
번호 28

문화예술 지원 및 보호를 위한 국가의 의무에 관한 동독 최고인민회의 결정

1990년 3월 7일

담당자 / 기관_ 동독 최고인민회의

내용_

이 문서는 과도개혁기 동독의 최고인민회의가 장관회의에 동독의 문화예술이 독일의 민족 문화에 기여할 성과를 보존하기 위한 법안을 작성·제출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그러한 법안을 통해 국가가 문화와 예술을 지원·보호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규정하고자 했다. 동독은 문화국가로서의 의무를 지고 있다는 것이다. 동독의 문화와 예술은 독일, 유럽, 나아가 세계문화의 일부이며, 그로써 보존되어야 할 기본적인 가치를 지닌다고 했다. 주민들이 일상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권리는 기본권으로 보장해 주어야만 하며, 국가는 이를 위해 필요한 조건과 시설을 갖추고, 유지·관리할 의무가 있다. 주민이 보유한 문화재의 이용은 국가가 장려해 주고 재산세와 상속세를 면제해 주는 혜택을 주어야 한다.

출처_ Gesetzblatt der DDR, Nr. 1990 I/16, Seite 126

문서
번호 29

동독과 서독 간의 공동문화위원회 설립에 관한 결정

1990년 3월 8일

담당자 / 기관 동독 내각위원회, 문화부장관 켈러

내용

이 문서는 동독과 서독이 공동으로 설치한 문화위원회에 관한 결정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공동문화위원회의 과제는 양국 간, 국제적 협력의 기본 원칙을 논의하고 지금까지의 협력 관계를 분석해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이다. 동독의 입장에서는 여기에 더하여 이 위원회가 유럽통합 과정의 틀에서 문화적 협력을 도모하고, 문화재보호, 문화유산 보호, 문화예술 후진 양성, 문화행사 등과 관련하여 양국 간의 공동규정과 협정을 준비하는 역할을 맡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위원회의 위원장은 동독 쪽에서는 문화부장관이며, 그는 함께 참여할 전문가를 임명할 수 있다. 서독 측은 1990년 3월 18일 동독 총선거 이전에 이 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였고, 동독 측이 그에 동의하였다.

출처 Bundesarchiv, BArch/DC 20-I/3/2931

문서
번호 30

국립 아카이브와 관련된 조치-동독 내각위원회 결정

1990년 3월 8일

담당자 / 기관 동독 내각위원회, 내무부장관 로타 아렌트

내용

이 문서는 동독 내각위원회가 국립 아카이브와 관련하여 내린 결정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동독의 국립 아카이브는 현재 동독의 개혁과 관련하여 만들어지는 수많은 문서들을 확보하여 역사 기술 작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만 하는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다. 그를 위해서는 개혁의 준비와 실천과 관련된 모든 결정과정에 문서국이 참여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문서국에 있는 인원과 장비, 기술로는 그런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다. 문서국은 1960년대 말 이후 인력이나 물자를 제대로 배정받지 못했다. 그 결과 현재 문서와 관련된 업무는 그 한계점을 훨씬 넘어섰다. 국립 문서국들은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저장고가 더 이상 없다. 그 결과 80,000미터나 되는 서류들이 문서국으로 이전되지 못하고 있다. 나아가 보관 중인 문서의 약 45%가 임시시설에 보관되어 있어서 연구자들이 이 자료를 사용할 수 없다. 그로 인해 외부에서는 우리가 마치 아카이브의 활용을 금지하고 있는 것과 같은 인상을 받을 수 있다. 문서를 인계받는 작업이 지연되는 것은 문서의 보존을 위협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각위원회는 문서국의 업무능력을 개선하기 위해 12가지 조치를 취하고, 이 조치를 실행에 옮길 책임자와 실행기간을 정하였다.

출처 Bundesarchiv, BArch/DC 20-I/3/2928

문서
번호 31

동독 문화정책 연락사무소 설치에 관한 보도자료

1990년 3월 15일

담당자 / 기관_ 독일 문화평의회

내용_

이 문서는 170개의 서독 문화단체가 소속된 독일 문화평의회가 동베를린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알리는 보도자료이다. 이 자료는 연락사무소의 업무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그 중에는 동독에 독립적인 문화컨퍼런스를 조직하고 실무그룹을 구성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독일 문화평의회는 임시로 동독 문화연맹에 연락사무소를 두기로 하였다. 동독 문화연맹은 1945년 8월에 설립되었고, 1990년 5월에 해체되었다.

출처_ Bundesarchiv, BArch/DY 27/11479, fol. 37



문서
번호 32

문화연맹의 1989년도 회계보고

1990년 3월 15일

담당자 / 기관 동독 문화연맹

내용

이 문서는 동독 문화연맹의 1989년도 회계보고서이다. 그에 따르면 1989년도 동독 문화연맹의 전체 수입과 지출의 규모는 4천 5백 9십만 동독 마르크였다. 수입 내역을 보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국가예산으로 배정되는 금액이었고, 그것은 전체 수입의 66.9%를 차지하였다. 지출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직원 급여가 전체 지출의 46.6%, 문화업무가 33.6%였다. 지역협회의 재정에 관한 정보는 이 문서를 통해서 알 수 없다. 그러나 동독의 문화연맹에 속한 다양한 단체에 배정되는 재정에 대한 전체적인 윤곽을 알 수 있다.

출처 Bundesarchiv, BArch/DY 27/11477, fol. 2-7

문서
번호 33

동독에 문화평의회를 설치하는 것에 대한 고려

1990년 4월 17일

담당자 / 기관_ 독일 문화평의회 문화정책 연락사무소

내용_

이 문서는 서독의 문화평의회 내에서 동독에 문화평의회를 설치할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방식을 보여준다. 당시 서독 문화평의회 의 문화정책 연락사무소장이었던 클라우스 일라우가 이 문제에 관해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개최하였다. 그는 이 회의를 위해 돌린 회람에서 문화평의회 설치와 관련하여 4가지 대안이 존재한다고 설명하였다. 그것은 다음과 같다:

1. 동독이 문화영역에서도 서독의 구조를 그대로 따를 것이기 때문에 동독에 자체적인 문화평의회를 아예 설치하지 않는다.
2. 동독 문화평의회를 신속하게 설치한다.
3. 동독에 문화평의회를 설치하지 않고 대신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직과 조정 역할을 담당하도록 한다.
4. 문화정책을 지속적으로 동독과 서독의 국가기관이 관할하도록 둔다.

출처_ Bundesarchiv, BArch/DY 27/11479, fol. 38

문서
번호 34

영화 도시로서의 베를린-전문가 회의 보고서

1990년 4월 25일

담당자 / 기관_ 기민당, DEFA 독일영화사

내용_

이 문서는 기민당의 동베를린시당 위원장 에버하르트 엥글러가 쉬르머 문화부장관에게 제출한 것으로 영화 도시로서의 베를린에 대한 전문가회의 보고서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990년 4월 25일에 DEFA 영화촬영소에서 서베를린의 영화제작자와 DEFA 영화촬영소의 책임자와 노조대변인, 동서베를린 기민당의 문화전문가가 모여 회의를 개최하였다. 먼저 DEFA가 매년 16편의 영화를 생산하며 3천 4백만 동독 마르크를 지원받는다고 보고되었다. 1991년에도 정부로부터 지원금이 제공될 수 있을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보고되었다. 서독에서도 영화제작을 위한 지원은 아주 중요하며 그런 지원이 없이는 독일 영화가 생존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도 강조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DEFA 제작소들을 민영화하여 다른 영화 스튜디오를 위한 서비스업을 개업하라는 제안도 있었다.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시설과 예술작업을 분리해야만 한다는 것이 그들의 논리였다. 한 참가자는 동독의 어린이 영화 전통을 살려야만 한다고 주장하였다. 최종적으로 실무그룹을 구성하여 1990년 5월 8일까지 DEFA의 장래를 위한 모델을 만들어서 제출하도록하기로 결정하였다. 그것은 최종적으로 동독 문화부에 제출하기로 하였다. 나아가 DEFA의 간부진을 교체해야만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이 문서를 통해 쉬르머 장관에게 면담을 요청하기로 하였다. DEFA는 1992년에 1억 3천만 DM에 프랑스의 CGE사에 매각된 후 '바벨스베르크 스튜디오'로 개칭되었다.

출처_ Bundesarchiv, BArch/DR 1/19419

1990년 5월 7일

담당자 / 기관_ 동독 문화부장관 헤르버트 쉬르머

내용_

이 문서는 과도기 동독 문화부장관이 서독과 문화통합에 관해서 논의한 것에 대해 정리한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동독과 서독 측 대표들은 정치적, 재정적, 경제적 측면에서만 두 국가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데에 동의하고, 이 과정에서 문화영역이 뒷전으로 밀려서도 안 된다고 보았다. 그리고 동서독 문화통합을 구체화하는 것의 의미를 강조하였다. 나아가 앞으로 구축될 동독의 주들에 문화의 연방주의 원칙을 도입함으로써 지방행정기관과 주, 재단 또는 스폰서 등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문화와 예술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에 합의하였다. 시장경제 체제로 전환되는 과도기에 예술가들의 생계를 보장할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데에도 합의하였다. 양측은 앞으로 동독지역의 주들이 별도의 문화재단을 구축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문화재단들이 동독지역으로 활동영역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나아가 조세법, 예술가 지원, 예술품 보호 등에 관한 협력이 논의되었다.

출처_ Bundesarchiv, BArch/DR 1/13525 (2), fol. 321 f.

문서
번호 36

동독 문화부 예산안 심의-문화부장관에게 제출한 자료

1990년 6월 7일

담당자 / 기관 동독 문화부 예산국 국장 브리기테 바이쓰

내용

이 문서는 과도기 동독 문화부의 예산재정 담당 국장이 새로운 문화 예산안의 심의를 위해 장관에게 제출한 자료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새로이 작성된 문화 예산안은 재무부가 정한 것보다 5천 6백 2십만 DM이 많은 액수이다. 재무부가 배정한 금액으로만 예산을 편성한다면 베를린의 국립박물관 건립작업과 독일독의 수리작업이 즉시 중단되어야만 한다. 나아가 슈트랄준트, 크베들린부르크, 슈베린, 에어푸르트의 구도심 재건을 위한 지원금도 감소되어야만 한다. 그리고 1990년 7월 1일부터 실행하기로 한 사회보조금의 증액도 포기해야만 할 뿐만 아니라 예술대학도 폐쇄되어야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새 예산안은 절대로 관철되어야만 한다.

출처 Bundesarchiv, BArch/DR 1/19416

문서
번호 37

동독 문화기금을 통한 용자 제공에 관한 규정

1990년 6월 7일

담당자 / 기관 동독 문화기금 이사회

내용

이 문서는 동독 과도기에 예술가들을 위해 도입된 재정지원과 관련된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예술인들의 작업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용자를 제공할 수 있다. 용자금은 특히 아틀리에, 창작소, 작업공간 등의 신축, 확장, 수리 공사를 위해 또는 설비와 인테리어 도구·장비의 구입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용자금의 규모와 지급 조건 그리고 용자금 지원 절차 등은 문서로 기록해 둔다.

출처 Bundesarchiv, BArch/DR 1/19417

문서
번호 38

동서독 문화위원회 제Ⅲ 전문위원회 제안 및 동서독 문화위원회 2차 회의 보고

1990년 6월 25일

담당자 / 기관 동서독 문화위원회 전문위원회 Ⅲ, 예술교육 및 연수

내용

이 문서는 동서독 문화위원회의 제Ⅲ 전문위원회가 작성한 것으로 동독의 예술교육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동독에서는 예술재능을 키우고 문화 인프라구조를 확대하기 위해 적지 않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독에서는 문화의 인프라가 통제되지 않은 채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해체되고 있는 조짐이 보인다. 전문가위원회는 연방정부와 주 및 지방행정기구들이 가능하면 신속하게 이런 위험한 변화를 중단시킬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사업에 재정을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래야만 동독에서 문화생활이 새로운 자극제를 얻게 되고 동독의 예술가들로 하여금 동독에 머물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문서에는 나아가 예술대학, 예술가 지망생 지원, 연수, 음악학교, 영재지원 등에 관한 자세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다. 전문가 위원회는 나아가 위원회에서 제안한 조치들이 늦어도 1990년 8월 말, 9월 초에는 착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출처 Bundesarchiv, BArch/DR 1/13525 (1), fol. 97-104, 205 f.

문서
번호 39

1990년도 하반기 문화예술 사업의 재정지원을 위해 연방주 문화재단에 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한 제안

1990년 6월 25일

담당자 / 기관_ 동독 문화부 제Ⅱ국 예산재정 담당국 국장 브리기테 바이쓰

내용_

이 문서는 동독 문화부 예산국장이 서독 연방주의 문화재단 이사장에게 동독의 문화적 조치와 문화예술 중에 시급하게 지원이 필요한 것들의 목록을 작성해서 제출한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동독지역에 주정부가 구성되고 지방 행정단위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조치들의 목록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이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주제들에 대한 목록을 포함하고 있다.

1. 문화적 유적을 보존하거나 복구하는 작업,
2. 문화예술 시설의 실무활동의 보장을 위한 조치
3. 다른 시설, 문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 모금

출처_ Bundesarchiv, BArch/DR 1/13525 (2), fol. 389-393

문서
번호 40

동서독 문화위원회 제I 전문위원회 문화유산 제안 초안

1990년 6월 28일

담당자 / 기관 동서독 문화위원회 제I, II 전문위원회 기본원칙, 문화유산 부문

내용

이 문서는 동독과 서독의 문화부장관들이 참가한 문화위원회의 회의 보고서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990년 6월 28일에 서독 연방주들 간의 문화와 교육정책을 논의하는 문화부장관협의회 의 의장과 내독성 장관, 동독의 문화부장관의 주도하에 동서독 문화위원회가 열렸다. 동독 문화부장관이 먼저 당시 동독의 문화정책에 관해 설명하였다. 이 회의의 참가자들은 통일이 실현되는 과정에서 문화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문화부장관협의회 의장은 특히 동독이 문화교육 영역에서 서독과 동일한 연방주의 구조를 갖게 된다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고 평가하였다. 서독 연방주들은 이 결정이 조속한 시일 내에 실천에 옮겨져서 동독의 주문화부장관들과 문화부장관협의회에서 함께 일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발언하였다. 내독성 장관은 문화 부문에서도 연방정부가 함께 책임을 진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특히 동독과 서독 모든 지역에서 주민들이 동등한 가치의 삶을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도 적어도 과도기에는 연방정부의 역할이 일정 정도 필요할 것이라고 보았다. 이 회의에는 문화적 인프라, 문화유산의 공동관리, 문화 예술인 양성 및 외국에서의 문화활동에 대한 전문위원회의 보고가 논의되어야 할 안전에 포함되어 있었다. 그중에서도 특히 시급한 문제에 대해서는 제안서가 작성되었다. 이 제안서는 이 문서의 부록에 포함되어 있다.

문화위원회의 회의와 여기서 작성된 제안서는 정부기관들이 예술인, 협회 및 문화단체를 대화의 장으로 초대하는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원칙과 문화유산 및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공청회가 개최되기도 했다.

출처 Bundesarchiv, BArch/DR 1/13525 (1), fol. 97-104, 205 f.

1990년 6월 28일

담당자 / 기관 동독 문화부장관 헤르버트 쉬르머

내용

이 문서는 서독의 수도 본에서 열린 동서독 문화위원회 2차 회의에서 동독의 문화부장관 쉬르머가 발표한 연설문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3일 후면 동독과 서독 간의 화폐 및 경제사회 공동체 조약이 발효된다. 통일과정은 우리가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는 문화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그로 인해 문화적 가치가 손실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동독의 많은 사람들은 지금 문화기반 구조가 붕괴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다. 그로 인해 동독의 예술인들 사이에서는 벌써 동요의 조짐이 보인다. 사회적인 문제 외에 예술인들의 작업조건, 수많은 문화시설의 존속을 위한 재정확보 등에 대한 우려가 크다. 앞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기 보다는 오히려 더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쉬르머 장관은 나아가 다음 13개의 중요한 사안에 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1. 문화예술이 통일과정의 중요한 한 축
2. 동독 문화부는 중앙관청으로 존속
3. 과도기 연방과 주정부의 재정 프로그램
4. 동독지역에서도 서독의 예술가 사회보험제도 도입
5. 소르벤 소수민족의 보호
6. 기존의 접경지역 지원 프로그램을 국경지역으로 확대 적용
7. 전후 분산된 프러시아 문화재를 베를린으로 통합
8. 역사적으로 중요한 고건물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9. 동독 영화스튜디오 확장
10. 동독 문화예술 교육기관의 존속
11. 예술가의 활동 지원
12. 동독 아카이브의 보존
13. 문화위원회와 예술가 미디어 간의 합의

출처 Bundesarchiv, BArch/N 2673, Redemanuskript von Minister Herbert Schirmer für die 2. Sitzung der deutsch-deutschen Kulturkommission am 28. Juni 1990

담당자 / 기관 동서독 문화위원회, 서독 문화부장관협의회 의장, 내독성 장관, 동독 문화부장관

내용

이 문서는 1990년 6월 28일에 개최된 동서독 문화위원회의 2차 회의 보고서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동독에 주 단위의 행정기구가 도입되어 서독의 주들과 동일한 권리와 책임을 갖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다. 그것은 동독에서도 주 단위 행정기관이 문화정책을 담당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되면 중앙정부의 문화부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다. 문화부장관협의회 의장 마리안네 티딕 장관에 따르면 동독에서 주가 새로이 도입되는 것은 통일과정의 중요한 한 단계였다. 티딕 장관은 머지 않은 장래에 작센, 작센-안할트, 튀링겐, 브란덴부르크,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의 문화부장관들과 함께 문화부장관협의회 회의의 진행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그것이 실현될 때까지는 문화부장관협의회 회의의 모든 회의에 동독의 대표가 게스트로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티딕은 동서독 문화위원회 전문가위원회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작업을 해주어서 2차 회의에 이미 첫 번째 제안서를 제출하였다고 강조하였다. 제출된 제안서는 문화적 인프라구조, 문화유산의 공동관리, 문화예술 교육 및 외국에서의 문화활동 등에 대한 중간점검을 다루고 있다. 독일통일 절차는 경제, 재정, 사회복지 부문에서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환경과 사법 외에 문화교육도 거기에 포함되어야만 한다. 빌름스 내독성 장관은 그에 덧붙여서 연방정부가 이 부분에서 재정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고 보완하면서, 문화 부분이 2차 국가조약, 즉 통일조약에 포함되어야만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어서 동독 문화부장관 쉬르머는 동독의 문화정책에 관해 자세히 설명하였다. 그는 동독지역이 독일연방공화국에 가입한 후에 독일 전역을 아우르는 문화정책을 지속적으로 관장할 수 있는 청 단위의 중앙정부기구를 설치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이 제안은 서독 측에 의해 거부되었다. 이 회의록에는 4개의 전문가위원회의 보고서가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회의에 참가한 사람들의 명단도 포함되어 있다. 다음 번 회의는 9월 말에 본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출처 Bundesarchiv, BArch/N 2673, Ergebnisniederschrift über die 2. Sitzung der deutsch-deutschen Kulturkommission am 28. Juni 1990

담당자 / 기관_ 문화협회

내용_

이 문서는 개혁기 동독에 세워진 수많은 시민단체 중의 하나인 문화협회의 정관이다. 이 정관은 개혁기 동독의 시민들이 얼마나 이상적인 사회를 꿈꾸었는지 잘 보여준다. 정관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문화협회는 베를린에 사무실을 둔 독자적이고 중립적인 협회로 독일과 유럽의 통합과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단체는 민주적 결사체로서 공익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지역사회의 모든 사람들의 삶의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과 아이디어를 지원하고자 한다. 나아가 애항심을 키우고 관용과 개방성이 지배하는 연대적 공동체의 구축에 기여하고 법적, 사회적 개혁을 추구한다. 본 협회는 모든 시민과 단체에게 개방되어 있다. 우리는 모든 집단이 동등하게 자신들의 문화적 특성을 펼쳐서 다양한 문화를 만드는 데에 함께 기여하고자 한다.

문화유산의 보호와 환경보호를 지원하고 개인의 자기실현을 도와주기 위해 노력한다. 아동, 청소년들도 협회에 가입할 수 있다. 모든 회원은 의제를 제안할 수 있는 권리와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는다. 협회에 가입한 단체들은 자기 책임하에 활동한다. 협회의 회원은 지역 또는 관심 분야에 따라 그룹으로 나뉘어져서 활동한다. 분과그룹은 자신의 활동에 스스로 책임진다. 협회의 지역 지부는 공익성을 인정받기 위한 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할 수 있다. 주 단위의 지부에 관한 규정은 새로이 신설될 주 단위의 협회가 구성될 때까지는 지역협회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문화협회는 법인체이다. 협회는 자체적인 기업을 설립하고 기업에 참여할 수도 있다. 문화협회는 공익성을 승인받기 위해서 노력한다. 재정은 회비와 활동을 통한 수익금, 기부금 및 지원금을 통해 충당한다.

출처_ Bundesarchiv, BArch/DY 27/11477, fol. 66-70

문서
번호 44

동독 국유재산을 재단기금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한 최고인민회의의 결정-1차 심의
1990년 7월 13일

담당자 / 기관_ 동독 최고인민회의

내용_

이 문서는 동독 최고인민회의에서 재단을 설립하고 국유재산을 재단 기금으로 이전하는 문제에 관해 논의한 회의의 보고서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최고인민회의의 기민당 소속 귄터 벡슈타인이 최고인민회의 총회에서 기민당이 제출한 제안서에 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동독에는 재단과 같은 기구가 존재하지 않고 재단법도 없다. 그러나 동독은 지금은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는 재단과 같은 기구를 절실히 필요로 한다. 동독에서는 너무 오랫동안 환경, 문화, 학술 등 모든 분야를 국가가 전담해 왔다. 그러나 현재 동독의 상황에서 주민의 참여 없이 국가가 혼자서 처리하기에는 그것이 너무 큰 과제이다. 독일 역사상 그리고 전후, 특히 서독에서는 재단이 오랜 전통을 갖고 있다. 지금과 같은 개혁기는 동독에서도 서방세계에 있는 것과 같은 재단을 설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앞으로 세워질 동독 환경 및 자연보호 재단은 서독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것에 대해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최고인민회의의 환경 및 자연보호, 에너지, 원자력안전 상임위원회에서 더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

최고인민회의는 이 제안을 다수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출처_ Parlamentsdokumentation Volkskammer der DDR, Plenarprotkoll der 24. Tagung, 10. Wahlperiode, 13.07.1990

1990년 7월 25일

담당자 / 기관 동베를린시 문화 담당 위원 이리나 루스타, 동독 문화부차관 우도 바취

내용

이 문서는 동독 문화부차관이 동베를린시의 문화 담당 위원과 나눈 대화에 관해서 정리
한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동베를린의 문화 담당 위원이 동베를린의 관할 구역 내에 있는 모든 문화시설의 관리 권
한을 베를린시로 이양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예를 들어 이미 베를린 시청으로 관할권이
이양된 문화재 관리 외에도 동베를린의 모든 예술극장의 관리권을 양도받겠다는 것이다.
그와 함께 이들 시설에 배정된 모든 예산도 베를린 시청으로 이전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동시에 문화부에 있는 음악홀과 연극극장을 해체하고 직원들을 베를린의 문화국으로 발
령하라고 한다. 동독의 중앙정부가 운영하는 문화기금을 해체해서 동독의 주에 배분하되,
동베를린에 대부분의 문화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 고려해서 이 기금의 대부분을 동베
를린에 배정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문화부차관은 이에 대해 적어도 과도기에는 문화기금
이 동독 전역에서 예술 지원과 예술가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되어야만 한다고 응답하
였다.

출처 Bundesarchiv, BArch/DR 1/19419



문서
번호 46

1990년 7월 14일 개최된 문화협회 위원장과 지역 사무총장들 간의 심의 결과

1990년 7월 26일

담당자 / 기관_ 문화협회

내용_

이 문서는 과도기 동독에 새로 설립된 문화협회가 새로 구성된 동독의 주에 지부를 구성하는 문제에 관해 열린 회의의 보고서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각 주에 문화협회 주 지부를 설립한 후에 주 지부의 사무국을 설치해야만 한다. 그를 위해서는 문화협회 자체를 근본적으로 새롭게 개편해야만 한다. 모든 지부는 1991년 사업을 위한 경제적, 재정적, 구조적 방안을 마련해야만 하고, 그를 위한 실무그룹을 구성하도록 한다. 연방사업국은 지역 사무국을 위해 관할 지역 내의 재산가치에 대한 총괄표를 작성한다. 중요한 것은 각 주의 지역협회가 자체적으로 협회에 등록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효율적인 경영을 위해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하는 것도 고려해 보고 있다. 이를 위해 각 지역의 협회들은 컨설턴트의 자문을 받을 것을 권한다. 정부 기관과 다른 스폰서를 구할 필요도 있다. 각 지부는 홍보 체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만 할 것이다. 뮌헨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한다.

출처_ Bundesarchiv, BArch/DY 27/11477, fol. 60-62

담당자 / 기관 동독과 서독 문화평의회

내용

이 문서는 동독 문화평의회 대표가 쉬르머 동독 문화부장관에게 보낸 서한으로 통일과정에서 문화영역에서 발생할 문제의 해법에 관해 논하고 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동독 문화평의회는 문화부장관이 독일 문화전통을 보존하고 동독과 서독이 문화업무에서 동등한 파트너로 통합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1990년 6월 18일에 서독의 문화평의회와 신설된 동독의 문화평의회는 처음으로 공동회의를 개최하면서,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독일통일 과정에 문화예술 분야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문화는 경제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통일과정에서 문화가 제대로 반영되어야만 한다.

동독과 서독의 문화 관련 분야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 문화정책을 두고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에 논란이 있다는 점도 언급되었다. 이 문서에는 동독과 서독의 문화위원들의 요구사항을 읽을 수 있으며, 1990년 7월 26일 동독 문화평의회 위원장의 성명서도 읽을 수 있다. 이 성명서는 동독의 문화평의회가 1989년 가을 이후 동독에서 새로이 설립된 문화단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구라고 명시되었다. 동독 문화평의회는 통일조약에 동독과 서독의 문화평의회 의 입장이 반영되어야만 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동독지역에서의 문화 지원을 위해 적어도 5년 정도의 과도기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와 관련하여 동독과 서독의 문화재정과 관련된 법안이 마련되어야만 한다고 보았다.

출처 Bundesarchiv, BArch/DR 1/19417



문서
번호 48

동독 정부가 문화연맹에 통일조약 협상에 참여할 것을 요구

1990년 7월 28일

담당자 / 기관 동독 수상실 장관 클라우스 라이헨바흐

내용

이 문서는 클라우스 라이헨바흐 동독 수상청장이 동독이 독일연방공화국의 일원으로 가입하는 방식과 관련하여 동독의 시각에서 조정이 필요한 것을 설명한 것이다. 그에 따르면 동독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반영되고 고려되어야만 한다. 그를 위해 동독 정부는 시민들의 이익단체와 함께 협력해야만 할 필요가 있다. 라이헨바흐 수상청장은 동독 문화연맹이 수상청과 협력하면서 문화정책의 기본적인 사안을 함께 작성할 사무관을 지명할 것을 요구하였다.

출처 Bundesarchiv, BArch/DY 27/11477, fol. 54

문서
번호 49

동독 문화유산보호법 시행령-문화유산보호법

1990년 8월 15일

담당자 / 기관 동독 내각위원, 내무부장관 페터 미하엘 디스텔

내용

이 문서는 사회주의통일당의 후신인 민주사회당이 ‘노동운동 문서자료협회’라는 명칭의 공익단체를 설립하면서 노동운동과 관련된 자료가 외국까지 유출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동독 내각위원회가 결의한 문화유산보호법 시행령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내각위원회는 민사당이 공익단체를 설립하는 것이 정당하고 합법적인 권리이지만, ‘노동운동 문서자료협회’를 통해 문서들이 다른 시설 또는 심지어 외국으로 유출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본다. 무엇보다 그로 인해 문서자료의 확보와 이용, 보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주의통일당은 1949년 이후 동독의 지도부를 장악했고, 1968년과 1974년에 개정된 헌법에 의해 사회주의통일당은 동독 체제에서는 지도적인 헌법기구의 역할을 담당해 왔다. 그 결과 사회주의통일당이 보유한 문서와 동독 국가기구의 문서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게 되었다. 사회주의통일당의 문서는 국가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기 때문에 문화재로 국가가 관리해야만 하는 것이다. 이 문서자료들은 1945년 이후 역사를 기술하기 위해 그리고 공식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근거자료들이다. 그런 자료들이 지금 민사당의 관리하에 있다. 1945년에서 1989년 사이의 사통당 지도부의 문서는 동독 중앙문서국에 의해 그리고 사통당 지부의 문서들은 해당 국가문서고에 의해 인수되어야 한다. 민사당이 보유하고 있는 동독 국가기관의 문서들은 국가문서고로 이양되어야만 한다. 국가적인 문서관리국은 자료의 평가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다. 민사당 지도부는 새로이 구성될 위원회에 파견될 2명의 전문인력을 임명할 수 있다.

출처 Bundesarchiv, BArch/DC 20-I/3/3046

문서
번호 50

독일역사박물관 향후 발전에 관한 결정

1990년 8월 29일

담당자 / 기관_ 동독 내각위원회, 한스 요아힘 마이어 동독 교육부장관

내용_

이 문서는 통일 직전에 동독 내각위원회가 독일역사박물관의 거취에 관해 내린 결정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동베를린에 소재한 독일역사박물관은 1990년 10월 1일자로 그 업무를 중단한다. 이 박물관은 개관 이후 줄곧 사회주의통일당의 역사 서술만을 다루어 왔기 때문에 더 이상 독립적인 기구로 유지될 수 없다. 동독의 교육학술부가 이 기관의 법적 후속기구가 되며, 동독 정부는 신설될 연방주들이 새롭게 구축될 '독일역사박물관' 사업에 동참하도록 하자는 서독 연방정부와 연방의회 소속 모든 정당들의 제안을 수용한다. 동독 교육학술부는 기존 독일역사박물관의 자료, 재정 및 인력 관리를 위해 서베를린의 독일역사박물관 유한회사와 계약을 체결할 것이다. 서베를린에 소재한 이 회사는 베를린시 건립 750주년을 기념하던 1987년에 서독 연방정부와 서베를린 시정부가 함께 설립한 회사이다. 기존의 독일역사박물관 건물의 이용권은 새로이 구축될 독일역사박물관에 이전된다. 이와 관련된 계약은 동독의 교육학술부와 서독의 연방내무부가 체결하게 될 것이다. 동베를린 소재 독일역사박물관의 경력직원들은 신설될 박물관으로 인계되어야 할 것이다. 동독 교육학술부는 신설될 독일역사박물관이 준비하게 될 '프러시아 박물관'과 동독의 역사와 문화사를 보여줄 수 있는 컬렉션 등 2개의 특별 프로젝트를 발주할 것이다. 이를 위해 기존의 동베를린 독일역사박물관과 서베를린의 독일역사박물관의 직원들로 이루어진 실무팀이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 내에 구성되어야 한다.

출처_ Bundesarchiv, BArch/DC 20-I/3/3053

담당자 / 기관 서독 연방의회

내용

이 문서는 독일 통일조약에 대한 해설서 중에서 제8장 35조 문화와 관련된 부분을 발췌한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독일통일은 경제적, 사회적, 재정적인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차원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다. 동독지역의 문화시설과 문화적 삶을 보전하기 위한 여러가지 구체적인 조치가 취해졌다. 거기에는 문화정책을 담당할 기관에 관한 것도 포함되었다. 동독에서의 문화정책은 서독에서와는 부분적으로 아주 다른 형태로 발전하였었다. 동독에서 이루어졌던 모든 문화활동이 동일한 형태로 지속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서의 문화활동의 토대는 유지·보존되어야만 한다.

동독의 법 체계에 따라 중앙정부가 관리해 온 문화시설에 관한 과도규정은 통일조약에 의해 다음과 같이 정리되었다: 문화시설은 주정부와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게 된다. 연방정부는 동부지역의 문화 재정에 일정한 기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연방주가 문화정책의 최종적인 결정권과 책임을 갖게 되며, 연방정부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재정을 공동부담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베를린 시정부는 동베를린에 소재한 모든 문화시설을 담당할 수 없다고 선언하였다.

동독 문화기금이 기존의 사회주의적 업무방식에 따라 운영될 수는 없지만 재원은 특히 과도기에 계속 이용할 수 있다. 과도기는 1994년까지로 제한된다. 신연방주들이 독일연방공화국에 가입하면서 이 기구의 후속기관으로 연방주 문화재단을 설립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문제는 앞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동독지역에 문화적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많은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 통일조약은 연방정부가 접경지역 지원 프로그램과 같이 제한된 기간 동안에 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출처 Parlaments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 11. Wahlperiode, Drucksache 11/7760, S. 355, 372-374

문서
번호 52

통일조약 VIII장 35조-문화

1990년 8월 31일

담당자 / 기관_ 독일연방공화국(서독), 독일민주주의공화국(동독)

내용_

이 문서는 통일조약의 본문 중에 문화와 관련된 35조 1항을 발췌한 것이다. 이 조항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1. 문화예술은 분단기에도 독일은 하나라는 의식이 지속적으로 성립될 수 있게 해 주었던 기반이었다.
2. 동독지역의 문화적 기반이 손상을 입어서는 안 된다.
3. 문화와 예술을 보호·지원하는 업무는 동독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한다.
4. 예외적인 경우 연방정부가 문화시설의 재정을 일부 담당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5. 독일의 분단으로 인해 분리된 프러시아 문화재단의 컬렉션을 모두 베를린에 규합한다.
6. 1994년 12월 31일까지는 동독지역의 문화예술 예술가의 지원을 위한 문화기금을 운영한다.
7. 과도기 동안에는 연방정부가 동독지역의 문화정책과 문화시설을 위한 재정을 일부 담당한다.

출처_ Bundesgesetzblatt, Teil II, 1990, Nr. 35, S. 901; Ausgabetag: 28.09.1990

담당자 / 기관_ 동독 내각위원회

내용_

이 문서는 동독의 국립영화사였던 DEFA 독일영화사와 관련된 것이다. 동독의 드 메지에르 정부는 통일 전 1990년 9월에 DEFA-재단을 설립하기로 결정하였고, 문화부장관이 재단 이사회를 구성하였다. 이 문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동독의 영화인들은 분단기에 지속적으로 DEFA-해외배급사의 활동이 불투명하다고 비판해 왔다. 그 결과 1990년 초에 과도개혁정부의 문화부장관은 기존의 DEFA-해외배급사의 업무를 종료하기로 결정하였다. DEFA-해외배급사의 자산, 즉 DEFA가 보유한 영화에 대한 해외판권과 베를린에 있는 시설은 DEFA-재단으로 이전되었다. 당시에는 DEFA의 시설에 대한 재산권 반환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실제로 이에 대한 재산권 반환 요구가 있다는 사실이 나중에 확인되었다. 한편 DEFA-다큐멘트필름 스튜디오와 DEFA-해외배급사 간의 계약이 해지되면서 DEFA-다큐멘트필름 스튜디오가 관련 영화의 해외 판권을 독점하게 되었다. 동시에 DEFA-다큐멘트필름 스튜디오는 법적평가심의를 통해 DEFA-재단의 정당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DEFA-재단은 공익재단으로 설립되었다. 그러나 DEFA-재단이 소재한 베를린의 법에는 이러한 형태의 재단에 관한 법적인 조항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1990년 10월 3일 통일 이후에 DEFA-재단이 형식적으로 승인될 수 없었다.

그러나 DEFA-스튜디오가 민영화되는 과정에서도 동독에서 40년 동안 제작되었던 영화에 대한 판권은 민간에 매각되지 않았다. 신탁관리청이 동독 영화의 판권을 인수해서 프로그레스-영화배급사에 영화의 판매를 위탁하였다. 프로그레스 영화배급사는 1950년 소련과 동독이 합작하여 동베를린에 세운 회사로 모든 국내외 영화를 동독 내에 배급하는 독점 권을 갖고 있었다.

1998년 12월 15일에 최종적으로 DEFA-재단이 연방정부에 의해 민법에 따른 공익재단으로 베를린에 설립되었다. 이 재단의 자산으로 DEFA-영화에 대한 권리가 양도되었다. 이 재단의 목적은 DEFA 제작 영화를 보전하고 그것은 국가 문화유산으로 공익을 위한 영화제작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출처_ Bundesarchiv, BArch/DC 20-I/3/3066

문서
번호 54

영화진흥 프로그램을 위한 기본방침 결정

1990년 9월 12일

담당자 / 기관 동독 내각위원회, 헤르버트 슈르머 문화부장관

내용

이 문서는 통일 직전에 동독의 개혁정부가 영화진흥을 위해 결정한 기본방침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동독 정부는 통일 이후 도입된 신연방주와 연방정부의 담당 기관들이 동독지역의 영화진흥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제공할 것을 권한다. 동독 영화제작 지원을 위해 지금까지 마련한 영화제작기금은 총 5천 3백만 동독 마르크이다. 1991년에는 연방내무부와 연방경제부가 재정을 지원해 주기로 합의하였다.

동독의 국립영화사인 DEFA-스튜디오와 프로그레스-배급사는 자본회사, 스튜디오사로 전환되었다. 영화관은 기초단체가 관리하게 되었다. 통일 이후 과도기에 재정이 보장되지 않으면 스튜디오는 유지될 수 없고 일자리가 위협받게 될 것이다. 영화지원정책을 통해 질적으로 높은 수준의 영화를 제작하는 것이 보장되고 스튜디오에서 활동하는 예술적 역량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이 기본방침은 서독의 기존 영화진흥정책을 모델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 방침에 언급된 재원의 지급 절차는 영화진흥을 위한 주정부 간의 실무공동체를 통해 총괄적으로 이루어진다.

나아가 이 기본 방침은 영화진흥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확정하였다.

- 과도기에는 영화제작준비, 영화촬영과정, 배급 및 상영의 영역에서 각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지원 대상은 신연방주가 근거지이거나 회사의 소재지가 신연방주인 영화사, 제작자 및 영화배급사이며, 원칙적으로 영화의 장르, 형식, 길이와 상관없이 모든 영화가 지원대상이다.
- 지원대상의 선발 결정은 영화, 다큐멘트, 만화영화 전문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 기본방침에는 지원금을 받기 위한 자격, 지원금의 규모, 지원 절차 등 세부적인 사안에 관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다.

출처 Bundesarchiv, BArch/DC 20-I/3/3066

문서
번호 55

독일통일 및 교육연방주의에 대한 독일 주정부 교육문화장관협의체의 성명서

1990년 10월 4일

담당자 / 기관 독일 주정부 교육문화장관협의체

내용

이 문서는 통일 직후 각 주의 교육문화장관의 협의체인 주정부 교육문화장관협의체가 발표한 성명서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신연방주에서 교육문화를 담당하는 교육부장관들은 서독 연방주들의 교육부장관들과 함께 전독일에 동일한 교육·학술·문화를 실현하는 데 동참하게 되었다. 교육과 문화는 독일이 두 개의 국가로 분단되었던 시기에도 이미 동독과 서독을 하나로 묶는 역할을 했다. 이제부터는 교육과 문화를 통해 두 개의 국가를 하나로 만드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해야 할 것이다. 동서독 전역에 동등한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도 교육과 문화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나아가 중부 및 동유럽의 이웃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독일통일이 유럽통합에도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출처 Pressemitteilung der KMK vom 8. Oktober 1990, entnommen aus: Fuchs, Hans-Werner und Lutz R. Reuter. 1995. Bildungspolitik seit der Wende. Dokumente zum Umbau des ostdeutschen Bildungssystems (1989-1994). Opladen: Leske + Budrich, 261 f.

문서
번호 56

연방의회에 제출된 문화정책에 관한 다양한 발의에 관한 보고와 심의

1990년 10월 15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의회 내무위원회, 자민당

내용_

이 문서는 자민당 의원들이 제출한 문화정책의 기본원칙과 목표에 관한 발의를 심의한 연방의회 내무상임위원회가 그것을 수용할 것을 제안한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자민당 의원들이 제출한 발의안은 독일 공동의 문화와 역사는 동서독 분단시기에 문화민족으로서의 독일이 분리되는 것을 막아 주었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지금까지 분단으로 인해 분리되었던 문화기관을 통합해야만 한다고 제안한다. 이를 위해 연방정부와 주정부 및 기초단체들이 함께 힘을 합해야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문화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고 자기계발과 자유를 보장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정체성 형성을 위한 기초를 제공한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문화정책은 독일의 모든 국민들이 새로운 공동의 국가에 귀속감을 갖게 되도록 도와주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연방정부에 따르면 문화와 예술에 관한 정부의 지출이 지난 몇 년 동안 다른 분야와 비교할 때 훨씬 많이 증가하였다. 문화진흥정책은 무엇보다 문화와 예술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해야만 한다. 나아가 소수자들, 특히 독일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에 부응하는 문화적, 예술적 표현을 할 수 있는 자유공간을 보장해야만 한다. 문화와 예술을 위한 국가의 지원은 먼저 주정부와 기초단체가 담당할 과제이다. 그러나 연방정부도 중요한 문화정책적 과제를 담당해야만 한다. 나아가 문화영역에서 필요한 24개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였다.

출처_ Parlaments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 11. Wahlperiode, Drucksache 11/8114, S. 1-20

문서
번호 57

크베들린부르크 대성당 보물의 반환에 관한 질의-작센안할트 주정부의 답변

1991년 1월 18일

담당자 / 기관 작센안할트 주의회 카스틴 크놀레 의원

내용

이 문서는 작센안할트 주의회의 기민당 소속 크놀레 의원이 2차 세계대전이 종결된 후 미국으로 반출되었던 크베들린부르크시의 대성당 보물을 다시 찾아오는 작업에 주정부가 얼마나 관련되었는지에 대해 질의한 것에 대한 주정부의 답변이다.

크베들린부르크시는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지역으로 전근대 이전의 역사적인 원형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기 때문에 독일에서도 중요한 관광지로 알려져 있는 지역이다. 이 도시가 1945년 4월 19일부터 미군에 의해 점령되었는데 그때 대성당을 지키던 미군 병사 한 명이 대성당의 보물 12개를 미국으로 보냈다. 1980년에 그가 사망한 이후 그의 가족이 그 보물을 경매에 내놓았고 12개 중에 10개는 독일로 가져올 수 있었다. 1993년 9월 19일부터는 크베들린부르크 대성당에 전시되었다. 이 과정에서 작센안할트주의 교육학술문화부는 연방정부의 내무부와 작센안할트주 문화재단과 함께 보물을 반환하기 위해 협력했다고 교육학술문화부 장관이 답변했다. 다른 기관들들도 보물의 반환과 관련하여 함께 논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보물을 다시 가져 오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주정부가 일부 부담하고 연방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기 위해 노력했다고 문화부장관은 답변하였다.

출처 Parlamentsarchiv des Landtages von Sachsen-Anhalt, 1. Wahlperiode, Drucksache 1/115, S. 1, 27-28

문서
번호 58

문화시설의 붕괴에 관한 질의

1991년 1월 18일

담당자 / 기관_ 작센안할트 주의회, 주정부

내용_

이 문서는 작센안할트 주의회 사민당 소속 의원들이 문화 영역에서 공공 재정이 붕괴되는 것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 주정부에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990년 12월에 추가경정과 연방내무부가 제공하는 특별기금의 재원을 통해 작센안할트에 배정 지원금으로 일단 7백 2십만 마르크의 재정을 확보하였다. 그중 예술극장에 2백 6십만 마르크, 박물관에 8십만 마르크, 문화재보호에 3백 1십만 마르크 그리고 음악학교에 2십만 마르크가 책정되었다. 이 지원금을 통해 기초자치단체의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주정부는 기초자치단체들과 함께 문화시설의 재정과 주관기관의 다양한 형태에 관해 논의하고 있다. 주정부는 나아가 기초자치단체들이 연방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관해 자문해 주고 있다.

출처_ Parlamentsarchiv des Landtages von Sachsen-Anhalt, 1. Wahlperiode, Drucksache 1/115, S. 1, 7-8

담당자 / 기관 작센안할트 주의회 문화미디어상임위원회, 내무상임위원회, 녹색당, 민사당

내용

이 문서는 통일 직후 작센안할트 주의회의 녹색당과 민사당 의원들이 주정부에게 공익을 위한 문화사업, 문화시설 및 문화협회를 지원하고 주행정을 통해 재정을 지원할 것을 제안한 것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심의 내용이다. 두 정당은 이런 제안을 제출한 이유가 작센안할트의 경기가 악화되면서 문화기반이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민사당은 나아가 동독 체제가 붕괴된 이후 신연방지역에서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한 예술가를 위해 과도기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을 심의한 상임위원회들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결정하였다:

- 예술가를 위한 연수 프로그램 도입을 통해 그들이 자기 영역과 연관된 활동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개발할 수 있게 도와준다.
- 적어도 막데부르크, 데사우, 할레와 같은 대도시에는 예술가들을 위해 필요한 작업, 전시, 공연 공간을 개발하기 위한 초기비용을 주정부가 지원한다.
- 모든 공공건설공사에서는 건축비용의 2%를 공공공간에 예술을 설치하기 위한 기금으로 사용할 것을 규정한다.
- 문화사업, 문화협회 및 개별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분화된 지원지침을 마련한다.
- 작센안할트주의 문화적 발전과 관련된 모든 예산문제를 위해 문화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 자문위원회의 구성원은 문화와 관련된 사람들이 포함되어야만 한다.
- 기초자치단체들에게 문화정책과 관련된 책임을 맡기를 호소한다.

출처 Parlamentsarchiv des Landtages von Sachsen-Anhalt, 1. Wahlperiode, Drucksachen 1/190, 1/208 und 1/502

담당자 / 기관_ 작센안할트 주의회

내용_

이 문서는 작센안할트 주의회에 제출된 문화 프로젝트의 지원 제안에 관해 심의한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주정부의 연방유럽문제 담당 장관은 작센안할트 정부의 예산안에 9백 8십만 마르크가 공익협회와 단체들의 문화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책정되었다고 설명하였다. 문화 프로젝트와 펠로우십을 지원하기 위해 적절한 절차를 통해 공모하기 위한 규정은 현재 해당 기관 간에 조율중이다. 연방정부는 문화구조 지원 프로그램의 틀에서 일정한 지원을 제공하기로 되어 있다. 주정부는 연방정부의 해당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 나아가 연방정부와 함께 연방 차원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확대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주정부의 입장에서는 작센안할트지역의 문화적 생활이 단순히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정도로 활짝 꽃을 피울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녹색당의 쉘플러 의원은 작센안할트주의 문화시설에 관해 고민을 하기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다고 비판하였다. 왜냐하면 문화영역의 붕괴가 이미 1990년 초에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문화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동력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정책이 시작되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다는 것이다. 쉘플러 의원은 작은 협회와 개별적인 예술가들이 집세와 전기세 정도는 지불할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한 지원이 가능해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나아가 작센안할트주가 서독의 연방주들로부터 영원히 지원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강조하였다.

기민당의 크놀레 의원은 작센안할트는 원래 문화가 번성한 지역이었다고 강조하였다. 바흐, 베토벤, 모차르트, 헨델이 자주 이 지역에 왔었다고 하였다. 동독 체제하에서 문화가 전적으로 사회주의통일당의 선전물로 전락하였다. 45년 간의 공산독재는 12년 간의 나치 체제보다 더 많은 해악을 가져왔다. 그렇기 때문에 동독의 문화 체제가 아직도 남은 것이 있다면 그것이 존속되지 못하도록 주의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민사당의 슈스터 의원은 녹색당과 민사당이 제안한 것은 문화 프로젝트를 위한 과도기규정을 의미한다고 설명하였다. 기민당이 주도하는 할레시의 시의회는 예술가들에게 아틀리에를 상업공간에 해당하는 월세가 아니라 거주공간에 제공하는 비용으로 조정해야만 한다고 보았다.

자민당의 브라이텐본 의원은 문화가 경제적 정당성의 요구에 희생되지 않아야만 한다고 강조하였다. 문화예술은 숨쉬는 공기와 같이 필요한 것이라고 하였다. 사민당의 쿤 의원은 문화적 인프라구조가 기업의 생산기지 선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쉘플러 의원의 의견에 대해 반박하였다. 쿤 의원은 사회를 민주적으로 개혁하는 작업을 지속하고 정착시키기 위해 문화생활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하였다.

출처_ Parlamentsarchiv des Landtages von Sachsen-Anhalt, 1. Wahlperiode, Plenarprotokoll 1/10, S. 484-491



문서
번호 61

노이스트레리츠 예술극장과 관련된 의회 질의에 대한 답변

1991년 4월 2일

담당자 / 기관 좌파/민사당 연합, 메클렌부르크 주정부

내용

이 문서는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주의회의 좌파/민사당 소속 의원인 하이데 말리스 라우텐슐레거가 노이스트레리츠시의 예술극장의 재정과 관련하여 주정부에 제출한 질의에 대해 주정부의 문화부장관이 답변한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는 1991년에 이 예술극장에 4백만 마르크를 지원하였다. 연방정부가 2백만 마르크를 부담하였고, 80만 마르크는 지자체가 부담했다. 나머지는 주정부에서 부담하였다.

출처 Parlamentsarchiv des Landtags Mecklenburg-Vorpommern, 1. Wahlperiode, Drucksache 1/307

문서
번호 62

작센 인형극장의 현황과 관련된 질문에 대한 작센 학술문화부의 답변

1991년 5월 15일

담당자 / 기관 작센 주의회 베네딕트 달리히 의원, 작센주 학술문화부

내용

이 문서는 작센 주의회에서 사민당 소속 베네딕트 달리히 의원이 주정부의 학술문화부가 인형극장과 관련하여 어떤 정책을 갖고 있는지 질의한 것에 대한 정부의 답변이다. 그는 해당 인형극장을 민영화할 계획인지 그리고 인형극장 소속 배우들이 장래에 어떤 법적 지위를 갖게 되는지에 관해 물었다. 그에 대해 주정부 학술문화부는 1991년까지는 연방내무부가 캄니츠와 드레스덴의 인형극장을 위해 도입한 문화기반 유지 프로그램을 통해 총 60만 마르크를 지원할 것이라고 답하였다. 지원 프로그램은 인형극장의 법적 주체인 기초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였다. 작센주는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민간 인형극장 프로젝트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원할 것이라고 하였다. 인형극장은 1993년 7월 31일자로 바우첸에 있는 독일 소르벤 민속극장으로부터 분리되어서 민간법인체로 전환될 것이라고 하였다. 이와 관련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협상이 아직 진행 중이라고 하였다.

출처 Parlamentsarchiv des Sächsischen Landtags, 1. Wahlperiode, Drucksache 1/408

담당자 / 기관 작센안할트 주의회

내용

이 문서는 작센안할트 주의회에 문화재보호법 초안을 심의한 회의 보고서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주정부의 교육학술문화부장관은 주의회 총회에서 연설을 통해 작센안할트주에 많은 건축문화재가 있지만 이런 문화유산이 대부분 상태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관할할 해당 부서에 관한 규정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서 공공기관이 아무 조치도 취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하였다. 심의 대상인 문화재보호법안은 교육학술문화부가 문화재보호연구소와 할레 역사박물관과의 협력하에 작성한 것이며 이를 위해 서독 연방주에서 문화재보호를 담당하는 기관과 협의하였다고 설명하였다. 이 법안은 연방정부의 문화재보호법에 부합하며, 학술연구 결과를 반영한 것이라고 하였다. 문화재보호를 담당하는 상위 관청은 막테부르크, 할레, 데사우에 소재하며, 그 이하 소도시에는 문화재보호를 위한 하급관청을 설치하기로 하였다. 교육학술문화부에도 문화재보호국이 설치된다. 나아가 주정부 차원에서 문화재보호청과 고고학적유적보호청이 설립된다. 이 법안은 동독의 문화재보호법과 달리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권이 명시되어 있다.

사민당의 쿤 의원은 문화재보호 하급 관청의 업무가 주사급의 하급 공무원이 담당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비판하였다. 하급 관청에도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고급 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의 의견이었다.

주의회 예술미디어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자민당의 룰프 프리크 의원은 주의회에서 그때까지 문화재보호에 관해서 거의 논의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이 법안을 상임위원회에서 신속하게 처리할 것을 약속하였다.

기민당의 카스텐 크놀레 의원은 동독 사회주의 체제에서 세워진 기념물들도 보존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는 베를린 장벽이 이미 대부분 사라진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발언하였다.

녹색당의 셰플러 의원은 문화재를 보수할 기술을 보유한 전문 인력들이 이미 작센안할트를 떠나서, 이제는 전문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하였다.

이 법안은 문화미디어상임위원회와 내무상임위원회로 보내졌다.

출처 Parlamentsarchiv des Landtages von Sachsen-Anhalt, 1. Wahlperiode, Plenarprotokoll 1/16, S. 943-948

문서
번호 64

1991년 5월 15-16일 문화연맹과 신탁관리청 간의 회의에 관한 메모

1991년 5월 30일

담당자 / 기관 신탁관리청 특수재산부, 문화연맹 협회 사무총장 디터 쟁커

내용

이 문서는 동독의 모든 국유재산을 민영화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된 신탁관리청 특수재산 담당 국장과 동독의 문화연맹 사무총장 간의 회의에 관해 메모한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신탁관리청은 1990년 10월 3일 이후 동독의 모든 국유재산을 연방재산으로 간주한다. 그 법적인 근거는 통일조약이다. 문화연맹이 관리하는 시설 중에는 재산권 반환요구 문제가 걸린 부동산이 많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산권문제를 관리하는 기관에 의해 결정이 내려지게 될 것이다. 신탁관리청은 그 이전에 문화연맹이 보수공사가 필요한 모든 시설의 목록을 작성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것은 경우에 따라 소유권을 반환받은 구소유자들에게 신탁관리청이 문화연맹을 대신해 비용보전을 청구하기 위한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였다. 소유권 반환요구가 없는 문화연맹의 시설은 매각될 것이다. 문화연맹은 그것을 구입할 수 있다. 문화연맹이 법치국가의 관점에서 합법적으로 구입한 시설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갖는다. 동독의 정당과 대중조직 소유 재산을 검토하기 위해 구성된 정부위원회는 이미 법치국가적 원칙이라는 용어의 구체적인 개념정의를 위한 평가서를 작성할 것을 요청하였다. 나아가 정부위원회가 문화연맹의 개혁과정을 평가할 것이다. 그때까지는 문화연맹이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다. 신탁관리청은 문화연맹이 보유한 모든 임대계약서를 제출하기를 요구하였다.

출처 Bundesarchiv, BArch/DY 27/10124

문서
번호 65

튀링겐 주립 박물관 설립과 고궁과 정원을 위한 주립 행정기관의 도입에 관한 질의에 대한 주정부 학술문화부장관의 답변

1991년 6월 6일

담당자 / 기관_ 튀링겐 주의회, 주정부

내용_

이 문서는 튀링겐 주정부의 울리히 피켈 학술문화부장관이 주의회에서 주립 박물관의 설립에 관해 설명한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튀링겐주에 있는 몇 개의 박물관을 주립 박물관으로 개칭하는 작업은 주정부의 재정능력이 개선되고 기초자치단체들의 현황이 파악된 후에 이루어질 수 있다. 과도기에 튀링겐 주정부와 연방정부는 이들 박물관의 재정을 도와줄 것이다. 기존의 주립 박물관도 기초자치단체의 소관으로 전환할 것이다. 연방정부가 기초자치단체의 박물관을 지원하는 것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는 보지 않는다. 주정부는 고궁과 정원을 관리할 행정기구를 설치할 것이다. 이 기구를 설치하는 작업은 주정부에게 많은 부담을 주게 될 것이다. 그중 많은 것들은 원래 기초자치단체에서 담당해야만 하는 일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장관은 잘못하면 일이 중앙집중주의적으로 진전될 수도 있는 상황에 대해서 경고하였다.

출처_ <http://www.parldok.thueringen.de/ParlDok/dokument/4731/20-plenarsitzung.pdf#page=3>, abgerufen am 30.03.2016

문서
번호 66

문화 관련 프로젝트 지원에 대한 작센안할트 주의회의 결정

1991년 6월 21일

담당자 / 기관 작센안할트 주의회

내용

이 문서는 작센안할트 주의회가 주정부가 예술가들의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한 계속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할 것을 촉구하는 결정이다. 주의회는 이 결정에서 예술가들을 위한 계속 교육 프로그램은 고용청의 재원으로 비용을 충당하고, 적어도 막테부르크, 데사우, 할레 등 대도시에는 작업, 전시회, 공연, 만남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재정을 지원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그에 따라 주정부는 문화예술 프로젝트를 위한 기본지침을 작성하고 작센안할트주의 문화적 발전과 관련된 모든 예산문제를 위한 문화자문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출처 Parlamentsarchiv des Landtages von Sachsen-Anhalt, 1. Wahlperiode, Drucksache 1/18/502 B



문서
번호 67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 문화정책 결정에 관한 질의에 대한 답변

1991년 6월 26일

담당자 / 기관 _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 문화부장관, 주의회

내용 _

이 문서는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주정부의 문화정책 결정에 대한 문화부장관의 답변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주정부는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의 문화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예술가들과의 대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와 관련해서 예술가, 영화, 문화, 음악, 연극, 문화재, 박물관 및 도서관과 아카이브 등 제반 영역에서 다양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앞으로 주정부는 지자체의 문화국장, 박물관장, 예술극장장, 공공도서관장 등과 긴밀하게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출처 _ Parlamentsarchiv des Landtags Mecklenburg-Vorpommern, 1. Wahlperiode, Drucksache 1/604

문서
번호 68

문화연맹 사무총장의 신탁관리청 방문에 대한 보고-불명확한 재정문제에 관한
논의

1991년 8월 5일

담당자 / 기관 신탁관리청 특수재산부, 문화연맹 협회 사무총장 디터 쟁커

내용

이 문서는 동독 문화연맹의 회계장부의 문제점을 발견한 신탁관리청에서 문화연맹의 사무총장을 불러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그에 대한 신탁관리청의 새로운 지침을 전달한 것에 대한 메모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신탁관리청은 문화연맹과 지부의 은행구좌를 동결할 것이다. 앞으로 문화연맹은 지출과 관련된 모든 것에 대해 신탁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나아가 문화연맹의 사무총장은 다양한 의무규정을 준수해야만 한다.

이 문서에는 문화연맹 회계의 문제점이 상세히 정리되어 있다.

출처 Bundesarchiv, BArch/DY 27/10124

문서
번호 69

도시건축문화유적보호 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사업에 관한 질의-작센안할트 주정부의 답변

1991년 8월 6일

담당자 / 기관_ 작센안할트 주의회, 주정부

내용_

이 문서는 작센안할트 주의회 시민당이 도시건축문화유적보호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취해진 조치에 관한 정보에 관해 질의한 것에 대한 주정부의 답변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연방정부가 지원한 재정보조금을 통해 우선적으로 별도의 '도시건축문화유적보호 및 역사적 구도심의 보존과 유지'를 위한 별도의 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1991년에 시작되며, 1991년과 1992년에 동부재건발전 공동기금을 통해 추가로 재정을 지원 받을 것이다. 연방정부와 신연방주들이 도시건축문화유적보호 및 역사적 구도심 보존과 유지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의 비용을 절반씩 부담하기로 하였다. 일단은 기초자치단체에는 이 프로그램의 재정을 부담지우지 않기로 하였다. 작센안할트주에는 39개의 도시에 역사적 구도심 전체 또는 일부가 문화재 지정 대상이다. 그중 21개 도시가 이 지원 프로그램의 수혜도시로 선정되었다. 이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도시건축유적을 전문적으로 보수하기 위해 연방도시계획건축부는 1991년 5월 23일에 전문가그룹을 임명하였다. 1991년 8월에는 작센안할트의 크베들린부르크시에서 이 지원 프로그램의 수혜도시로 선정된 82개의 신연방지역 도시의 대표들이 참가한 도시건축문화유적보호에 관한 회의가 열리게 된다. 작센안할트 주정부는 나아가 '역사적 도심' 실무그룹을 구성하기로 했다. 이런 지원 사업을 통해 중간규모의 건설회사들이 사업에 참여하여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_ Parlamentsarchiv des Landtages von Sachsen-Anhalt, 1. Wahlperiode, Drucksache 1/715, S. 1, 8-10

1991년 9월 12일

담당자 / 기관_ 튀링겐 주의회

내용_

이 문서는 신연방지역의 문화센터의 활동을 위한 1992년도 예산 지원을 위해 튀링겐 주의회의 모든 정당들이 공동으로 발의하기 위해 논의한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튀링겐주는 문화적으로 다양하고 풍부한 전통을 갖고 있는 지역이다. 구동독지역 경제의 붕괴로 인해 많은 우려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문화적 다양성을 유지·보존하는 것을 소홀히 할 수는 없다. 문화는 그 자체가 목적인 것은 아니지만 적극적인 문화정책은 지역경제를 위한 구조정책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다. 1992년에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이 감축된다면 그로 인해 우리 주의 문화예술이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손상을 입게 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을 것이다.

올리히 피켈 튀링겐주 학술문화부장관은 튀링겐의 문화를 유지·보존하는 것에 주의회의 의원들의 의견이 일치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연방회의에서 이것을 발의하기 위해서는 16개의 연방주 중에 다수의 동의가 있어야만 하고, 그를 위해서는 신연방지역의 5개 주와 서독지역의 연방주들이 협력해야만 한다고 하였다. 한편 1995년 이후에는 튀링겐주도 자력으로 문화정책의 예산을 담당할 능력을 갖추어야만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 제안은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출처_ <http://www.parldok.thueringen.de/ParlDok/dokument/4699/28-plenarsitzung.pdf#page=1078> (Parlamentsarchiv des Thüringer Landtags, 1. Wahlperiode, Plenarprotokoll 28. Sitzung, S. 1681, 1782-1784), abgerufen am 30.03.2016

문서
번호 71

튀링겐주의 문화 현황에 관한 질의에 대한 주정부의 답변

1991년 7월 17일

담당자 / 기관_ 튀링겐 주의회, 주정부

내용_

이 문서는 튀링겐주의 문화 현황에 관한 시민당의 질의와 그에 대한 주정부의 답변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시민당의 질의의 핵심: 튀링겐은 독일에서도 문화유산이 가장 풍부하고 다양한 지역에 속하며, 이런 문화적 다양성을 유지·보존하는 것이 주정부의 의무이다. 적극적인 문화정책을 실현하는 것은 나아가 경제진흥을 위한 구조정책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이다. 독일 통일로 인한 급격한 사회적, 경제적 변화 때문에 문화예술에 종사하던 많은 사람들이 직업적, 사회적 기반을 상실했고 이들의 장래가 아주 불확실하다는 것도 예견할 수 있다. 주정부가 이런 문제를 인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문제들을 주정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고 보는지 묻는다. 나아가 24개의 질문을 함께 제출한다.

주정부의 답변: 튀링겐주에는 예를 들어 8개의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있고, 수많은 음악학교가 있다. 그리고 1,000개가 넘는 공공도서관이 있고, 주민들이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튀링겐지역에는 서독지역과는 달리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를 줄여 주는 문화 인프라가 존재한다. 이런 기반을 유지·보존하기 위해서는 신연방지역의 문화정책을 위한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이 연장되어야만 하지만 문화영역에서 인력을 감축하는 것은 피할 수 없다. 튀링겐주 문화정책의 기본 입장은 기초자치단체가 문화정책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주정부는 기초자치단체가 맡은 문화업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도움을 주는 것으로 그 역할이 제한된다. 튀링겐 주정부와 기초자치단체 간의 문화 관련 업무 재정분담 비율은 서독 연방주들의 경험을 통해 정해진 것과 동일하게 1:2로 정하기로 한다. 튀링겐주의 의회는 문화정책을 위한 연방정부의 재정 지원이 지속적으로 감소되는 상황에서 주정부가 기초자치단체의 문화업무 재정을 더 많이 지원해 주어야 하는지에 대해 결정해야만 할 것이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주정부가 요구한 문화정책 방안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다.

출처_ Parlamentsarchiv des Thüringer Landtags, 1. Wahlperiode, Drucksache 1/696

문서
번호 72

작센안할트 문화재보호법

1991년 10월 21일

담당자 / 기관_ 작센안할트 주정부

내용_

이 문서는 작센안할트주의 문화재보호법 초안이다. 이 법안은 1978년 5월 30일에 도입된 니더작센주의 문화재보호법을 모델로 작성되었다. 니더작센주는 독일통일 과정에서 작센안할트와 자매결연을 맺은 서독의 연방주이다. 그러나 입법과정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이 법안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일부 체계적이지 않고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법안을 해석하는 데 의문이 들 수도 있다. 문화재라는 개념은 이 법안에서 아주 포괄적이고 단일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작센안할트주의 경우 문화재는 행정명령을 통해 문화재총목록에 수록되지 않아도 된다. 문화재총목록은 기존의 문화재목록과 고고학적 유적 리스트로 이루어진다. 이 법은 해당 관청과 관할업무를 모두 분리한 것이 그 특징이다. 그로 인해 불확실성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은 명예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을 위한 전문적 연수를 할 수 있도록 한 것과 두 개의 문화재관리청의 전문적 독립성을 보장한 것이다. 이 법을 통해 규정되는 위원회의 역할은 충분히 부각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 위원회는 건설계획을 수립할 때 그리고 건설법에 따라 합의를 찾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출처_ Gesetz- und Verordnungsblatt für das Land Sachsen-Anhalt, 2. Jahrgang, Nr. 33, S. 367-374, Ausgabetag 28.10.1991

문서
번호 73

독일 아마추어연극회의 지원에 관한 작센 주의회 질의에 대한 답변

1991년 11월 11일

담당자 / 기관 작센 주의회 좌파/민사당 페터 포르쉬 의원, 작센주 문화예술부

내용

이 문서는 작센 주의회에서 민사당 소속 페터 포르쉬 의원이 작센 주정부가 독일 아마추어연극회를 어느 정도 지원할 의사가 있는지 질의한 것에 대한 정부의 답변이다. 아마추어연극회는 신연방주의 아마추어 극단의 이익대표단체이다. 이에 대해 한스 요아힘 마이어 작센주 학술문화부장관은 주정부의 제한된 재정 때문에 개별적으로 프로젝트를 검토해서 지원할 수밖에 없으며 1991년에는 2개의 프로젝트에 총 5,000마르크를 지원하였다고 답하였다. 나아가 이 협회가 신연방주의 아마추어연극단의 협회라고 스스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통일정신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하였다. 더욱이 연방 차원의 협회가 이미 존재한다는 사실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학술문화부는 작센 아마추어연극단과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Parlamentsarchiv des Sächsischen Landtags, 1. Wahlperiode, Drucksache 1/930

문서
번호 74

독일 국가의 3절에 관한 결정과 관련한 연방수상과 연방대통령의 서한 공개

1991년 11월 19일

담당자 / 기관 연방대통령 리하르트 폰 바이체커, 연방수상 헬무트 콜

내용

이 문서는 독일의 국가와 관련하여 연방대통령과 연방수상이 교환한 서신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리하르트 폰 바이체커 연방대통령은 독일 국가의 3절은 국민들의 의식 속에 깊게 자리 잡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분단기 동안 국민들은 국가의 3절을 통해 자유를 보장하는 법치국가와 통일에 대한 열망을 표현할 수 있었다고 했다. 그에 대해 헬무트 콜 수상은 자유 체제에서 통일을 완성하기를 원하는 모든 독일인들의 열망이 이 3절에 잘 드러나 있다고 답하였다. 이제 독일 국가는 신연방주에서도 법치국가의 질서를 실현해야만 한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다고 하였다.

출처 Bundesgesetzblatt, Teil I, 1991, Nr. 63, S. 2135, Ausgabetag 29.11.1991

문서
번호 75

'1992년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 문화예술센터 재정 및 직원 업무에 관한 연방회의 발의에 관한 심의

1991년 11월 28일

담당자 / 기관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주의회 좌파-민사당 의원 하이테 말리스 라우텐술레거

내용

이 문서는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주의회에서 문화정책을 위한 연방정부의 재정 지원에 관한 제안에 대해 논의한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좌파-민사당의 하이테 말리스 라우텐술레거 의원은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주정부가 연방정부가 1992년에도 1991년과 동일한 수준의 문화예산을 지원할 것을 연방회의를 통해 제안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렇지 않을 경우 문화영역에서 현황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더욱이 일상적인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에 대해 기민당의 프리더 엘레 의원은 연방정부가 담당해야 할 부분은 이미 충분히 지원하였으므로 연방주들이 책임져야만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좌파-민사당의 발의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발언하였다. 사민당의 지그프리트 프리제 의원은 연방의회 내무위원회에서 이미 1992년의 예산 삭감을 결정하였다고 설명하였다. 사민당이 연방의회에 1992년에서 1994년 사이에 결정된 것보다 훨씬 더 높은 문화예산을 제안하였지만 그것이 관철되지 못했다고 강조하였다. 그래서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의 사민당은 좌파-민사당의 발의에 동의한다고 하였다. 오스발트 뷰츠크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문화부장관은 그에 대해서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가 신연방주에서 가장 크기 때문에 그나마 가장 많은 예산을 배정 받았다고 설명하였다. 좌파-민사당의 제안이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졌다.

출처 Parlamentsarchiv des Landtags Mecklenburg-Vorpommern, 1. Wahlperiode, Plenarprotokoll 1/36, S. 1741-1743

문서
번호 76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역사기념물 및 기념관에 관한 규정

1991년 11월 29일

담당자 / 기관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주정부, 주의회

내용

이 문서는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주의회가 주정부에 요구한 역사기념관과 기념물에 관련된 규정 목록이다. 거기에는 1. 형사법, 2. 공동묘지 및 장례에 관한 규정, 3. 독소친선 협약, 4. 문화재법 등이 포함되었다.

출처 Parlamentsarchiv des Landtags Mecklenburg-Vorpommern, 1. Wahlperiode, Drucksache 1/1062

문서
번호 77

예술극장장과 오케스트라 책임자의 초빙에 관한 질의-작센주 학술문화부 답변
1991년 12월

담당자 / 기관_ 작센 주의회 딜리히 의원, 학술문화부

내용_

이 문서는 작센 주의회 시민당 소속 딜리히 의원이 주정부 학술문화부에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이다. 질의 내용은 예술극장장의 선발 절차에 관한 것이며, 그 핵심은 임명과정의 능력 있는 위원회를 통해 민주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임명된 사람이 동독의 지배 엘리트에 속하지 않았고 비밀경찰에 협력하지 않았다는 것을 검증하는 문제에 관한 것이었다. 그에 대한 학술문화부의 답변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주정부 또는 기초자치단체가 주체가 되는 예술극장이나 오케스트라의 책임자 자리는 원칙적으로 공개채용 과정을 거쳐 선출된다. 개별적인 경우에만 신속하게 인적청산을 이루기 위해 예술극장 직원들의 제안에 따라 책임자를 임명하였다. 작센주의 주립 예술극장 책임자 중에 사통당 엘리트는 없으며 학술문화부에 현재 드레스덴시위원회의 직원이었던 사람 5명이 근무하고 있다.

주립 문화시설의 관리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설문지를 통해 비밀경찰을 위한 활동을 했는지에 대해 검증을 받았다. 그런 검증을 통해 3명이 해고되었다. 추가로 개인 관련 비밀경찰문서 연방정부 특별담당실을 통해 검증이 이루어진다. 비밀경찰의 정식 직원에 관한 검증은 이미 종결되었다.

예술극장과 오케스트라의 재정의 경우 1992년에 연방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초자치단체의 예술극장과 오케스트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문화는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영역이라는 점이 기본적인 원칙이라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 그러나 학술문화부는 필요하다면 보완할 수 있는 재원을 제공할 것이다.

출처_ Parlamentsarchiv des Sächsischen Landtages, 1. Wahlperiode, Drucksache 1/978

문서
번호 78

문화시설의 지원-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주의회 문화상임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1991년 12월 13일

담당자 / 기관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주의회 좌파/민사당

내용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주의회의 좌파/민사당은 주정부의 문화부가 문화시설을 시장 경제적 시각에서 구조전환하는 과정에서 자문해 주고 그를 위한 재정을 부담할 것을 제안 하였다. 주의회의 재정상임위원회는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에 대해 문화상임위원회는 자문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는 것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제안서의 내용을 조정하기로 합의하였다.

출처 Parlamentsarchiv des Landtags Mecklenburg-Vorpommern, 1. Wahlperiode, Drucksache 1/1137

문서
번호 79

문화정책에 관한 질의에 대한 주정부의 답변

1991년 12월 16일

담당자 / 기관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주의회 좌파/민사당, 문화상임위원회

내용

이 문서는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 문화부장관이 문화정책에 관련하여 답변한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의 내무부는 ‘도시건축과 관련된 문화재보호’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 이 프로그램의 1991년 예산규모는 4천 9십만 마르크였다. 1992년에는 6개 도시가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지원받았다. 문화재보호 지원을 위한 조정작업은 독일연방 환경재단과 독일문화재단이 담당하였다. 연방정부는 과도기에 문화적 자원을 유지하고 인프라구조를 지원하기 위해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지역에서 787개의 사업과 시설에 1억 7백 6십만 마르크를 제공하였다. 그를 통해 문화적으로 중요한 시설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다. 1992년에는 연방정부가 8천 6백 8십만 마르크를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Parlamentsarchiv des Landtags Mecklenburg-Vorpommern, 1. Wahlperiode, Drucksache 1/1109

담당자 / 기관 작센안할트 주의회

내용

이 문서는 작센안할트 주의회에서 열린 사회문화 관련 질의와 토론에 대한 보고서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녹색당의 한스 요헨 티셰 의원이 기초자치단체들이 사회문화센터를 재정적으로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주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이에 대처할 것인지 물었다(사회문화센터는 서독에 1970년대부터 있었던 시설로 다양한 연령대, 사회계층, 민족을 통합할 수 있는 다문화사회를 위한 사회적 기관으로 알려져 있다).

주정부의 베르너 소베츠크 교육학술문화부장은 작센안할트에는 약 150여 개의 사회문화적 활동을 하는 기관이 존재하며 1991년에 주정부가 사회문화 영역에서 150여 개의 프로젝트를 실행하기 위해 1천 4백만 마르크 이상을 지출했다고 밝혔다. 1991년에 사회문화 영역에서 시작된 보수조치의 대부분은 1992년 이후에도 대부분 주정부의 재정으로 유지될 것이며 곧 사회문화를 위한 지원 지침이 도입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이 지침을 사회문화센터의 재정지원과 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기민당의 라이너 솜부르크 의원은 1991년에 주정부가 예술가들을 어떻게 지원했는지 물었고, 소베츠크 장관은 1991년에 교육학술문화부가 예술가 지원을 위한 지침을 작성했다고 밝혔다. 주정부의 재정으로 52개의 예술 프로젝트를 위해 총 6십만 마르크 이상을 지원하였으며 57명의 예술가들에게 총 275,000마르크의 장학금을 지원하였다고 하였다. 1991년에는 예술작품을 구입하기 위한 예산도 책정되어서, 1991년에 이 항목으로 30만 마르크가 지출되었다.

출처 Parlamentsarchiv des Landtages von Sachsen-Anhalt, 1. Wahlperiode, Plenarprotokoll 1/27, S. I f., 286 f.

문서
번호 81

1991, 1992년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 문화예술 업무 재정에 관한 질의에 대한 주정부의 답변

1992년 1월 21일

담당자 / 기관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주의회

내용

이 문서는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주의회의 좌파/민사당 소속 하이데 말리스 라우텐슬레거 의원이 1991, 1992년 문화예술 예산과 관련하여 질의한 것에 대해 주정부의 문화부장관이 답변한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라우텐슬레거 의원이 1991년도 연방정부 예산 중에서 신연방주의 문화예술을 위해 배정된 금액이 9억 마르크, 1992년도에 6억 마르크라고 하였는데 1992년에 책정된 예산이 8억 3천만 마르크라고 수정되어야만 한다. 주정부는 연방정부가 문화예술을 지원해야만 한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해 왔다. 나아가 주 예산에도 문화예술을 위한 예산이 많이 반영되어 있다. 그리고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문화기반유지 프로그램’, ‘문화적 인프라구조 프로그램’, ‘문화 부문에서 분단으로 인한 영향을 감축시키기 위한 조치’ 등의 프로그램이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에서도 진행되고 있다. 주정부 문화부는 769개의 사업을 위해 1억 7백 6십만 마르크의 지원금을 연방정부에 신청하였다. 구체적으로 문화자원의 유지, 문화적 인프라구조 프로그램, 문화재보호 특별 프로그램 등에 지원을 신청하였고, 그것이 전부 승인되었다.

문화부장관은 나아가 지자체에서 제출하는 재정지원 신청을 주정부가 거절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어떤 방식으로 주정부가 재정지원을 신청하려는 기초자치단체에 자문을 해 주는지 설명하였다.

출처 Parlamentsarchiv des Landtags Mecklenburg-Vorpommern, 1. Wahlperiode, Drucksache 1/1110

문서
번호 82

신탁관리청이 문화연맹에 보낸 서신 : 문화연맹 재산의 관리행정

1992년 3월 17일

담당자 / 기관 신탁관리청 특수재산부, 문화연맹 협회

내용

이 문서는 신탁관리청이 문화연맹의 모든 구좌와 모든 업무를 직접 관리할 것이라는 사실을 문화연맹에 직접 전달하는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문화연맹 사무국의 모든 업무는 신탁관리청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문화연맹의 모든 서류는 항상 감독기관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어야만 한다. 동독의 문화연맹은 동독 정당과 대중조직이 모두 참여한 국민전선의 회원으로 동독의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었다. 문화연맹은 국가로부터 재정을 지원받았고, 그것은 전체 수입의 약 70%에 달했다. 신탁관리청은 문화연맹의 재산을 직접 관리할 것이다.

신탁관리청이 문화연맹 사무국의 업무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사무국의 특정한 업무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동의해 줄 것이다. 신탁관리청은 제출된 서류를 원본과 비교하여 그것의 정확성과 온전성을 검토하는 것은 계속할 것이다. 재산 보전과 관련하여 문화연맹의 이해관계는 공공이익보다 우선될 수 없다. 신탁관리청의 동의를 받는 규정은 문화연맹 사무국의 업무를 근본적으로 어렵게 만드는 것은 아니다. 나아가 이러한 문서들은 신탁관리청에 의해 기밀로 다루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문화연맹의 사업비밀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는 근거가 없다. 나아가 이와 관련해서도 특수재산의 보전에 대한 공공이익이 더 우선순위를 갖는다. 신탁관리청은 모든 금융기관에게 신탁관리청의 동의하에서만 문화연맹의 구좌와 관련된 금융업무를 진행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문화연맹은 이 결정에 대해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 제출을 통해 이 규정의 적용이 늦추어지는 것은 아니다. 나아가 이 문서에는 문화연맹이 필요로 하는 다른 자료들이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다.

출처 Bundesarchiv, BArch/DY 27/10124

문서
번호 83

동독 정당과 대중조직의 재산에 대한 검토를 위한 독립위원회가 문화연맹에 보낸
서신

1992년 5월 5일

담당자 / 기관 문화연맹, 연방내무부 소속 동독 정당 및 대중정당의 재산 검토를 위한 독립
위원회

내용

이 문서는 문화연맹이 신탁관리청에 제출한 것으로, 자신이 보유하기를 원하는 재산목록
이다. 그 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문화연맹 본부와 지부들이 보유한 현금
2. 문화연맹의 가구
3. 문화연맹의 도서관(14,000권 장서)
4. 문화연맹의 아카이브(문화연맹 자체 서류 포함)

이 외에 문화연맹이 보유하기 원하지 않는 7개의 시설이 나열되어 있다. 문화연맹은 이에
대한 보상으로 다른 것을 받기를 원한다.

출처 Bundesarchiv, BArch/DY 27/10228

담당자 / 기관_ 브란덴부르크 학술연구문화부

내용_

이 문서는 1992년에 브란덴부르크 주정부가 발표한 지역발전 프로그램 중에서 문화 관련 부분을 발췌한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만프레드 슈톨페 주지사는 1990년 12월 6일 정부성명을 통해 문화예술 지원은 주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담당할 업무라고 언급하면서, 브란덴부르크지역은 특히 독일에서도 가장 풍부한 문화자원을 갖고 있는 지역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주정부가 앞으로 기존의 모든 문화시설을 유지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문화 관련 주정부 정책의 주된 목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하였다: 예술가 지원, 공연과 정원을 위한 베를린-브란덴부르크주 공동재단 설립, 역사기념관의 설립을 위한 기본방향 설정, 적극적인 언론정책, 포츠담-바벨스베르크 미디어센터 확장, 베를린과 공동으로 영화촬영소 설립, 베를린-브란덴부르크 예술대학 설립, 라인스베르크 음악대학 설립, 소르벤족과 같은 소수민족의 언어와 전통문화 보존을 위한 지원.

1990년 브란덴부르크지역에는 25,000개의 문화재와 100여 개의 역사 및 지역 박물관, 44 개의 음악학교, 거의 70개의 문화센터, 1,000개가 넘는 공공도서관과 70여 개의 지역 아카이브가 있었다.

브란덴부르크는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이지만 모든 지역의 주민들이 동일한 수준의 문화적 삶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을 보장해야 한다는 헌법의 기본원칙을 지켜야만 한다. 그를 위해 1990년에는 브란덴부르크주에 2억 7천 3백만 마르크의 문화예산이 책정되었다. 그중에서 1억 5천 6백만 마르크는 연방정부가 제공하고 1억 1천 1백만 마르크는 주정부가 부담하였다. 1992년의 문화예산은 2억 9천 6백만 마르크로 증가하였지만 연방정부가 부담하는 부분은 1억 2천 6백만 마르크로 감소하였고 주정부가 담당하는 부분이 1억 7천만 마르크로 증가하였다.

이 문서에는 문화의 장단기적인 발전 프로그램이 설명되어 있으며, 문서 마지막 부분에는 브란덴부르크와 베를린 주정부가 문화진흥을 위해 긴밀하게 협조할 것을 조언하고 있다. 베를린은 이미 잘 마련된 문화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베를린 주변 브란덴부르크 주의 주민들이 베를린으로 문화생활을 누리러 가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설명하였다.

출처_ Brandenburgisches Landeshauptarchiv, Rep. 1100 Nr. 412-413.

담당자 / 기관_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주의회

내용_

이 문서는 연방정부로부터 제공되는 문화예술 관련 재정지원과 관련하여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주의회에서 열린 회의의 기록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좌파/민사당은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주정부가 적어도 1993년까지는 문화정책을 위한 재정지원을 유지하도록 연방회의에 제안하라고 요구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라우텐슐레거 의원은 총회에서 문화정책은 경제거점을 만들어 주는 중요한 요소이지 단순히 주정부의 문화정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였다.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는 작품 활동을 생업으로 삼는 작가의 수가 가장 적은 지역이라고 지적하였다. 국가가 삶의 기쁨과 의욕을 주는 문화를 위한 다양한 조건을 창출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유토피아도 아니라는 것이 라우텐슐레거 의원의 주장이었다. 그녀는 나아가 소위 말하는 고급문화를 지원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민을 위한 문화기반을 만들어 주는 것이며, 그에 따라 현재와 미래의 국민들에게 내적인 안정감이 형성되는가 아닌가 하는 문제가 달려 있다고 하였다. 주민들의 정체감 형성을 위해 종교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제한되어 있다고 보았다. 이런 모든 상황을 고려해서 주의회가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의 문화예술 현황에 관한 공청회를 열자고 제안하였다.

이러한 제안에 대해 문화부장관을 대신하여 회의에 참석한 클라우스 골리트 노동부장관은 1992년 예산안에 문화예술을 위해 1억 3천 3백만 마르크가 책정되어 있다고 설명하였다. 예술극장을 위해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평균적으로 전체 예산의 46%를 지원하며, 지자체가 54%를 부담해야 한다고 하였다. 문화부는 향후 2-3년 동안 매년 약 1억 5천만 마르크가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그중에서 6천만 마르크를 주정부가 부담하고 연방정부가 약 9천만 마르크를 부담할 것이라고 하였다.

사민당의 지그프리트 프레제 의원은 연방정부로부터 지원되는 예산이 감축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주정부가 그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나아가 신연방주의 문화예술 지원금을 1995년까지 동일한 규모로 책정할 것을 요구하는 연방의회 사민당의 제안을 연방정부가 거부하였다고 강조하였다. 그에 대해 기민당의 볼프강 제신 의원은 기민당과 자민당도 그와 유사한 제안을 했다고 밝혔다.

좌파/민사당의 제안은 문화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되기 보다는 총회에서 직접 표결에 부치기로 하였다. 자민당의 발터 골드백 의원은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의 문화가 독일을 위한 문화이기도 하다고 강조하였다.

출처_ Parlamentsarchiv des Landtags Mecklenburg-Vorpommern, 1. Wahlperiode, Plenarprotokoll 1/53, S. 2755-2760

문서
번호 86

토지개혁 규정을 통해 박탈된 예술품과 문화재에 관한 작센안할트 주의회 질의 와 주정부의 답변

1992년 5월 7일

담당자 / 기관_ 작센안할트 주의회, 주정부

내용_

이 문서는 작센안할트 주의회 자민당 소속 콘라드 브라텐본 의원이 동독의 토지개혁 과정에서 박탈된 예술품과 관련해 주정부가 어떤 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지 질의한 것에 대한 주정부의 답변이다. 그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재산법에 따르면 소련군 점령기에 소유권이 박탈된 재산과 토지개혁 과정에서 박탈된 재산은 반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1991년 4월 23일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토지개혁 과정에서 박탈된 동산도 원소유자에게 반환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주정부의 문화부는 현재 토지개혁 과정에서 소유권을 박탈당한 3명의 원소유자들이 예술품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소유권을 박탈당한 사람 중에 몇 명이 재산의 반환을 요구하는 신청서를 해당관청에 제출했는지 알려져 있지 않다.

출처_ Parlamentsarchiv des Landtages von Sachsen-Anhalt, 1. Wahlperiode, Drucksache 1/1471, S. 1-4



문서
번호 87

바우첸의 독일 소르벤 민속극장 존속문제에 관한 주의회의 질의에 대한 주정부의 답변

1992년 6월 2일

담당자 / 기관_ 작센 주의회, 주정부

내용_

작센 주의회 기민당 소속 게르트 리히터 의원은 바우첸시에 있는 독일 소르벤 민속극장의 유지문제와 관련하여 주정부에 질의하였다. 이 극장은 독일에서 유일하게 두 개의 문화가 혼합되어 있는 극장이지만, 현재 직원의 수가 297명에서 140명으로 감축되었다고 전했다. 리히터 의원은 이 극장의 주체를 바우첸시에서 작센 주정부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였다. 작센 주정부를 대표하여 답변에 나선 한스 요아힘 마이어 학술문화부장관은 독일 소르벤 민속극장을 어떤 방식으로 전환해야만 장기적으로 재정을 보장할 수 있는 조직형태를 갖게 되는지에 관해서는 주체기관이 결정해야 할 일이라고 답변했다. 연방정부의 과도기 재정 지원이 감축될 경우 작센 주정부는 그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1992년에 발생한 80만 마르크의 적자를 보충해 주는 것은 주정부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출처_ Parlamentsarchiv des Sächsischen Landtags, 1. Wahlperiode, Drucksache 1/1789

문서
번호 88

문화프로젝트 지원 결정의 이행에 관한 주정부의 보고

1992년 6월 18일

담당자 / 기관 작센안할트 주의회, 주정부

내용

이 문서는 작센안할트 주정부가 예술가 지원사업과 관련해 주의회에 보고한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50명의 예술가를 위한 계속연수 프로그램이 도입되었다. 이를 위해 주정부 내에서 문화부와 노동사회부가 협력하였다. 나아가 주정부는 전시와 다른 예술 행사를 지원할 의사가 있다. 그리고 여러 지역의 갤러리와 예술가회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공공공간의 예술을 지원하기 위한 지침도 작성될 것이다.

이 문서에는 나아가 문화예술과 관련된 지침, 법률의 목록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 법률과 지침은 작센안할트에서 전시, 공연, 낭독회, 경연, 학술회의, 장학금, 수학여행, 보수, 구매, 홍보, 연수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이 문서에는 1992년부터 적용될 법률의 목록도 포함되어 있다. 문서의 마지막 부분에는 작센안할트주의 문화 관련 다양한 자문회의 목록도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는 미술, 문학, 음악, 문화재보호, 박물관, 사회문화센터, 도서관 관련 자문회의도 포함된다.

주정부는 문화예술 지원에 관한 기본지침도 도입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출처 Parlamentsarchiv des Landtages von Sachsen-Anhalt, 1. Wahlperiode, Drucksache 1/1582, S. 1, 5-7

문서
번호 89

'하르츠지역'을 설립하기로 한 주의회의 결정 실행에 관한 주정부의 보고
1992년 6월 18일

담당자 / 기관_ 작센안할트 주의회, 주정부

내용_

이 문서는 작센안할트 주정부가 하르츠산악지역의 개발에 관해 주의회에 보고한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주정부는 니더작센주의 학술문화부와 공동으로 하르츠지역의 박물관 문화유적을 조사·발굴하여 '하르츠'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이 보고서의 핵심은 탄광시설과 채광으로 인해 변화된 지형조건 등에 관한 것이다. 나아가 문화재보호청, 고고학적유적보호청, 작센안할트의 박물관협회 등에 관한 조사도 이루어졌다. 이런 조사를 통해 획득한 지식은 앞으로 작성될 박물관발전계획에 반영될 것이다.

미술에 종사하는 예술가들의 사회적 현황도 언급되었다. 사회적으로 활력을 주는 미술예술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도 유지되어야만 한다는 것이 주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했다. 주정부는 1991년에 연방정부가 시작한 문화 인프라구조 프로그램의 틀에서 지원 받은 전통문화 보존과 사회문화 관련 총 10개의 프로젝트에 재정을 함께 지원했다. 전통 보존과 관련되어 지원된 사업 중에 향토문학을 특히 언급할 수 있다.

출처_ Parlamentsarchiv des Landtages von Sachsen-Anhalt, 1. Wahlperiode, Drucksache 1/1582, S. 1, 10-15

문서
번호 90

작센안할트 정치풍자극장의 현황에 대한 질의에 대한 주정부의 답변

1992년 8월 24일

담당자 / 기관 작센안할트 주의회, 주정부

내용

이 문서는 작센안할트 주의회의 기민당 소속 베른트 라이제너 의원이 작센안할트주 내의 정치풍자극장의 현황에 관해 질의한 것에 대한 주정부의 답변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작센안할트주에는 기초자치단체가 주체인 전문 정치풍자극장이 두 개 있다. 아마추어 풍자극장의 현황에 관한 정보는 없다. 1991년에 주정부는 전문극장 두 군데에 1,145,000마르크를 지원했고, 1992년에는 총 900,000마르크를 지원했다. 두 곳의 극장에 근무하는 직원의 수는 1991-1992년에 변동이 없다.

출처 Parlamentsarchiv des Landtages von Sachsen-Anhalt, 1. Wahlperiode, Drucksache 1/1757, S. 1, 23-25

문서
번호 91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 예술대학의 설립 제안에 대한 심의

1992년 9월 10일

담당자 / 기관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주의회

내용

이 문서는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의 예술대학 설립과 관련하여 열린 주의회의 심의에 대한 보고서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사민당의 지그프리트 프리제 의원은 주정부와 기민당, 자민당이 예술대학 설립과 관련하여 확실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한다고 비난하였다. 예술대학 설립에 소요될 비용만 견적을 냈고, 그것마저도 너무 높게 책정되었다는 것이다. 주정부와 여당이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의 장래를 생각하는 시각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하였다. 사민당이 주도해서 그나마 예술대학의 설립을 위한 제안서가 제출될 수 있었다고 강조하였다.

슈테피 슈노어 문화부장관은 예술대학은 모든 예술 분야를 포괄해야 하지만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것은 예술전문대학의 성격을 띠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주의회와 주정부에서 논의하는 것이 예술전문대학이며 독일의 학술자문위원회도 예술전문대학을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하였다. 그렇지만 주정부의 입장에서는 예산문제가 아직 분명하지 않다는 문제가 남아 있다. 이와 관련된 전문가평가서가 작성되어서 어느 정도의 금액이 투자되어야 할지 먼저 알아야만 한다.

좌파/민사당의 라우텐술레거 의원은 주정부가 동독의 정체성 자체를 없애버리려고 한다고 비난하였다. 그에 대해 사민당의 브라우네 의원은 라우텐술레거 의원이 동독이 붕괴된 것을 슬퍼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주정부가 예술대학 관련 정책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한다고 지적했다.

출처 Parlamentsarchiv des Landtags Mecklenburg-Vorpommern, 1. Wahlperiode, Plenarprotokoll 1/60, S. 3262-3272

1992년 9월 17일

담당자 / 기관_ 작센 주의회 사민당, 주정부

내용_

이 문서는 작센 주의회 사민당이 주정부의 문화정책 기본입장에 관해 질의한 것에 대한 주정부의 답변을 포함하고 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사민당은 작센주의 문화적 기반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주정부가 취한 조치와 재정문제에 관해 질의하였다. 주정부가 제출한 문화정책의 기본입장은 재무부와 협의되지 않는 것으로 단순히 주정부가 생각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일 뿐이었으며, 문화재단은 여전히 설립되지 않았고 문화 부분에서 많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그에 대해 주정부는 작센주는 동독이 붕괴된 후 동독지역에 있었던 문화시설의 60%를 넘겨받았다고 하였다. 주정부는 주헌법에 명시된 것에 따라 문화, 예술, 학문 및 스포츠 진흥을 위한 책임이 있고 모든 주민들에게 그를 위한 시설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통일조약에는 문화가 분단시기에 동서독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독일 민족의 단일성을 지속적으로 인지시켜 주는 기반이었다고 명시되어 있다. 나아가 연방정부는 신연방지역의 문화기반의 과도기재정을 위해 문화재보호, 문화기반진흥, 문화시설보존 등의 특별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재원만으로는 문화영역에 산적한 과제들을 해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연방정부의 지원은 점차 감소되어서 1993년 12월 31일자로 지원이 종료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건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예술극장, 박물관의 폐관, 오케스트라의 해체 등 문화적 서비스가 대폭 감축되는 것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1991년과 1992년의 주정부 예산에서 문화정책을 위한 지출과 연방정부의 지원금을 표를 통해 설명하였다.

작센 주정부는 연방정부가 문화정책을 위한 과도기 재정지원을 삭감하는 것을 수용할 수 없다. 그것은 통일조약의 정신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현재 작센 주정부는 연방정부가 과도기 재정지원을 지속하도록 요구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를 위해 문화시설의 조직구조와 성과구조에 대한 검토와 현황조사를 실행했다. 그를 통해 얻는 결론은 주정부가 제대로 된 문화정책을 실행하기 위해서 적어도 1992년 이후 최소한 2년 동안은 1992년과 동일한 수준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금은 주정부의 열악한 재정상황으로 인해 미래에 관한 어떤 구체적인 약속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출처_ Parlamentsarchiv des Sächsischen Landtags, 1. Wahlperiode, Drucksache 1/2123

문서
번호 93

튜링겐 주의회가 '튜링겐주 문화기금재단의 설립 및 구동독지역 문화정책을 위한 1993년도 이후의 연방정부 지원을 1991년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을 제안하기로 의결하기 위한 토론

1992년 9월 18일

담당자 / 기관_ 튜링겐 주의회

내용_

이 문서는 튜링겐 주의회에서 문화정책을 위한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을 연장하는 것과 문화기금재단을 설립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한 회의의 보고서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연방정부가 신연방주의 문화정책을 위해 제공하는 재정지원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튜링겐 주정부는 단지 그로 인한 영향을 완화시키려는 노력만 하고 있을 뿐이라고 좌파/민사당 소속 클라우스 힝케 의원은 비난했다. 그는 지역경제와 관광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지역 문화의 다양성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를 위해 지역관광사업을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만 한다고 강조하였다. 힝케 의원은 발의안을 상임위원회로 보낼 것을 제안했다.

기민당의 한스 유르켄 바그너 의원은 지역문화는 정체성의 일부이며 그것을 유지하는 것은 세대 간의 계약이라고 설명했다. 연방정부는 신연방주의 문화정책을 위해 필요한 예산의 50%를 지원하고 있다. 힝케 의원은 동독 체제하에서 문화차관으로 동독의 최고 예술가들의 많은 수가 동독을 떠나게 만들었고, 문화예술품을 외국에 팔아먹고, 동독의 문화재들이 폐허가 되도록 만든 당사자 중의 한 사람이다. 튜링겐주에 문화재단을 건립하자는 좌파/민사당의 제안은 합목적적이라고 할 수 없다.

사민당의 안드레아스 앵켈만 의원은 정당의 이해계산에 따라 문화 지원을 계산하는 것을 경고했다. 그에 대해 자민당의 올라프 수텡푸타트 의원은 분단 기간 동안에 문화와 예술이 독일민족의 단일성을 항상 일깨워 준 중요한 요소였다. 그렇게 볼 때 문화는 사치가 아니라 사회를 안정화시키는 한 요소이다.

베르나르드 포겔 주지사는 주정부가 연방정부로 하여금 신연방주의 주정부를 도와주게 하도록 만들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설명했다. 문화부장관은 예를 들어 서독의 헤센주가 문화재보호를 위해 지출하는 비용은 신연방주와 비교해 약 4분의 1 정도의 비율밖에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동독 체제하에서 튜링겐지역의 문화재보호를 위해 지출한 금액은 현재 지출되는 금액의 20분의 1밖에 되지 않았다고 했다.

회의의 마지막에 있었던 의결에서 좌파/민사당의 제안을 상임위로 이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안 자체가 다수에 의해 거부되었다.

출처_ <http://www.parldok.thueringen.de/ParlDok/dokument/5088/60-plenarsitzung.pdf#page=15>, (abgerufen am 30.03.2016)

1992년 10월 29일

담당자 / 기관_ 작센안할트 주의회, 주정부

내용_

이 문서는 작센안할트주의 문화 인프라와 예술인들의 현황에 관한 주의회 사민당의 질의에 주정부가 답변한 것이다. 주정부는 이 질의로 문화정책의 기본원칙, 업무 및 성과를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고 답변을 시작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공산 체제의 명령하달식 경제는 문화영역에서도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문화영역에서 중요한 행위자는 이제 기초자치단체와 민간기관이며 주정부는 그들의 재정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자 한다. 그러나 주정부가 재정지원을 통해 간섭하거나, 문화발전을 위한 지시를 내리고 전략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작센안할트주의 문화진흥을 위한 기본지침은 이미 1991년 가을에 작성되었다.

문화 인프라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도전은 지역의 문화적 유산을 보존하는 것이다. 거기에는 이 지역의 독특한 문화재와 문화시설, 수많은 예술극장, 박물관, 도서관, 오케스트라, 음악학교 등이 포함된다.

통일조약을 통해 합의된 바에 따라 연방정부의 인프라구조 프로그램을 통해 인구밀도가 낮고 구조적으로 취약한 지역에도 기본적인 문화생활을 보장할 수 있게 되었고 문화를 주관할 새로운 지침, 특히 자유로운 민간기관이 등장할 수 있었다. 이를 위해 연방정부는 1991년에 9억 마르크, 1992년에 7억 8백만 마르크, 1993년에 3억 1백만 마르크를 지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방정부가 많은 재원을 지원하는 것이 여전히 필요하다. 서독에서는 기초자치단체들이 문화예산의 65%를 자체부담하지만, 신연방주의 기초자치단체들의 재정능력은 1995년이 되어야 비로소 서독 기초자치단체들의 재정능력의 30% 정도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문화예산의 65%를 자체부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1991년에 작센안할트에는 문화적 인프라구조를 위해 891개의 사업이 진행되었고, 5천만 마르크의 연방정부 재원, 2천만 마르크의 주정부 재원이 지원되었다.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은 전체 금액의 47.6%였다. 1992년에는 1,500개의 프로젝트가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그중 464개에 지원하기로 결정되어, 3천 3백 9십만 마르크의 연방정부 재원과 1천 9백 5십만 마르크의 주정부 재원이 지원될 것이다.

이 문서에는 주정부의 지원 프로그램과 문화기관의 목록이 포함되어 있다

출처_ Parlamentsarchiv des Landtages von Sachsen-Anhalt, 1. Wahlperiode, Drucksache 1/1963

문서
번호 95

브란덴부르크 발전 프로그램-스포츠

1992년 11월 20일

담당자 / 기관_ 브란덴부르크 학술연구문화부

내용_

이 문서는 통일이 되고 2년이 지난 후 브란덴부르크 주정부가 지역발전을 위해 발표한 발전 프로그램 중에서 스포츠와 관련된 부분을 발췌한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스포츠가 갖는 사회적 의미는 브란덴부르크 주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그에 따르면 주정부는 정신적, 물질적으로 스포츠를 지원·장려·발전시킬 의무를 갖고 있다. 그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체육진흥법을 통해 규정되었다. 주민들이 자유롭게 자율적으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과 함께 국민체육, 레저 스포츠, 전문 스포츠, 학교체육을 보장하는 것이 정부의 의무이다. 주정부의 체육진흥정책에는 지역과 지역의 스포츠조직 그리고 조직되지 않고 체육활동을 하는 주민들과 그들을 위한 체육시설과 관련된 모든 것이 포함된다.

1990년 동독 체육연맹이 해체된 이후 동독의 스포츠계에는 조직적인 공백이 발생했다. 기존 조직의 해체 및 전환은 통일 이후에도 남아서 활동하던 협회와 단체들에게는 생존이 걸린 문제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새로운 체육조직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가 되었다. 1990년 초에 이 지역의 광역 지방 단위인 3개의 베치르크 체육위원회가 공동으로 브란덴부르크 체육연맹을 창설하기 위한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였고, 1990년 9월 15일에 브란덴부르크 체육연맹이 창설되었다. 동독에서는 민간, 단체 소유의 체육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스포츠단체들은 공공 스포츠시설을 사용해야만 했다.

브란덴부르크 주정부의 1991년 예산 중에 체육진흥을 위해 책정된 것은 2천 3백만 마르크로 그중에서 2천만 마르크는 주정부의 재원으로 그리고 3백만 마르크는 동부지역의 체육시설의 보수와 수리를 위해 설립된 동부의 활력을 위한 공동기금을 통해 제공된다.

발전계획 1995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주정부와 기초자치단체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만 하며, 체육시설을 보장하는 것 외에 특히 자율적인 스포츠활동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주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공공 체육행정은 체육자치행정의 실현을 위해 요구되는 도움과 지원을 제공하도록 한다

출처_ Brandenburgisches Landeshauptarchiv, Rep. 1100 Nr. 412-413.

문서
번호 96

문화기금재단의 지원금 이용에 대한 질의에 대한 문화부장관의 답변

1992년 12월 3일

담당자 / 기관 작센안할트 주의회, 주정부 문화부장관

내용

이 문서는 작센안할트 주의회 민사당 게어트 에카르트 슈스터 의원이 문화기금재단의 지원금 이용에 대해 질의한 것에 대한 주정부 문화부장관의 답변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문화기금재단은 1990년 9월 24일에 설립된 동독 문화기금의 후속기관으로 1991년 2월부터 업무를 시작했다. 이 재단은 주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문화업무를 보완해 주는 기관이다. 이 재단으로부터 지원을 받으려면 재단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주정부의 문화부는 재단에 제출된 신청서에 직접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 이 재단이 지원하는 사업을 5개의 신연방주에 배분하는 비율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 1991년에 총 1,512개의 신청서가 제출되었고 그중 630개가 지원을 받았다. 지원금의 총액은 87억 6천 7백만 마르크였다.

출처 Parlamentsarchiv des Landtages von Sachsen-Anhalt, 1. Wahlperiode, Plenarprotokoll 1/41, S. 4628

문서
번호 97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 문화기반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

1992년 12월 7일

담당자 / 기관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주의회, 주정부

내용

이 문서는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주의회에서 열린 주민 문화생활의 기반에 관한 회의의 기록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좌파/민사당의 하이데 말리스 라우텐술레거 의원은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에서 1990년 이후 모든 문화시설의 29%, 공공도서관의 50%, 영화관의 60%, 청소년센터의 50%, 예술센터의 60%가 폐쇄되었으며, 이 지역 지자체의 80%가 문화현황이 악화되었다고 평가한다고 주장하였다.

그에 대해 슈테피 슈누어 문화부장은 이와 관련된 정확한 통계자료가 없기 때문에 라우텐술레거 의원이 주장하는 통계를 그냥 하나의 의견으로 들겠다고 답하고, 현재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지역에 906개의 공공도서관, 37개의 영화관, 244개의 청소년 관련 시설 및 200개의 문화센터가 있다고 확인되었다고 설명하였다. 나아가 문화기반과 문화의 질이 통계숫자로 확인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부연하였다. 통일 이후 문화기반이 개선되었다는 분명한 증거는 더 이상 중앙집권적인 문화정책 구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통일이 실현된 후에야 다원적인 구조의 틀에서 자유로운 문화활동이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앙집권적인 구조의 해체와 새로운 내용과 구조를 발전시키는 작업이 완료된 것은 아니다. 주정부는 구조조정의 틀에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재원을 연방정부로부터 지원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1993년에 주정부가 1992년보다 훨씬 많은 예산을 문화정책을 위해 지출했다고 강조하였다.

출처 Parlamentsarchiv des Landtags Mecklenburg-Vorpommern, 1. Wahlperiode, Drucksache 1/2628

문서
번호 98

정당과 대중조직 재산 검토를 위한 독립위원회가 시설 사용의 재승낙과 관련하여
문화연맹에 보낸 서신

1992년 12월 8일

담당자 / 기관 문화연맹 회장 마리안네 필, 연방 내무부 소속 동독 정당 및 대중조직 재산
검토위원회

내용

이 문서는 연방내무부 소속 동독 정당 및 대중조직의 재산 검토를 위해 독립위원회가 작성한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동독에서는 정당과 다른 대중조직들이 국가지원금을 통해 조직을 존속시킬 수 있었고, 그를 통해 사통당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가 되었다. 그런 형태의 국가지원금은 법치국가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방식으로 축적한 재산은 정당이나 다른 기관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위원회에서는 6주 이내에 문화연맹이 재산을 법치국가의 원칙에 따라 합법적으로 취득한 것이라는 증거를 제출하기를 요구하였다.

출처 Bundesarchiv, BArch/DY 27/10228

문서
번호 99

작센안할트의 고고학적 유적 보호에 관한 질의에 대한 답변

1992년 12월 10일

담당자 / 기관_ 작센안할트 주의회, 주정부

내용_

이 문서는 작센안할트 주의회 사민당 소속 루츠 쿤 의원이 제출한 지역의 고고학적 유적 보호에 관한 질의에 대한 주정부의 답변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막테부르크, 할레, 데사우에 소재한 문화재보호국 상급관청의 경우 1992년에는 업무환경이 많이 개선되어서, 충분히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하급관청에는 아직 만족할 수 있을 정도로 업무환경이 개선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경우 인력은 충분하며 업무능력이 충분히 보장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는 것은 문화재보호를 담당하는 하급관청이 여러 기관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 문화국, 건설국, 또는 별도의 부서가 있는 경우도 있고, 기초자치단체장실에 직접 속한 경우도 있다.

현재 고고학적유적보호청은 현재의 인력으로도 일반적인 업무는 충분히 담당할 수 있다. 그러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많은 건설공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인력으로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업무를 담당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시적으로 인력을 보충하는 것과 함께 다른 업무의 처리기간이 길어지는 것을 감수해야만 한다.

작센안할트주 문화부는 증가하는 업무부담을 일시적으로 감소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인력을 재배치하는 것도 고려 중이다. 1992년도에 고고학적유적보호청에 배정된 예산은 4백 3 십만 마르크이며 그것은 업무수행을 위해 충분한 것으로 파악된다. 개별 프로젝트와 관련한 발굴작업을 위해 필요한 예산은 예를 들어 도시공간건설부, 경제기술교통부 등 해당 부처에서 재정지원을 받으면 된다. 이런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인력은 노동고용 창출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받으면 된다. 금년도에 할레시의 선사박물관을 보수하는 사업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_ Parlamentsarchiv des Landtages von Sachsen-Anhalt, 1. Wahlperiode, Drucksache 1/2125, S. 1-5

작센안할트주 아동 청소년을 위한 여가 및 문화 프로그램에 관한 질의에 대한 주정부의 답변

1993년 1월 28일

담당자 / 기관 작센안할트 주의회, 주정부

내용

이 문서는 작센안할트 주의회의 기민당과 자민당이 지역 아동 청소년을 위한 문화 프로그램에 관한 질의에 주정부가 답변한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주정부는 주민의 문화적 창조성, 자주성, 참여성을 개발할 수 있는 틀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동독 체제하에서는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레저, 문화 프로그램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었다. 그러나 현재 청소년 중에는 삶의 방향을 잡지 못하고, 극단적인 정치선전 또는 마약에 빠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아주 소박한 프로그램이라도 이런 청소년들에게 안식처가 되어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 분야에서 지출을 줄이는 것은 장래에 사회보장비용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아동 청소년을 위한 문화 프로그램을 전수조사한 목록은 작성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대부분 기초자치단체 또는 민간기관에 의해 운영되기 때문이다. 이 보고에서는 주정부가 지원하는 프로그램만 조사하였다.

주정부는 청소년업무와 사회업무를 위한 기본지침의 틀에서 민간기관이 제출한 약 2,400개의 사업신청서를 평가해 지원할 수 있다. 학교에서의 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부모의 경제적 능력과 상관없이 모든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문화적 기본교육을 보장할 수 있다.

주정부는 1992년에 총 4백 78만 마르크를 아동 청소년의 여가 프로그램과 문화 프로그램을 위해 지원하였고, 그것은 구체적으로 교육업무, 문화활동, 농촌지역에서의 활동, 사회문화 프로젝트, 환경교육 프로젝트 등에 사용되었다. 그 외에 특별지원으로 약 1천 1백만 마르크가 지출되었다. 그 외에 학교를 통한 문화지원처럼 통계적으로 조사되지 않은 영역에서 지출된 비용은 이보다 훨씬 높다. 특별지원을 통해 지출된 금액을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 박물관과 예술극장: 할레 탈리아극장 청소년 프로젝트를 위해 1992년 4백 20만 마르크, 1993년 2백만 마르크 지출
- 음악: 음악학교 지원을 위해 1992년 2백 80만 마르크 지원, 연방재원으로 70만 마르크 추가 지원, 합주단과 합창단 프로젝트를 위해 114,000마르크 지원, 3개의 음악 감나지움을 위해 7백 47만 마르크 지원
- 영화, 라디오 및 텔레비전: 아동 청소년을 위한 행사를 진행하는 기초자치단체의 비영리적인 시설의 적자재정 보조를 위한 지원, 영화 프로젝트 345,000마르크 지원
- 언어, 작문, 독서 지원: 외국어교육을 위한 학교수업 개선을 위한 지원, 공공도서관의 장서 개선을 위한 지원 1천 9백 40만 마르크.

주정부는 아동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이 충분하다고 평가하지만, 이 프로그램에 아동



청소년이 실제로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학교들이 수업과 방과 후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이 진행하는 문화 프로그램을 분리해서 보는 시각을 극복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출처 Parlamentsarchiv des Landtages von Sachsen-Anhalt, 1. Wahlperiode, Drucksache 1/2262

담당자 / 기관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주의회

내용

이 문서는 문화정책에 대한 연방정부의 지원이 지속적으로 감축되던 1993년에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주의회에서 문화기반 전반과 그 전망에 관해 논의한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사민당의 지그프리드 프리제 의원은 지금 현재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지역에 문화기반이 그나마 남아 있는 이유는 연방정부에서 막대한 재원을 지원하기 때문이다. 1994년에도 이런 재정지원이 계속될 것인지 전혀 알 수 없다. 그런 상황에서 연방정부의 내무부는 신연방주 주정부들에게 앞으로 계속 지원받기 원하는 프로그램과 사업의 목록을 제안하라고 요구했고, 브란덴부르크 주정부는 이미 6개, 작센은 12개, 작센안할트는 5개, 튀링겐은 7개를 제안한 데 반해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은 고작 2개를 제안했다. 프리제 의원은 2개의 제안만을 제출했다는 사실은 주정부가 문화와 예술 분야에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이미 만들어진 정책도 주정부 문화부에 의해서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슈테피 슈누어 문화부장관은 프리제 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박하였다.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주정부가 2개의 제안이 아니라 8개의 방안을 신청하였고, 주정부의 문화정책안을 폐기하지도 않았다고 하였다.

좌파/민사당의 하이데 말리스 라우텐슐레거 의원은 주정부의 문화정책에 비교적 만족한다고 발언하였다. 자민당의 발터 골드백 의원은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에 13개의 예술극장, 7개의 심포니 오케스트라, 31개의 음악학교, 37개의 영화관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0개의 문화센터, 244개의 청소년센터, 33개의 시민대학, 391개의 도서관, 1,300개의 궁전 및 정원, 43개의 기념관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국가보조가 민간 이니셔티브를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이 자민당의 입장이다.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의 문화가 독일 전체의 문화라는 점에 대해서는 연방의회에서도 분명히 하였으며, 문화와 관련된 것은 지방정부의 고유영역이라는 헌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방정부가 문화와 관련된 정책을 지원하는 것은 중앙집권주의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기민당의 제신 의원은 문화영역에서 구체적인 사업을 선발하는 것은 행정부의 업무이지, 의회가 간섭할 문제가 아니라고 하였다. 나아가 문화와 예술의 지원은 문화부와 재무부만이 관할할 문제도 아니라고 강조하였다. 사회부와 경제부, 심지어 환경부도 문화진흥을 위해 기여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의 주민 일인당 문화를 위한 지출을 보면 서쪽의 연방주 평균보다 훨씬 높다.

출처 Parlamentsarchiv des Landtages Mecklenburg-Vorpommern, 1. Wahlperiode, Plenarprotokoll 1/70, S. 3996-4001

문서
번호 102

신연방주에서의 문화진흥에 관한 질의에 대한 답변

1993년 2월 23일

담당자 / 기관 연방의회, 민사당/좌파, 연방정부

내용

이 문서는 민사당/좌파가 신연방지역에서의 문화진흥정책에 관해 제출한 질의에 대한 연방내무부의 답변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연방내무부는 신연방주와 베를린지역의 문화진흥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1991년과 1992년에 25억 마르크를 배정하였다. 연방수상은 1993년 신연방주의 문화진흥을 위해 연방예산에 6억 5천만 마르크가 책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그러나 신연방지역의 주정부와 기초단체는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 내에 문화정책을 모두 책임질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 문화를 위한 과도기 재정지원 프로그램이 종료된 이후의 문제에 관해 논의하기 위해 연방수상은 '문화 보전'을 위한 실무그룹을 구성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연방정부는 연방법에 의해 전국적으로 문화정책을 위한 특별세를 도입하는 것은 찬성하지 않는다.

출처 Parlaments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 12. Wahlperiode, Drucksache 12/4411

1993년 4월 1일

담당자 / 기관 작센안할트 주의회

내용

이 문서는 작센안할트 주의회에서 아동 청소년을 위한 문화 프로그램에 관해 토론한 회의 보고서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기민당 소속 우베 술제 의원은 지금의 생활환경이 아동을 위해 항상 최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의도적으로 아동이 필요로 하는 것에 모든 것을 맞추어 준 이상적인 환경은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다고 강조하였다. 작센안할트주의 아동의 문화 여가 프로그램은 충분히 잘 만들어졌다고 보았다.

베르너 소베츠크 문화부장은 구동독지역에서 현재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가치변동을 고려할 때 아동을 위한 의미 있는 여가 프로그램을 잘 만드는 것이 아주 시급한 과제라고 설명하였다. 이런 프로그램들은 폭력과 마약중독으로부터 아동 청소년을 예방하는 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더 많은 비용의 사회복지비를 지출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렇지만 문화 프로그램의 주체는 기초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주정부가 모든 프로그램을 현장에서 직접 지휘·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였다. 현재 다양한 프로그램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아동 청소년들이 자기들을 위한 여가 프로그램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학교들이 수업 외에 이런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그를 위해 학교들이 추가 인력과 재정을 필요로 한다고 보고하였다.

민사당의 안체 티츠 의원은 주정부의 답변이 자화자찬 일색이라고 비난했다. 조금도 자기 비판적인 것을 찾을 수 없고, 아주 거만하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주민들이 고용관계의 문제로 인해 관청에 제출할 다양한 문서들과 씨름해야만 하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신경을 쓸 여력이 없다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이미 만들어졌던 아동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여가시설과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이 폐기되었다고 비난했다. 주정부는 통계숫자를 통해 자신의 업적을 보고하지 말고 잠재력과 전망을 이야기하라고 주문했다.

사민당의 로스마리 하역 의원은 주정부의 청소년정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실질적인 방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아가 주정부가 제대로된 자문역할을 해 주지 않는 상황에서 기초자치단체들이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다.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관리국의 도입이 지연되고 있는 것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출처 Parlamentsarchiv des Landtages von Sachsen-Anhalt, 1. Wahlperiode, Plenarprotokoll 1/46, S. 5297-5304

문서
번호 104

데사우 바우하우스재단 설립법안에 관한 심의-작센안할트 주정부 제출 법안

1993년 7월 7일

담당자 / 기관 _ 작센안할트 주정부, 문화부장관

내용_

이 문서는 작센안할트 주정부의 베르너 소베츠코 문화부장관이 주의회에서 데사우시에 소재한 유명한 건축예술가 바우하우스를 기념하기 위한 '데사우 바우하우스재단'을 설립하는 법안에 대해 설명한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바우하우스는 국제적으로 잘 알려진 학술예술 시설이다. 이 시설을 위한 재단의 법적인 형식을 공익재단으로 만드는 이유는 데사우시와 연방정부가 모두 재단의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재단의 설립목적은 두 가지로 분류된다. 첫째는 바우하우스라는 문화적 유산을 유지하고 일반시민들이 그것을 함께 향유할 수 있도록 보존하는 것이다. 현대미술에서 미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혁신적인 작품들이 바우하우스를 통해 만들어졌고 여기에서 교육되었다. 예술과 기술의 새로운 통합이라는 테제가 바우하우스에서 탄생하였다. 이 재단 설립의 두 번째 목적은 바우하우스재단을 통해 현재 우리가 생활에서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서이다.

데사우시의 바우하우스 자체는 독일 정부가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신청한 문화재 목록에 포함되어 있다. 데사우시와 연방정부 간의 협의를 통해서 바우하우스의 작업공간, 컬렉션, 아카데미 등을 위해 지원되는 재원의 사용비율이 결정되었다. 주정부는 연방정부와 재정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민사당의 게어크 에카르크 슈스터 의원은 연방정부, 주정부, 시정부의 지원금은 예산안에 따라 정해져야만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렇지 않으면 재단이 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적어도 최소한의 재정은 항상 보장되어야만 한다는 것이 그의 의견이었다.

출처 _ Parlamentsarchiv des Landtages von Sachsen-Anhalt, 1. Wahlperiode, Plenarprotokoll 1/50, S. 5879-5881

문서
번호 105

작센안할트 청소년클럽에 관한 질의에 대한 주정부의 답변

1993년 8월 18일

담당자 / 기관 작센안할트 주의회, 주정부

내용

이 문서는 작센안할트 주의회의 소수 극우정당인 독일사회연합 소속 한스 게르트 글뤽 의원이 청소년클럽에 관해 질의한 것에 대한 주정부의 답변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청소년클럽의 지원은 기초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업무이다. 1991년에 작센안할트주에 몇 개의 청소년클럽이 있었는지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 1992년에는 171개의 청소년시설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지만, 실제로는 이 보다 많을 수도 있다. 현재 작센안할트주에서 범죄혐의로 체포된 사람의 3분의 1이 청소년이다. 독일 전역의 평균은 4분의 1이다. 그리고 범죄혐의자의 수는 1991년에서 1992년 사이에 증가했다. 1992년에는 43개의 아동 청소년센터가 주정부로부터 2백만 마르크를 지원받았다. 그중 10개는 기초자치단체가 운영하고 나머지 33개는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시설이었다. 작센안할트주의 수도인 막테부르크시에 소재한 작센안할트주 최대규모의 청소년클럽이 최근 건물이 매각되고 철거되게 되었다. 그에 대한 대안은 막테부르크 시정부가 찾아야만 할 것이다. 실제 이 청소년센터는 사회복지적 의미에서 청소년센터라고 할 수 없는 디스코텍이었다.

출처 Parlamentsarchiv des Landtages von Sachsen-Anhalt, 1. Wahlperiode, Drucksache 1/2929, S. 1, 17-20

담당자 / 기관_ 연방정부, 연방의회, 사민당

내용_

이 문서는 사민당 의원들이 신연방주의 문화예술과 관련하여 제출한 질의에 대한 연방정부의 답변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질의에서 사민당 의원들은 연방정부가 통일조약 35조에 따라 과도기 동안에 신연방주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재원을 제공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대중을 위한 문화영역이 많이 축소되었다고 비판하였다. 그로 인해 특히 청소년 문화가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1990년 이후 청소년센터와 클럽은 1,766개에서 1,062로 줄어들었고, 공공도서관은 2,397개에서 1,794개로, 극장은 424개에서 216개로 줄었다고 지적하였다. 민간이 주체가 되는 사회문화 활동도 상황이 아주 열악하다고 하였다. 더욱이 1994년에 재원이 더욱 감축될 것이고 고용창출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 분야에서 근무하던 인력도 감축될 것이라고 하였다. 사민당이 이런 문제에 직면한 연방정부에게 신연방주의 문화예술을 위한 예산지원 계획 및 연방정부가 말하는 문화가 무엇인지 밝힐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연방정부는 문화와 예술은 분단기에 독일이 하나의 민족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해 주었던 중요한 기제라고 밝혔다. 변혁기에 문화와 예술은 국민에게 정체성을 느끼게 해 주고 귀속감을 주는 것이다. 나아가 문화는 경제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생산단지 조성 및 관광진흥을 위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연방정부는 1991-1993년 사이에 문화영역에서 과도기 재정지원의 틀에서 신연방주와 기초단체의 문화시설의 유지를 위해 33억 마르크를 제공하였다. 신연방지역의 문화시설의 기본적인 조건은 현재 서독지역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과도기 재정지원의 틀에서 시행된 문화 인프라 프로그램은 특히 사회문화적으로 중요한 시설과 청소년지원을 위해 중요한 문화시설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원이 부족한 경우, 그리고 시민들이 수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반면 기본적인 문화 시설을 유지하기 위한 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대부분의 재원이 전통적인 문화시설을 위해 쓰여졌다. 이 두 프로그램의 재정 비율은 1:2였다(7억 3천만 마르크:14억 6천 900만 마르크). 나아가 1억 8천 650만 마르크가 문화재보호 프로그램을 위해 지원되었다.

연방주의 원칙에 따라 문화정책은 각 연방주 정부와 기초단체가 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방정부는 해당 행정단위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만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바이마르 고전재단'의 예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이 국가 전체를 위해 의미가 있는 중요한 시설은 예외로 한다.

1994년의 경우 신연방주와 기초단체의 단체들이 주관하는 문화시설을 위해 2억 5천만 마르크가 동독 정당 및 대중조직의 재산을 통해 지원될 것이다.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연방주 간의 균형재정법의 새로운 규정을 통해 연방주의 재정을 강화하고, 연방정부에

의한 추가 지원은 없을 것이다. 오히려 신연방주와 기초단체들은 구조조정을 통해 예술극장과 오케스트라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해야만 할 것이다.

출처 Parlaments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 12. Wahlperiode, Drucksache 12/6385

담당자 / 기관_ 연방의회

내용_

이 문서는 신연방주의 기초단체들이 우려하고 있는 문화정책과 관련된 문제에 관해 연방의회 사민당이 제출한 질의서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993년 말에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신연방지역의 문화진흥을 위한 과도기 재정지원 프로그램이 실제로 종료된다면 그로 인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무엇보다 지금까지 달성한 많은 성과들이 파괴될 것이다. 독일통일 과정에서 모든 정당들은 통일조약 35조에 따라 신연방지역의 문화시설을 유지하기 위해 성공적으로 협력하였다. 그때부터 이미 신연방주의 문화진흥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인지되었다. 두버 의원은 문화제도와 시설이 붕괴될 경우 높은 실업률, 사회적 폭력, 농촌지역 주민의 이주 등과 같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그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신연방지역의 문화정책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구체적인 정책을 고려하기 위해 분단시기에 서독 연방정부가 국경접경지역의 문화적, 사회적 정책을 위해 수십 년 동안 지원한 금액을 참고할 수 있으며, 그 액수는 총 300억 마르크가 넘었다고 강조하였다. 반면 신연방지역의 문화진흥을 위한 과도기 재정지원은 1993년 말까지 33억 마르크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연방내무부가 1993년에 재정지원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연방재무장관 테오 바이겔은 연방정부가 문화정책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그 결과 신연방주들은 사회주의통일당의 재산으로 설립된 기금에서 나오는 2억 5천만 마르크만 문화진흥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 금액은 신연방지역의 다른 많은 영역에서도 필요로 하는 것이다.

사민당 의원들은 연방정부가 신연방주들이 1994년 필요로 하는 금액 5억 마르크를 제공해야만 한다고 본다. 그것이 무엇보다 독일 전체의 문화적 본질과 정체성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독일연방공화국이 문화국가라고 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신연방주의 주정부들은 작센 주정부처럼 자신의 문화정책 방안을 마련해야만 한다고 보았다. 중요한 문화시설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역 간의 공동협회 또는 여러 개의 소도시들을 공동 문화구역으로 묶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1995년부터는 문화장관협의회가 구상한 전독일적 또는 유럽적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문화업무를 지원하는 방안이 이미 마련되어 있다. 나아가 작센주가 요구하는 '거점사업지원'에 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사민당 의원들은 나아가 청년들을 위한 문화적 여가활동 프로그램이 사라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한 문화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도 않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고급 문화만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예술가들과 문화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많은 경우 자신이 배운 직업을 갖고 있지 않으며 그로 인해 정신적 잠재력이 제대로 발휘되

지 않은 채로 방치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 문서에는 나아가 지원된 재정을 집행하는 문제, 신연방지역 문화시설의 장애문제, 이 지역 기초단체의 재정현황, 연방정부가 문화정책 영역에서 담당할 수 있는 업무의 변화 등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었다.

출처 Parlaments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 12. Wahlperiode, Plenarprotokoll 12/200, S. 17339-17364

‘변동하는 세계 속에서 문화민족으로 통일된 독일의 이미지’ 연방의회 질의에 대한 연방정부의 답변(발췌)

1993년 12월 22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의회, 외무부, 기민당, 자민당

내용_

이 문서는 독일통일과 동구 사회주의 국가의 붕괴 이후 변화된 유럽과 세계정세하에서 연방외무부가 어떤 형태의 문화정책을 구상하고 있으며 어떻게 문화민족으로서의 독일을 세계에 알리려고 하는지에 대한 연방의회 기민당, 자민당 의원들이 제출한 질의에 대해 연방정부가 답변한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체코, 폴란드, 헝가리 등 동구유럽의 체제 전환 국가들과 소련연방의 후속국가들은 자연스럽게 연방외무부의 문화외교를 위한 파트너가 될 것이다. 문화외교의 핵심은 이제는 극복된 동서분단으로 인해 그동안 실현될 수 없었던 것들을 점차적으로 채워 나가는 것이다. 그러나 신연방주 재건을 위해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문화외교의 재정은 가능한 절약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외교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통일독일의 위상과 비중을 높이고 강화한다는 최종적인 목표는 분명히 세워져 있다. 그를 위해 시행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연방외무부의 문화외교정책에 신연방주들의 참여
- 급격하게 증가한 독일어교육의 수요에 대한 대처 및 동독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동유럽에 거주하는 독일동포의 지원
- 외국에서 독일의 이미지 변화 및 그와 관련된 두려움과 염려에 대한 적절한 대응
- 문화교류를 통해 동유럽사회에서 진행되는 개혁과정의 지원
-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유럽통합 과정에서 문화정책적인 요소 확립

문화외교정책의 홍보업무를 강화하며, 통일과 신연방주의 통합과 같은 주제뿐만 아니라 통일된 독일의 총체적인 프로필을 가능하면 광범위하게 다루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기존의 제도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동독 문화외교정책 프로그램도 검토를 거쳐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할 것이다.

동유럽 국가들과 구소련연방의 국가들과는 새로운 문화협력조약을 체결할 것이다. 이러한 조약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은 각 지역에 거주하는 소수 독일인들의 처리문제이다. 나아가 동구권 국가들의 개혁적 변화로 인해 2차 세계대전 이후 이전된 문화재에 관한 논의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연방정부는 나아가 이 답변에서 외무부의 문화정책을 위해 책정된 예산내역을 제출하였다.

출처_ Parlaments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 12. Wahlperiode, Drucksache 12/6504

문서
번호 109

작센 문화공간법

1994년 1월 20일

담당자 / 기관 작센 주지사 쿠르트 비텐코프, 작센 학술문화부장관 한스 요아힘 마이어

내용

이 문서는 작센주 문화공간법이다. 이 법의 핵심적인 내용은 작센지역을 5개의 농촌과 3개의 도시지역으로 분류하고 문화관리를 기초자치단체의 의무업무로 규정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중요한 문화시설이나 문화사업은 문화정책 부담금 배분의 틀에서 주정부와 기초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재정을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출처 Sächsisches Gesetz- und Verordnungsblatt, 1994, Nr. 7, S. 175-177, Ausgabetag 17.02.1994

담당자 / 기관_ 녹색당, 연방의회, 연방정부

내용_

이 문서는 어린이와 함께하는 어린이를 위한 문화정책의 소관 부처와 배정된 예산에 관한 녹색당의 질의에 연방정부가 답변한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어린이를 위한 문화정책은 다양한 부처가 관장하고 있다. 예산은 주로 연방내무부와 연방 여성가족부, 연방교육학술부가 제공한다. 전국적으로 볼 때 1993년에 연방정부가 문화와 예술 진흥을 위해 지출한 것이 1,725,355,000마르크, 1994년에는 1,092,844,000마르크였다. 그중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정책에 배정된 예산의 규모가 어느 정도였는지는 연말이 되어야 알 수 있으며, 연방교육부가 제공한 재원의 규모도 연말이 되어야만 알 수 있다.

연방정부는 1994년에 어린이 청소년 계획을 위해 1,280만 마르크를 책정하였다. 연방정부는 약 2억 5천만 마르크로 추정되는 동독의 정당과 대중조직의 재산들 중에 신연방주로 귀속될 약 2억 5천만 마르크의 대부분이 어린이와 함께 어린이를 위해 만드는 문화업무에 쓰여질 것이라고 보았다. 교육계획과 관련하여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의 교육계획 및 연구 지원 위원회가 소집된다고 하였다.

문화자산을 유지하고 신연방주의 기초구조를 근대화하는 것은 문화영역에서 정치적으로 본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바로 문화정책의 연방제적 분권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신연방주들이 연방정부 차원에서 진행되는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될 것이다. 연방정부는 신연방주들이 어린이를 위한 문화예술의 창조와 수용과 관련하여 기존의 토대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분야로 어린이 도서, 어린이 연극, 어린이를 위한 만화영화, 어린이 방송, 음악, 조각, 사회문화 시설 등으로 분류하였다. 민간 차원에서 청소년문화 업무를 담당하기 위한 '청소년문화교육' 프로그램이 연방정부에 의해 지원되었다. 나아가 다양한 세금혜택과 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가 마련될 것이다.

출처_ Parlaments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 12. Wahlperiode, Drucksache 12/6956

담당자 / 기관 튀링겐 주정부

내용

이 문서는 튀링겐주의 고궁 및 정원재단의 설립에 관한 법으로 일명 고궁 및 정원재단법으로 불린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 법은 제2조에서 재단의 목적이 재단을 통해 역사적, 예술사적 문화재보호와 풍광보호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문화유적의 관리라고 명시되어 있다.

재단의 기구는 재단이사회와 이사장으로 구성된다. 재단의 활동과 관련된 모든 사안에 대한 근본적인 원칙을 결정하는 재단이사회는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실무그룹과 전문가자문위원회의 도움을 받는다. 기초자치단체 실무그룹을 통해 각 지역의 이해관계가 인지되게 된다. 튀링겐 고궁 및 정원재단은 법적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섹채를 강하게 띤다. 전문가 자문위원회는 전문가위원회의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재단의 다른 모든 기구들을 자문해 주는 역할도 담당하게 된다. 이 법에는 일단 고궁과 정원을 포함하여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유적들 30개를 재단의 소유로 이전하는 것이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 재단의 관리대상이 될 수 있는 문화유적의 수가 제한된 것은 아니다. 재단의 목적에 따르면 그리고 재단과 튀링겐의 문화재보호청 간의 밀접한 협력관계를 명시한 일련의 규정에 따르면 문화재단은 문화재와 예술품들이 문화재보호 차원에서, 또는 예술사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특별히 보호되어야 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문화재와 예술품들을 재단의 소유로 이전하도록 되어 있다.

이 법안의 부록에는 튀링겐 7개 지역에 재단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주정부 소유물의 목록이 포함되어 있다.

출처 Gesetz- und Verordnungsblatt für den Freistaat Thüringen, 1994, Nr. 9, S. 265, 284-287, Ausgabetag 17.03.1994



문서
번호 112

작센주 예술극장과 오케스트라의 구조조정에 관한 질의-작센주 학술문화부
장관의 답변

1994년 4월 8일

담당자 / 기관_ 작센 주의회, 주정부

내용_

이 문서는 작센 주의회의 아커만 의원이 예술극장과 오케스트라의 구조조정에 관해 질의한 것에 대해 주정부 학술문화부장관이 답변한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작센주의 예술극장과 오케스트라의 구조조정은 주정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19개의 예술극장 중에 16개는 기초자치단체가 주체이다. 예술극장, 오케스트라 그리고 다른 문화시설의 협회를 구성하는 것도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협의되어야 할 일이다. 주정부의 학술문화부는 이를 위한 법적인 틀을 준비해서 1994년 5월에 제출할 것이다. 작센주 문화공간법에 명시된 작센문화공간 조정관은 교육문화회의의 심의를 위해 주정부의 법률가들의 도움을 받게 될 것이다. 급여문제와 관련해서는 독일무대협회의 법률가와 사무총장이 도움을 줄 것이다. 문화공간과 관련된 헌법적인 측면의 검토를 위해 법률실무그룹이 구성될 것이다. 이 실무그룹에는 학술문화부와 재무부의 인원 그리고 지역 협회의 법률자문이 합류할 것이다. 조정관은 학술문화부장관에게 매주 수시로 보고하게 된다.

출처_ Parlamentsarchiv des Sächsischen Landtags, 1. Wahlperiode, Drucksache 1/2930

1994년 4월 12일

담당자 / 기관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주의회

내용

이 문서는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지역의 문화예술 현황에 관한 주의회의 회의에 관한 보고서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사민당은 정부의 문화정책이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의 지역정체성을 새로이 구축하고 민주적 사고를 정착시키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1992년 5월 6일과 1993년 1월 20일에 발표된 정부성명에서는 문화와 관련된 주제가 마치 부수적인 것처럼 간단히 언급되었다고 비판하면서 정부가 기본원칙과 발전계획 및 구체적 방안, 재정조달, 문화예술 프로젝트의 제도적 지원 방향, 문화예술 현황 그리고 국내적, 국제적 협력 등에 관해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입장을 밝히기를 요구하였다.

그에 대해 주정부는 국가가 문화예술을 계획하거나 규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기본적인 틀을 만들어 줄 수 있을 뿐이라고 답하였다. 이를 위해 주정부는 기초자치단체와 협력하며, 특히 1995년 1월 1일자로 연방정부로부터 제공되는 과도기 지원이 종료되고 1995년 1월 1일자로 연방주들 간의 재정균형배분의 새로운 규정이 적용되면 그러한 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예술의 경우 거의 전 분야에서 투자가 필요하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특히 폴란드 접경지역의 경우 문화재와 기념물의 보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고하였다. 1991년에 도입한 문화정책은 과도기 정책의 지침이지만 확대된 문화정책을 도입하기에는 아직 너무 이르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었다.

주 소유의 시설로 박물관과 슈베린의 아카이브, 기념물관리청 외에 궁전, 예술극장 등 다양한 문화적 건물이 속한다. 나아가 통일조약에 따른 지원과 문화기반 유지와 문화재보호를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언급하면서 이러한 문제는 문화부에서 관할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주정부가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는 예술극장과 박물관, 음악학교에 대한 제도적 지원, 문화예술 영역의 프로젝트 지원 및 문화재보호 사업 등이다.

문화예술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인원은 총 228명이라고 하였다.

출처 Parlamentsarchiv des Landtags Mecklenburg-Vorpommern, 1. Wahlperiode, Drucksache 1/4308

문서
번호 114

동독 프러시아 문화재단 소속 국립박물관의 직원 인계에 관한 연방의회의
질의에 대한 연방정부의 답변

1994년 6월 6일

담당자 / 기관_ 녹색당, 연방의회, 연방정부

내용_

이 문서는 녹색당 소속 콘라드 바이쓰 의원이 동독의 국립박물관 소속 직원들을 프러시아 문화재단으로 인계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연방의회에 제출한 질의에 대한 연방정부 내무부가 답변한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990년 10월 3일 통일과 함께 동독의 국립박물관, 중앙도서관 중앙문서국의 직원은 모두 새 기구로 인계되었다. 비밀경찰 활동과 관련된 검증도 대부분 종결되었다. 동베를린에 소재하였던 동독 국립박물관 소속 697명의 직원 중에 127명은 직장을 떠나야 했다. 그중에 83명은 정년 연령이 되었고, 28명은 더 이상 담당할 업무가 없었으며, 16명은 비밀경찰과 연루되었기 때문에 해고되었다. 해고된 직원 중에서 동독에서 정치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받았던 사람은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사통당 간부들과 위성정당의 간부들은 프러시아 문화재단의 관리직으로 근무하지 못하게 되었다.

출처_ Parlaments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 12. Wahlperiode, Drucksache 12/7791

1994년 6월 9일

담당자 / 기관 튀링겐 주의회, 주정부 문화부

내용

이 문서는 튀링겐의 문화발전과 관련하여 주의회의 자민당이 제출한 34개의 질문에 주정부가 답변한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튀링겐주 헌법의 전문 첫 문장은 이 지역의 주민들이 문화적 자산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헌법을 만들었다고 쓰여 있다. 주정부는 풍부한 문화유산을 지키고 그것을 시대에 맞게 발전시키는 것을 중요한 두 개의 과제로 받아들였고, 통일 이후 문화의 기본적인 틀이 붕괴되는 것은 막을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통일조약의 35조가 큰 도움이 되었다. 이 조항에 따라 연방정부는 1991년에서 1993년 사이에 튀링겐주의 문화영역에만 2억 6천 8백만 마르크를 지원했다. 튀링겐 주정부는 문화영역의 재정부담이 얼마나 높을 것인지 일찍이 알았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의 부담을 어느 정도 완화해 줄 수 있었다. 현재 튀링겐 주정부는 문화 관련 예산의 50%를 부담하고 있다. 주정부는 특히 문화유산의 관리로 인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초자치단체들을 도와주고 있다.

통일 이후 몰수된 동독 대중정당의 재산 2억 5천만 마르크 중에서 튀링겐주에 배분된 금액은 3천 9백만 마르크이다. 이 금액은 튀링겐 주정부가 예상했던 4천 9백만 마르크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다.

원칙적으로 연방정부가 신연방주의 문화를 위한 재정을 지원하는 것이 어느 한 시점에서 종료되는 것은 아니다.

주정부는 제도적 교류를 통해, 또 매년 작성되는 통계자료를 통해 튀링겐주의 문화 인프라에 관한 전체적인 정보를 얻고 있다. 문화행정 직원의 교육 및 연수는 기초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업무이다. 1999년에 유럽문화수도로 지정된 바이마르시의 행사준비를 위해 주정부의 문화부와 바이마르시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으며, 자문회의를 구성했다.

이 문서에는 튀링겐주가 문화와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협력하는 사업과 유럽연합을 통해 지원받는 문화사업의 목록이 포함되어 있다.

출처 <http://www.parldok.thueringen.de/ParlDok/dokument/10765/die-entwicklung-der-kulturlandschaft-in-th%C3%BCringen.pdf>, abgerufen am 30.03.2016

문서
번호 116

'동서지역 스포츠의 통합' 연방정부 8차 스포츠 보고서 발췌

1995년 4월 12일

담당자 / 기관 연방정부, 연방의회

내용

이 문서는 연방정부가 발행한 8차 스포츠 보고서이며, 동시에 통일독일 체육진흥에 관한 최초의 보고서이다. 구동독, 즉 신연방지역의 스포츠를 부분별로 나누어 보면 일부 성공적으로 통합된 것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89년 11월 9일까지는 동서독 간의 스포츠교류가 1972년 12월 12일에 체결된 기본조약과 1974년 5월 8일에 서독 체육협회와 동독 체육연맹이 체결한 체육교류에 관한 의정서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사통당 지도부는 극히 제한된 범위 내에서 운동선수들의 공동경기만을 허용하였을 뿐이다. 1989년에는 130개의 경기가 있었다. 장벽이 붕괴된 후에는 수천 회가 넘는 스포츠교류가 이루어졌고, 연방내독부는 이를 위해 1,200만 서독 마르크를 지원했다.

통일 이후 서로 완전히 상이한 동독과 서독의 스포츠 체계가 하나로 통합되어야만 했다. 이를 위한 토대는 통일조약 39조에 의해 마련되었다. 이 조항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1. 스포츠 분야를 자치행정으로 전환, 2. 전문 체육인과 특정 훈련센터의 지원, 3. 1992년 12월 31일까지 연방정부가 장애인스포츠 지원.

연방내무부의 해당 부서는 신연방주에 민주적이고 연방제에 부합하는 스포츠협회 조직 구조를 구축하고, 훈련센터를 확대하며, 전문 스포츠 트레이너 양성 및 운동선수들의 사회보장을 지원하였다. 연방재무부와 협력하여 구동독지역의 체육시설을 거의 무료로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재산으로 전환하였다. 1993-1994년부터는 신연방주들이 일반 국민체육의 확산을 잘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신연방주의 스포츠 진흥을 위해 연방내무부가 제공하는 재정지원은 1991년에 8,730만 마르크로 그것은 연방내무부 체육예산의 37.4%였고, 1992년에는 10,050만 마르크, 1993년에 8,840만 마르크였다.

출처 Parlaments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 13. Wahlperiode, Drucksache 13/1114, S. 1,6-7,78

문서
번호 117

문화 분야를 위한 과도기 재원-연방주별 지원금액 현황 1991-1993

1995년 9월 13일

담당자 / 기관 연방정부, 연방의회

내용

이 문서는 독일통일과 신연방지역 재건과 관련된 자료집에 포함된 부록 중에서 문화 분야를 위해 1991년에서 1993년 사이 책정된 과도기 재원을 연방주별로 정리한 것이다. 1991년에 가장 많은 금액이 책정되었다.

출처 Parlaments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 13. Wahlperiode, Drucksache 13/2280, S. 511



문서
번호 118

브란덴부르크 역사건축물 보호를 위하여

1997년 7월 24일

담당자 / 기관_ 학술/연구/문화부

내용_

주정부의 문화정책의 기본원칙, 중점사항, 전망, 문화 분야의 발전상황(Entwicklungsstand)과 전망: 극장, 음악, 조형예술, 사회문화, 문화적 교육, 문학, 도서관, 기록보관소, 박물관, 문화재보호, 기념추모지.

다른 문화적 과제의 발전상황과 전망: 소르벤(Sorben)지역 문화예술협회 지원, 문화투자 프로그램과 지원 프로그램의 혼합.

출처_ ELWIS Parlamentsdokumentation, Landtag Brandenburg (Stand: 01.08.2017). DrS 2/4307

담당자 / 기관 독일연방공화국/문화언론 부문 연방정부 대표(이하 연방정부), 베를린주/베를린 시장 및 베를린 내무 및 스포츠 의원(이하 지방정부)

내용

1994년 6월 30일에 체결된 수도 재정 지원 조약과 연계해 연방정부와 지방 정부는 문화 재정 지원을 위한 연계 조약을 체결한다. 조약 효력 만료에 대한 양측의 의사가 없을 경우 해당 조약은 매년 1년씩 자동 연장된다.

- 연방정부는 조약 기간 동안 문화 시설과 행사를 위해 1억 마르크(5,100만 유로)를 지원한다. 국가적 상징성을 띤 베를린의 시설을 위해 연방정부는 매년 8천만 마르크(4,100만 유로)를 추가로 지원한다. 연방은 단독으로 매년 3,600만 마르크(1,850만 유로)를 베를린 유태인박물관재단, 베를린 축제극장, 세계 문화의 집, 마틴-그로피우스-바우(Martin-Gropius-Bau)에 지원한다.
- 유태인박물관재단과 세계 문화의 집은 해당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해도 된다.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지방 정부에서 사용자에게 이전된다.
- 연방정부는 베를린 축제 극장과 세계 문화의 집의 지방 정부 지분을 양도받는다. 연방정부와 지방 정부는 감독 자문위원회에 위원을 파견한다.
- 연방정부는 프로이센 문화재단의 건설 투자에 4,400만 마르크(2,200만 유로)를 통해 참여한다.
- 수도문화기금은 매년 2천만 유로를 지급받는다. 연방 회계 감사국은 이에 대한 감사권을 부여받는다. 연방정부와 지방 정부가 참여하는 공동위원회는 기금 사용처를 합의하에 결정한다.

출처 Drucksache des Deutschen Bundestages, 14. Wahlperiode, 14/9677, S. 5-12, 13.06.2001



문서
번호 120

2002 브란덴부르크 주정부의 문화개발 콘셉트 보고서

2002년 6월 18일

담당자 / 기관 _ 학술/연구/문화부

내용 _

이 보고서는 2002년까지의 브란덴부르크주의 문화개발에 대한 내용이 실려 있다. 또한 이 보고서는 주정부가 가능한 한 유산, 예술, 문화 등의 각 문화영역에 중점을 두었음을 보여준다. 문화발전 콘셉트의 핵심 모티브는 문화정책 개발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참여자들과 함께하는, 가능한 폭넓고 개방적인 논의를 하고자 하는 데 있다. 이것은 광역지방자치단위(Kreise), 도시(Städte), 면단위지방자치단체(Gemeinden)의 문화정책 결정자들뿐만 아니라 문화기관과 협회에도 해당된다.

출처 _ ELWIS Parlamentsdokumentation, Landtag Brandenburg (Stand: 01.08.2017). DrS 3/ 4506

담당자 / 기관 독일연방공화국/문화언론 부문 연방정부 대표, 연방 지역개발계획, 건설, 도시 건설부(이하 연방정부), 베를린주/베를린시 정부(이하 지방정부), 유네스코, 연방시 본

내용

- 1994-2000년 수도조약에 따른 지원: 1995년부터 2000년까지 베를린 지방 정부는 수도 문화 지원을 위해 4억 2,800만 마르크를 지원받는다. 이러한 일괄 재정 지원 시스템은 그러나 부분적으로밖에 보호되지 못한다. 그로 인해 지원금은 베를린 지방 정부를 통해 연방정부와의 조율 없이 지방 예산 충당을 위해 사용된다.
- 1998년 정부 교체: 새로운 연방정부는 문화언론 부문 연방정부 대표부를 개설했다. 문화국가장관은 연방 지역개발계획, 건설, 도시건설부로부터 수도문화기금을 위한 권한을 이양받는다. 연방 대표는 베를린시 정부에 투명성과 해명, 증거 자료를 요청했으며, 지금까지의 일괄 지원 시스템을 종료한다. 연방의회에는 문화언론 위원회가 설치된다.
- 2001-2004년 수도문화조약: 연방 정부는 베를린 유태인박물관재단, 베를린 축제극장, 세계 문화의 집, 마틴-그로피우스-바우의 단독 지원 기관이 되어 상임 대표직을 맡게 된다. 이로써 연방정부의 의견은 더 이상 다수결로 거부될 수 없었으며, 지원 기관의 투자 지분에 대해서도 단독으로 책임을 졌다.
- 수도문화기금: 본 기금의 연간 재정은 1,020만 유로이다. 그동안 해당 기금을 통해 연극, 무용, 음악, 오페라 공연, 사진 전시회, 문학 행사 등 100여 개의 프로젝트가 지원을 받았다.
- 프로이센 문화재단: 연방정부는 대표적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베를린 박물관 섬의 보수를 재정 지원하고 있다.
- '신연방주지역의 문화' 프로그램: 2001년부터 베를린은 1999년에 시작된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1990년부터 1억 3천만 유로가 투자되었다. 이러한 투자를 통해 베를린에서는 콘서트 하우스를 비롯해 기타 행사장과 시립도서관 등이 개보수되었으며, 음악 앙상블과 성, 정원들이 지원되었다.
- 연방시 본의 문화 지원: 1999년부터 연방정부는 오페라와 연극, 오케스트라, 시립미술관과 같은 전통적인 문화 분야를 위해 본시의 보조금을 70%까지 부담하고 있다. 2001년 본은 문화 분야를 위해 연방정부로부터 3천만 유로를 지원받았다. 2002년부터 2010년까지 본은 추가로 총 4,450만 유로의 지원을 받게 될 예정이며, 2004년까지 4,500만 유로에 달하는 문화 프로젝트들이 실행될 예정이다.

출처 Drucksache des Deutschen Bundestages, 14. Wahlperiode, 14/9677, S. 1-4, 03.07.2002



문서
번호 122

베를린의 수도 기능으로 파생된 문화 재정 지원에 관한 조약

2003년 12월 9일

담당자 / 기관 독일연방공화국/문화언론 부문 연방정부 대표(이하 연방정부), 베를린주/베를린시 학문, 연구, 문화 행정부(이하 지방정부)

내용

- 연방정부는 2001년에 시작된 베를린 유태인박물관재단, 베를린 연방문화행사 유한책임 회사, 마틴-그로피우스-바우의 지원을 지속한다.
- 연방정부는 베를린 지방 정부의 참여 없이 단독으로 프로이센 문화재단의 재정을 지원한다.
- 연방정부는 2004년부터 함부르크역 박물관과 미술 아카데미, 독일 시네마테크재단을 위해 2,220만 유로를 지원한다.
- 연방정부와 지방 정부는 문화 정책을 위해 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

출처 http://www.berlin.de/imperia/md/content/rbm-skzl/hauptstadtvertraege/folgevereinbarung_kulturfinanzierung031209.pdf?start&ts=1102410670&file=folgevereinbarung_kulturfinanzierung031209.pdf, S.1-4, 09.12.2003

문서
번호 123

도시역사문화지대 보전 프로그램

2007년 3월

담당자 / 기관 연방교통건설도시개발부, 도시건설 문화재보호를 위한 소식지

내용

이 문서에서는 통일 이후 15년 동안 진행된 '도시건설의 일환으로서의 문화재보호' 프로그램의 성과에 대한 평가를 읽을 수 있다. 도시 건물 개량, 도시 건축 지원, 도시건설을 위한 문화재보호의 다양한 시각들 그리고 1991년 이후 구성된 도시건설을 위한 문화재보호 전문가그룹의 업무 등이 평가되었다. 양적 통계자료 외에 8개의 동독 도시에 거주하는 8명의 증인들이 이 프로그램의 진행과정과 성과에 대해 평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출처 Bundesministerium für Verkehr, Bau und Stadtentwicklung: <http://www.staedtebaulicher-denkmalschutz.de/service/downloads/informationsdienste/Infodienst32.pdf>

문서
번호 124

베를린의 수도 기능으로 파생된 문화 재정 지원과 연방 수도의 특별 부담 보상에 관한 조약

2007년 11월 30일

담당자 / 기관 독일연방공화국/연방 재정부, 문화언론 부문 연방정부 대표(이하 연방정부), 베를린주/베를린 시장, 베를린 내무, 스포츠 행정부(이하 지방정부)

내용

- 연방정부는 2001년에 시작되고, 2004년에 연장된 베를린 유대인박물관재단, 베를린 연방문화행사 유한책임회사(현 베를린 축제극장, 세계 문화의 집), 마틴-그로피우스-바우의 지원을 지속한다.
- 연방정부는 2004년에 협정을 맺은 대로 프로이센 문화재단의 건설 투자를 베를린 지방정부의 참여 없이 단독으로 재정 지원할 것을 거듭 강조한다.
- 연방정부는 운터텐린덴 국립 오페라 극장 보수를 위해 2억 유로를 일괄 지원하며, 지방정부는 2008년부터 매년 4,100만 유로를 지원한다.
- 2004년부터 연방정부는 미술 아카데미의 지원을 넘겨받아, 2006년부터 미술 아카데미는 연방정부 직속 기관이 되었다.
- 연방정부는 치안 조치를 위해 매년 6천만 유로를 지원한다.
- 지하철 U5 확장에 대한 지원은 존속될 예정이며, 늦어도 2020년 전까지 완공을 목표로 한다.

출처 http://www.berlin.de/imperia/md/content/rbm-skzl/hauptstadtvertraege/hauptstadtfinanzierungsvertrag_2007.pdf?start&ts=1205248784&file=hauptstadtfinanzierungsvertrag_2007.pdf, S.1-6, 30.11.2007

문서
번호 125

전환에 대한 찬성과 반대-독일통일의 틀에서 '바이마르 국립 고전문학 연구 및 기념관'을 '바이마르 고전재단'으로 전환(1989-1992)

2009년

담당자 / 기관 로타 에어리히 교수, 문학기념관 부관장, 바이마르 고전재단 현 이사장

내용

이 문서는 독일문학의 최대 문호인 괴테가 살았던 바이마르에 있던 바이마르 독일 고전문학 연구 및 기념관을 바이마르 고전재단으로 전환한 것의 의미와 역할에 관해 정리한 것이다. 이 보고서의 저자는 통일 이전에 기념관 부관장으로, 통일 이후 재단 이사장을 역임했다. 이 문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독일 고전문학 연구 및 기념관을 고전재단으로 전환하는 작업은 독일통일 과정, 특히 1989-1992년 사이에 문화적 기억에 관한 다양한 논란을 그대로 보여준다. 동독에서 고전문학 연구 및 기념관은 1953년 이후 중요한 문화센터로서 바이마르시에 있는 아카이브, 도서관, 박물관, 성, 공원 등 모든 문화유적을 관리하는 기구였다. 기념관의 조직은 문화정책의 재조직화 과정에서 동독에서 추진된 통합적 문화정책의 성과로 긍정적으로 평가되면서 동시에 문화유적을 이념적으로 도구화하였다는 비판도 받았다. 1990년 8월 28일에 작성된 문서를 보면 바이마르 고전문학 연구 및 기념관을 통일된 독일의 정체성을 심어주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이 지역에서 국가적으로 그리고 세계문화적 차원에서 학문적, 문화적 기구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 있었다.

중요한 문제는 기념관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독일연방공화국의 연방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법적인 구조를 찾는 것이었다. 동독 문화부와 서독의 연방내무부는 바이마르 기념관 양상블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공동문화위원회'는 통일조약 중에 동독의 문화를 이전하는 것을 다루는 조항에 이와 관련한 조건들을 포함시켰다. 문화유산을 다루는 전문가그룹을 동독의 문화시설, 문화유산에 대해 평가하면서 바이마르 고전문학 연구 및 기념관을 최우선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대상으로 정하였다. 이를 위해 연방정부와 연방주 그리고 바이마르시가 공동 주체가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1991년 10월 14일에 바이마르 고전문학 연구 및 기념관의 후신이라고 할 수 있는 바이마르 고전재단이 설립되었다.

1990년 2월 1일에 선임된 바이마르 고전문학 연구 및 기념관장은 기초민주주의적 결정구조를 지원하였다. 당시에는 동독 정부는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었고, 새로운 신연방주나 연방정부가 아직 들어서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었다. 1991년 7월 1일에 기념관의 전 직원은 튜링겐 주정부와 새로운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다. 1991년 10월 15일에 369명 전원이 새로이 설립된 고전재단에 근무하게 되었다. 그리고 고전재단이 외압이 아닌 내적 개혁을 통해 만든 임시적인 조직구조가 1992년 10월 27일 고전재단 창립총회를 통해 그대로 승인되었다.

출처 Weimarer Beiträge 55/4, S. 579-608

문서
번호 126

2009 브란덴부르크 주정부의 문화개발 콘셉트에 대한 보고서

2009년 4월 30일

담당자 / 기관_ 학술/연구/문화부

내용_

초반에 갖고 있던 문화개발 콘셉트의 모티브는 지속적으로 유효하다: 어려운 재정 상황에서도 계획수립의 안정성을 창조하고 계속 보장하는 것과 효과적인 자금투입을 보장하는 것이다. 주정부는 이 과정을 계속 보장하는 것을 그들의 과제로 보았다. 지난 과거 몇 년 간의 업무 내용이 2004년의 과제를 계속 진행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일련의 핵심 주제들을 특징지었다. 특히 인구이동을 다루기 위한 문화정책적 활동전략의 개발이 그러한 것이다.

새로운 주제들도 덧붙여졌다: 문화와 경제의 관계가 점점 더 중요한 의미를 얻게 되었는데, 이는 정치가 생산 분야로서 문화의 경제적 의미를 점점 더 강하게 인식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우리 문화재의 디지털화는 정보사회에서 세계적 주제가 되었다. 문화교육(이것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주정부의 특별보고서에서 다루게 될 것이다)은 문화 및 교육정책적 관심의 핵심을 이루는데, 이는 사회의 장래에서 문화가 갖고 있는 의미가 충분히 인정되었기 때문이다.

출처_ ELWIS Parlamentsdokumentation, Landtag Brandenburg (Stand: 01.08.2017). DrS 4/7524

담당자 / 기관 _ 작센주 내무부

내용 _

이 문서는 작센주 내무부가 통일 20주년을 기념하는 2010년에 문화재보호에 관해 작성한 보고서이다. 이 보고서를 통해 작센주는 문화적 유산을 보호하는 것이 주정부의 정책에서 어떤 위상을 갖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었다. 이 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지난 20년 간 문화재보호는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문화재보호를 위한 법적인, 조직적인 기반이 마련되었다. 작센주의 문화재보호법은 독일 전체에서도 모범적인 케이스로 인정된다. 이 법을 실행하는 기관으로 문화재보호와 고적을 담당할 기구가 새로 설립되었다. 작센주에는 105,394개의 문화재보호 대상 건축물과 13,124개의 고고학적 보호지역이 있다. 이 중에 약 3분의 2가 현재 보수되었거나 적어도 안전보존 조치가 되었다. 문화재정보고서를 보면 작센주 정부가 2007년에 주민 1인당 22.69유로, 총 9,610만 유로를 문화재보호를 위해 지출하였다. 지난 20년 간 작센주의 문화재를 위해 거의 10억 유로를 주정부가 지출하였고, 추가로 연방정부가 16억 5천만 유로를 지원했다. 유럽연합도 2007-2010년 사이에 3천만 유로를 지원하였다.

출처 _ http://www.bauen-wohnen.sachsen.de/download/Bauen_und_Wohnen/Kabinettsbericht_Text_15-8-2011%281%29.pdf; http://www.bauen-wohnen.sachsen.de/download/Bauen_und_Wohnen/Anlagen_Kabinettsbericht_20-06-2011.pdf, abgerufen am 07.06.2016

문서
번호 128

작센안할트주 공공공간의 문화예술품에 대한 보상 및 배상법에 관한 질의에 대한 주정부의 답변

2012년 3월 14일

담당자 / 기관 작센안할트 주정부, 주의회

내용

이 문서는 작센안할트주에 있는 공공시설에 비치된 문화예술품의 현황에 관한 질의에 주정부가 답변한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994년 9월 27일에 제정된 공공영역의 문화예술품의 보상 및 배상에 관한 법을 근거로 2011년 12월 31일까지 93,389개의 문화예술품이 원소유자에게 반환되었다. 그중 대부분은 예술품 한 개가 아니라 성에 있던 소장품, 영지의 아카이브 등과 같이 소장품의 전체 단위였다. 지금까지 55개의 개인 소장 아카이브가 원소유자에게 반환되었다. 그중 50개의 아카이브는 대여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주문서국의 아카이브를 통해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몇몇 소유자들이 자신의 이름이 공개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익명성을 보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1954년에 소유권을 박탈당한 아카이브 자료에 관한 원만한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를 바탕으로 주문서국이 설립될 수 있었다. 현재 소유권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아카이브 소장자료는 전체 1,500미터 중에서 약 100미터 정도의 분량으로 이에 대한 소유권은 미해결재단처리규정을 담당하는 기구에서 결정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다른 100미터의 소장자료도 소유권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이다. 아카이브의 자료가 외국으로 매각되거나 유출된 사례는 알려진 것이 없다. 소유권이 반환된 아카이브 자료가 외국으로 옮겨진 유일한 경우는 소유권자의 가족이 외국으로 이주해서 그곳에서 이미 가족의 아카이브 자료를 모아 놓은 경우로 반환된 자료들이 기존의 자료들과 합해진 사례이다. 현재 주정부의 열악한 재정을 고려하면 아카이브의 자료를 위해 재원을 지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출처 Parlamentsarchiv des Landtages von Sachsen-Anhalt, 6. Wahlperiode, Drucksache 6/923

동독 역사 연구를 위한 브란덴부르크 향토박물관의 기여-브란덴부르크 주의회 앙케이트위원회에 제출된 전문가 의견 '브란덴부르크주의 사통당 독재의 결과에 대한 역사적 청산과 극복 및 민주적 법치국가로의 이전'

2012년 5월 23일

담당자 / 기관 슈테판 볼레, 베를린 소재 동독박물관, 브란덴부르크 주의회 앙케이트위원회
5/1

내용

이 문서는 브란덴부르크 주의회의 조사기관인 앙케이트위원회가 이 지역의 향토박물관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사통당 독재에 대한 과거청산과 극복 작업에 관한 전문가 평가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통일 이후 브란덴부르크주에는 다양한 박물관이 세워졌다. 특히 1990년대 말에는 박물관 건립 붐이 불어서 약 200여 개의 새로운 박물관이 세워졌다(이 지역에 있는 박물관의 수는 2001년에 350개, 2009년에 400개 그리고 2016년 현재 423개이다). 그중에서 150개가 브란덴부르크 박물관협회의 회원이다.

이 평가서에 따르면 구동독지역 박물관의 대부분이 1945년 이후의 역사를 전혀 다루지 않거나 아주 조금만 언급한다는 일반 여론의 인식은 더 이상 근거가 없다고 한다. 2006년부터 2011년까지 5년 간 동독 역사에 관한 20개의 새로운 상설전시가 개막되었다. 나아가 동독과 관련된 기억문화를 위한 방안을 구상하였다. 브란덴부르크 학술문화연구부의 예를 들자면 '현장의 역사. 1933-1990년 사이 브란덴부르크지역의 기억문화'와 같은 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 다양한 박물관과 다큐먼트센터들이 동독의 일상과 문화를 전시하고 있다. 아이젠후텐슈타트도 그런 한 사례이다.

평가서에 따르면 동독과 관련된 전시에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억압적인 체제와 살아온 일상적인 경험 간의 모순을 보여 주는 것이다. 그것은 감정의 문제를 배제할 수 없고 배제해서도 안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물을 통해 역사를 분석하는 것이 아주 어렵고 오랜 시간을 요하는 것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닭 모양을 한 플라스틱컵이 공산독재에 관해 무엇을 설명해 주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없이는 알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전시의 교육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전시될 사물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수불가결하다. 박물관을 행정적으로 관리하는 단위는 지방자치단체이다. 박물관과 지자체 간의 협력이 몇몇 성공적인 사례도 있지만 아직도 문제가 많은 사례도 있다. 예를 들어 동독의 역사에 관한 전시를 위해 필요한 자료들을 폐기하는 것, 박물관 건립 지역, 동독 체제하에서 지역역사의 비판적 청산, 지자체의 지원의지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

출처 http://www.landtag.brandenburg.de/media_fast/5701/Gutachten%20Heimatismuseen%20Dr.%20Wolle_korrigierte%20Fassung_Ausgabe%202023.pdf, abgerufen am 07.06.2016

문서
번호 130

브란덴부르크 주의회 양케이트위원회 5/1 '브란덴부르크주의 사통당 독재의 결과에 대한 역사적 청산과 극복 및 민주적 법치국가로의 이전' 최종보고서-문화 발췌
2014년

담당자 / 기관_ 브란덴부르크 주의회

내용_

이 문서는 브란덴부르크 주의회가 구성한 양케이트위원회 '브란덴부르크주의 사통당 독재의 결과에 대한 역사적 청산과 극복 및 민주적 법치국가로의 이전' 팀의 최종보고서 중에서 문화 관련 부분을 발췌한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동독이 붕괴된 이후 문화는 브란덴부르크주를 새롭게 건립하는 데에 정체성을 심어주고 민주주의를 촉진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통일 직후 브란덴부르크주가 직면했던 문제는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 속에서 중앙집권적이고 사회주의 이념으로 점철되었던 문화정책을 연방주의적으로 이루어진 문화행정과 문화재정 구조로 전환하는 것이었다. 시기적으로 본다면 이 시기는 1990년에서 1994년 사이로, 제1대 주의회의 임기와 일치한다. 1994년부터는 문화지원을 위해 연방정부가 제공하던 재정지원 프로그램이 중단되었다. 그 결과 브란덴부르크 주정부는 1994년부터 시작된 2단계에서 문화정책의 정착과 전략적 방향설정을 해야만 했다. 문화정책 3단계에서 주정부는 행정관리에서 창조적 문화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해서 문화정책적 전략을 발전시켰다. 브란덴부르크는 독일 연방주 중에서 최초로 주 전역에 문화정책적 개발계획을 세웠다.

출처_ Schriften des Landtages Brandenburg Heft 5/2014, S. 284 f.

2015년 2월 12일

담당자 / 기관 연방의회 학술서비스

내용

이 문서는 통일 25주년이 되던 2015년에 연방의회 학술서비스팀이 소련군 점령기와 분단기에 동독지역에서 국가권력에 의해 소유권을 박탈당한 문화재와 예술품의 소유권 반환 현황에 관해 조사한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독일통일과 함께 국유화된 재산의 소유권 반환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이를 통해 나치에 의해 또는 1945년 이후 소련군 점령지에서 국가권력에 의해 핍박받고 살해되어 소유권을 강탈당한 경우 소유권반환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과, 1945년에서 1949년 사이와 그 후에 이루어진 토지개혁과 관련된 문제가 논의되게 되었다. 1990년 9월 23일에 도입된 소유권법은 그런 방식으로 발생한 소유권 상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토지개혁으로 이루어진 결정은 변경 불가능하다는 것도 명시하였다. 그 이유는 통일조약의 규정이 연방법으로서 지속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이었다. 통일조약에는 소련군 점령기에 이루어진 조치, 특히 소유권 박탈에 대한 결정은 통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유효하다고 명시되었다. 그러나 1994년에 도입된 보상 및 대체보상법을 통해 이 규정이 조금 완화되어서 적어도 동산의 반환은 가능해졌다. 이 법은 향후 20년의 기간 동안 해당 지자체와 박물관은 소유권자들과 합의해야만 한다고 규정하였다.

예술품, 특히 귀족 제후들이 소장하였던 예술품 반환의 경우 역사적, 법적 근거가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분단 이전 동독지역에 살던 지배세력인 귀족 제후들이 소유하였던 예술품이 분명히 국유재산으로 등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소유 재산으로부터 확실히 분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 이후에 1994년에 도입된 보상 및 대체보상법을 근거로 귀족 제후가들과 재산권 분리계약 체결에 관해 협상하였다. 예를 들어 작센-바이마르 및 아이제나흐 백작, 작센-고타 백작 그리고 베티너 제후 등의 집안과 그런 협상이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합의가 이루어졌고 문화예술품을 위한 재단이 설립되었다. 이런 반환과정을 완벽하게 총정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베를린에 소재한 연방주 문화재단이 구동독지역의 문화예술품 반환과 관련한 문제를 담당하는 중요한 기관이자 자문기관이다.

동독에서 1970년대와 1980년대에 국가가 조직적으로 행한 문화예술품에 대한 소유권박탈문제는 거의 해결되지 않았다. 동독 외무부에는 알렉산더 샬크 골로코프스키가 책임자로 있던 상업협력본부(KoKo)가 설치되어서 문화예술품, 골동품을 외국에 판매해서 외화벌이를 했었다. 판매된 물건은 동독의 박물관과 개인에게서 강탈한 것들이었다. 이러한 문화예술품의 반환은 아직 해결되지 못한 과제이며 이 문제는 2015년에 설립된 독일 문화예술품상실센터에서 지속적으로 담당할 것이다.

출처_ Wissenschaftliche Dienste des Deutschen Bundestages – Ausarbeitung WD 10 –
3000 – 010/15







